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3-10

고충민원결정례집

통권 16호

(2009)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사

“공정한 사회 위한 친서민 기관 역량 발휘해야”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사회이며, 패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실천 키워드가 ‘친서민’입니다. 정부부처 중 서민과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기관을 선정하면 당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고의 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국민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서민이 대부분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것은 약 3년 정도이지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온 지는 어언 16년이 되었고, 그 긴 시간동안 국민 특히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려 하였습니다.

이는 출발과 과정에서 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서민의 입장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쌓아 왔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친서민·국민만족을 위한 적극적 고충해결, 국민 생활현장 중심의 고충해결 선도, 사회취약계층 배려위한 권익증진, 고충해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친서민 고충민원처리의 충주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정책의 A/S 센터로서 3만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약 4,000여건의 민원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결정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민원 사례 중 귀감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만든 것으로 더 발전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일 러 두 기

· 이 결정례집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회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Ⅰ. 행정·문화·교육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812-070380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시정권고	2
2AA-0903-020455	공제급여 지급	시정권고	10
2CA-0811-022207	등록사항 정정	시정권고	18
2BA-0811-014677	변상금 부과 이의	시정권고	23
2CA-0906-053197	공유지분 매입	의견표명	28
2AA-0811-061962	공상인정	의견표명	36
2BA-0905-071078	학교부지 활용	조정해결	44
2AA-0811-028799	학생 안전대책 마련	조정해결	50
2AA-0902-033798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합의해결	53
2AA-0907-023746	도시미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합의해결	55
2AA-0904-061360	소하천 정비	안 내	59
2BA-0812-076342	재외동포 국내주소관리제도 개선	안 내	63

Ⅱ. 국방・보훈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908-020617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	시정권고	68
2BA-0908-010088	현충원 안장자 영현정보 및 묘비 정정 요구	시정권고	75
2CA-0906-020424	국가유공자 등록 전 사망자 서면신체검사 이의	시정권고	83
2AA-0910-008622	군 간부의 병사에 대한 폭언 시정	시정권고	91
2CA-0903-072240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용허가 등 규정준수 요구	시정권고	96
2AA-0812-027914	원추각막증 징병신체검사 이의	시정권고	112
2BA-0909-003674	침수예방대책마련	의견표명	118
2BA-0907-02577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동의	조정해결	123
2AA-0812-001396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요구 등	조정해결	128
2AA-0910-033124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요청	합의해결	130
2AA-0904-047033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시정 요구	합의해결	135
2AA-0909-024775	군병원 진단서 및 발병경위 확인 요구	안 내	137
2AA-0909-005051	순직자 추서 진급 요구	시정권고	142

Ⅲ. 경찰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908-013829	현행범 체포 이의 등	시정권고	156
2AA-0906-043033	형집행장 집행관련	시정권고	164
2AA-0906-073267	음주운전 단속 이의	시정권고	170
2AA-0907-027607 2AA-0907-065153	교통사고 미접수 이의 등	시정권고	174
2AA-0812-053282	의사권고를 무시한 경찰조사관행 이의	시정권고	182
2AA-0908-076512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홀 등	시정권고	190
2AA-0812-063591	폭행사건 처리 이의	시정권고	197
2AA-0903-014934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	시정권고	209
2AA-0907-033648	교통사고처리 과정 이의	시정권고	218
2CA-0910-005968	영정차량 과태료 부과 이의	의견표명	224
2CA-0905-071154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요구	의견표명	232
2AA-0903-027812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경의 시신인도	조정해결	239
2BA-0901-029544	아파트앞 교통체계 개선	조정해결	243
2BA-0901-05897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합의해결	247
2BA-0911-001400	일방통행도로 지정 요청	합의해결	250
2CA-0904-016179	변사자 신원확인	시정권고	254

Ⅳ. 복지・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903-067622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이의	시정권고	264
2BA-0909-066140	산재휴업급여 산정 이의	시정권고	271
2BA-0902-068522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시정권고	277
2AA-0908-063823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수리 거부 취소	의견표명	284
2CA-0904-073218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의견표명	290
2AA-0912-058237	노인장기요양 비급여 처분 취소	의견표명	295
2BA-0902-058218	공동묘지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의견표명	300
2BA-0902-060950	교통안전공단 대출자금에 대한 부채인정	합의해결	302
2AA-0905-040647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안 내	305
2BA-0911-012209	공제보험의 요양급여비 지급요구자 전화 원상복구	안 내	308
2BA-0907-06046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거부 취소	시정권고	315

Ⅴ. 재정·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907-019659	상속세 부과 처분	시정권고	322
2CA-0909-075313	부동산 압류해제	시정권고	329
2BA-0906-030556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의	시정권고	340
2BA-0903-02425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시정권고	348
2CA-0812-050868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시정권고	356
2CA-0905-050199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가산세 부과 취소 및 환부공제급여 지급	시정권고	364
2AA-0903-020455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정권고	372
2BA-0909-071263	취득가액 재조사 요구	시정권고	383
2BA-0812-036644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과세요청	시정권고	391
2AA-0906-062720	지체상금 부과처분 조정	의견표명	400
2CA-0811-055652	부동산 압류해제 및 공매대금 반환	의견표명	410
2BA-0904-040995	특별소비세 환급 요청	의견표명	422
2CA-0812-069426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추가 요청	합의해결	427
2BA-0902-0526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안 내	429
2BA-0903-004373	파산면책자 특례보증 요구	안 내	432

Ⅵ. 산업·농림·환경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901-015301	도로방음시설 보완	시정권고	436
2AA-0902-072375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시정권고	445
2BA-0909-012733	산지전용허가	시정권고	454
2AA-0812-036376	토지매수요구	시정권고	460
2AA-0905-012066	농업손실 보상	시정권고	467
2BA-0904-071399	보험금 지급	시정권고	474
2BA-0904-000847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	의견표명	485
2CA-0907-032559	국유림 대부	의견표명	490
2BA-0904-012223	항만용역업 기준 완화	의견표명	496
2CA-0911-026776 2BA-0911-028563	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요구	조정해결	503
2BA-0812-008827	송전선로 변경	조정해결	506
2BA-0910-054008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요구	안 내	509
2CA-0902-053734	배수관로 정비 요구	시정권고	514

Ⅶ. 주택・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909-056924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시정권고	524
2AA-0907-039479	건축 사용승인 반려 처분 취소공제급여 지급	시정권고	531
2AA-0907-067773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공제급여 지급	시정권고	539
2AA-0908-027339	공공임대APT 입주	시정권고	545
2CA-0907-027474	개발행위 준공반려 처분 취소	의견표명	551
2BA-0907-059586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의견표명	558
2BA-0905-034604	임대주택계약 갱신	의견표명	564
2CA-0811-035447	도로부지 매입 부당	조정해결	570
2BA-0902-0387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조정해결	574
2AA-0901-035566	아파트 브랜드 공유	조정해결	577
2BA-0903-007148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주거이전비	합의해결	580
2BA-0903-02475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합의해결	582
2AA-0910-046673	복도전용 원상복구	안 내	584
2CA-0908-041157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의견표명	587

Ⅷ. 도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909-024203	휴직 보상	시정권고	594
2CA-0904-034490	영업손실 보상	시정권고	600
2BA-0910-008465 2BA-0910-053045	무허가 건축물 보상	시정권고	605
2BA-0909-004518	가산보상	시정권고	612
2BA-0907-046493 2BA-0908-009034	실농보상	시정권고	617
2BA-0908-031038	이주정착금 지급	시정권고	624
2BA-0905-011172	토지보상 이의	시정권고	630
2BA-0910-029587	이주대책	시정권고	635
2CA-0906-026770	영업손실 보상	시정권고	640
2BA-0909-070887	이주자 택지공급	시정권고	646
2BA-0909-043183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시정권고	652
2CA-0812-069451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의견표명	657
2BA-0906-020421	공장이전 지연 위약금 부과	조정해결	663
2BA-0903-029140	공유재산 수의매각	조정해결	666
2AA-0902-063888	건축물 사용승인	합의해결	669
2CA-0909-008938	운동시설내 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	안 내	672

Ⅸ. 교통・도로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905-064656 2BA-0908-046070 2BA-0908-009012	입체교차로 안 농지매수 등	시정권고	682
2BA-0907-087877	농어촌도로 확장	시정권고	700
2BA-0909-070900	영농손실 보상	시정권고	706
2AA-0902-006930	이주정착금 지급	시정권고	712
2CA-0906-038551	대중교통전용지구 피해 구제	시정권고	717
2BA-0902-052846	토지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	시정권고	727
2AA-0906-005597	토지 재평가 보상 등	시정권고	732
2CA-0907-007930	주유소 이용차량 대체도로 설치	의견표명	740
2BA-0910-038675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	746
2BA-0911-016096	무허가 건축물 이전보상	의견표명	751
2BA-0904-053239	사업지구 밖의 건물 등 보상	의견표명	758
2BA-0903-024259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의견표명	764
2BA-0903-029140	공유재산 수의매각	조정해결	770
2CA-0911-027117	철도변 방음벽 설치	합의해결	777
2AA-0906-056137	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안 내	780
2AA-0906-045432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재산정	시정권고	786

제1장

행정·문화·교육분야

제 목	면수
•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2
• 공제급여 지급	10
• 등록사항 정정	18
• 변상금 부과 이의	23
• 공유지분 매입	28
• 공상인정	36
• 학교부지 활용	44
• 학생 안전대책 마련	50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53
• 도시미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55
• 소하천 정비	59
• 재외동포 국내주소관리제도 개선	63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민원 토지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건축허가와 건축변경허가 및 공사착공수리가 된 점, 신청인은 건축이 가능함을 믿고 민원 토지를 매입한 점, 설계변경에 대해 현상변경허가가 부결된 것이고, 신청인은 종전 공사착공수리된 설계와 유사하게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문화재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민원 건물은 문화재와 51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비슷한 위치에 민원 건물과 규모 등이 유사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축물 완공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건축법」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한 ○○도지사의 현상변경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민원 건물의 사용승인거부로 인해 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사용승인함으로써 받게 될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2-070380(의결일 : 2009. 2. 16.)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건축허가와 건축변경허가 및 공사착공수리가 되었고, 건축물 완공 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시 ○○읍 ○○리 지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1조(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등), 같은법 제72조(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같은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지정문화재인 ○○씨 묘 주변에 단독주택(지상 2층)을 신축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이 거부된 자로서,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수리를 받은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설계를 일부변경하려고 하자 공사감리자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도지사에게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었고, 이에 부득이 종전 건축허가 받은 설계대로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건축물사용승인을 거부한바, 이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한 귀책사유가 있고,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대로 건축하지는 않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없이 건축물사용승인을 할 때 일괄처리(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가능한 범위 내로 건축을 하여 건축물사용승

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사용승인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시 ○○읍 ○○리 산○○에 있는 ○○씨 묘(이하 '문화재'라 한다)는 2001. 9. 19. ○○도 문화재자료 제○○호로 지정되었고, 같은 읍 ○○리 ○○○-○(223㎡, 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1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민원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문화재보호법」 및 「○○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민원 토지는 2006. 12. 21. 문화재위원회의 당연 심의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신청인 건축녹지과(이하 '건축과'라 한다)는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문화재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2002. 7. 19. 신청외 ○○○에게 건축허가(단독주택 1층, 신축)를 하였고, 2003. 12. 26. 이를 양수한 신청외 △△△에게 건축변경허가(단독주택 2층)와 2005. 1. 15. 공사착공수리(1층 면적 : 106㎡, 2층 면적 : 91㎡)를 하였으며, 2007. 10. 26. 이를 양수한 신청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건축주명의변경 후 신청인이 건축설계를 변경하려고 하자 공사감리자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설계도면을 일부변경(1층 면적 : 101㎡, 2층 면적 : 100㎡ 등)한 다음 2008. 4. 1. 피신청인 문화관광과(이하 '문화관광과'라 한다)를 경유하

여 ○○도지사에게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2008. 4. 21.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문화재와 근접해 있고 정면에 있어 문화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사유로 부결함)를 거쳐 불허가하였고, 신청인이 2008. 4. 29. 다시 현상변경허가신청(1층 면적 : 101㎡, 2층 면적 : 99㎡)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2008. 6. 24. 종전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이 2008. 7. 7. 종전에 건축허가된 설계대로 공사를 착공한 후 건축과에 공사감리자변경신고를 하자 건축과는 2008. 7. 23. 건축관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과는 2008. 8. 29.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신청인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0. 8. 피신청인 하수처리과로부터 오수처리시설 준공 적합과 2008. 10. 9. 정보통신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8. 10. 31. 종전에 건축허가된 설계대로 건축물을 완공하자, 문화관광과는 2008. 11. 5. 현상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였다며 신청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2008. 12. 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건축과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사용승인을 거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한바, 문화재 정면 아래쪽은 밭(약 51미터)이 있고, 그 아래쪽에 민원 건물과 기존 2층 건물 1동(민원 건물과 규모 등이 비슷함)이 있으며, 이 토지들은 경사가 완만하고 이들 모두 도로로 둘러 싸여 있으며, 이 도로 및 문화재 주변에는 단독주택(1층 및 2층)과 연립주택(3층 및 4층)이 다수 건축되어 있다.

3. 판 단

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시·도문화재의 지정 등과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 문화재보호 조례」(2008. 12. 30. 조례 제○○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9조, 제42조, 제4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의하면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 범위 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취소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문화재와 관련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2006. 12. 21. 정해졌고, 처리기준은 4개 구역(심의구역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구역, 2구역 :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구역 : 3층 이하 높이 12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구역 : 4층 이하 높이 16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문화재보존 등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기간은 2년(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이며, 시장·군수는 착공신고 수리 후 공사를 완료하면 이 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한 후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고,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민원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없고, 공사중지를 명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민원 토지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2006. 12. 21)이 정해지기 전에 건축허가(2002. 7. 19.)와 건축변경허가(2003. 12. 26.) 및 공사착공수리(2005. 1. 15.)가 된 점, 신청인은 건축이 가능함을 믿고 민원 토지를 매입한 점, 설계변경에 대해 현상변경허가가 부결(2008. 4. 21. 및 2008. 4. 29.)된 것이고, 신청인은 종전 공사착공수리된 설계와 유사하게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문화재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2008. 12. 24.)을 받은 점, 민원 건물은 문화재와 51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비슷한 위치에 민원 건물과 규모 등이 유사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축물 완공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문화재 보

호를 위해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건축법」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한 ○○도지사의 현상변경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민원 건물의 사용승인거부로 인해 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사용승인함으로써 받게 될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사용승인거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과 관련한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제급여 지급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훈련이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장하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당시 ○○○은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었고,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훈련기간 동안 양궁종목의 감독 및 코치의 상시 훈련지도를 받는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09. 2. 26. 발생한 화살의 오발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사안의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14조의 피공제자 자격이 인정되며, 사고당시의 훈련활동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특별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녀에 대해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3-020455(의결일 : 2009. 6. 2.)

2. 피신청인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3. 결정사항

체육특기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같은법 제14조(학교 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딸 ○○○은 2009. 2. 13.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 3. 2. ○○중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양궁종목 체육특기학생으로서, 2009. 2. 26.(목) 21:00 경 ○○중학교 옥상 양궁 연습장에서 양궁 훈련 중 발사지점 2미터 내에서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는 사고(이하 '민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며, 오른쪽 눈을 적출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인바, 이러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라 한다)에서는 이 민원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공제급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적절한 보상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춘계훈련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피공제자 자격이 없는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학교장의 교육계획(내부결재 없음)에 의하여 실시된 훈련이 아니므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소속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민원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가 임장 지도를 하지 않은 야간훈련 중 절대 위험지역인 사선을 무단으로 통과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나, 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실과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비용의 보전(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2009. 2. 26. 21:20 ○○동에 위치한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야간훈련 중 피해학생 ○○○이 절대위험지역인 사선을 무단으로 통과하다 가해학생 △△△이 놓친 화살을 맞는 사고(화살이 오른쪽 눈에 꽂힘)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학생은 사고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날 24:00부터 8시간에 걸쳐 신경외과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현재 어린이병동에서 심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받고 있다.

다. 학교측은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 치료비 10,205,729원을 부담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앞으로 상당기간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오른쪽 눈의 실명 등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된다.

라. 사고당시 피해학생은 2009. 2. 13.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2009. 3. 2. 입학이 예정된 상태였다.

마. 피해학생은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동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었다.

바. ○○중학교는 2009. 2. 27.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사실을 통

지하였는데, 동 안전공제회는 같은 해 3. 6. “동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학교장의 교육계획(내부결재 없음)에 의하여 실시한 훈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이라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다.

사. ○○중학교는 2009. 3. 10. 안전공제회의 의견통보에 대하여 “동 사고는 사고학생이 체육특기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상급학교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나,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참여자임은 물론 ○○중학교-8202호(2008. 12. 11.)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9학년도 중학교 배정자 명단(여자)에 사고학생 ○○○이 배정되었음”을 알리고, 공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전공제회로부터 2009. 3. 25. 동일한 사유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나 사고가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실과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비용의 보전(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있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소요된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4. 판 단

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는 학생은 학교안전공제

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법문상으로만 해석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공제에 가입된 중학교에 입학한 때에 피공제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기는 피공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1조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초·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교육과정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15~20일 정도의 기간만을 초·중등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법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가 의무교육기간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여,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때'라 함은 피공제자인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훈련이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장하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당시 피해학생은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었고, 2008. 12. 11. 교육청에 보고된 '2008년도 학교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훈련대상 학생으로 명시되어 2009. 1. 2. 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학교 양궁장에서 일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1. 24. 교육청에 보고된 '2009학년도 소년체육대회 추진계획 및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요청'에 동계방학 중 양궁종목의 훈련 선수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훈련기간 동안 양궁종목의 감독 및 코치의 상시 훈련지도를 받는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09. 2. 26. 발생한 화살의 오발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사안의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14조의 피공제자 자격이 인정되며, 사고당시의 훈련활동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특별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녀(○

○○)에 대해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자녀(○○○)에 대한 피공제자 자격 인정과 공제급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등록사항 정정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측량성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등록전환 당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임야도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라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지적법」제24조 제3항이 아닌 「지적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잘못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로서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 ○○면 ○○리 산○○-3을 2005. 12. 7.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1-022207(의결일 : 2009. 1. 7.)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행정청의 명백한 기술적 착오로 발생한 지적도 상 오류에 대해 인접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없이 행정청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시 ○○면 ○○리 산○○-3(임야 : ○○○㎡)에 대하여 임야대장에 2005. 12. 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목장용지 :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지적법」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지적법 시행령」제31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시 ○○면 ○○리 산○○-3(임야 : ○○○㎡)은 1927. 6. 1. 산○○에서 분할된 후 현재까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으나, 같은 리 산○○에서 같은 날 분할된 산○○-2(국유지)가 1959. 9. 10. 등록전환(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변경 등록)되면서 신청인의 임야 산61-3을 포함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였고, 그 후 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중복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은 2005. 12. 7. 위 두 필지에 대하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정리하였으니 이를 정정하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 ○○면 ○○리 산○○-3(임야 : ○○○㎡)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정정을 직권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인접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시 ○○면 ○○리 산○○(임야 : ○○○㎡)은 1918. 5. 16. "국"으로 사정(최초등록)된 후, 1927. 6. 1. 산○○-1(임야 : ○○○㎡), 산○○-2(임야 : ○○○㎡), 산○○-3(임야 : ○○○㎡)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같은 리 산○○-1은 국유지에서 신청외 ○○○을 거쳐 1975. 4. 9. 같은 리 ○○-4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위 같은 리 산○○-2는 토지이동(같은 리 ○○-5로 등록전환(1927. 3. 1.) 및 합병(1988. 3. 3.)과 신청외 ○○○, ○○조합, △△조합 등으로 소유권변동을 거쳐 현재 같은 리 △△(국 :농림부)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위 같은 리 산○○-3은 국유지에서 신청외 ○○○을 거쳐 1990. 10. 28. 신청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다.

마. 1959. 9. 10. 같은 리 산△△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13이 1959. 9. 10. 등록전환되어 같은 리 △△-12로 정리된 후 1988. 3. 3. 같은 리 △△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바. ○○시 ○○면 ○○리 산○○-2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5와 같은 리 산△△-13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12가 등록전환 당시 같은 리 산○○-3을 포함하여 등록전환되었다.

4. 판 단

가.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측량성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등록전환 당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임야도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라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지적법」 제24조 제3항이 아닌 「지적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잘못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로서 「지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 ○○면 ○○리 산 ○○-3을 2005. 12. 7.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 ○○면 ○○리 산○○-3(임야 : ○○○㎡)에 대하여 임야대장에 2005. 12. 7.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한 내용을 말소하고, 같은 리 △△(목장용지 :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변상금 부과 이의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체비지로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이 민원 건축물을 양수할 때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았어야 이전 소유자(신청외 ○○○)의 의무를 승계받지 않고 양수시점에서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양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양수인이 제외된다는 규정일 뿐 변상금 등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 공유지를 실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신청인이 같은 날 납부한 변상금 12,646,890원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811-014677(의결일 : 2009. 1. 7.)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공유지를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점유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대부계약 체결 없이 민원 공유지를 점유하였고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 시 이전 점유자로부터 미납된 변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 12,646,890원 부과처분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 받은 취소대상 변상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시 ○○구 ○○동 ○○○-○ 대 ○○○㎡(이하 '민원 공유지'라 한다) 위에 ○○㎡로 축조된 건축물(이하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2006. 10. 23.부터 2008. 10. 27.까지 거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년, 1997년, 1999년, 2005년분을 포함한 12,646,89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로 체비지는 「○○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점유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대부계약 체결 없이 민원 공유지를 점유 하고 있었다. 신청인에게 2008. 8. 27. 부과한 변상금 12,646,890원은 이전 점유자(신청외 ○○○)에게 점유기간 동안 부과하였으나 미납된 변상금도 포함된 금액이다. 신청인이 이전 점유자와 지상물(민원 건축물) 계약 체결후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피신청인에게 승계(명의변경)신청 하여야 그때부터 신청인의 점유로 인정되어 점용료가 재부과 되지만, 신청인과 이전 점유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이 이전 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전 점유자의 변상금 미납분까지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1975. 9.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10. 23. 민원 공유지에 전입하였고 2008. 9. 1. △△시로 전출(주민등록표)하였다.

다. 민원 건축물은 신청외 이○○이 1995. 3. 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신청외 김○○이 2005. 2. 7.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신청인과 김○○(배우자)이 2006. 11. 2. 각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청인과 김○○는 2008. 8. 28. 신청외 정○○과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변상금 12,646,89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4. 판 단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시장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지상권을 부당한 방

법으로 매수한 양수인은 체비지 매입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민원 공유지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체비지로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체비지 관리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이 민원 건축물을 양수할 때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았어야 이전 소유자(신청외 이○○, 김○○)의 의무를 승계받지 않고 양수시점에서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양도·양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양수인이 제외된다는 규정일 뿐 변상금 등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 공유지를 실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27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신청인이 같은 날 납부한 변상금 12,646,890원 중 신청인이 실제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지분 매입

○○동 ○○○-40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약 1m 가량의 단차가 있고 콘트리트 담장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점, ○○동 ○○○-40 방향으로 새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를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근접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환경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동 건축물 중 일부(30~40㎝)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위치·면적, ○○청사 부지와의 지리적 밀접성, 그리고 실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사실상 ○○동 청사의 부속 토지화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신청인의 공유지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에 저촉되어 신청인은 소송 등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6-053197(의결일 : 2009. 11. 3.)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행정기관 건물 건립으로 공유지분인 사유지가 맹지가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 여부

4. 주 문

○○동 청사 부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를 피신청인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지적법」 제19조(분할신청), 「지적법 시행령」 제40조(지상경계의 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이 유

1. 신청원인

○○시 ○○구 ○○동(구 ○○ 1동) 청사 건립으로 신청인의 공유지분이 있는 사유지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맹지가 되었으니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맹지'라 함은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는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유지분 47.4㎡는 토지대장상 ○○구 ○○동 ○○○-40과 1필지로 '맹지'라 할 수 없고, 공유지분은 동일대지상의 소유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필지 내 특정부분을 지정할 수 없어 신청인이 매입을 요청하는 위치의 대지가 신청인의 공유지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민원 토지에 위치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재활용품 창고는 신청인과 환경미화 회사와의 문제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며, 토지 매입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공유지분 해소 등 제반 조건을 선행한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토지 매입 수용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구 ○○1동 ○○○-40에는 1980.

11. 4. 신축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연립2가구)이 축조되어 있고 소유자는 ○○○, △△△이며, 토지 면적은 334.1㎡로 ○○○, △△△, □□□의 3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신청인의 공유지분은 47.4㎡이다.

나.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동 청사 부지(○○동 ○○○, 1,220㎡)는 피신청인이 매입하기 전까지 신청인의 소유였으나 신청인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은행에 압류되었고, 피신청인은 '○○동 청사용지 선정 및 매입 계획(1993. 2. 13.)'에 따라 1993. 4. 7.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3. 10. 4.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 7. 1. 준공하였으며, 신축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동 청사 부지내의 부속건물(화장실, 42㎡)을 철거하였다.

다. 1995년 당시 ○○ 1동 통우회 회장은 2009. 4. 28. "1995년경 이 민원 토지에 ○○동에 양해를 구하고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환경)로 하여금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콘테이너 박스 옆 창고를 ○○동 환경 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될 약 5평 정도 건축물을 벽돌 슬라브로 축조해 준 통우회장 역시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환경)는 컨테이너 박스를 존치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2007년 8월까지 월 3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2009. 5. 29. 대한지적공사 ○○구지사의 지적 현황 측량

결과 신청인이 매입을 요청하는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은 47.4㎡로 측량되었으며, 2009. 5. 23. 토지 지분 공유자인 ○○○, △△△은 ○○동 청사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의 지분(47.4㎡)으로 분할하는데 동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인해 토지분할 신청을 못하고 있다.

바. 2009. 7. 16.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 지반은 토지대장상 1필지로 되어 있는 ○○구 ○○동 ○○○-40과는 약 1m이상 높이의 차이가 나고 있는 반면, ○○동 청사 부지와 같은 높이의 지반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구 ○○동 ○○○-40과 이 민원 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는 담장을 경계로 ○○동 청사 부지 쪽에 포함되어 있어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민원 토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동 청사 주차장 부지와 연장선상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사 부지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 대한지적공사 ○○지사가 2009. 8. 3. 현황 측량한 결과 ○○동 ○○○-40의 축척인 1/600 축척으로 측량할 경우 ○○동 청사 창고 건물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나, ○○동 ○○○의 축척인 1/1,200 축척으로 측량할 경우 이 민원 토지를 약 30~40㎝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2001. 5. 30.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에 대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부분은 이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동 대지와 인접대지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판 단

가. 「지적법 」제19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

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 나목과 라목은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살피건대, ○○동 ○○○-40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약 1m 가량의 단차가 있고 콘트리트 담장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 부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점, ○○동 ○○○-40 방향으로 새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를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규격봉투 공급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근접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환경미화원의 재활용 분리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동 건축물 중 일부(30~40㎝)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청사 부지와의 지리적 밀접성, 그리고 실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사실상 ○○동 청사의 부속 토지화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는 신청인 소유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신청인의 공유지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에 저촉되어 신청인은 소송 등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동 청사 부지와 맞붙어 있어 사실상 맹지가 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40의 일부 토지 47.4㎡를 매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상인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하퇴부 근육파열”은 사적 행위인 ‘Sports’ 중에 입은 부상이고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록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2008. 6. 22, 05:57분에 “○○택시 경관요청”으로 되어 있고, 도착시간은 06:00, 보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택시기사는 당시 승객으로 탄 20대 만취 여성이 순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무단 질주하는 것을 신청인이 만류하려고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절면서 동료 경찰(△△△)과 함께 만취 여성을 인도로 데려 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에서 병원원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의무지록지에 ’sports‘로 기록한 후 ‘running’으로 다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바, 병원원장은 신청인이 “공무수행 중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달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변상황의 고려 없이 ‘sports’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서, ‘sports’를 ‘running’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과 본인(병원원장)의 기억상 신청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어 ‘running’으로 수정한 것이며, 수정과정에서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여년간 경찰서, 파출소・지구대 근무시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을 순찰차로 이동하며 권총과 무전기 등 6~7kg의 장구를 혁대에 매고 있어 항상 허리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8. 6. 22(일).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도로에서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 점 등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목격자 진술, 근무상황일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1-061962(의결일 : 2009. 1. 7.)

2. 피신청인 ○○공단이사장

3. 결정사항

공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 진료 중 담당의사의 실수로 진료차트에 비공상 사유가 기재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사적 사유 부상이 공무 중 악화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같은 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으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다리를 다쳐 “하퇴부 근육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의사의 실수로 진료 차트에 발명 원인이 'Sports'로 잘못 기재된 것을 이유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2008. 8. 19. 제출한 상병경위서 등 일건기록과 관련하여 “하퇴부 근육파열”은 그 부상의 정도 및 ○○병원 의무기록지(2008. 6. 23.) “6-21 Sports"로 기록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무수행 중이 아닌 스포츠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신청인이 2008. 9. 19. 진료차트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무 수행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하퇴부 근육파열,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하퇴부 근육파열”은 사적 행위인 ‘Sports’ 중에 입은 부상이므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원인이 된 것 외에 척추를 부상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업무수행 내역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없어 2008. 10. 8. 불승인 처분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

찰관으로 2008. 6. 21.(토) 21:00부터 순찰차 야간근무 중 2008. 6. 22.(일) 06:00경 ○○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승객과 택시기사 간에 시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좌측 다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하퇴부 근육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08. 8. 19. 피신청인에게 동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인 “하퇴부 근육파열”은 그 부상 정도와 ○○병원 의무기록지(2008. 6. 23.)에 “6-21, Sports"로 기록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무수행 중이 아닌 스포츠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08. 9. 12.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장이 ‘running’을 “sports”로 잘못 기재한 진료기록을 ‘running’으로 수정한 소견서와 공무수행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하퇴부 근육파열,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 받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9. 19. 피신청인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이 합당하다며 이를 2008. 10. 17. 기각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08. 12. 2.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병원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을 초기 진료할 때 의무지록지에 “sports”로 기록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원장은 “신청인의 최초 진술시 ‘공무수행 중 피의자를 잡으려고 달려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다’를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 ‘달리다’라는 표현인 ‘running’을 경과기록지에 옮겨 적으면서 주변 상황의 고려없이 단순하

게 ‘sports’로 잘못 기재한 것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발병 경위를 ‘running’으로 수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장은 의무지록지에 기록된 ‘sports’를 ‘running’으로 수정한 이유 및 외부 압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상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어 ‘sports’를 ‘running’으로 수정한 것이고,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의 근무상황이 기록된 근무일지에 의하면, 2008. 6. 21(토), 21:00부터 2008. 6. 22(일), 09:00까지로 근무명령이 되어 있고, 근무자는 경위 △△△과 경사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2008. 6. 22, 05:57분에 “○○택시 경관요청”으로 되어 있고, 도착시간은 06:00, 보고자는 △△△·○○○(신청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목격자인 △△△경위는 “2008. 6. 22. 경사 ○○○(신청인)과 112순찰 근무 중 05:57분경 ○○지방경찰청 앞에서 택시기사와 만취한 20대 여성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만취된 여성이 도로 중앙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뒤쫓아 가다 좌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도로에 넘어졌고, 목격자인 △△△이 뛰어가 다리를 절고 있는 신청인과 함께 만취 여성을 인도로 데려 왔다고 진술했다.

아.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승객으로 탄 20대 만취 여성이 아무 이유없이 xx놈 등 비속어를 쓰고 있어 2008. 6. 22. 05:57분경 112에 신고하였고 06:00경 순찰차가 도착하자 여성 손님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무단질주하여 신청인이 급하게

뒤쫓아 가다가 넘어진 후 다리를 절면서 동료 경찰(△△△)과 함께 만취 여성을 인도로 데리고 간 사실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신청인은 디스크 발병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임용되어 20여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에서 5년(교통3년)간 근무할 때는 순찰차로 하루 8시간씩 운전하였고, 15년간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는 근무제에 따라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순찰차로 이동하며 권총과 무전기 등 6~7kg의 장구를 혁대에 매고 있어 항상 허리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 판 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하퇴부 근육파열”은 사적 행위인 ‘Sports’ 중에 입은 부상이고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록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2008. 6. 22, 05:57분에 “○○택시 경관요청”으로 되어 있고, 도착시간은 06:00, 보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택시기사는 당시 승객으로 탄 20대 만취 여성이 순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무단 질주하는 것을 신청인이 만류하려고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절면서 동료 경찰(△△△)과 함께 만취 여성을 인도로 데려 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에서 병원원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의무지록지에 ’sports‘로 기록한 후 ‘running′으로 다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바, 원장은 신청인이 “공무수행 중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달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변상황의 고려 없이 ‘sports’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서, ‘sports’를 ‘running’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상 신청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어 ‘running’으로 수정한 것이며, 수정과정에서 외부의 협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여년간 경찰서, 파출소・지구대 근무시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을 순찰차로 이동하며 권총과 무전기 등 6~7kg의 장구를 혁대에 매고 있어 항상 허리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8. 6. 22(일). 피의자를 쫓아 가다가 도로에서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 점 등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목격자 진술, 근무상황일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학교부지 활용

피신청인들은 미활용 학교부지에 신·구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정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5-071078(의결일 : 2009. 11. 9.)

2. 피신청인 ○○광역시장, ○○교육감, ○○군수, ○○공사장

3. 결정사항

신도시 아파트 내 학교부지가 당초 계획의 필요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바,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이 유

1. 신청원인

○○광역시 ○○군 소재 ○○신도시 아파트 내 학교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크고 학생안전에 위협이 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그동안의 경과

<추진 배경>

○ 2003년 ○○택지개발(공동주택 4,883세대) 협의시 신지구 내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신설 계획

○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설립기준 변경, 적정학급편성·통학구역 등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축소조정(초3→초2, 중2→중1)

- 초등학교부지 1개소(12,531㎡) 및 중학교부지 1개소(13,611㎡) 미설립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2005년 7월 이후 줄곧 '조속한 학교설립 및 학교부지 방치로 인한 생활불편·우범지대 우려'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기

- 교육청이 학교부지 유지를 고수하여 타용도로 사용불가
- 토지소유주인 토공의 관리소홀로 주거불편민원 계속 제기

○ 특히 학교부지의 무책임한 방치로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친환경적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안전 저해 등 주거생활불편 초래

○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 없으니 학교부지에 예정대로 학교를 신설해 주든지 다른 활용 방안이라도 강구해 달라며 고충민원 제기

○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

○ 다만,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 약 110억과 시설비 약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

- ○○지역은 기존 아파트 단지(약 14,000명)와 신규 아파트 단지(약 16,000명)가 중앙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고, 미활용 학교부지는 신규 아파트 지역에 위치
- 토공이 개발이익 환급 차원에서 기부 약속한 체육공원조성금(83억)의 사용 등을 두고 신·구 아파트 간 대립
-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신·구 아파트 단지 간 갈등해소가 급선무임을 확인하고 양자 간 화해와 협력 도출
-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부지에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되, 기존 아파트단지에 추진중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체육공원조성금과 상계하는 방안 제시

○ 아울러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를 위한 민원현장 조정회의 개최

<주요 추진경과>

○ 2009. 5. 31 : 고충민원 접수
○ 2009. 6. 2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9. 6. 15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9. 7. 9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7. 28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10.14 : 제3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10.20 : 제4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8. 10.29 : 현지조정회의 개최

3. 처리결과 : 조정해결

○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 및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구영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계획 축소조정(초3→초2, 중2→중1)

※ 초등학교부지 1개소(12,531㎡) 및 중학교부지 1개소(13,611㎡) 미설립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2005년 7월 이후 줄곧 '조속한 학교설립 및 학교부지 방치로 인한 생활불편·우범지대 우려'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기

○ 학교부지 방치로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친환경적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 안전저해 등 상당한 주거생활불편 초래

○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현지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대안으로 도출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네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학교부지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9. 10. 29.(목) ○○광역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주재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결 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군수

○ 기존아파트 지역 내 위치한 ○○근린공원 사업 예정대로 추진
○ 신규아파트 지역 내 위치한 미활용학교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토공이 기부약속 한 체육공원조성금(83억)과 상계
○ 미활용 학교부지에 신·구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설립

나. ○○공사 ○○역본부장

○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출
○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울주군에 매각하되 구체적 내용은 협의

다. ○○광역시장

○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군과 협의하여 '복지 및 체육시설'이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

라. ○○광역시교육감

○ 학교부지에 학교설립을 하지 않음을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택지지구 내 학생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학생 안전대책 마련

○○교육청은 화물차량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측면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갓길을 설치하고, ○○청사관리소는 학교와 수업시간표를 공유하여 등·하교 및 체육활동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며, 작물 재배에 학생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1-028799(의결일 : 2009. 3. 2.)

2. 피신청인 ○○청사관리소장, ○○교육청교육장

3. 결정사항

정부부처 소유 ○○학교 운동장의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텃밭 관리를 위해 화물차량 등이 수시로 운동장으로 운행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학생 안전대책 수립 가능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단체 일동으로서, ○○종합청사관리소가 학교운동장이 정부부처 소유 행정재산인 학교 운동장에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관리하고 있는 바,

나. 화물차량이 수시로 운동장을 가로 질러 질주하고, 작물재배를 위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그동안의 경과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3 : 고충민원 접수
○ 2008. 11. 1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8. 12. 1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8. 12. 9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8. 12. 18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9. 2. 24 : 현지조정회의 개최

<민원 검토>

○ ○○초등학교는 20△△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서깊은 학교이며, 운동장 부지는 1995년 ○○교육청과 정부부처간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1998년 학교용지에서 공용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정부부처 소유 국유재산(행정재산)임

○ ○○청사관리소는 ○○청사의 조경관리를 위해 운동장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작물을 재배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차량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고, 필요시 작물 재배 목적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옴

○ 이에 학부모 및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화물차량의 운동장 통행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학생안전 및 건강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교육청은 화물차량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측면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갓길을 설치하고, ○○청사관리소는 학교와 수업시간표를 공유하여 등·하교 및 체육활동 시간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며, 작물 재배에 학생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이 본 민원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초등학교 운동장 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합의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군 내 타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조치(전학)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같은 학군 내 신청인이 원하는 ○○중학교로 전학조치 하기로 약정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2-033798(의결일 : 2009. 3. 9.)

2. 피신청인 ○○교육청교육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는 바, 가해학생들과 다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해 마음의 상처가 컸는바, 가해학생들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대로 진학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다시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2. 민원처리 경과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할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수차례 문제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함.

나. 그 결과,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군 내 타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조치(전학)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같은 학군 내 신청인이 원하는 세교중학교로 전학조치 함.

3. 처리결과 : 합의해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할교육청과 문제해결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조치함.

도시미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및 신청인 등의 고충을 감안하여 2009. 9. 8.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조례상의 광고물 높이제한(2층 이하)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건물의 3층 상가 입주자들은 3층 벽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7-023746(의결일 : 2009. 10. 12.)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이 3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피신청인이 동 지역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을 2층 이하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등), 같은 시행령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5. 7. ○○시 ○○구 소재 ○○건물(상가)의 3층 일부를 분양받았는데, 그 이후 피신청인이 상가 주변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모든 상가의 간판을 2층 이하에만 달도록 구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신청인은 본인의 상가에 옥외가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2층 상가 소유자들과 간판설치 공간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신청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정상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3. 1. ○○시 ○○구 고시(제2003-○○호)로 ○○구 ○○지방산업단지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가로간판은 건물 2층 이하에 설치 등)하였으며, 2005. 12. 위 내용을 반영하여 '○○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 3.에는 이 민원 상가 지역을 조례적용 범위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나. 2009. 8. 7. ○○시 ○○구 소재 민원현장 조사 결과, ○○건물(상가)은 주상복합건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조사당일 현재 2층 정면 유리벽면에 가로간판 1개, 3층 시멘트벽면에 가로간판 2개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 등 3층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들은 피신청인

으로부터 간판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 민원현장 조사 당시 피신청인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2층과 3층의 입점자들이 모두 2층 또는 3층 벽면 어느 한 쪽에만 가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층 상가의 소유자(입점자)들은 2층 벽면에는 3층 입점자들의 간판설치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신청인 등 3층 상가의 소유자(입점자)들은 2층 또는 3층 어느 쪽이든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3. 판단 및 처리경과

가. 신청인은 2005. 7. 이 민원 상가를 분양받았고, 이후 피신청인은 2005. 12. 및 2009. 3. 관련 구조례를 개정하면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시와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청인 등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에 있어서의 높이제한(2층 이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광고물설치 규제의 취지를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형 신축상가에 상업 광고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관련 조례 개정 이전에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층에 옥외광고물(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2] Ⅱ. 6.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특례 규

정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3층 입점자들의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및 신청인 등의 고충을 감안하여 2009. 9. 8.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조례상의 광고물 높이제한(2층 이하)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건물의 3층 상가 입주자들은 3층 벽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4. 처리결과 : 합의해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9. 9. 9. 민원 당사자 및 해당 상가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소하천 정비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재가설하고, 신청인이 우기시 수해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수해에 대비하여 교각 및 교대 균열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교대 주위의 암석 제거 필요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4-061360(의결일 : 2009. 6. 8.)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민원지역의 기존제방고가 홍수위선보다 높아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해 당지역 정비 불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토지인 ○○시 ○○면 ○○리 일원의 ○○소하천내 하상 암반의 돌출로 재해위험이 있으니 암반을 제거해 주거나 암반제거가 가능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가 검토한 바, ○○시는 ○○소하천 내 ○○교 상류지역은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 없다 하여 이를 안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용역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교 상류에 대하여도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암반제거와 노면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교 상류지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있어 정비계획(단면확보 및 제방보축)이 불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다.

나. 다만,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 재가설이 가능하며, 교량을 재가설 할 경우 교각 및 교대 주위의 암석 등에 대한 제거 필요성 여부도 검토 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소하천은 2004.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소하천 구역 내 ○○교 하류는 200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나.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소하천 중 이 민원토지 일원인 측점NO.11+03지점의 계획 하폭은 13m이나 현 상태의 하폭은 12m로 1m 정도 하폭이 좁은 것으로 되어있고, 계획 홍수위선은 362.80ELm, 기존 제방고는 363.88ELm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99개, 지방하천은 18개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소하천 정비법」제6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는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및 토석·모래·자갈·죽목·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용역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교 상류에도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재해예방을 위해 ○○교 상류 암반제거와 노면정리를 해 주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교량건설을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소하천정비계획상의 하폭은 1m정도 부족하나 기존제방고가 홍수위선보다 높아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교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교량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재가설하고, 신청인이 우기시 수해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수해에 대비하여 교각 및 교대 균열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교대 주위의 암석 제거 필요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고 이를 안내함.

재외동포 국내주소관리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위원회의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는 현재까지의 제도개선 진행 경과를 안내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812-076342(의결일 : 2009. 3. 17.)

2. 피신청인 ○○장관, △△장관, ○○청장

3. 결정사항

재외국민 등이 ○○부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의 주소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같은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같은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민으로서 업무상 국내 체류기간이 길고 국내에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부에 '거소등록신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과세 통지서나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장 및 과태료 통지서 등을 이미 말소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하여 부당한 과태료처분 및 재판을 받아야 하였다.

나. 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거나, 거소등록신고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신고한 거소지로 과세 통지서, 자동차검사 안내장, 과태료 통지서 등을 발송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시 ○○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재외국민 거소등록정보를 지방세 및 자동차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 ○○청

현행 법제상 납세자가 납세지변경신고(해외이주시 국내 송달주소를 신고함) 또는 납세관리인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부 거소등록정보를 국세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것

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다. ○○부

재외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근거규정 마련과 전산시스템 연계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및 제도운영 현황

가. 신청인은 ○○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업무상 국내 출입을 하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에 '재외국민거소등록신고'를 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자 등)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임

나.「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세법」제51조 제1항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다.

다. 현재 자동차등록 관할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고 있다.

라. 실제로 과세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인이 ○○부에 신고한 거소지가 아닌 말소 상태인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과세,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관련 서류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및 추진방향

가.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재외동포들로부터 유사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재외국민 등이 ○○부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의 주소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위원회의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는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안내함.

제2장

국방·보훈분야

제 목	면수
•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	68
• 현충원 안장자 영현정보 및 묘비 정정요구	75
• 국가유공자 등록 전 사망자 서면신체검사 이의	83
• 군 간부의 병사에 대한 폭언 시정	91
•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용허가 등 규정준수 요구	96
• 원추각막증 징병신체검사 이의	112
• 침수예방대책마련	118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동의	123
•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요구 등	128
•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요청	130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시정 요구	135
• 군병원 진단서 및 발병경위 확인 요구	137
• 순직자 추서 진급 요구	142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이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주하였던 영외 아파트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군 부대 근접지에 하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제공된 군관사로서, 소속부대는 영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영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대원에게 영내 독신자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사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한 점, 소속부대는 이사일 전까지 숙소의 짐을 미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신청인은 부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이삿짐을 정리하기위해 아파트에서 짐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 종이류 처리를 위해 소각 중 부상을 입은 점, 이에 대해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지시에 따라 공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숙소 이사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사가 공무수행의 연장인 경우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상을 입은 것에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거나 소속 부대가 이를 금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은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각 중 부상을 당한 것에 경미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나, 소속 부대가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소각 당시 내용물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중과실 또는 명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8-020617(의결일 : 2009. 8. 10.)

2. 피신청인 ○○보훈지청장

3. 결정사항

이 건 사고가 공무수행 종료 후 공무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소각행위가 공무의 연장 이라면, 신청인의 부상이 본인의 중과실, 상관의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09. 1. 8.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소속 부대의 특수성, 숙소이사계획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8. 1.

25. 17:00경 업무종료 후 거주하던 영외 군인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영내 BEQ(관사)로 이사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종이류를 소각 하던 과정에 미확인 물체(건전지 추정)의 폭발로 안구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자 의병전역 하였고, 이에 대해 2008. 6. 3.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부상이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단의 명령에 따라 이사한 것이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분명하니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에 대한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2. 8.자로 제○○특전대대 ○○지역대 4중대 통신부사관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하던 중 2008. 1. 25. 17:00 업무종료 후 영외 아파트에서 독신숙소로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건전지(추정)가 터지며 오른쪽 안구에 파편이 튀어 부상을 당하였고, ○○소재 ○○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 안구열상, 무수정체'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부상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은 2008년 1월 초 부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08. 1. 26.~1. 27. 양일간 영내 독신숙소로 이사를 하라는 여단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 20. 일요일에 이삿짐을 미리 정리 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근무자로 편성되어 짐 정리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공수낙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목요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 부위가 다소 호전되자 미루어 두었던 이삿짐 정리를 위해 1. 25. 금요일 17:00 업무종료 후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선임자 최○○ 중사와 함께 영외 ○○아파트로 가서 짐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이류가 많이 나와 아파트 마당에 모아 두었다가 다른 부대원이 소각한 장소에서 종이류를 소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의 소속부대 인사처 정○○경우 대위는 “○○아파트는 영외 숙소로서 부대와 약 3Km 떨어져 있으며, 소속부대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들을 영내 BEQ(독신 숙소)로 재배정하였다. 영외 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해 영내 숙소 배정과 이사 일정을 지시한 것 외에 별도의 주의사항은 지시하지 않았고, 휴일 등 가용시간을 활용하여 이삿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답변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계획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소속부대가 2008. 1. 25. 작성한 ‘○○아파트 3동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계획’에 따르면, 소속부대는 군 숙소인 ○○아파트 3동 재건축 공사를 위해 신청인이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 19명을 영내 관사에 배정하였고, 숙소 이사를 위해 2008. 1. 26.~1. 27. 양일간 소속부대 차량 2대를 배차하였다.

마. 국방부 부령인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 제1조 내지 제2조에 따르면, 군관사란 군복무의 특수성(상시대기, 격오지근무, 잦은 이사 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군간부에게 군복무 기간 중 주거목적으로 군에서 제공되는 시설물로서 아파트, 연립관사, 단독관사 등으로 구분된다.

바. 소속부대는 신청인의 계급이 하사이고, 미혼이어서 영내 BEQ에 거주하여야 하나, 영외 아파트의 공실이 많아 선임인 최○○ 중사와 함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사. 신청인의 상이는 2008. 5. 23. ○○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상이등급 ○○급)으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해 5. 31. 의병전역 하였다.

아. 2009. 1. 8.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상이는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4. 판 단

가. 공무수행 종료 후 공무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이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주하였던 영외 아파트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군 부대 근접지에 하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제공된 군관사로서, 소속부대는 영외 아파트 리

모델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영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대원에게 영내 독신자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사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한 점, 소속부대는 이사일 전까지 숙소의 짐을 미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신청인은 부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이삿짐을 정리하기위해 아파트에서 짐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 종이류 처리를 위해 소각 중 부상을 입은 점, 이에 대해 ○○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사고는 지시에 따라 공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숙소 이사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신청인의 부상이 본인의 중과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사가 공무수행의 연장인 경우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상을 입은 것에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거나 소속 부대가 이를 금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은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각 중 부상을 당한 것에 경미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나, 소속부대가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소각 당시 내용물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중과실 또는 명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이에 대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단순히 퇴근 후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

으로 보이는바, 소속부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군 관사와 특전사 부사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결 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현충원 안장자 영현정보 및 묘비 정정

○○의 모든 병적기록을 관리하는 피신청인1 소속의 기록정보관리단장이 '정해▽ 중위'라는 전사군인에 대한 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에 근거할 때, 당시 '정해▽ 중위'라는 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군번(2202XX)은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확인되었으며, 박성□ 소위는 전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성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가 전사하였음이 확인되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과 군번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민원의 매(화)장 보고서는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매(화)장 보고서는 영현정보의 근거가 되고, 영현정보는 묘소 묘비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피신청인2에게 성명과 군번이 잘못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제공한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영현정보와 묘소 묘비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와 안장된 묘소는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라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8-010088(의결일 : 2009. 9. 28.)

2. 피신청인 ○○참모총장, △△현충원장

3. 결정사항

현충원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안장자 정보 정정

4. 주 문

피신청인1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 기록 중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군번을 2202XX에서 2002XX로 정정하여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망 정해□의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와 영현정보 및 묘소(33-○) 묘비의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삼촌 망 정해□는 육군 중위로, 망 정해▽는 ○○

일병으로 각 6·25 전쟁 중 전사하였다. 그런데 국립△△현충원에는 망 정해□ 중위의 묘소나 위패는 봉안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망 정해▽ 중위의 묘소가 있고, 망 정해▽ 일병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하지만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와 영현정보를 보면 소속,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 성명이 망 정해□ 중위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 점을 볼 때,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와 영현정보는 망 정해□ 중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정보의 기록을 정정해 주고, 묘소 묘비의 성명을 망 정해□ 중위로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망 정해□ 중위의 전·사망 자료와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를 비교한 결과 성명과 군번은 상이하지만, 소속과 사망 일자 및 유가족이 동일하다. 그러나 망 정해▽ 중위의 묘지가 망 정해□ 중위의 묘지 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매(화)장 보고서의 성명과 군번이 상이하여 현재로서는 동일인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2

우리 원 묘소(33-○)에 안장된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가 동일인 인지 여부를 현충원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본부에서 군인의 경우 군번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이 상이하여 망 정해▽의 묘지를 망 정해□ 중

위의 묘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부에서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로 판단되어 우리 원에 통보될 경우 영현정보는 즉시 정정이 가능하고, 묘비 정정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3. 사실관계

가. 서울 강북구 인수동장이 2009. 7. 16. 발행한 정해㊍(망 정해□와 망 정해▽의 형)의 제적 등본에 따르면, 본적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781', 부 '정◇진', 모 '최◇', 제 '정해□', 제 '정해▽'로 기록되어 있고, 망 정해□는 '1925. 12. 26. 출생, 1949. 4. 10. 최태○과 혼인신고, 1950. 11. 27. 일시불상 ○○지구에서 전사, 1961. 2. 1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로 기록되어 있고, 망 정해▽는 '1929. 3. 31. 출생, 1951. 2. 3. 일시 불상 ○○지구에서 전사, 1961. 2. 19. ○○본부 부관감 보고'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에는 군번 '2002XX', 성명 '정해□', 입대일자 '1950. 8. 30.', 병과 '보병', 비고란에 '1950. 11. 27.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1이 작성한 전사자 명부에는 소속 '8사단 21연대', 계급 '중위', 군번 '2002XX', 성명 '정해□', 전사일자 '1950. 11. 27.', 사망장소 '평남 영달', 유족 '최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는 전사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라. 피신청인1이 2009. 7.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일병이 6·25 전쟁 중 전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 확인서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속	계급	군번	사망일자	본적	유가족
정해□	8사	중위	2002◆◆	1950.11.27.	경북 고령 개진 오사	최태○
정해▽	7사	일병	0○49213	1951. 2. 3.		최△

마. 아래와 같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전사자 명부 및 사망확인서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이 일치하나, 군번은 박성□ 소위의 군번이 기록되어 있다.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
중위	2202XX	정해▽	8사	1950.11.27.	평남영달	최태○

바. 국립△△현충원장이 2009. 8.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는 없으나, 두 명의 정해▽가 현충원에 안장 또는 봉안되어 있으며, 각 영현정보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구분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
묘소	8사	중위	2202XX	정해▽	1950.11.27.	평남영달	최태○
위패	7사	이병	△○49213	정해▽	1951. 2. 3.	미기록	최△

1) 묘소에 안장된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는 ○○참모총장이 2009. 7. 27. 발행한 망 정해□의 사망 확인서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 일자가 동일하고 유가족이 최태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군번은 전혀 다른 사람인 박성□ 소위의 군번(2202XX)이 기록되어 있다.

2) 망 정해▽ 중위의 묘비 앞면에는 '○○ 중위 정해▽의

묘'라고, 뒷면에는 '(묘소 번호)1348, 1950. 2. 27. 영달 지구에서(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1이 발행한 사망 확인서와 국립△△현충원의 영현정보에 기록된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9. 8.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병적자료는 아래와 같다.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생년월일	입대일자	비고
2002XX	정해□	8사	중위	1925.12.26.	1950. 8.30.	1950년(사망)
2202XX	박성□	105사	소위	1926. 4. 2.	1953. 7. 1.	1955년(전역)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8.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26. 4. 2.생 박성□ 소위는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생존해 있다고,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박성□ 소위의 제적등본에는 권정○이 처(妻)로 기록되어 있다.

3. 판 단

가. 이 민원은 망 정해▽ 중위 명의로 된 매(화)장 보고서, 영현정보, 묘소(33-○)가 망 정해□ 중위에 관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망 정해▽ 중위의 성명과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지 여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이 상이하여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모든 병적기록을 관리하는 피신청인1 소속의 기록정보관리단장이 '정해▽ 중위'라는 전사군인에 대한 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에 근거할 때, 당시 '정해▽ 중위'라는 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군번(2202XX)은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확인되었으며, 박성□ 소위는 전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성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가 전사하였음이 확인되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과 군번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민원의 매(화)장 보고서는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 및 묘소가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 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매(화)장 보고서는 영현정보의 근거가 되고, 영현정보는 묘소 묘비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피신청인2에게 성명과 군번이 잘못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제공한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영현정보와 묘소 묘비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와 안장된

묘소는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1은 망 정해▽ 중위 명의의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름을 '정해▽'에서 '정해□'로, 군번을 '2202XX'에서 '2002XX'로 정정하여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에 근거하여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와 영현정보 및 묘소(33-○) 묘비의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보고서, 영현정보, 묘소 묘비를 망 정해□ 중위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전 사망자 서면신체검사

신청 외 망인이 2000. 5. 9.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먼저 '공상' 판정을 받았고, 그 공상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 되었는바, 이는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 신체검사를 허용하지 않던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2002. 3. 30. 개정되면서 전·퇴역일로부터의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민원의 경우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인바, 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와 유족이 되려는 자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2000. 5. 9. 망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6-020424(의결일 : 2009. 8. 4.)

2. 피신청인 국가○○처장

3. 결정사항

과거 법령에 따라 신청 외 망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이미 기각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기각 사유가 소실되었고,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과 별개로 유족의 자격으로 새로이 신청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면신체검사가 현행 법령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故 박○○에 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 故 박○○(이하 '망인'이라 함)는 6.25 참전용사로서 당시 전투 중 입은 부상 부위에 대하여 2000년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공상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2000. 11. 13. 사망하였다. 신청인

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최근 망인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이 2000년 신체검사에 불참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이미 서면 신체검사 없이 '기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재신청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다시 신청을 받아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공상등급 판정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국가유공자 전상군경[1]으로 등록되기 위하여 2000. 5. 피신청인에게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신청 이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해당되어 서면 신체검사 없이 '기각' 처리하였다.

다.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은 2002. 3. 30. 개정되어 '전·퇴역일로부터 3년의 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행정 처분은 그 근거법

1)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은 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ⅱ)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다.

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망인은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하지만,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록 신청이 기각된 사람'도 현행 법규상의 서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초등학교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피신청인에게 보낸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망인은 1952. 1.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5사단 소속으로 1953. 7월 무렵 고성지구 전투 중 '좌 고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고 77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54. 8. 31. 명예 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00. 5. 9. 국가보훈처 광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0. 12. 12. 제90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의 '우 요부 좌상, 좌 고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망인은 등록신청 이후인 2000. 11. 13. 백제 의원(전남 함평군 학교면 소재)에서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2001. 2. 20.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 불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1. 3. 16. 망인이 신규 신체검사에서 본인

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사망자'에 대하여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망인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2009. 2. 국가보훈처 광주보훈지청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2001. 3. 16. '기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1991. 12. 31.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신설
  * 전·퇴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1995. 12. 30. 개정: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완화

○ 2002. 3. 30. 전면 개정: 3년의 기간 제한 폐지

○ 2006. 12. 7. 지침 시달: 등록신청 이전 비상이원인 사망 상이자 서면심사대상에 포함

○ 2007. 12. 31. 개정: 2006. 12. 7. 위 지침 시달 내용을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에 반영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유족도 등록신청 가능)

바. 피신청인은 현행 법 시행령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

등급의 판정) 각 호의 적용대상자 및 적용조건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구분	적용대상자	적용조건
1호	•신체검사 신청자	•'사망 전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 신청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 전 사망 시 서면심사
	•추가상이 신청자	•'사망 전 추가상이신청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 전 사망 시 서면심사
2호	•행정심판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3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	•과거 본인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자의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서면심사 * 본인 생존 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자의 그 유족의 등록신청은 기각

사. 피신청인은 망인이 '등록신청 이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자로서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유족에 의한 등록신청은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사망 전 본인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신청 외 망인이 2000. 5. 9.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먼저 '공상' 판정

을 받았고, 그 공상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 되었는바, 이는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 신체 검사를 허용하지 않던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2002. 3. 30. 개정되면서 전·퇴역일로부터의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민원의 경우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인바, 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와 유족이 되려는 자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2000. 5. 9. 망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 사실관계 바. 표-3호 적용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생존 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자의 그 유족의 등록신청은 기각'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본인의 등록신청 이후에 사망하

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적용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과 그 유족이 되려는 자의 신청을 별개로 취급,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에서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망인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은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의 적용 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한 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되려는 자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망인에 대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 간부의 병사에 대한 폭언

20○○. ○. ○. 발생한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의 원인으로 중사 □□의 욕설이 언급되어 있고,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점, 행정보급관의 욕설이 자살미수사고 발생 이후인 20○○. 9. 말부터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같은 해 10. 12.까지 지속되어 온 점, 행정보급관이 행한 폭언 및 욕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10-008622(의결일 : 2009. 10. 26.)

2. 피신청인 육군 제○○사령관

3. 결정사항

병사에 대해 폭언을 행한 간부의 법적 책임

4. 주 문

피신청인은 소속 △△△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육군 징계규정」 별표1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육군 제○○사령부 소속 병사임.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는 20○○. ○. ○.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본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과정에서 이병 A에 대한 간부와 병사의 폭언과 욕설이 문제가 되었음. 그런데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은 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행정보급관 △△△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육군 제○○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이병 A는 20○○. ○. ○. 15:50경 전투식량을 먹다가 적발된 후, 중사 □□에게 ‘씨발, 이뻐해주니까 그런 행동을 하냐?’며 질책을 받자, 동일 16:35 ~ 18:20간 영내 테니스장 부근에서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 나뭇가지에 목매어 자살을 시도하다 줄이 끊어져 넘어져 있다가, 18:20경 수색중인 동료에게 발견”되었다.

나.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는 ⅰ)육군 제○○ 헌병대에서 20○○. 9. 7. 실시한 ‘자살미수사건 조사’, ⅱ)소속부대에서 20○○. 9. 15. 본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징계조사’, ⅲ)상급부대에서 20○○. 9. 18.부터 3일간 실시한 ‘부대 안

전평가'를 위한 조사(이하에서는 '각종 조사'라고 한다.)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09. 10. 15.부터 2일간 신청인 소속부대에 대해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정보급관 △△△은 20○○. 9월 말 분대장을 집합시킨 후 "10. 20.까지 부대 풀을 다 뽑으라."라고 지시한 후, "만일 그때까지 다 뽑지 못하면 각오해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대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10월 초 경 다시 "니들 풀 잘 안 뽑더라. 알았어. 기대해봐."라고 하였다.

2) 행정보급관은 20○○. 9. 24. '각종 조사과정 중 행정보급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병사 B'를 찾아가 "너 왜 A자살미수 사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아. 개새끼야. 앞으로 입조심하고 다녀. 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몸조심하고 각오해."라고 하며, 대화과정 중 "개새끼야"와 "호랑말코 같은 놈"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3) 행정보급관은 20○○. 9. 30. '병사 C가 허락없이 자신의 서랍을 열어 부대 쪽문 열쇠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왜 남의 서랍에 허락없이 손을 대. 눈 안 깔아. 눈알을 뽑아버린다."라며 책상위에 있던 소형라디오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4) 행정보급관은 20○○. 10월 초 '운동 중 다친 병사 D'에게 "너 왜 쩔뚝거려?"라고 한 후 그 병사가 "운동하다가 다쳤다."라고 하자, "야 너 군대에 운동하러 왔어? 하는 일도 없는

새끼가.”라고 하였다.

5) 행정보급관은 20○○. 10. 5. ‘조사과정 중 행정보급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병사 E’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너 왜 A 사건 때 내가 무섭게 말했다고 말했어. 지금도 내가 무섭다고 한 번 더 찔러봐.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데 칼을 두 번이나 들이대. 이 새끼야. 앞으로 입조심하고 몸조심해.”라고 하였다.

6) 행정보급관은 20○○. 10. 12. 휴가신고를 하러 온 병사 F에게 “야, 없는 사실을 허위유포하면 무슨 죄가 되는 줄 알아? 무고죄야. 너 나가서 입조심해라.”라고 하였다.

7) 행정보급관은 평상시 병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 중 “개새끼. 씨발.”, “가정교육 그따위로 밖에 못 배웠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8) 행보급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 중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음은 인정하되, 그 원인이 병사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급양대장 및 다른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3. 판 단

가.「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 제1항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

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붙임1 '징계사유 및 처벌기준'은 간부의 언어폭력을 복종의무위반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보급관 △△△이 '병사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언이나 욕설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ⅰ)20○○. ○. ○. 발생한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의 원인으로 중사 □□의 욕설이 언급되어 있고,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점, ⅱ)행정보급관의 욕설이 자살미수사고 발생 이후인 20○○. 9. 말부터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같은 해 10. 12.까지 지속되어 온 점 및 ⅲ)행정보급관이 행한 폭언 및 욕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폭언 및 욕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용허가 등 규정준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한편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

①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125 판결 등), ②이러한 재량행위의 한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신청인들은, (주)○○기획이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간판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에도,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거나 또는 않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들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부작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주)○○기획은 처음부터 이 민원 간판을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 없이 오로지 광고대행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이 민원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이 사건 간판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라는 점, ④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들과 같이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러한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규정들은 형해화(形骸化)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그 부작위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3-072240(의결일 : 2009. 3. 27.)

2. 피신청인 육군 제○군단장, 육군 제○군단장

3. 결정사항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1, 2는 ○○방벽, 의정부 ○○동 고가낙석의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하고, 신설되거나 재설치되는 군사시설 가림간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소(○○방벽, 의정부 ○○동 고가낙석)의 군사시설 가림간판을 철거하고 재설치 해주었으나, 이를 (주)○○기획이 자기명의로 피신청인들에게 기부채납한 다음 피신청인들로부터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사용·수익 계약연장을 계속 해오다가 2008. 9. 30.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신청인은 가림간판 설치 및 관리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영업상 큰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부재산인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할 때 관리청(피신청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기획이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사용·수익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신청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이 (주)○○기획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하고, ○○방벽, 의정부 ○○동 고가 낙석 가림간판을 포함해 신설되거나 재설치 되는 군사시설 가림간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사용허가를 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육군 제1군단장)

(주)○○기획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청의 승인 없이 신청인에게 사용·수익을 하였지만,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은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취소나 철회여부는 관리청 재량에 있으므로 계약의 취소 또는 철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2(육군 제6군단장)

(주)○○기획이 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유상 대여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철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철회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철회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철회는 불가하다.

다. 관계행정기관(국방부장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관리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조치는 타당하다. 그리고 제작업체의 선정은 국방부훈령 제539호(1996. 6. 21.)에 따라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배경 및 경과

1) 군사시설 가림간판(이하 '가림간판'이라 한다)의 설치 배경은 1·21 사태 이후 특정경비지역 경비강화의 일환으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 지시로 설치 운용되다가 1985년 남북 적십자회담,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준비 과정에서 위장 및 차폐가 요구되는 통일로 주변의 군사시설, 서울시내 검문소, 방공포진지, 부대 주둔시설, 고가낙석 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국방부는 1989. 6. 「군사시설 위장 광고간판 설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규정에는 제작업체 선정 대상을 국가 공익기관 및 단체로 제한하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주었다.

2) 1996. 2.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가림간판 운용의 제도상 문제점(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료

징수 등)이 지적되어 감사원이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1996. 6. 21.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제539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규정에는 제작업체 선정은 수의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주지 못하게 하였고, 훈령 제정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6. 6. 21. 훈령제정 이후에 설치된 17개소의 가림간판의 제작업체도 경쟁을 통해 선정되지 않고 여전히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3) 최근에 개정된 「군사시설 가림간판 설치 및 관리 훈령」(2009. 8. 4. 국방부훈령 제1093호)(이하 '이 민원 훈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림간판은 군사시설(방벽, 고가낙석, 방공포진지, 검문소, 경계초소 등) 중 자연적인 차폐가 불가하여 외부로부터 군사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임을 알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판으로서, 그 설치 절차는 관리부대가 국방부장관에게 가림간판 설치 신청을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관리부대가 경쟁을 통하여 선정한 제작업체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가림간판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4) 제작업체가 설치한 가림간판의 기부채납은 규정된바 없으나 관례적으로 대부분 관리부대에 기부채납 되고 있으며, 기부채납 된 가림간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부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이의 사용허가는 관리부대가 제작업체에게 기부채납을 이유로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5)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기획은 1987년 10월 국군○○사령부 예비역 단체인 '○○회'(공익단체)의 기금조성 및 직업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근거로 관리부대로부터 대부분의 가림간판을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하였으나, 지금은 그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활동은 설립 이래 주로 군부대로부터 수의의 방법으로 가림간판 사용허가(가림간판 전체의 약 50%)를 받아 관리부대의 사전 승인 없이 위법하게 이를 다시 다른 업체(일명 대행업체)에 사용·수익을 하고 중간에서 사용료만 챙기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설립 당시부터 자본이 부족하여 직접 가림간판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업방식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만 받은 후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간판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된 가림간판은 (주)○○기획 명의로 군부대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기부채납을 이유로 군부대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허가를 갱신해 왔고, 이를 다시 대행업체에 사용·수익하게 하여 대행업체에서는 광고주를 유치하여 간판을 관리(보수 등 일체의 행위)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주)○○기획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기획은 대행업체가 자본을 투자하여 가림간판을 설치하고 광고주까지 유치하여 가림간판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 계약연장을 해주지 아니하고, 또 다른 대행업체에게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애초 가림간판을 설치한 대행업체가 투자비 회수

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등 (주)○○기획의 횡포가 심하다는 주장이다.

6)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국유재산과)에 (주)○○기획이 국군 ○○사령부와 관련된 업체인지를 문의한 결과, 국방부는 “확인 불가함”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회’(현 ○○○○연합)에 (주)○○기획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최초 설립 목적대로 기금 조성 및 직업보도에 현재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연합은 (주)○○기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7) 국방부(보안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승인한 가림간판은 총 69개소이며, 모두 제작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전체를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그 중 36개소(전체의 약 52%)를 피신청인 등 관리부대가 (주)○○기획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허가를 하였다.

8)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획은 피신청인들로부터 5개소의 가림간판에 대해 기부채납을 이유로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고,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다시 신청인에게 사용·수익을 한 다음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해오다가 2008. 9. 30.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주)○○기획의 주장은 신청인에게 광고권을 대여(광고대행)한 것일 뿐 결코 사용·수익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이 관리하고 있는 ○○방벽(○○문) 가림간판

1) 피신청인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벽(○○문) 가림간판(이하 '○○문 간판'이라 한다)은 제작업체인 (주)○○기획이 1988. 9. 19. 설치하여 피신청인1에게 기부 채납하였고, 피신청인1은 기부채납을 이유로 (주)○○기획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주)○○기획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수익을 해왔으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1은 2009. 3. 31. (주)○○기획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획의 내부문서인 '백간판 영업방안 검토보고'에는 백간판 현황에 ○○문 간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방안에 광고효과 미흡 및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백간판에 대해 일괄 대행함으로써 수익 증대, 광고 간판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제반 경비에 대해 대행사 부담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통일로(○○문, ○○문) 광고간판 노후 및 사고 위험성 내재, 보수공사비 약 2,000만 원 소요 예상, ○○문의 경우 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전면 보수 요망상태, 통일로 광고간판 보수공사비(약 2,000만 원) 대행사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6. 5.경 신청인이 ○○문 간판을 완전히 철거한 후 다시 설치하고 광고주(○○ 고추장)를 유치하여 광고대행(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수익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면서 ○○기업이 발행한 견적서 2매(공사명: ○○문 철거·제작·시공, 공사명: ○○문 실사 및 화공)와 무통장 입금 전표 사본

을 제출하였다.

3) 신청인과 (주)○○기획 간 2006. 4. 30. 및 2007. 7.에 체결한 '통일로 낙석 군사시설 가림간판 광고대행 계약서(○○문)'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각 1년(2006. 5. 1. ~ 2007. 4. 30., 2007. 10. 1. ~ 2008. 9. 30.), 광고대행료는 매월 50만 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와 광고물 허가 수수료 규정에 의한 법정 수수료는 (주)○○기획이 납부하고, 보수공사 및 기타 광고간판 관리상 직접 소요되는 금액 일체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 해 보면, ○○문 간판은 1988. 9. 19. (주)○○기획이 설치하여 피신청인1에게 기부채납하고 계속 사용허가 갱신으로 2009. 3.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간판이 노후 되어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광고대행을 조건으로 재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6. 5.경 간판을 재설치한 후 (주)○○기획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 고추장, ○○건설)를 유치하여 2008. 9. 30.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주)○○기획이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문 간판은 백간판 상태로 있다.

다. 피신청인2가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동 고가낙석 가림간판

1) 피신청인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동 고가낙석 가림간판(이하 '고가낙석 간판'이라 한다)은 제작업체인 (주)○○기획이 1991. 11. 2. 설치하여 피신청인2에게 기부 채

납하였고, 피신청인2는 기부채납을 이유로 (주)○○기획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주)○○기획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수익을 해왔으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2는 2009. 9. 30. (주)○○기획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가낙석 가림간판은 1991. 11. 2. (주)○○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주)○○기획 명의로 피신청인2에게 기부채납 한 다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2001년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림간판이 철거되었으며, 도로확장 후 (주)○○기획이 2001. 1.경 재설치(자본이 없어 임직원 2명에게 각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설치)하여 광고대행사를 두지 않고 (주)○○기획이 직접 광고주(○○소주)의 대행사인 (주)○○○○애드컴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02. 11. 28. (주)○○기획이 가림간판 관리권을 신청인에게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간판설치비 4,000만 원과 이자를 김○○ 및 서○○에게 각 상환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때부터 ○○소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주)○○기획에 사용료를 납부해 오다가 ○○소주의 광고계약이 종료되자 2008. 4. 17. (주)○○건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2008. 9. 30.부로 광고 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한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획이 2002. 11. 28. (주)○○○○애드컴 대표이사에게 보낸 '광고물 관리

업체 변경(통보)' 공문에는 "그동안 당사에서 관리하여 오던 의정부시 ○○동 방어벽 광고물 관리업체가 2002년 10월부터 당사 협력업체인 ○○파워(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 드리오니 광고료 지불 등 관련 업무를 ○○파워(주)와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고,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귀사와 대행계약 체결 중인 광고간판에 대해 대행계약 만료와 동시 종료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광고 대행계약 종료일자: 2008년 9월 30일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김○○ 및 서○○이 2008. 11. 각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2008년 1월 김○○로부터 2,000만 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김○○과 서○○에게 상환한 금액의 일자별 내역서와 함께 인터넷 뱅킹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신청인과 (주)○○종합건설 간 2008. 4. 17. 체결한 '군사시설 위장광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광고 개시일로부터 2년(2010. 5. 30.)이라고 기록 되어있다.

라. 신청인의 민원제기(피신청인들, 공군 제○○전투비행단장, 우리 위원회) 경과

1) 신청인은 간판설치, 광고주 유치, 간판관리 등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상 적자를 본 상태에서 (주)○○기획이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자 피신청인들에게 (주)○○기획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주)○○기획이 신청인에게 사용·수익(광고대행)을 할 때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이 (주)○○기획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실제로 간판을 설치 관리했던 신청인에게 사용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신청인들에게 3차례(2009. 2. 10., 2009. 2. 23. 등)에 걸쳐 제기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1은 2009. 3. 16. 신청인에게 “○○문(○○방벽) 광고권 전환 요청 및 가림간판 경쟁 입찰 등에 관한 청원 내용은 가림간판 광고 사용수익권자인 (주)○○기획과 (주)○○파워의 광고대행 계약 이행간 발생한 양개회사 간의 문제이므로 우리부대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 법규에 의거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피신청인2는 2009. 2. 28. 신청인에게 “(주)○○기획과 신청인 간의 간판사용, 수익권 대여(임대) 계약은 국가기관(행정청)이 개입한 것이 아닌 사인 간의 법률행위로 행정청으로서는 양자 사이의 계약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으며, 양자 사이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상호 간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각 회신하였다.

3) 한편 신청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위 민원과 동일한 사유로 (주)○○기획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2007. 1. 12. 제기하였는데,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피신청인들과는 달리 “(주)○○파워의 민원제기 자료 및 (주)○○기획의 소명자료를 받고 서면 검토한 결과 (주)○○파워가 간판도장 및 조정공사 등 가림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연간 사용료 7,200만원을 ○○기획에 지불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시설33491-631호(04. 4. 10)로 발부한 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해 취소 사유에 해당됨으로 양측에 소명 및 변론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국유

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이라고 2007. 2. 20. 청문계획을 회신하였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주)○○기획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3. 판 단

가. 이 민원에 있어서는 (주)○○기획이 피신청인들로부터 ○○문 간판 및 고가낙석 간판(이하 ‘이 민원 간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간판의 사용허가(이하 ‘이 민원 사용허가’라 한다)를 취소 또는 철회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한편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 이 민원 간판은 피신청인들이 (주)○○기획으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간판의 관리주체로서 관리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용허가를 받은 (주)○○기획이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간판

을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과 이를 이유로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가 관리청의 재량행위임을 근거로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그러나 ①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 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125 판결 등), ②이러한 재량행위의 한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신청인들은, (주)○○기획이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간판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에도,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거나 또는 않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들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부작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주)○○기획은 처음부터 이 민원 간판을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 없이 오로지 광고대행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이 민원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이 사건 간판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피신청인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라는 점, ④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들과 같이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러한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규정들은 형해화(形骸化)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그 부작위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 민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현재 이 민원 사용허가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은 상태이나, 피신청인들의 태도로 보아 재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신설되거나 재설치되는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등 군사시설 가림간판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원추각막증 징병신체검사 이의

피신청인이 각막지형도검사결과(54.5)만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최대교정시력이 0.02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배척하고, 법령 또는 예규상의 아무런 기준없이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2-027914(의결일 : 2009. 6. 1.)

2. 피신청인 ○○청장

3. 결정사항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 시 신체검사를 '각막지형도 검사'에 의해 판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결과를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호) 제291호에 의거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병역법」 제12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이 유

1. 신청원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에 의하면,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 시 '안경교정시력'으로 판단하되,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인 경우에는 '5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사용진단서에 좌안 최대교정시력 '0.0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각막지형도 검사'에 의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안경교정시력'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원추각막에 대한 신체등위는 시력장애를 준용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시력장애인 경우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하되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첨부되어야 하고, 각막지형도검사는 시력장애 진단에 객관적인 자료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3. 6. 굴절이상(난시)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2008. 8. 21.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08. 9. 18.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장애(원추각막) 4급을 판정받았다.

나. 신청인이 발급받은 2008. 7. 24. 서울대학교병원 병사용진단서에는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2'이나, 피신청인은 안경교정시력을 측정치 않고 다만, 각막지형도 검사상 각막굴절력이 54.5라 하여 신체등위 4급을 판정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병역법」제12조 제1항에는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별표 2(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93호(원추각막)에는 "주 : 제287호를 준용하여 판정하되, 안경교정

시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87호(시력장애)에는 “주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하고, 약시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급,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3)「징병검사 예규」(병무청 예규 제2-21호, 2008. 4. 16) 제52조 제3항은 “중앙 신검소 검사 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전문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신체 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에 관하여

2008. 7.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병사용 진단서에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2’로 측정되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원추각막의 경우 안경교정시력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병사용 진단서의 최대교정시력 ‘0.02’를 적용할 경우 신체등위 5급에 해당 하나, 피신청인은 안경교정시력이 아닌 각막지형도검사 결과 각막굴절력 54.5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4급을 판정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원추각막에 대한 등위판정 시 안경교정시력이나 최대교정시력만으로 판정할 경우 시력이 주관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각막지형도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며, 원추각막의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원추각막 신검대상자에게 각막지형도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전문의사(전화로 확인)에 의하면, 원추각막의 경우 안경교정시력과 최대교정시력으로는 객관적인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논문 등) 객관적인 검사치인 각막지형도검사와 세극등검사를 통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한다.

판단컨대, 위 검사규칙 별표2 평가기준 제285호에 의하면, 최대교정시력을 판정함에 있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하고 또한 각막지형도검사 결과가 이러한 객관적 소견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대교정시력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각막지형도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대교정시력이고 각막지형도 검사결과는 최대교정시력에 관한 진단서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막지형도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법령은 물론 예규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각막지형도검사결과(54.5)만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최대교정시력이 0.02라고 하는 위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배척하고, 법령 또는 예규상의 아무런 기준없이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결정을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 예규」제52조 제3항에 따라 전문 지정병원에 신청인 좌안 안과교정시력에 대한 정밀검

사를 의뢰하여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좌안에 대해 안경교정시력으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침수예방대책마련

민원하천 중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지목이 '구거'이고 국유지인 공유수면이며, 항만구역 또는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군부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향후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구간의 구거 폭 확장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03674(의결일 : 2009. 10. 21.)

2. 피신청인 ○○사령관, ○○시장

3. 결정사항

군부대를 통과하는 '구거' 구간의 관할 책임이 군부대에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들은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지역주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남 진해시 태백동 108 소재 민원하천 하류 구거(도랑) 폭을 확장하는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소재 주택 세입자로서 2009. 7. 16. 집중호우로 인접 해군부대 담장이 무너지면서 ○○하천(이하 '민원하천')이 넘쳐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침수 피해를 보았으니 향후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볼 때 호우는 재난에 해당하며 재난에 관한 각종 관리 및 활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부대가 호우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하천은「소하천법」에 의해 관리되는 하천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군부대를 관통하는 구간 배수로의 정비는 군부대에 있으므로 군부대가 적극적인 호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 7. 16.

○○지역 집중호우로 ○○군부대 경계 담장이 무너지면서 민원하천이 넘쳐 인접한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상청에 조회한 2009. 7. 16. ○○지역 강우량은 189.5 밀리였고,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정보단의 같은 날 ○○지역 강우량은 211 밀리(○○시는 30년 내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주장)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3년 ○○시가 민원하천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산업도로를 건설하면서 일부 집수로가 민원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산업도로가 건설된 부분부터 민원하천 하류 방향으로 군부대 경계까지만 하천의 폭을 넓히는 정비를 하였으나 군부대를 관통하는 좁은 배수로 구간은 정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 시 과거보다 불어난 하천의 물과 휩쓸린 토사와 바위들이 군부대의 좁고 꺾인 배수로 구간을 통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배수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물이 넘쳐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 수압으로 군부대 경계 담장 3 곳이 무너지면서 신청인 거주 가옥 등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2009. 7. 16. 피신청인 2는 자연재해로 판단하여 침수 피해 지역만 조사하였고 범람한 민원하천과 그 하류 배수로의 문제점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군부대와의 관할권 다툼뿐만 아니라 ○○시 내부에서도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재난관리과)와 구거(공유수면)를 담당하는 부서(항만수산과)가 달라 제대로 업무소관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건의 군부대 토지는 3년 전부터 군용지에서 해제되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집중호우 때 군부대 내부 배수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풀과 나무 등으로 일부 구간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바.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과 관련된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토지는 ‘지번: 진해시 태백동 108번지, 지목: 구거, 소유주: 국토해양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당일 211 밀리라는 기록적인 많은 비가 내린 점과 다른 인근 지역도 침수 피해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 2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재난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가 산업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원하천 상류 지점만 하천의 폭을 넓히고 군부대를 통과하는 하류 구거는 정비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군부대 내 일부 배수로가 풀과 나뭇가지로 막혀 있는 등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1과 2가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통과하는 ‘구거’ 구간의 관할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은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 한다.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는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지목이 '구거'이고 국유지인 공유수면이며, 항만구역 또는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피신청인 2에 있으나 피신청인 1도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구간의 구거 폭 확장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원하천의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동의

신청인은 관계법규의 미비로 인해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군사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며, 피신청인도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을 거부한 것 또한 위법이 아니다. 단, 장기간 임야가 훼손되고, 공사가 진행 중 중지되어 환경보호 및 산사태의 발생 또는 공사장 토사의 유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은 건축규모를 최소화 하고, 유사시 화재발생 등 소화 및 감시 장비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조건부 동의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7-025774(의결일 : 2009. 7. 9.)

2. 피신청인 1.공군 제○여단장, 2.○○시장

3. 결정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의 군사협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고, 신청인은 신고규모의 건물 약 20여개 동을 건축하고자 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을 접수하여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의 임야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군부대가 공사 중지 요구 및 보호구역 출입을 거부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7호[「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과 군사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가능]에 따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건축지역이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이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출입을 거부하고, 피신청인 2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피신청인 2로부터 공사 중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1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의 군사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

며, 신고대상 건축허가는 군사 활동에 영향이 없는 소규모 건축행위를 보장하는 취지임에도 신청인은 제한된 규모(200㎡ 미만)의 건물 20동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허가 받은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승인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 2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에서 신고대상 건축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군부대와 군사협의를 할 필요가 없기에 건축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통제보호구역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 중지처분 하였음.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7. 9.: 고충민원 접수
○ 2009. 7. 20.: 고충민원 보완 요구
○ 2009. 7. 29.: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시장)
○ 2009. 8. 27.: 현지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09. 10.19.: 조정회의 개최 계획 통보
○ 2009. 12.11.: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행정행위는 위법함이 없고, 단지 법률상의 미비사항에 따른 민원 발생임을 확인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의 수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

기 위해 건축규모의 축소, 보호구역에 대한 화재방지 등 부대보호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였으며, 관계기관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신청인은 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사태·산불 방지대책, 출입통제 대책 등 피신청인 1이 요구하는 수습대책에 대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 창고시설 완공이전에 종료하며, ② 기존 건축신고 사항 중 준 보존임지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창고시설(무인 물류창고)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고, ③ 향후 위 창고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 1은 ①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신청인의 수습대책이 포함된 군사협의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제한다. ② 또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의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 없이 1주 이상 공사를 지연할 경우 경고를, 2주 이상 공사를 지연할 경우 피신청인 2에게 기존 군사협의의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만약 신청인이 수습대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신청인 2에게 수습대책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2는 ① 신청인의 수습대책이 포함된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군사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처분을 해제한다. ② 또한 건축물의 준공허가는 신청인의 산지 적지복구 공사에 대한 안전성 영향평가 및 신청인의 수습대책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피신청인 1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며, ③ 향후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내 건축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관할부대와 군사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만약 신청인이 수습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수습대책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이행한다.

라. 본 조정은 신청인에 대한 군사협의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의 효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향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요구

비행안전구역 관련 법령 개정('10. 3. 31.까지)하고, 속초비행장 계기장비(VOR/DME)예산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며, 관계기관과 속초비행장 계기장비 설치 및 비용지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역주민 건축협의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2-001396(의결일 : 2009. 11. 18.)

2. 피신청인 ○○부

3. 결정사항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여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건축행위만 비행안전고도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속초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여 건설되고 있음에도 주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고도

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현행법령상 속초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나, 속초비행장 활주로의 등급을 현재의 D급에서 E급으로 완화함으로써 국책사업 및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활주로 등급조정에 따른 비행안전 대책(활주로 덧포장, 활주로 등화시설 설치, 계기장비 설치)이 반드시 우선 조치되어야 한다.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8. 12. 1. : 고충민원접수(김○○호 외 297명)

○ 2009. 4. 9. ~ 4. 10. : 제1차 실지조사

○ 2009. 10. 7.(수) ~ 8.(목) : 2009. 10. 7.(수) ~ 8.(목)

○ 2009. 10. 29.(수) : 관계기관 업무회의(8차례)

○ 2009. 11. 18 :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1, 2, 3, 관계기관 1, 2, 3, 4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구역 완화(D급 → E급)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 및 관계기관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요청

신청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는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10-033124(의결일 : 2009. 10. 14.)

2. 피신청인 ○○○○지방병무청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아버지와 10년간 연락이 안되고 있고, 어머니는 채무

관계로 교도소 복역 후 경제력이 없는 상태여서 다니던 방위산업체를 그만두고 기숙사가 지원되는 업체로 전직을 하려 하였으나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 전직을 못하던 중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노숙을 하였고, 2009. ○. ○○.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바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사실관계

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보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0세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이하의

남녀와 60세이상의 남자 및 50세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남자	20세부터 54세까지	3인이상
여자	20세부터 44세까지	2인이상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0조 제3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부양비(부양의무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처리가 가능한데, 신청인의 병역감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족사항을 보면 부(○○○)는 만48세로 부양의무자, 모(○○○)는 만46세로 자활가능자, 누나(○○○)는 만26세로 부양의무자, 본인(○○○)은 피부양자(공익근무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양비가 2:1로서 병역감면신청을 할 수 부양비(2:5)에 미달되어 병역감면처리 비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검토를 요청하자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족의 구성형태, 성장과정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1994. ○. ○. 이혼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가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병역감면원을 출원하면 가족의 재산 및 수입사항 등을 유관기관에 조회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신청인에게 병역감면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함을 직접 안내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이 구체적인 설명에 감사하다며, 생계곤란 심의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3. 처리결과 : 합의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합의안(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으므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시정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해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 발부 및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대하여 재교육 실시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4-047033(의결일 : 2009. 6. 3.)
2. **피신청인** ○○○○○○수도권동부지사장
3. **결정사항**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 시정을 위한 교육 실시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2009. 4. 17. 오후 4시경 왕십리역 지하 중앙선 개찰구에서, 나이 드신 분이 개찰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5호선을 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보았으나 공익근무요원은 듣는 척 마는 척 행동을 하였으며, 자리에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귀에는 귀고리를 착용했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주고받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볼 수 없으니 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

2. 사실관계

○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자, 민원발생일 당시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해당 공익요원도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뉘우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을 발부(5일 복무연장)하였고,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대하여 재교육 실시

○ 교육은 당무역장이 일대일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중 정중한 태도와 자세, 고객응대의 마음가짐, 철도인의 고객응대 매너, 철도인의 기본예절, 고객을 위한 근무자세를 교육하였음

3. 처리결과 : 합의해결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 전입후 2주간 전입자 교육과 매월 1회 공익요원 월례교육(소집교육) 및 매일 근무투입 전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익요원에게도 월례교육시 고객응대 방법에 대하여 교육시킬 계획임을 통보해 옴

군병원 진단서 및 발병경위 확인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없으나, 향후 관련자 진술 및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차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9-024775(의결일 : 2009. 11. 3.)
2. **피신청인** ○○참모총장
3. **결정사항**
   국가유공자 등록시 필요서류 및 입증방법 안내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0. 2. 1. 군입대하여 ○○본부 사령실 수송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 좌골신경통이 발병되어 ○○지구병원에서 진료 후 1992. 6. 23. ~ 7. 5. 병가를 받아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 이에 상기 발병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군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되었는바, 병가 요청 당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를 찾아주고, 당시 좌골신경통으로 병가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생략

3. 사실관계

가.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이 2009. 9. 1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 증명서와 현역복무기록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병적증명서에는 성명 '고○○', 군번 '3407831', 계급 '병장', 입영 일자 '1990. 2. 1.', 전역 일자 '1992. 8. 31.', 전역 구분(사유) '만기'로 기록되어 있다.

2) 현역복무기록표 군 운전경력 란에는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 소속으로 1990. 4. 21. ~ 1992. 7. 31. 새단차종'을 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참모총장이 2009. 10. 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신청인의 병상일지 및 병원기록, 진단서 보유여부 및 미보유 사유에 대하여, '환자처리업무편람(1994. 7. 1. 개정)에 의하면 외래진료 기록지는 5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으로 명

시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관리 되었으므로 현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신청인이 청원휴가 신청 당시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단서는 휴가를 보내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보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이 당시 13일간의 병가를 받은 기록에 대하여, '역사기록관리단과 협조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데, 당시 현역군인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기인데, 군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유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한 간부를 대상으로 사유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에서 복무한 수송중대장(소령 김○○), 수송반장(원사 심○○), 수송감독관(준위 강○○),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원사 김○○, 조○○) 등에게 당시 상황을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당시 수송중대장(소령 김○○)은 '신청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 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2) 수송감독관(준위 강○○)도 '신청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시 수송대대 부대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니, 수송반장(원사 심○○) 등을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3)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원사 김○○, 조○○)은 '신청인이 너무나 잘 기억난다. 신청인과는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다. 당시 군병원 진료 사실 등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4. 처리결과

가. 신청인이 '병가 요청 당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 또는 당시 좌골신경통으로 병가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래진료 기록지는 「환자처리업무편람」(1994. 7. 1. 개정)에 따라 5년 후 파기된 것으로 보이며,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병가를 보내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한 후,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기하여 현재는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군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병가 여부 등의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당시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에서 신청인과 함께 복무한 상관들과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 등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향후 기억나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인우보증과 '신청인

의 현재 질환 상태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순직자 추서 진급 요구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9-005051(의결일 : 2009. 11. 2.)

2. 피신청인 ○○참모총장

3. 결정사항

대민행사 중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서 진급 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1981. 5. 5. 대민행사 중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조사한 다음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망 장○○과 망 중위 안△△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군인사법시행규칙」제39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형인 망 대위 장○○은 1977년 ○군 ROTC 15기로

임관하여 ○군 항공대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1981. 4. 29. 결혼식을 마치고 휴가기간에 부대에 복귀하여 1981. 5. 5. 어린이날 축하비행을 하던 중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 형은 1981. 7. 1.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형에 대해 추서진급을 시키지 않아 묘비에 계급이 대위로 되어 있는바, 당시 항공기 사고를 재조사하여 형에 대해 1계급 추서진급을 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망 대위 장○○의 사고보고 및 항공기 사고기술보고서 상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만일 추서 진급될 만한 사유가 발견될 시 추서진급 심의가 가능하다.

나. 당시 사고 및 추서심의 관련 자료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문의한 결과, 중요사건보고(○군: 181-1호)에는 '각각 1계급 추서상신 및 순직상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한다.

다. 1981년 사고당시 인사참모를 역임한 예비역 대령 김☆☆은 당시 사고 관련 추서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국가에 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추서진급을 건의하도록 되어있는바, ○군본부 심의 시 반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실관계

가. 1981. 5. 5. 항공기 사고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신청인의

형 망 대위 장○○과 망 중위 안△△은 각각 1981. 7. 1. 및 1981. 6. 8.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추서진급된 사실은 없어 망 대위 장○○의 묘비(29-3016)에는 대위로, 亡 중위 안△△(묘비번호 : 29-3017, 군번 : 80-01286)은 중위로 기록되어 있다.

나. 망 대위 장○○ 관련 항공기 사고 기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육군 제8보병사단 항공대 소속 대위 장○○(군번 : 77-02452)은 1954. 10. 15.생(만 27세)으로 총 비행시간이 548시간이다. 사고일자는 1981. 5. 5., 항공기 기종은 O-1A, 사고 장소는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3리(CT538089), 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약간의 바람'으로 되어 있다.

2) 현장 목격자 대위 김□□는 "사고자가 1981. 5. 5. 사단 연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날 기념행사의 한 종목인 축하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측장교 중위 안△△을 탑승시키고, 꽃가루와 연막탄 8발을 장착한 후 09:20 비행장(R-231)을 이륙했다. (행사장 통과시간은 09:30~10:00 사이) 그 후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소재 산정호수(CT530145)상공에서 대기하다가 행사장 부근 상공으로 접근 중 지상통제소에서 시간이 맞지 않으니 이탈하여 잠시 대기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고 즉시 급상승 좌선회 조작 중 때마침 불어온 돌풍(12-13KTS)에 휘말려 양력을 잃고 실속[2] 추락한 사고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목격자 김○○(만25세)은 "상기명 본인은 1981. 5. 5. 어린이날 행사 참관 차 연병장에 대기 중 항공기(O-1A) 한 대

2) 비행기의 날개 표면을 흐르는 기류의 흐름이 날개 윗면으로부터 박리되어, 그 결과 양력(揚力)이 감소되고 항력(抗力)이 증가하여 비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

가 산정호수 쪽에서 남쪽으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급상승 좌선회 도중 순간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하는 듯 싶더니 기수부분부터 내려박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고 조사관인 안전과장 대령 이○○는 “어린이날 축하비행 시 T.O.T(Time Of Target)보다 3분 빠르니 좌선회하여 재접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좌선회 상승 중 경사 및 영각의 한계 초과로 인하여 익단 실속되어 항공기는 대파되고 조종사와 탑승자는 순직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4) 최종 사고 원인은 지상통제요령 미숙, 조종사 상황판단 미숙, 조종사 자만심 만용(조종 실수)으로 되어 있다.

다. ○군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실 준위 신○○은 2009. 10. 6. 우리 위원회와 통화 시 “사고 당시 망 대위 장○○과 같이 근무한 동료에게 들은 내용으로 망 대위 장○○은 1981. 4. 29. 결혼식을 한 후 1981. 5. 6.까지 휴가였으나, 1981. 5. 5. 행사와 관련하여 비행을 하기 위해 복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종사 선발 요인 관련

가) 항공기사고조사 기술보고서에는 사고 조종사가 신혼여행에서 복귀 즉시 행사 비행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 신혼여행에서 복귀하였다면,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한 후 정상적인 비행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망 대위 장○○은 1981. 4. 29. 결혼을 하고 사고 당일을 제외한다면 조종사는 4일의 시간 동

안 신혼여행과 친지들에 대한 인사 등을 마쳤으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나) 충분한 휴식을 못한 상태에서 亡 대위 장명환은 축하비행 조종사로 선발되었고 사고 당일 비행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 집중력, 순발력, 적절한 판단력 등 조종사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군 문화 요인

가) 조종사는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있으나 행사의 중요도, 부대의 여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기꺼이 행사 조종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조종사가 축하비행을 진행하는 도중 사단장의 연설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통제장교인 소령 장○○(항공대장, 36)으로부터 행사장 진입직전에 "진입 4분 전, 좌선회"라는 지시를 듣고 안전여부를 판단[3]할 겨를이 없이 반사적으로 순응하였던 원인은 사단 주관의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상급자 또는 지휘관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훈련된 군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고 장소의 지리적 환경 요인

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산정호수로부터 낭유고개까지 약 4.6 km, 낭유고개로부터 사단 본부까지 약 1.8 km 이므로 산정호수로부터 사단본부까지는 약 6.4 km 이다.

3) 선회 공간은 가능한가?

[그림 1] 사고 당일 항로 및 사고 장소 주변 지형

나) 산정호수와 행사장소인 사단본부는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 행사장소와 산정호수 사이에는 군사작전도로가 낭유고개(해발 205 m)를 경유하여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낭유고개 서측편에는 관음산(해발 704 m), 동측편에 사향산(해발 641 m)이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장소의 해발고도는 약 141 m 이고, 항공기 추락장소는 약 175 m이다.

다) 행사장 상공을 연막과 색종이를 뿌리면서 지나가는 고도가 통상 지상으로부터 약 50~100 m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종사는 낭유고개를 통과 후 서서히 고도를 강하하면서 행사

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라) 조종사는 행사장의 직 상공을 통과하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관음산과 사향산 계곡 정 중앙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사장 진입 수백 m 전방[4]에서 "진입 4분전!! 좌선회!!"를 통보받은 조종사는 O-1A기의 선회반경 범위내에 관음산과 사향산 능선의 고도가 300 m 이상이므로 선회와 동시에 고도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마) 조종사는 행사장을 통과하기 이전에 선회를 완료하고, 지상과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는 속도 감소와 선회 경사각으로 인하여 급격히 양력을 상실하고 실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 이때 조종사는 우측으로 선회를 하거나 좌측으로 선회를 하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종사가 넓은 장소에서 선회할 것을 결심하지 못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 계곡의 끝부분에 행사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넓은 장소에서 선회를 시도 할 경우 행사장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점,
- 행사장을 통과할 경우 임석상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축하비행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므로 행사장 상공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

4) 조종사가 계곡의 어느 한쪽으로 접근하여 선회 공간을 확보한 후 선회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 군 문화에 익숙한 조종사는 지상통제장교이었던 자신의 직속상관(항공대장)이 '진입 4분전 및 좌선회'를 지시함에 따라 행사장 진입 직전에서 안전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반사적으로 좌선회를 실시하였을 가능성

4) 바람에 따른 항공기 실속 가능성

가) 사고 항공기는 우측풍 상태에서 배풍상태가 되도록 선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돌풍이 갑자기 정풍상태에서 배풍상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5], 계기속도가 순간적으로 큰 폭 감소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O-1A 항공기가 급경사 선회를 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87노트에서 77노트 또는 75노트로 감속되었다고 해서 실속에 진입하지는 않는다.

나) 다만 우측정풍 상태에서 배풍 상태로 선회비행을 할 경우 항공기는 정상적인 선회율[6]보다 큰 선회반경[7]을 그리며 바람을 따라 사향산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고 조종사는 산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욱 기수를 들어 상승조작을 하였을 것이다. 그럴 경우 항공기는 급격한 상승조작으로 인해 속도가 감소되어 실속 속도 이하로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 조종사 자만심에 의한 사고 가능성

가) 만약 사고현장에서 조종사가 충분히 실속을 회피할

5) 사고 항공기가 우 측풍 상태에서 배풍상태로 좌 선회 중 실속 되었으므로
6) 선회율은 한바퀴(360도) 선회할 때 걸리는 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7) 선회반경은 기체의 회전중심에서 종방향에서 대칭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선회를 실시하여 항공기가 실속되었다면 조종사의 자만심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조종사는 사고 당시 계곡의 중앙으로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고려할 때 조종사의 자만심을 거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좌우 어떤 방향으로 선회를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8]으로서 상승선회를 했어야 한다는 점

○ 지상통제장교인 지휘관이 좌선회를 지시한 상황이었다는 점

○ 행사장이 불과 1 km 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진입시간이 연기되었다는 점

○ 조종사는 축하비행이 중요한 행사라고 인식을 하였을 것이고 행사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하였을 것이라는 점

○ 현장의 상황이 자만심을 부릴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6) 조종사가 통제장교 지시의 적절성 판단 여부 가능성

가) 조종사는 통제장교의 지시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항공기가 행사장으로부터 1km도 안되는 직 전방[9]에서 갑자기 '진입 4분전'을 통보받

8) 오히려 관음산을 넘어오는 바람의 하강기류나 요란기류로 인하여 조종이 훨씬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9) 그 지점은 지상에서 항공기를 볼 수 있는 지점이며 실재 행사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의 추락을 목격하였음.

았다면 조종사는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고도, 계곡의 중앙지점, 협소한 선회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바로 눈앞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서 '진입 4분 전, 좌선회'를 지시 받았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어떤 조종사라도 일단 좌선회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나) 만약 조종사가 선회를 포기하고 행사장과 사향산 사이(5군단 사령부 방향)로 진행하였다면 실속을 면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동일한 방향으로 4분 이내에 재진입은 불가능[10] 하고 진입 방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정하여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다) 조종사는 그 짧은 순간에 통제장교의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인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조종사도 좌선회 초기에는 실속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며, 선회가 진행되는 도중 실속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7) 항공기 사고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본 사고는 조종사만의 과실 또는 기상요인이라기 보다는 군 문화의 특성(개인의 안위보다 임무완수 우선), 주도면밀한 행사계획 부실, 통제장교의 통제 미숙, 지휘관의 임무조종사 선발 부적절 등과 병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군인사법」는 제30조 제1항은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

10) 사향산을 넘어가거나 이동면 장암리 쪽을 경유하여 사향산 뒤쪽으로 우회해야 하므로

여는 제26조[11]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군인사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에 응하여 다음 각 호(장교 : 1계급)에 따라 진급 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9조는 “순직자는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전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조종사가 결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고려하지 않고 선발되었던 점, 비행통제장교의 통제계획 수립이 부적절했던 점, 비행통제장교는 조종사 진입시간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점, 망 대위 장○○ 소속 부대장은 조종사 선발, 행사계획 및 우발계획 수립이 부적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행사장 진입 직전에 안전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조종사가 자신의 직속상관(항공대장)의 지시에 따라 반사적으로 좌선회를 실시하게 되었던 점, 조종사가 산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욱 기수를 들어 급격한 상승조작으로 인해 속도가 감소되어 실속속도 이하로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조종사의 자만심을 거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점, 조종사는 그 짧은 순간에 통제장교의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인 판단

11) 「군입사법」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하에 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점, 조종사도 좌선회 초기에는 실속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고 선회가 진행되는 도중 실속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점 등'을 판단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 건과 관련된 항공기 사고는 군 문화의 특성(개인의 안위보다 임무완수 우선), 주도면밀한 행사계획 부실, 통제장교의 통제 미숙, 지휘관의 임무 조종사 선발 부적절 등과 병합되어 발생한 사고를 조종사의 과실 및 자만심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라. 살피건대, 망 대위 장○○이 1981. 7. 1. 순직 처리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항공기·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종사인 망 대위 장○○에게 항공기 사고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군인사법」 제30조 및 「군인사법시행령」제43조는 순직자에 대해 추서 진급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추서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망 대위 장○○에 대한 추서 진급 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승 탑승자인 망 중위 안△△도 망 대위 장○○과 함께 추서 진급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망 대위 장○○의 순직에 대한 추서진급 심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3장

경찰분야

제 목	면수
• 현행범 체포 이의 등	156
• 형집행장 집행관련	164
• 음주운전 단속 이의	170
• 교통사고 미접수 이의 등	174
• 의사권고를 무시한경찰조사관행이의	182
• 피해자 보호소홀 등	190
• 폭행사건 처리 이의	197
•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	209
• 교통사고처리 과정 이의	218
• 영정차량 과태료 부과 이의	224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요구	232
•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견의 시신인도	239
• 아파트앞 교통체계개선	243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247
• 일방통행도로 지정 요청	250
• 변사자 신원확인	254

현행범 체포 이의 등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송○○(이하 “신고자”라고 한다.)는 신청인이 약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두 번째로 부른 대리운전기사 이○○이(이하 “대리운전기사”라고 한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으면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경사 이○○, 순경 박○○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건경위 등 목격사실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질문을 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행범 체포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저항하자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언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신고자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데 대하여 모욕감을 느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23:57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신고자는 그보다 2분 늦은 23:59에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인만큼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8-013829(의결일 : 2009. 12. 21.)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사 이○○, 순경 박○○에 대하여 유사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09. 7. 29. 23:30 ○○구 ○○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송○○를 불렀다. 신청인은 신고자가 운전하는 신청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신청인이 대리비가 얼마냐고 묻자 3만원이라고 하여 비싸다고 생각하고 신고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신고자는 도로 가운데 신청인의 차를 세우고 내렸고, 신청인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

고 있는데 신고자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그 후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자의 신고를 받은 경사 이○○, 순경 박○○가 그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경사 이○○와 순경 박○○는 신청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동료인 경사 강○○, 순경 궁○○이 가지고 온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0.093ppm이 나오자 신청인을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신청인이 이에 항의하자 순경 박○○는 신청인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신청인의 팔뚝 두 군데에 상처를 냈고, 경사 이○○는 신청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신청인의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나. 또한 위 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미란다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란다고지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조사도 하기 전부터 신청인에게 “혐의는 인정되고 면허취소입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와 순경 박○○는 순찰차 33호 근무를 하던 중 2009. 7. 30. 00:09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지령번호 420)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사건현장에는 신고자와 신청인,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신고자는 신청인이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고,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언쟁하고 있었다.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지구대로 가

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대에 같이 갈 이유가 없다며 현장을 30미터 정도 이탈하여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미란다고지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경사 이○○가 오른쪽 팔목을, 순경 박○○가 왼쪽 팔목을 잡았고, 신청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신청인의 점퍼 팔 부분이 터졌으며, 신청인이 뒤로 버티며 바닥에 주저 앉은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순경 박○○가 손톱으로 신청인의 팔뚝 두 군데에 상처를 내고 경사 이○○가 신청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때 경사 이○○가 순찰차 34호에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동료인 경사 강○○, 순경 궁○○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신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0.093ppm이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순경 이○○은 신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자가 있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는데, 이는 정지처분을 취소처분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곧바로 정정고지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7. 29. 23:30 술을 마시고 신고자가 운전하

는 신청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신고자를 신청인의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신고자가 차에서 내리자 23:57에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고자는 23:59 신청인이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뒤에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라.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 열쇠를 주며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약 30미터 정도 현장을 이탈하기에 신청인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였다고 한다.

마. 그 후 경사 이○○, 순경 박○○는 경사 강○○, 순경 궁○○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자 신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여 0.093ppm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신청인을 제압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바. 경사 이○○, 순경 박○○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경사 이○○, 순경 박○○는 현장에 신청인이 다시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경사 이○○, 순경 박○○는 물론 신청인을 인계받은 순경 이○○은 신청인과 신고자를 조사한 이외에 별도로 대리운전기사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

아. 신고자는 경찰의 진술조서에서 신청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제가 시간을 소모하고 이동하는 수고비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순경 이○○은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이 2009. 8. 13. ○○○지방검찰청 ○○지청에 경사 이○○, 순경 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내사하였으나, 같은 해 8. 28.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4. 판 단

가.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타당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현행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여야 하고, ②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하며, ③ 신청인의 음주운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면 경사 이○○, 순경 박○○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는 신청인이 약 2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음주운전

을 부인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두 번째로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으면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경사 이○○, 순경 박○○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사건경위 등 목격사실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질문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경사 이○○, 순경 박○○는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행범 체포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저항하자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언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신고자의 진술을 보면, 신고자는 신청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데 대하여 모욕감을 느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23:57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신고자는 그 보다 2분 늦은 23:59에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인만큼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경사 이○○, 순경 박○○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미란다고지 등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경사 이○○, 순경 박○○가 신청인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지를 한 것처럼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신청인이 미란다고지를 받고도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이 미란다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순경 이○○이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 것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상황진술보고서에 따를 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바로 정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는 자는 담당 검사이므로 순경 이○○의 발언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경사 이○○, 순경 박○○의 현행범 체포 등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형집행장 집행관련

1.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5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는 '형집행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였고,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 의뢰한 유효일자가 지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으나,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신청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인과 약 30분간 대화하면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체포당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72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 후 30여분 동안 대화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번호인 선임 등을 대화한 사실이 있고,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체포하여 검찰청에 즉시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항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43033(의결일 : 2009. 7. 4.)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72조, 제475조의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위 허○○,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형사소송법」제72조, 제85조 제3항,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9. 6. 15. 20:00 무렵 신청인의 집에서 벌금 60만원 미납으로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허○○, 경사 김○○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검찰로 압송한 경찰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뢰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유효일자가 2009. 6. 12.로 지났으므로(검찰청에 확인한바, 형집행장 유효기간은 2011년까지라고 하였다.) 보여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형집행장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경찰에 집행지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것으로 문구 기재 상 집행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뿐, 집행 유효기간내의 집행이다."라고 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검찰청에 "서식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9. 6. 15. 20:00 무렵 신청인의 주소지 ○○주택 ○○호실 초인종을 수차 누르자 안에서 신청인이 문을 열어 주었으며, "일전에 통화하였던 ○○○경찰관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상해벌금 60만원으로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라고 말을 한 후 동행을 요구하며 체포하자, 신청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항의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검찰청으로부터 유효일자가 2009. 6. 12.까지인 신청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촉탁의뢰 받아 2009. 6. 10., 6. 11. 2차례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파악 불가'로 보고하려던 중

신청인과 연락하여 통화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체포할 당시 신청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에 있었으며, 형집행장 사본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검찰청에서 경찰에 의뢰한 형집행장 유효일자가 2009. 6. 12.까지로 이미 지났으므로 제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여주지 않았다.

※ 경찰관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에 따라 불심검문 중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빨리 영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30여분 간 대화를 할 때 검찰청 당직실로 전화하여 "오늘 날짜까지 유효한 형집행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검찰청 당직실 직원이 "수배가 201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다. 데려오시라"라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검찰청 당직실 직원에게 전화하여 형집행장의 집행에 문제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서도 동행을 거부하자 강제 구인하는 방식으로 체포하여 검찰청 당직실로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형집행을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소속을 말하면서 죄명과 체포의 사유를 말하였고, 이후 30여분간 대화중에도 신청인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려면 국선변호인을 데리고 와"라고 하여 "변호인 선임문제는 저희가 선생님을 데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집행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것은 선생님의 권리입니다."라고 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형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제85조 제3항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은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474조 제1항은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75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형집행시 형집행장 제시 여부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5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는 ‘형집행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였고, 신

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 의뢰한 유효일자가 지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으나,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신청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인과 약 30분간 대화하면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체포당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72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 후 30여분 동안 대화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을 대화한 사실이 있고,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체포하여 검찰청에 즉시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항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 한 채 체포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음주운전 단속 이의

음주운전 단속 이후 경찰관은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73267(의결일 : 2009. 8. 10.)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음주운전을 단속함에 있어 단속 후 정확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6. 24. ○○시 ○○군 ○○읍 ○○리 ○○아파트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를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7조(경찰청 지침, 2003. 9.)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9. 6. 24. 07:10경 ○○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장에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와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받았고,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지금 운전하면 안되니 조금 쉬었다가 가라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단속경찰관들이 말만하고 음주운전자를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단속지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음주운전 단속 중 신청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0.069%가 측정되어 단속현장에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와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에게 음주운전 단속 후 지금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깨거든 운전하라는 말을 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6. 24. 07:10경 ○○시 ○○군 ○○읍 ○○리 ○○아파트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음

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9%)으로 피신청인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을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 임시운전면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깨거든 운전을 하세요."라고 말을 한 후 07:20경 단속을 종료하고 어린이 교통예방 캠페인 예정지로 이동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은 2009. 6. 24. 16:00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판 단

가.「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은 "(생략)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 제5항은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경찰서로 동행, 의법 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은 신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속 이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조치사항이 상식상 이해되지 않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 신청인을 단속한 후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한 점, 임시운전면허증명서로 인해 신청인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주취운전자로 확인되었으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경찰서로 동행 등)를 하여야 함에도 말로만 운전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후 정확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 미접수 이의 등

신청인의 사고가 단독사고라 할지라도 차의 교통으로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조사계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경사 이○○가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함에도,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에 신고자 전화번호, 신청인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잘못이 인정된다.

한편,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7-027607, 2AA-0907-065153(의결일 : 2009. 9. 28.)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뺑소니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도 접수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는지 여부

4. 주 문

1. 피신청인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8조 및「교통사고처리지침」제36조를 위반하여 2008. 3. 11. 신청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신청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2006. 11. 15)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2008. 3. 11. 09:09 무렵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오토월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는데도 피신청인 전 소속 경사 이○○가 이 민원 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과,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한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신고자는 신청인

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혼자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경사 이○○는 병원에 방문하여 수사사항을 설명한 후 뺑소니 혐의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신청인의 단독사고로 판단하고 사고 신고내용을 교통조사계 근무일지에만 기재한 후 종결하였다.

나. 경사 이○○는 사고 당일 신청인을 병원에서 만났으나 사고 경위에 대해 특별히 언쟁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서로 존칭을 써 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졌으므로, 반말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2008. 3. 11. 09:09 무렵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오토월드 삼거리에서 신청인이 운전했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에 있는 고랑에 빠지는 이 민원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 때문에 신청인은 지체장애 4급을 받았고 신청인의 자동차는 폐차되었다.

나.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고, 2008. 3. 11.자 근무지정부 앞부분에는 당일 근무자인 경사 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부분의 상황실 하명 및 신고자 연락처란에는 “14:25”, 취급 사항란에는 “○○동 오토월드(자차 단독), 09:09 경, (신)017-xxx-8112, 15루 xxxx 윤○○(29세)”, 비고란에는 “보험처리(물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현재 경사 이○○는 ○○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다.

라.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 담당 교수 손

○○이 2008. 5. 8. 작성한 신청인의 퇴원기록지에는, 신청인은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피하려다 우측 1m 아래 도랑으로 구르면서 추락하여 응급실로 실려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7. 20. ○○지방경찰청장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112 신고 접수 내용 회신'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112신고 센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이 없다.

바. 2009. 7. 22. ○○시장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119신고 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의 최초 신고는 2008. 3. 11. 09:09:06 017-xxxx-8112, 추가 신고는 2008. 3. 11. 09:09:35 010-xxxx-0880이 한 것으로, 신고 내용은 녹취자료 보존기간 만료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9. 7. 20. 경사 이○○가 서명·날인한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8. 3. 11 14:25 무렵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2) 신청인은 뺑소니사고라고 신고하였으나, 사고 후 5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신고가 되었고, 사고운전자가 다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전혀 없고, 119신고 센터로부터 확보한 신고자(017-xxxx-8112, 40대가량의 남자)는 아침운동을 하던 중 사고장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신청인의 자동차가 혼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을 보았다고 했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사사항을 설명한 후 뺑소니 혐의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자신의 차량이 가입

한 ○○해상 자동차보험에 보상접수를 했다가 취소한 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민원 교통사고를 신청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신고내용을 교통조사계 근무일지에만 기재하고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나 TAMS(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는 등재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3)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었고, 사고 경위에 대해 특별히 언쟁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서로 존칭을 써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진 후 약 1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 신청인의 지인 오○○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2008. 3. 15. 18:00 무렵 신청인에게 병문안을 갔고, 경사 이○○가 병원에 도착해서 신청인에게 먼저 속도 좀 냈느냐고 감정적으로 물었으며, 신청인은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피해를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경사 이○○는 조깅하던 아줌마가 신청인이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고, 신청인은 화가 나서 빵소니 사고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7. 5. 3.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교통안전담당관실-1939, 2007. 5. 1.에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순찰지구대(교통외근, 고속도로순찰대 포함)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발생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반드시 현장 출동하여 운전면허 유무・차량등록번호・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후 단순물피 교통사고임이 확인되면 근무일지 기재 후 종결 조치

※ 단순 물적피해 외에 음주운전·무면허·조치불이행 등이 포함된 단순물피 사고는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2) 교통조사계로 사고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한 경우 단순물피처리결과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TAMS에 등재 후 내사종결 조치

※ 교통조사계에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 등재 조치

차. 우리 위원회에서 2009. 9. 9. 실지방문조사를 한 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교통조사 근무일지'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당일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기재하는 부분만 있으며, 교통사고 상황실 하명 시간, 사고 당사자, 교통사고 내용 등을 기재하는 부분은 없다.

4. 판단

가.「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5521, 2006. 11. 15) 제35조 제3항은 "교통사고 전담반 요원은 신속히 출동 현장에 임하여 조사하고 그 상황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에 의해 교통사고조사계장(야간은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본문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별첨 제2호,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3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식은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다.(별첨 3 교통사고보고서)”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살펴본다.

1)「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 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므로, 설령 신청인의 사고가 단독사고라 할지라도 차의 교통으로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2007. 5. 3. ○○지방경찰청장의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 철저 지시’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조사계는 공식적인 근무일지가 없으므로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 단순 물적 피해 외에 음주운전・무면허・조치불이행 등이 포함된 단순 물피 사고는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중앙선

을 넘는 사고였고, 신청인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신청인의 퇴원기록지에도 뺑소니 사고로 응급실에 왔다는 기록이 있다.

4) 그렇다면 경사 이○○는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TAMS(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함에도, 교통조사계 근무지정부에 신고자 전화번호, 신청인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 경사 이○○가 무례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본다.

2009. 7. 20. 경사 이창우가 서명·날인한 경위서에는 서로 존칭을 써가며 아무런 다툼이 없이 헤어졌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의 지인인 오○○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경사 이○○가 감정적, 신경질적으로 말했다고만 되어 있어, 경사 이○○가 신청인에게 반말 등 무례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경사 이○○가 반말을 하며 신청인에게 무례한 행위를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경사 이○○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사권고를 무시한 경찰조사관행

○○경찰서장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릎으로 가슴을 차여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 시에도 '아직까지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검사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하여 명확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퇴원하게 된 사유가 경찰의 권유를 받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도 퇴원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퇴원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사건은 의료기관의 초기진단이 중요함에도 ○○경찰서장의 퇴원 권유로 피해자는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내부 규칙에도 의료검진의 권리를 보장한 점을 볼 때 수사보다는 환자의 건강권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의 진료 권고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의 업무처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2-053282(의결일 : 2009. 2. 2.)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의사의 검진권고를 무시하고 폭행사건 수사를 위해 환자를 데려가는 경찰의 업무처리와 민원전화응대가 부당

4. 주 문

○○경찰서장은 폭행사건 피해자의 응급진료에 대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사후확인 관련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경사 민○○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로서 2008. 12. 21. 21:45경 폭행을 당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김○○)가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나 환자의 상태

를 명확히 진단할 수 없어 정밀검사하기 위해 입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며 환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데리고 가 버렸다. 이후 환자가 걱정되어 지구대에 전화했으나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고, 5분 뒤 다시 전화하자 “바쁘니 메모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다.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민원전화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경찰서장의 주장

당직의사인 신청인과 간호사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와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퇴원하였으며, 신청인의 첫 번째 전화는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전화메모는 늦게 전달받아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폭행사건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 전과 14범으로, ○○시내 일원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12. 21. 21:20경 ○○ ○○○구 ○○동 474 소재 ○○○○센타 내에서 피해자 김○○(57세)가 성명 불상의 동 업소 밴드 마스터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배를 3회 누르고 바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경사 민○○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팽개치며 무릎으로 3회 가슴과 배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수차례 가슴과 복부를 폭행당해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응급처치를 했으나 가슴 부위가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다. 술은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되어 있고, 조사시작 시간은 23:00이고, 종료시간은 23:10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사 민○○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퇴원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했으며, 조사 시 피해자는 일반인과 같이 정상이었다. 신청인이 22:10과 22:15에 지구대에 전화하였으나, 자신은 지구대가 아닌 치안센터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3시간이 지난 후 메모를 받았고,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1. 12.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경찰관에게 '환자를 보낼 수 없다.'고 하자 경찰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경찰관이 보호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호자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눈치여서 퇴원하려면 '퇴원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가는 경우이나 궁극적으로 환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내 책임이라 걱정이 되어 지구대에 전화하여 메모까지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경사 민○○은 2008. 1. 16.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슴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했으나 이는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당직의사인 신청인에게 ‘피해자 어디가 아프냐.’고 질문하자 신청인은 갈비뼈의 손상이나 내부출혈 등 구체적인 답변 없이 ‘환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조사받지 않고 고소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사건처리가 더 어렵다.’고 설명하자 보호자가 이해하여 자의적으로 퇴원하였으며, 이때 신청인도 퇴원절차에 대해 안내까지 해 주었다.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했다면 당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인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이 퇴원하기를 권유하여 퇴원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때 맞은 가슴부분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서 경사 김○○와 경장 황○○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의 경우 “피의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이 전화가 왔으나 통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금 지구대가 시끄러우니 조금 있다가 통화 합시다.’고 얘기하고 끊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황○○의 경우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장구를 사용해 제압했을 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 ‘조금 전에 경찰관이 다녀갔는데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갔다. 뭘 어떻게 책임 질거냐.’고 해 ‘병원에 갔던 경찰관이 치안센터에서 조사 중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 드리겠다.'고 답변하고 1시간여 뒤 민○○ 경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다.

4. 판 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에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156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현장임검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장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릎으로 가슴을 차여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도 '아직까지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명확하게 아픈 곳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퇴원하게 된 사유와 관련하여 ○○경찰서은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고, 신청인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경찰서장의 권유를 받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장도 퇴원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편의를 위해 퇴원을 권유하였다고 주

장하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 사건은 의료기관의 초기진단이 중요함에도 ○○경찰서장의 퇴원 권유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된 점,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단순히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경찰 내부 규칙에 규정된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한 근거를 볼 때 수사보다는 건강권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서장은 내부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추가진료 권고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확인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경장 황○○과 경사 민○○의 '진술서'에 따르면, 2008. 12. 21. 22:10과 22:15에 '신청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민○○은 3시간이 지나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장 황○○이 '전화 메모를 1시간 뒤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3:10에 조사가 종료된 것을 볼 때 '3시간이 지나 메모를 받았다'는 민○○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민○○이 '신청인이 다시 전화할 줄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걱정되어 전화를 한 신청인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가족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퇴원시켰다고 하나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사후확인 관련전화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홀 등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하여 가·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여자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대질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동석시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8-076512(의결일 : 2009. 10. 21.)

2. 피신청인 창원○○경찰서장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사 정OO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3조 제2항, 제218조 제2항과 제221조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69조등 등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의 성폭력 피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무리하게 다그치고, 대질조사를 할 때 신청인과 가해자만 두고 자리를 뜨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가해자와 같이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성폭력 상담소장에게 '신청인이 이상한 여자이고 변덕스런 여자'라는 등 비난하고, 사건 번호를 문의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피해신고를 접수, OO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병을 인계하여 여성 조사관에게 1차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상대방이 강제 성관계 혐의를 부인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했고, 신청인이 대질조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것이고, 당사자 진술이 계속 달라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일은 보통 1개월 정도 대기해야 하나 신청인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하여 소관 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일정을 잡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위해 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기 다른 차를 타고 갔으며,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잠시 대면한 것이고 조사는 지방경찰청에서 하였다.

나. 신청인이 서장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린 후에 신청인과 통화하여 수사관을 바꾸지 않기로 하였는데, 성폭력 상담소장이 이를 모르고 전화하여 여자 형사로 바꿔달라고 하기에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겠다며 사건 번호를 문의하였는데 사건번호를 암기하고 있지 않아 모른다고 한 것이고, 확인서는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한 것이지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 △. 03:35 112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같은 날 06:30 OO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여성 경찰관인 경사 심OO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

신청인 소속 경사 정OO은 2009. 8. 10. 피의자 조사를 하고 2009. △. □.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하면서 신청인과 대질조사를 하였으며, 2009. △. △△. OO지방경찰청은 신청인과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정OO 경사가 '여형사로 바꾸면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없고 피의자가 여형사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자신이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담당 형사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거나 대질조사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담소장이 평일에 대질 조사를 하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여 조사일을 조정했으나 상담소 행사가 겹쳐 혼자 가서 독립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토요일에 하면 빨리할 수 있다고 하여 정OO 형사가 정한 날에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에 상대방과 같이 앉아 질문지 같은 것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09. △. △□. OO 성폭력 상담소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정OO(박OO 담당) OO경찰서 (중략) 그 여자 변덕스럽고 이상한 여자라고 (중략)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피해여성을 변덕스럽고, 이상하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사건은 여성 형사가 없는 야간에 접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여성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는데, 신청인이 즉시 조사를 원하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신청인에게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거나 대질조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대질 조사할 때 전화를 받으려고 몇 걸음 움직였다. 신청인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이상하여 이를 지적하며 질문을 한 것이지 추궁하거나 다그친 것이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일은 신청인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여 잡은 것이고, 신청인과 피의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각기 다른 차로 지방청으로 갔고, 사전 질문서 작성을 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이 잠시 같이 있었으며 조사는 지방청 담당자가 수행했다. 수사관 교체 문제로 성폭력 상담소장과 통화하면서 신청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 단

가.「범죄수사규칙(2008. 7. 22. 훈령 제526호)」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18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2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라고 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69조는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에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은 성폭력범죄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 시 동행토록 한다.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한다. 부득이 대질조사 시에는 진술녹화실 등 활용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 조사 전·후 시차별 귀가토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만 다그치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경찰관이 해야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1차 피해 조사를 여성 수사관에게 받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여성 수사관으로의 교체 없이 수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질문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할 때에는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하여 가·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에게 대질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 문의 없이 대질조사의 필요성만 설명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 여자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신청인과 피의자를 직접 대면시켜 조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신속

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고는 해도 가·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조사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실시하고, 피해자가 피의자 옆 좌석에 같이 앉아 질문지를 작성토록 한 것은 성폭력 사건 조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인을 비난하고, 사건 번호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경사 정OO이 신청인의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 관계자에게 신청인을 비난하는 듯한 말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접수번호를 물어본 이유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담당자는 사건 당사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하여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건 번호를 알 수 없던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고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폭행사건 처리 이의

가. 경찰은 범죄 신고를 받았을 때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여야 하나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은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와 출동현장에서 오○○의 입에 피가 나고 1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점, 경찰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조사를 해야 하나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피해자인 “오○○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에 타라.”라는 얘기를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발언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맞은 사람은 상대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오○○에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인계한 점, 목격자 조사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은 수사를 할 경우 현장수사, 탐문수사, 과학수사 등으로 실체적 진술을 밝혀야 하나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은 이를 배제한 채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지구대 수사서류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구체적인 입증 없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남○○, 박○○, 김○○의 피해사실은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가장 중한 상해를 당한 오○○의 피해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2-063591(의결일 : 2009. 3. 16.)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폭행사건에서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부실한 수사

4. 주 문

○○경찰서장은 사건현장 출동 후 미흡하게 초동 조치한 경사 윤○○, 순경 하○○과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사 홍○○, 경장 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2008. 11. 2. 신청인의 형인 신청외 오○○가 놀이터에 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신청인의 형)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를 타라."라고 하는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민원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공동폭행의 특성상 신속히 수사를 착수하여야 함에도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 이렇게 수사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경찰서장의 주장

가. 2008. 11. 2. 22:54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보니 신청인 일행이 공원에 있던 7-9명의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도망 다니고 있어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의 형인 신청외 오○○가 많이 다쳤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자 학생들은 “오히려 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여 남○○ 등 3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인계했다.

나. ○○지구대로부터 오○○, 남○○, 박○○, 김○○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출장하여 조사하니 “고등학생 10여명 이상으로부터 맞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때린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진술하여 오○○가 퇴원한 이후 참고인 조사, 피의자들 조사, 오○○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이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으며, 부실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경찰서장 소속 ○○지구대에서 2008. 11. 2. 작성한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동행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오○○는 2008. 11. 2. 22:55경 ○○ ○○구 ○○동 497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박○○에게 다가와 발로 좌측 상박부를 1회 차고 욕을 하면서 목 부분을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남○○의 우측 따귀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친구3명과 같이 놀고 있던 김○○에게 좌측 뺨과 목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남○○의 자전거를 던져 우측 종아리 부분에 찰과상을 입히는 폭행을 하고, 박○○, 남○○, 김○○는 합세하여 오○○를 에워싸고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2008. 11. 2. 작성한 '목격자 수사보고'에는 "오○○가 공원 내 정자위에 서 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 중 한명이 오○○를 발로 차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땅바닥에 넘어진 오○○를 여러 명이 둘러싸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에 대한 '수사보고'에는 "피의자 오○○는 술에 만취하여 피해정도와 사건경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다 잡아라 병원에 보내다오 등의 진술만 반복해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 후송조치를 한 뒤에도 횡설수설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2008. 11. 6. 작성한 오○○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의자에게 맞고 차여 턱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턱을 맞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고, 2008. 11. 10. 수술을 하여야 하며 턱뼈가 아파 진술을 하면서 조서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오○○는 2008. 11. 2. 22:50경 ○○공원 내에서 고등학생인 남○○와 박○○ 등 그 일행들이 담배피우는 것에 주의를 주자 공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남○○의 따귀를 1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벤치위에서 발로 박○○의 어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남○○와 박○○은 뒤 따라 오면서 욕설을 하는 오○○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오○○는 대학생인 김○○와 그 일행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폭행한 고등학생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김○○의 따귀를 때리고 재차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김○○는 오○○가 이에 대항하여 오○○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정자위에 올라가 다리를 잡는 오○○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어깨를 밀어 넘어 뜨려 오○○에게 약 5주간의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 우각부의 폐쇄성 골절, 안중부 열상과 14일간의 뇌진탕, 두피의 좌상을 가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2. 17. 신청인, 오○○, 오정택(신청인의 형)과 ○○경찰서 경사 윤○○, 순경 하○○, 경사 홍○○, 경장 오○○은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오○○은 “현장에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 병원에 갔다가 지구대에 가니 가해자 3명 밖에 오지 않아 항의하자 나머지는 경찰서에 가면 다 온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에게 맞은 사람은 지구대로 가자고 얘기하는 등 동생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수사를 하였고, 형사과 담당경찰은 지구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 왔기 때문에 수사가 미흡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2)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어느 쪽이 가·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상 싸움에서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맞았다고 하는 학생들을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로 경찰서에 인계했다.”라고 하였다.

3)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은 “오○○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갔으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한쪽을 먼저 조사하면 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오○○가 때린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 조사를 나중으로 미뤘다. 신청인에게 지구대 서류를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했다.”라고 하였다.

마. ○○경찰서장이 제출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2008. 11. 6. 오○○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2008. 11. 22. 전규원, 오○○, 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08. 11. 24. 남○○, 박○○, 오○○,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08. 12. 22. 김○○, 김○○, 이○○, 남○○, 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09. 1. 14. 현장 확인수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확인내역’에는 “2008. 11. 2. 22:55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전화번호 010-000-0000, 이

후 남○○로 확인됨)이 ○○구 ○○동 434-1 소재 ○○중학교에서 누가 때린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59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전화번호 018-000-0000)이 ○○서구 ○○동 ○○놀이터에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사건 목격자인 30대 여성(성명 불상)은 2009. 2. 16.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퇴근하다가 시끄러워 쳐다보니 정자위에 남자 한명이 90°정도 숙인상태에서 여러 명의 남자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했으며, 맞던 사람이 상대편 발에 차여 정자에서 떨어졌다. 일방적으로 맞던 사람은 많이 다쳤을 것 같아 골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차례 전화가 와 동일한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경찰서장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해자인 전○○은 2008. 11. 22. "오○○가 술에 취해 친구인 김○○의 따귀를 때리고 자전거를 던졌으며 김○○는 오○○를 밀기만 했다."라고 되어있다.

2) 피의자인 김○○는 2008. 11. 22. "오○○에게 따귀를 때려 맞았고, 더 맞지 않으려 오종수를 밀게 되었으며 오종수가 자전거를 던져 우측종아리를 맞았다. 현장에 고등학생들은 6명 정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3) 피의자인 오○○는 2008. 11. 22.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담배를 피워 주의를 주며 따라가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6-7명이 달려들어 구타를 해 정신을 잃었으며, 공원에 앉아 있

던 김○○를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머리로 밀치며 시비를 하는데 김○○가 밀어 넘어졌다. 이후 김○○를 잡으려 했으나 피했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김○○와 대질조사 시에는 “술이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4) 피의자인 남○○는 2008. 11. 24. “김○○가 오○○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미는 것은 보았다. 오○○의 얼굴상처는 김○○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인 것 같으며 오○○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따귀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다.

5) 피의자인 박○○은 2008. 11. 24. “오○○가 발로차서 왼쪽 팔꿈치를 맞은 사실이 있다. 오○○가 남○○의 뺨을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으며 오○○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6) 피의자인 오○○는 2008. 11. 24. “학생들을 보아도 때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7) 피의자인 김○○는 2008. 12. 22. “처음에는 오○○를 한 번만 밀었다고 했으나 사실은 두 번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다.

자.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의 참고인인 김○○과 전○○의 진술이라고 제출한 ‘녹취록’에는 “경찰차 두 대가 왔는데 경찰은 맞은 사람 있으면 타라고 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갈필요가 없다.”라고 녹음되어 있고, 이에 대해 김진철은 2009. 3. 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녹음한 사실과 관련내용을 인정했다.

차. ○○경찰서장이 2009. 1. 14. 작성한 '현장 확인수사 보고서'에는 "오○○가 김○○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려 김○○가 오○○의 몸을 밀고 누르는 등 몸싸움을 하고, 오○○가 김○○를 따라가 자전거를 던지고 김○○와 반대방향에 있던 박○○, 이○○, 오○○에게 다가가 박○○을 폭행하고 발로차자 도망가고 남○○는 오○○에게 항의하다 뺨을 맞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지구대 경사 윤○○와 순경 하○○의 경우, "학생 여러 명이 한명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오○○의 입에 피가 나고 1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에 있었음을 목격하였음에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점, 경찰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조사를 해야 하나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들

에게 “오○○에게 맞은 사람은 경찰차에 타라.”라는 얘기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관련자에 대한 임의동행 후 목격자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맞은 사람은 상호간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비합리적인 논리로 임의동행 되어온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찰의 의무인 범죄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 경장 오○○의 경우

1) 이 민원사건 목격자와 오○○의 진술에 의하면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와 같이 사건관련자가 여러 명 일 경우 시간이 경과 될수록 서로 사건의 정황을 조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기억력은 도태됨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오○○가 “가해자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진술과 “한쪽만 먼저 조사하면 사건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는 등 늑장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찰서장이 2008. 11. 6.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오○○가 맞을 때 충격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 답변과 대질조사에서는 “오○○가 가해자를 기억할 수 있어 조사를 늦추었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3) ○○경찰서장이 2009. 1.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남○○와 박○○은 뒤 따라오는 오○○를 폭행하였고, 김○○

는 정자에서 오○○와 몸싸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남○○, 박○○,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남○○, 박○○은 “오○○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는 “오○○를 밀어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없이 송치의견서에 “남○○, 박정수는 오○○를 폭행한 것으로 김○○의 경우는 오○○에게 진단5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민원사건 목격자는 “여러 명이 정자에서 한명을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서장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오○○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정자위에 올라가 오○○의 다리를 잡는 오○○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다.

5) ○○경찰서장이 2009. 1. 14. 작성한 현장 확인수사보고에는 남○○와 박○○의 폭행 사실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6) 사건발생현장은 증거의 보고로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 현장수사와, 탐문수사 등유무형의 증거를 수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7)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 사건서류를 이렇게 작성해 와서 이렇게 밖에 못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지구대에서 인계된 수사 자료에만 의존하였다고 판단된다.

8) 사건 관련자들이 많을 경우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9) ○○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2008. 11. 2. 22:55 남○○는 "○○중학교에서 누가 때린다."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장은 현장수사, 탐문수사 등을 배제한 채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지구대 수사서류에만 의존하여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구체적인 입증 없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남○○, 박○○, 김○○의 피해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어 있음에 반해 진단5주의 상해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오○○의 피해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민원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무면허운전은 인정될 수 없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3-014934(의결일 : 2009. 4. 27.)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10. 15.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변경하고,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찰서 담당자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같은 법 제93조,「행정절차법」 제15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경찰청 2006. 6.) 제4조 제2항, 같은 지침 제20조, 같은 지침 제21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8. 9. 4. 00:29경 ○○도 ○○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로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받았고, 2008. 10. 15. 00:30경 승합차량(이하 "신청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08. 10. 24.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았으니, 단속일에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억울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8. 9. 4. 00:29경 발생된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도로교통법」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의거, 차대 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결과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경찰청 업무지침(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 질의회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취소일로부터 결정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9. 4. 00:29경 ○○시 ○○구 ○○동 214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운전자가 2주 진단의 경상을 당하였다.

나. 2008. 9. 4.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신청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진술서, 피의자진술조서(1차)를 작성한 후,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발급하였다.

다. 2008. 9. 4.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가 작성한 취소진술서에는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취한 상태로 ‘08. 09. 04. 00:29경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2008. 10. 9.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본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신호관련 상황과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한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마. 2008. 10. 10. ○○○○경찰서장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행하였다.

바. 2008. 10. 13. ○○○○찰서장은 신청인이 포함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 명단보고”를 피신청인에게 보고(상신)하였고, 보고내역 첨부서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2008. 10. 13. 결정(취소결정일) 하였으며,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개시(취소개시일)함과 동시에 같은 날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1차)를 일반우편으로, 2008. 10. 22.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2차)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10. 24. 수령한 사실이 있다.

아. 신청인은 2008. 10. 15. 00:30경 ○○도 ○○시 ○○동소재 ○○산업 앞 노상에서 약 200m를 음주(혈중알콜농도 0.2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자. ○○경찰서는 신청인이 2008. 10.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각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은 2009. 1. 6.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카. 2008. 1. 16. ○○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의 2008. 10. 15.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

3. 판 단

가.「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정지시킬 수 있다.…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라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2006. 6. 21. 경찰청 기획안전 담당관실 - 3971호) 제4조 제2항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3항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라고,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라고,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에는 “제19조 제3항의 경우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 질의 회시(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재차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형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및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1. 제43조…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하였으며, “…1989. 7. 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을 한 뒤 1989. 8. 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하였으며,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위 2차 통지서는…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참조)하였다.

나.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련된 기록에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8. 9. 4. 00:29경 교통사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08. 10. 15. 00:3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에서 신청인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신청인이 비록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이전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입건 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가 되기까지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이 2008. 9. 4.~2008. 10. 13.)를 발급받은 이유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해당되어 발급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은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집행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자를 5일이내(2009. 9. 9.)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상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2008. 10. 13. 보고(상신)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경우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점, 피신청인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소처분 개시일의 경우,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민원발생 원인이 ○○○○경찰서장의 보고(상신)부터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까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

생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부과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처리 과정 이의

경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은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7-033648(의결일 : 2009. 8. 31.)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정사항

경찰관의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시 ○○구 ○○동 170-9번지 앞 교차로 근방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범죄수사규칙」(행정자치부령 2006. 6.)제5조 및 제68조,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 2006. 11.)제2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시 ○○구 ○○동 170-9 ○○경찰서 앞 교차로 근방에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외 이○○ 운행의 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서로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측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고버스측 목격자 2명의 말만 듣고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였으니 조사결과를 떠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고 접수 후 현장에서 신호체계 등을 확인하고 사고버스측 목격자 2명과 신청인측 목격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내용을 청취하고 버스전용차로 내에서도 차로변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이 사건을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7. 4. 22:05경 ○○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서 앞 교차로 근방에서 사고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이며 노폭은 약 6m로서 두 대의 차량이 1개의 차로에 대기할 수 있는

노폭이고 평일에는 시간제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

다. 신청인은 사고버스 우측에서 나란히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불상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 버스 앞으로 이동하고 나서 신호 대기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고버스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녹색신호로 바뀌어 진행하는데 갑자기 신청인의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진행하여 정지하다가 충돌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2주의 부상을 당하였고 사고버스 운전자와 탑승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목격자들과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결과 사고버스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목격자 2명)과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상에 있는데 버스가 추돌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목격자 1명)을 들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목격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수사보고나 진술조서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8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통단속처리지침」제23조 제1항 제1호는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현장조사와 원인규명 후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가목은 "인적피해사고 (1) 공소권 있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및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 미가입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생략) 수사기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공소권 없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등에 해당 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 청구하고 관계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검찰에 송치하는 관계기록은 다음과 같다. (생략) 관련자 진술서(생략)"라고, 같은 지침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은 "물적피해사고 (생략)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쳐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공제)가입 등을 확인한 후「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공소권 유무에 관련된 교통사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내사종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은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과정 중 사고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은 교통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함부로 배척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청취한 후 수사보고 또는 규정에서 정한 양식(진술조서)에 기록을 남겨 보존해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면 진술조서 작성이 특별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이나 노면흔적 그리고 차량의 손상된 형태 및 이동거리 등 물리적인 증거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비교·검토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신빙성 있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담당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적피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는 피해자의 인적피해에 따라「교통단속처리지침」제23조에 의해 공소권유무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단순물피 교통사고(내사종결) 처리로 구분되는 점, 이 사건은 신청인의 부상 때문에 공소권 유무사건 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규명(피해자 규명 등)을 위해 차량 손상 상태 등 물리적 자료들과 운전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충분한 기초조사와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에 남겨야 하는 점, 특히 목격자들의 상반된 진술은 단순히 청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조사

기록은 사고 당사자의 진술 외에 조사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에서 형사적 판단(가해자와 피해자 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신○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68조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정차량 과태료 부과 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508-11'로 위반사실통지서, 1차 과태료 고지서, 2차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자 경찰서 게시판에 과태료 체납 압류 공고를 하여 통지를 갈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가 2009. 7. 20. ○○청장에게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시송달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청장이 2009. 8. 31.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신청인 주택으로의 진입구조가 도로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출입문과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서류가 정확히 배달안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점, 신청인은 중국에서 소무역을 하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자녀는 학업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우게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대부속병원 관계자로부터 영정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용차로로 운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송달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의기간 중 면제차량임을 항변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 취소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의기간을 알기 어렵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불복구제 기회를 상실한 것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고 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청인이 운전한 영정차량의 전면부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던 시각이 10:00와 10:06인 오전으로 되어서 사회통념상 장지로 향하는 차량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10-005968(의결일 : 2009. 11. 24.)

2. 피신청인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3. 결정사항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영정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합리성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 제4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8. 3. 22. 장례 선두차량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인지 알고 운전하여 장지(○○ ○○)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미수령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 제4항 제10호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장지로 향하는 영정차량은 이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나, 장지에서 돌아 오는 영정차량은 면제가 안되므로 사진에 찍힌 시각과 날짜로는 장지로 향하는 차량인지 돌아 오는 차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위반사실통지서, 1차·2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공시송달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이의 기간 중 면제차량임을 항변하여야 하나 이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3. 22. ○○선 ○○방향 ○○부근에서 신

청인 소유의 프린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2회 단속되었다.

나. 기록에 첨부된 '위반사실통지서'의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운전한 영정차량의 전면부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고, 위반시각이 10:00과 10:06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반 당시 "○○시 ○○구 508-11"로 되어 있다.

라. ○○지방경찰청장은 2008. 3. 24. 신청인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2008. 4. 16. 신청인에게 '1차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8. 6. 2. '2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바. ○○○○경찰서장은 2008. 7. 1. ~ 2008. 7. 15.까지 경찰서 게시판에 '과태료 체납 압류' 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이 있고, 2008. 8. 6. 신청인에게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우편물의 송달지인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변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10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여러 세대가 출입문과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 ○○○○위원회는 2009. 7. 20. 행정서류 우편송달에 있어 반송되는 경우 대부분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부당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

청장에게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청장은 2009. 8. 31.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시행(○○청 교통기획담당관-5254)하였다.

자. 신청인은 2009. 10. 20. “본인은 중국에서 소무역을 하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자녀는 학업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우게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대부속병원 관계자로부터 영정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용차로로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중략)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는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

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과태료 처분) 제1항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정된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위규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송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5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증빙자료로 보관하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재발송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 없이 그 사유를 기록관리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5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0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하고,「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공지사항에는 ”일부 영정차량(즉 영구차 앞에서 영정을 모신 차량)이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가 무인장비에 촬영된 경우, 사망신고서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면 경찰서장 결재 후 적의 조치토록 바랍니다. 그러나 과속운전, 장례식 완료 후 돌아 오는 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은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508-11'로 위반사실통지서, 1차 과태료 고지서, 2차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자 경찰서 게시판에 과태료 체납 압류 공고를 하여 통지를 갈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가 2009. 7. 20. ○○청장에게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시송달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청장이 2009. 8. 31.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신청인 주택으로의 진입구조가 도로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출입문과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서류가 정확히 배달안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점, 신청인은 중국에서 소무역을 하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자녀는 학업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우게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대부속병원 관계자로부터 영정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용차로로 운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송달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의기간 중 면제차량임을 항변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 취소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의기간을 알기 어렵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불복구제 기회를 상실한 것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고 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청인이 운전한 영정차량의 전면부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던 시각이 10:00와 10:06인 오전으로 되어서 사회통념상 장지로 향하는 차량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영정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어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수 없었고, 피신청인은 최후 공고 직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청인의 재등록된 주소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적성검사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신청인은 지체장애 3급인데다 학력 수준이 낮고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5-071154(의결일 : 2009. 6. 29.)

2.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3. 결정사항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보낸 2차 수시적성검사 통지 이후 2차 공고 이전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경우 그 공고가 적법한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이 2009. 4. 17.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5항, 제5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내지 4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9. 7. 19.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4년도 회사 부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어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피신청인이 2009. 4. 17.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19.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2007. 5. 16. 최종 장애판정을 받았고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은 2008. 2. 27. 신청인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나. 경찰청장은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했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4. 23., 2008. 5. 14., 2008. 9. 30., 2008. 10. 17. 신청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그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들은 모두 '이사감'으로 반송되었다.

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5. 18.과 2008. 10. 25.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공고했음에도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2009. 4. 17. 취소했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의 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0. 4.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득했다.

나. 신청인은 1999. 7. 19. 10:10경 ○○ ○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 후 2000. 6. 17.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신청인과 상대편 차량 보험회사인 ○○화재해상보험(주)과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자) 소송이 2007. 4. 13. 확정되었다.

라. 보험개발원이 2008. 2. 27. 신청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최종 장애판정일을 2007. 5. 16.로, 장애등급을 8급 2호로 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자, 경찰청장은 후천적 신체장애를 이유로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마.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4. 23. 적성검사 기간을 2008. 6. 7.~2008. 9. 7.로 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 ○구 ○동 36 (20/6) ○○○○맨션 1207'로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으나 2008. 4. 29.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2008. 5. 14. 재 발송했으나 2008. 5. 21. '이사감'으로 다시

반송되었다.

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5. 18. 공고기간을 2008. 5. 18.~2008. 6. 2.로 하여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1차 공고했다.

사.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9. 30. 적성검사 기간을 2008. 11. 14.~2009. 2. 14.로 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 ○구 ○동 36 (20/6) ○○○○맨션 1207'로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으나, 2008. 10. 6.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2008. 10. 17. 재 발송했으나 2008. 10. 22. '이사감'으로 다시 반송되었다.

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10. 25. 공고기간을 2008. 10. 25.~2008. 11. 7.로 하여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2차 공고했다.

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동 36 (20/6) ○○○○맨션 1207'이었으나 2005. 3. 31.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되었다가, 신청인이 2008. 10. 21. 재등록하여 같은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21/3 (4/4)'가 되었다.

차. 피신청인은 2009. 4. 17. 신청인이 2차 공고 후 지정된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4. 판 단

가.「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내지 4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신청인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4. 23.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 ○구 ○동 36(20/6) ○○○○맨션 1207'로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고, 2008. 4. 29.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8. 5. 18. 1차 공고를 한 점,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재지정하여 2008. 9. 30. 2차 통지를 했으나 2008. 10. 6.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8. 10. 25. 2차 공고를 한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31. 말소되

었다가 2008. 10. 21. 재등록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차 공고 후 지정된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도로교통법령상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고를 하기 이전에 그 대상자가 수시적성검사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31.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되어 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장장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된 것으로 보아 통지를 대신하여 받아 줄 사람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최종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2008. 10. 22. '이사감'으로 반송된 후 2차 공고일인 2008. 10. 25. 이전인 2008. 10. 21. 신청인의 주소지가 2008. 10. 21. '○○○○시 ○○구 ○○동 221/3 (4/4)'로 재등록 되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한 번이라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에는 지체장애

3급인데다 학력수준이 낮아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를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경의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신청인은 안치료 중 일정 부분만 받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시신안치료의 일부는 지급하고,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고, 유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있으면 이를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합의하여 장례완료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3-027812(의결일 : 2009. 5. 22.)

2.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3. 결정사항

시신안치료 중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9. 5. 2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된 금액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종합병원장)은 2003. 3. 1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고 박○○ 일경(경찰악대)의 시신을 피신청인 또는 유족이 인도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고, 7년간의 시신안치료 약 2억 원을 피신청인과 유족이 지불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지방경찰청 경찰악대 소속 고 박○○ 일경 사망 후 2003.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유족·시민단체·검사 등 참관 하에 부검을 실시한 뒤 당일 사건담당자가 유족에게 사체를 인수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 사체 봉인조치 하였는바, 경찰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시신 안치료는 2003. 3. 25.(13일간)까지이고 이 후 발생분에 대해여는 경찰책임과는 무관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3. 11.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26. : 피신청인 답변 및 자료제출
○ 2009. 3. 30. : 실지방문조사(○○지방경찰청, ○○종합병원, ○○경찰서)
○ 2009. 4. 2. : 실지방문조사(고 박○○ 일경 부모 면담 등)
○ 2009. 4. 20.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신청인, ○○지방경찰청 심의수행자간 시신안치료 금액조정 및 유족의 재조사 요구 협의)
○ 2009. 5. 6.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신청인, ○○지방경찰청 심의수행자간 시신안치료 금액조정 협의)

○ 2009. 5. 22.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 2009. 5. 26. : 고 박○○ 일경 장례 절차 완료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현지실지조사를 행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신청인은 안치료 중 일정 부분만 받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시신안치료의 일부는 지급하고,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고, 유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있으면 이를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합의하여 장례완료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경의 시신인도 요구"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유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시신안치료 중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9. 5. 2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나. 신청인은 유족에게 시신 안치료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 입관료 및 운구료는 그 발생비용을 장의사 등 해당업체

에 직접 지불한다

2) 화장료 및 부대비용은 장례 당일 유족에게 지급한다

라. 피신청인은 유족의 재조사 진정이 있으면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1회한)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마. 유족은 조정서 작성 후 빠른 시일 내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아파트앞 교통체계 개선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있다는 고충민원 취지에 공감하고, 아파트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첨부 조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1-029544(의결일 : 2009. 4. 20.)

2. 피신청인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 ○○○ 1·2차 아파트 앞 도로와 지방도 360호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 360호선에서 아파트 앞 도로로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유지 및 남쪽 교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추가 설치하여 개선 대책에 적극 협조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아파트 대표자로 ○○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 도로, 신호등,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변경하여 입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변경계획을 철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공사

○ 기존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사업준공후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나. ○○시

○ 신청인의 요구는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흐름 처리를 위해 수용이 어려움

○ 다만,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아파트 가까운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음

다. ○○경찰서

○ 교통영향평가에서 신호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 신호등 유지가 불가

○ 사업준공후, 신호등·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겠음

3. 사실관계

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의 기능적 위계상 아파트 진·출입로(2차로)를 직접 지방도 360호선(6차선)에 접속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기존 신호등을 폐지하여 단순 우회전만 허용하였음

나. 지방도 ○○호선의 연속적인 흐름을 위해 기존에 설치 운

영 중이던 횡단보도를 삭제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신호체계의 연동화를 통한 불필요한 교차로 간격을 줄여 차량소통 및 안전 향상을 도모하였음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변화된 교통·도로여건을 고려하면 버스정류장을 본선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존 버스정류소의 이전(현위치에서 약 200m 남쪽)이 계획되었음

<진행과정 개요>
○ 2009. 1. 14. : 고충민원 접수
○ 2009. 2. 10. : 피신청인 답변 및 자료제출
○ 2009. 3. 2. : 실지방문조사(피신청인, 신청인)
○ 2009. 3. 19. : 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료요구
○ 2009. 3. 27. : 최종 개선안 도면작성(피신청인)
○ 2009. 4. 9. : 조정회의 개최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실지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대안도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차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안을 다듬고 만들어서 양쪽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음

나. 사전에 논의된 대안을 가지고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수용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며 장기간 토론의 결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최종 조정안에 서명을 하였음

<조정·합의문>

○ ○○시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체계 변경으로 ○○○ ○○○○ 1·2차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고 한다)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있다는 고충민원 취지에 공감하고, 아파트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가. 아파트 앞 도로와 지방도 360호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 360호선에서 아파트 앞 도로로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다

나. 아파트 앞 도로와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유지한다

다. 아파트 앞 교차로와 남쪽 교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추가 설치하며,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되는 개선도면을 반영한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국도관리사무소장은 2009년 3월 중 신호기 2기 및 횡단보도 1기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은 2009. 상반기 중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거나 인근 지점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설하기로 하고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약정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1-058974(의결일 : 2009. 3. 10.)

2. 피신청인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3. 결정사항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지점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

이 유

1. 신청원인

○○도 ○○시 ○○면 ○○리에 있는 ○○역 앞 ○○번 국

도는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마을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불안하니 ○○역 앞 삼거리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지방경찰청장

무인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 중 ○○경찰서 및 ○○국도관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나. ○○경찰서장

○○역 삼거리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상정하여 서면심의한 바, 가결되었으므로 2009. 상반기 중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다. ○○국도관리사무소장

○ 신호등은「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국도관리사무소는 ○○번 국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2009. 3월중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 검토

○ 부가적으로 신설될 횡단보도 주변에 방호용 휀스를 설치 검토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1. 29. 고충민원 접수

○ 2009. 2. 9.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지방경찰청 외 2개 기관)
○ 2009. 2. 18.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지방경찰청)
○ 2009. 2. 17.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경찰서)
- 2009. 2. 11.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긴급안건 서류 심의
- 2009. 2. 18. ○○경찰서 ○○역 앞 교통신호등 설치 심의결과 통보
○ 2009. 2. 17.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국도관리사무소)
○ 2009. 3. 5. 실지방문조사 협의
○ 2009. 3. 5.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민원 해소

4. 처리결과 : 합의해결

우리 위원회는 실지 방문조사시 ○○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피신청인 간 협의된 사항과 집행계획을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민원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우리 위원회 및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명

○ ○○국도관리사무소장은 2009년 3월 중 신호기 2기 및 횡단보도 1기 설치

○ ○○지방경찰청장은 2009. 상반기 중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거나 1.2km 떨어진 지점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설

일방통행도로 지정 요청

같은 민원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적이 있고, 해당 도로에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보이며, 도로 폭도 6m로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으나, 17년 이상을 아파트 내 도로처럼 이용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시와 협조 아래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최대한 노력해 준다고 하므로 이를 안내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1-001400(의결일 : 2010. 2. 1.)

2. 피신청인 ○○경산경찰서장

3. 결정사항

도로로 개통된 이상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및 「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1. 19. 경찰청 훈령 제573호) 제1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0항

이 유

1. 신청원인

○○ ○○시 ○○동에 있는 ○○아파트 101동과 102동을 통과하는 도로(이하 '해당 도로'라 한다)가 개통되는데,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니 새로 개통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해당 민원에 대해 2009년도 2/4분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해당 도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공도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만으로 일방통행 지정은 불가능하며, 한 번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주변여건 등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해당 도로는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를 통과하는 길이 143m, 폭 6m 도로로 1986. 12. 29. ○○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다.

나. 해당 도로(143m) 중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도로(길이 48m)는 ○○아파트가 1992. 3. 10. 사용검사 시, 해당 도로 중 일부(54m)는 1999. 7. 14. ○○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사업 시행으로, 나머지 일부(41m)는 2009. 2. 9. 다가구주택 건축에 따라 개설되어 해당 도로가 연결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009. 6. 30. 해당 민원에 대해 아파트 내 도로에서 난 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신호위반)사고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아파트 관할 ○○2동은 2009. 9. 12. 관내 12통 주민대표, 인근빌라, 단독주택, 상가업주 등을 상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불편만 초래하므로 양방향 통행을 원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했다.

마. 해당 도로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사이에 있던 담장이 제거되어 있으나 쇠사슬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 ○○아파트 101동과 102동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접해 있는 부분은 경사가 있다.

4. 처리결과

가.「도로교통법」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1. 19. 경찰청 훈령 제573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0항을 종합하면 일방통행로 지정은 관할 경찰서에 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해당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적이 있는 점, ○○아파트 101동과 102동은 해당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연결부분은 경사가 있어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아파트 주민들이 101동과 102동을 왕래할 때 나타날 위험이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해당 도로 폭도 6m로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17년 이상을 ○○아파트 내 도로처럼 이용되었던 도로가 일반주민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산시와 협조 아래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최대한 노력해 준다고 하므로 이를 안내하고 종결함.

변사자 신원확인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판단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1998. 2. 24.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표기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김천시에 인도하였고, 1998. 3. 3. 지문감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유족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아니하고 ○○시에도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약 3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경위 김○○, 경사 김○○에게는 망인의 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먼저 피신청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받아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시로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할 때 ○○경찰서는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기재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로 인도되는 사체는 무연고자임이 추정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유족에게 연락함이 없이 가매장한 사실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표목이 가매장 장소를 이탈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한 뒤인 2002년부터는 망인의 묘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위 표목이 언제 이탈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홍수 때문에 위 표목이 이탈되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점, ○○시는 현재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4-016179(의결일 : 2009. 6. 1.)

2. 피신청인 ○○경찰서장, ○○시장

3. 결정사항

변사사건 발생 시 변사자 처리절차 준수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 1 ○○경찰서장은 지문감식을 통해 망 김○○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신청인 2 ○○시장에게도 신원확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 ○○시장은 피신청인 1 ○○경찰서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망 김○○의 사체를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 「호적법」 제93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父) 김○○은 1998. 2. 21. ○○시 ○○동 해장집 식당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는데, 피신청기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는 같은 날인 2. 22. 망 김○○(이하 '망인'이

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4. 인적사항 불명으로 피신청기관 ○○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하였고, 이를 인수받은 ○○시는 위 망인의 신원을 확인함이 없이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임을 확인하는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불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주장

○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2. 망인의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시 ○○면 ○○리에서 ○○건어물상회를 하는 신청외 강○○이 망인과 약 2년간 같이 살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망인의 처 이○○, 자 김○○, 김○○의 이름을 알아냈으나, 망인은 처 이○○과 이혼하여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망인의 누나로 추정되는 ○○ ○○시 소재의 신청외 김○○에게 연락하였으나 김○○도 사체인수를 거부하므로, 변사사건은 ○○지청 검사 김○○의 지휘로 내사종결하고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은 ○○시청 김○○에게 인계하였다. 그 후 경찰청에 의뢰하였던 망인의 지문감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그 지문감식결과를 ○○시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지문감식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족을 찾지도 않았다.

나. 피신청인 ○○시장의 주장

○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변사자 처리에 관한 협조

공문(1998. 2. 24.)을 근거로 하여 ○○시가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수할 당시 망인은 신원불상이었고, 가매장(1998. 2. 26.) 이후 ○○경찰서에서 망인의 지문감식(1998. 3. 3.)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경찰서에 있으며, 2002년경 신청인과 신청인 오빠가 ○○시를 방문하여 행려사망자 관련서류, 가매장관련 공문, 행려사망자 대장(299번), 기타 묘지관련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연묘로 구분되어 그 관리책임이 유가족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묘지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은 없다.

3. 사실관계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와 관련자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자료, 실지방문조사결과,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1998. 2. 21. 19:10경 ○○ ○○시 ○○동 소재 ○○병원 앞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변사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김○○은 경위 김○○와 경사 김○○에게,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규명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되 유족이 없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사체를 인도할 것을 지휘하였다.

다.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3. 17:30경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망인의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고, 망인의 이름은 김○○(당시 45세, 추정)으로 가족으로는 처 이○○, 자 김○○, 김○○이 있으나, 처 이○○과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경위 김○○, 경사 김○○는 전처(前妻) 이○○,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 ○○시 소재의 망인의 누나가 사체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998. 2. 24.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 기재하여 ○○시로 망인의 사체와 소지품을 인도하였다.

바.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8. 2. 24.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하여 1998. 3. 3. 망인의 인적사항을 회시받았으나, 신청인 등 유족들을 찾지 않았고 ○○시에도 지문감식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사.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추정)만으로는 망인의 유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아. 신청인 등 유족들은 2002년경 망인이 가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를 방문하여 ○○시에서 망인을 가매장한 뒤 299번의 행려사망자 번호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그 후 일시불상일에 망인의 299번 가매장 표목이 불상의 원인으로 가매장 장소를 이탈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의 식별

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차. 망인이 가매장되어 있는 ○○시 신음동 산 17번지 공동묘지는 관리인이 없고, 출입을 제한하는 각종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 대해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할 당시 ○○시 ○○○○○○○○과 김○○은 망인의 가매장 장소인 299번 위치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한다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타. 현재 가매장 장소는 ○○원 주변 혐오시설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공원구역내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을 계획하고 2008. 2. 1.부터 공원구역내 분묘조사를 하고 있다.

4. 판 단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판단

○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1998. 2. 24.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표기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시에 인도하였고, 1998. 3. 3. 지문감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유족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아니하고 ○○시에도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약 3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경위 김○○, 경사 김○○에게는 망인의 변사사

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먼저 피신청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받아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시로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할 때 ○○경찰서는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기재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로 인도되는 사체는 무연고자임이 추정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유족에게 연락함이 없이 가매장한 사실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표목이 가매장 장소를 이탈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한 뒤인 2002년부터는 망인의 묘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위 표목이 언제 이탈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홍수

때문에 위 표목이 이탈되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점, ○○시는 현재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찰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4장

복지·노동분야

제 목	면수
•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이의	264
• 산재휴업급여산정 이의	271
•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277
•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수리 거부 취소	284
•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290
• 노인장기요양 비급여 처분 취소	295
• 공동묘지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300
• 교통안전공단 대출자금에 대한 부채인정	302
•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305
• 공제보험의 요양급여비 지급요구	308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거부 취소	315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이의

○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부과 근거가 없다.

○ 판매직원들이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본사에 오는 일이 전혀 없었고 매장으로 바로 출·퇴근하여 장소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점, ○○마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급여액으로 볼 때도 연구직을 포함한 생산부서와 농장 근로자의 급여액보다 오히려 많아 판매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제조공장과 분리된 본사나 영업점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업무 관행인 점, 이들 판매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을 ○○마트에서 대행하여 파견근로자와 유사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잡급 판매직원의 급여액에 대해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67622(의결일 : 2009. 5. .)

2. 피신청인 ○○복지공단

3. 결정사항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및 마트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잡급직 직원에 대한 제조업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8. 3.과 2007. 12. 28. 신청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처분과 ○○마트 매장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신고·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 별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4년도 보험료를 2007. 8. 3.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 당시는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이사(현 대표이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인건비 내역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와, 롯데마트 매장

직원에 대해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2004~2006년도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거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미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보험료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7. 8. 3. 신청인의 2004년도 제무제표에서 나타난 잡급직 인건비 572,044,481원 중 536,526,362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이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8,745,380원, 이 금액에서 외국인 연수생과 65세인 근로자의 급여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고용보험료 5,920,140 및 가산금 추가 징수를 통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2004년 잡급직 판매직의 급여지급내역을 제출받아 급여액이 소액인 직원의 급여 10,911,965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98,210원을 삭감하여 2007. 12. 28.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청인의 사업종류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제조'로 되어 있고,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허브를 이용한 생필품, 파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비누, 화장품, 생활용품 외'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2004년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이 210,487,742원, 노무비 및 상여금이 176,828,223원, 이외 잡급직 인건비가 572,044,481원이다. 2004년도 잡급직 급여내역 중, 매장 판매직 직원의 급여액이 총 379,614,152원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이 총 158,037,960원이다.

마.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판매직 직원은 롯데마트 전국의 지점에서 신청인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원으로서 평택에 있는 신청인의 본사로 출근하는 일이 없으며, 롯데마트에서 고용과 관리를 해주고 신청인은 급여만 통장에 입금하는 형태이다.

바. 신청인의 2004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3,511,945,057원이고 이중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1,566,680,280원이다.

사. 신청인 2008. 12. 30.부터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 보험료 재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재정산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3. 판 단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농축수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는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지 1년이나 지나

제기한 이의신청를 받아들인다면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7조 제3항에서 보험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하고 실질적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정기관은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2007년 신청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안홍준이 뇌출혈로 쓰러져 신청인의 잡급직 급여내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2004년도 급여처리 내역과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허브농장의 힘든 근로조건,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8월과 9월에 급여의 대부분인 150,597,960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볼 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부과 근거가 없게 된다.

바. 또한 ○○마트의 매장에서 신청인 제품을 판매하는 잡급직 직원의 급여액 379,614,152원에 대해 화학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 판매직원들이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본사에 오는 일이 전혀 없고 매장으로 바로 출·퇴근하여 장소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점, ○○마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급여액으로 볼

때도 연구직을 포함한 생산부서와 농장 근로자의 급여액보다 오히려 많아 판매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신청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같은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 온 점(2005. 1. 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제조공장과 분리된 본사나 영업점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업무 관행인 점, 이들 판매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을 ○○마트에서 대행하여 파견근로자와 유사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잡급 판매직원의 급여액에 대해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7. 8. 3.과 2007. 12. 2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재휴업급여 산정 이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은 재요양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 재요양 당시에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은 2008. 1. 3.과 같은 해 1. 4. 영남대학교 병원과 문경제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후 진폐요양을 신청한 후 2008. 7. 22. 2차 정밀검진 결과 최초의 진단과 같은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진폐요양 신청 후 1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2008. 1.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부터 재요양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66140(의결일 : 2009. 11. 9.)

2. 피신청인 ○○○○ 공단

3. 결정사항

응급정밀검진 결과 폐암 판정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응급정밀검진 전에 이미 폐암 발병이 확인될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승인 전의 최초 폐암진단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8. 7. 22. 응급정밀검진(이하 '2차 정밀검진'이라 한다.) 결과 폐암 판정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 중에 있는 자로서 2008. 1. 3. 영남대학병원에서 이미 폐암 확진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최저임금 적용기준일인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폐암진단 일자를 소급하여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8. 7. 22. 2차 정밀진단 결과 폐암이 인정되었기에 폐암 진단일을 2008. 7. 22.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2007. 12.

14. 개정되고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신청인에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7. 22. 2차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현재 재요양 중에 있는 진폐증 환자이다.

나.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2년 7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진폐정밀검진 결과 2003. 11. 3. 장해등급 13급 12호를 받아 자택에서 생활해 오던 중 2008. 1. 3.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1. 4. 문경제일병원에서도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07. 12. 27. 검사한 흉부 X-선상 무기폐가 있었고, 기관지경검사(2007. 12. 27. 시행) 종괴가 관찰되고, 세포검사상 악성세포가 증명되어 당시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당시의 PET-CT에서도 폐암과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라. 신청인은 폐암진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폐요양을 위한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8. 1. 7. 정밀진단(이하 '1차 정밀검진'이라 한다.) 결과 폐암 등의 합병증이 없고, 기존 진폐장해 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각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이 2008. 7. 30.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폐암진단일을 2차 정밀검진일인 2008. 7. 22.로 보아야 하며 2007. 12. 14.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신청인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4. 판 단

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8. 1. 3. 영남대학교병원과 같은 해 1. 4. 문경제일병원에서 각각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피신청인 자문의도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07. 12. 27. 검사한 흉부 X-선상 무기폐가 있었고, 2007. 12. 27. 시행한 기관지경검사 결과 종괴가 관찰되었고, 세포검사상 악성세포가 증명되어 당시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당시의 PET-CT에서도 폐암과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그리고 2008. 7. 22. 2차 정밀검진판정에서도 원발성 폐암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의 진단일은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 폐암진단으로 요양대상 판정되었다면 그 무렵 재요양을 개시하였으리라고 추단된다.

다.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산정은 재요양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 재요양 당시에 시행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은 2008. 1. 3.과 같은 해 1. 4. 영남대학교 병원과 문경제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후 진폐요양을 신청한 후 2008. 7. 22. 2차 정밀검진 결과 최초의 진단과 같은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진폐요양 신청 후 1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2008. 1.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이 1차 정밀검진일인 2008. 1. 7.부터 재요양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산재보험법 부칙 제20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신청인은 2002. 1.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청구권은 '구「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2002년부터 연금을 수급할 때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진행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미신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을 제지하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의 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6년도에만 월평균 46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1천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68522(의결일 : 2009. 3. 30.)

2. 피신청인 국민○○공단

3. 결정사항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한 지 만 3년이 지난 후, 과거 조기노령연금 지급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 환수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국민○○공단은 2008. 2. 21.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환수처분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2. 2. ~ 2005. 2.의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구「국민연금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9. 12.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였는데 국세청에서 2007. 3. 9.자로 신청인에게 직권으로 2002. 1.부터 소급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2008. 2. 21.자로 2002. 2. ~ 2006. 2. 지급되었던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국세청에서 2007. 3. 9.자로 신청인에게 2002. 2.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당시 국민연금법상 신청인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당기간(2002. 2. ~ 2006. 2.) 동안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함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수영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2007. 3. 9.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2. 1.부터 소급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617-23-32634)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1988. 6.부터 1999. 6.까지 132개월 동안 총 16,266,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1999. 12.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 2006. 2. 조기노령연금 지급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15,334,680원)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2006년도 월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46만원이며, 그 외 환수처분기간, 예컨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 동안에는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 단

가.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4항은"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4는"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진행 및 완성 등과 관련하여,"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등 참조)하는 한편,“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는 권리남용의 항변 또한 ‘법률상 장애’에 준하는 객관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대법원 1999.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라.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은 2002. 1.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

였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청구권은 '구「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2002년부터 연금을 수급할 때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미신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을 제지하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세무서의 직권 사업자등록은 행정절차적인 것으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없으며 만일 세무서에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더욱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업무 태만에 따른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 가운데는 신청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저지, 방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통상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의 직권 사업자등록이 있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상 장애를 지적함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6년도에만 월평균 46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1천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시효로 소멸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수리 거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제1항 <별표2>에서 대학의 교사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고등교육기능을 수행하려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2>의 교사시설 구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8-063823(의결일 : 2009. 12. 2.)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보건대학 강의동 건물 지하에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과「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대학구내 커피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64조,「고등교육법」제4조,「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OO보건대학(이하 '보건대'라 한다.) 강의동 건물 지하에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신고를 수리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대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되어 있어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시행령상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 용도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보건대에 커피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고등교육법」에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지구로 지정된 대학 내에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과 영업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국토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보건대와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시설·집기 투자를 하고 진주시청 사회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과에 문의하였으나, 건축과에서는 학교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커피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미 지정된 대학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에 이미 지정된 대학에서는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커피전문점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요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공간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지,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용도변경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만을 근거로 용도변경 행위를 금지하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건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아 영업신고 수리 거부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같은 조 제4항 제6호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같은 조 제4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므로 보건대 건축물 일부를 커

피전문점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고대상인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한 후 영업신고를 마쳐야만 적법한 커피전문점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건축법」은 이러한 용도변경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에서 대학의 교사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마.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고등교육기능을 수행하려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2>의 교사시설 구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휴게음식점'이「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에 없다고 하여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이 '학교'의 일부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보건대 강의동 건물 지하에 용도변경을 통한 커피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규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라 하더라도 산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4-073218(의결일 : 2009. 6. 8.)

2. 피신청인 국민○○보험공단

3. 결정사항

치료종결 또는 요양 불승인 처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8. 7. 14.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2008. 9. 14. 신청인이 납부한 2008. 2. 19.부터

2008. 3. 19.까지의 공단부담금 135,560원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0. 00. 부천 오정구 소재 신한정밀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좌측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2008. 0. 00. 산재요양이 종결되었으나, 2008. 0. 00.부터 2008. 0. 00.까지 한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는바, 이때 발생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경우로 신청인에게 산재요양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신

청인이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및 보상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7. 0. 00. 경기도 00시 00구 소재 0000에서 근무하던 중 근골계질환인 '좌측 주관절 부위 외측상 과염'으로 2008. 0. 00.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08. 0. 00.부터 2008. 0. 00.까지 000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135,56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00지사에 요양비 대체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00지사는 승인기간 종료 후 진료비에 대하여 부지급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8. 0. 00. 수진자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라.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승인을 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08. 0. 0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한 공단부담금 135,560원을 납부하였다.

4.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는 "업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재요양신청을 포기하였으므로 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와 규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보험이익을 박탈한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

4호 규정은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급여가 보장되는 때에 이중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및 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재요양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노인장기요양 비급여 처분

피신청인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급여제공 기준을 따르지 않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미제출 한 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급여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정○○(90세)와 체결한 노인요양급여 내역 및 방문일정을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민원 제기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점,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계약 내용 및 요양급여 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추후 심사가 가능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비 비급여처분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12-058237(의결일 : 2009. 12. 22.)

2. 피신청인 국민○○보험공단

3. 결정사항

비록 입소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정○○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피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소이용 승인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장기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비급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09. 11. 24. 및 11. 30. 신청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비 비급여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제3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비록 입소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정○○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피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소이용 승인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장기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비급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수급자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

여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하면서 관할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급여제공 기준을 따르지 않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미제출 한 건’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장기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한 비급여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9. 10. 15. 기초생활수급자인 정○○(90세)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요양급여계약 및 방문일정을 등록하였으며, 노인요양 입소이용승인서 접수를 위해 관악구청을 2회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여 요양 입소이용승인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요양급여계약 및 방문일정 등록이 된 사항이므로 입소이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한 채 정○○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계약대로 실시하였고, 2009. 11. 4. 신청인은 정○○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분 요양비 지급청구서는 2009. 11. 24.에, 11월분 요양비 지급청구서는 2009. 11. 30.에 각각 반송하였다.

다. 이후 신청인은 2009. 11. 30. 정초화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서울 ○○구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같은 날짜로 입소이용승인을 받아 현재도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09. 12. 7.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2009. 10. 16.부터 11월 29일까지 정○○에게 제공한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9. 12. 14.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일 존재하지 않아 반송(비급여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임을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내역 및 방문일정을 등록할 때 관할 자치단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4. 판 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6조 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계약 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① 수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급여제공 기준을 따르지 않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미제출 한 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급여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정○○(90세)와 체결한 노인요양급여내역 및 방문일정을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민원 제기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점,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고 계약 내용 및 요양급여 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추후 심사가 가능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비 비급여처분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노인장기요양비 비급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동묘지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피신청인이 나무훼손에 대하여 건설사와 신청인을 중재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황도로의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소통차량의 사고가 우려되어 시행되었지만 제거된 경계표식은 재설치해 줄 계획이라고 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여 합의해결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58218(의결일 : 2009. 2. 23.)

2.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3. 결정사항

암치료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및 요양급여비 지급 불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공동묘지인 하늘쉼터 공사를 하였는데, 진입로에 화물차량이 통행하면서 진입로 주변 나무를 훼손하였고, 진입로를 포장하면서 신청인이 의뢰하여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경계표식을 제거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신청인이 나무훼손에 대하여 건설사와 신청인을 중재하여 2009. 3. 4. 보상(보상금액 89만원)이 완료되었고, 현황도로의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소통차량의 사고가 우려되어 시행되었지만 제거된 경계표식은 재설치해 줄 계획임을 알려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붙임의 '합의서'와 신청인과의 통화(2009. 3. 11.)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합의해결'로서 종결코자 함.

3. 처리결과 : 합의해결

교통안전공단 대출자금에 대한

피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조사 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생활자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통안전공단 대출금의 성격상 대출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적인 대출금은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실질구매력의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므로 대출기간인 교통사고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달(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이후에는 부채로 인정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60950(의결일 : 2009. 2. 24.)

2. 피신청인 ○○○○부

3. 결정사항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시 교통안전공단의 생활자금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50세의 나이로 17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과 생활하고 있음. 10년 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무이자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니 교통안전공단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우선 동생에게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다시 대출금을 받아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사업 중 생활자금대출(무이자)은 0~18세 미만의 유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2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임.

나. 신청인 자녀는 송00(22세), 송00(18세)로 큰아들 송00은 12,450,000원을, 둘째 아들 송00은 19,450,000원을 대출받았음.

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 응답 2-6번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생활자금의 소득산정여부에서 실질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출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면서 부채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도 모순인바, 동 대출금의 상환일이 시작되는 시점(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 이전에는 동 대출금의 총액을 부채로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9. 0. 00. 신청인이 2009. 0. 00. 생활자금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착오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자금대출금 31,900,000원을 반환하고 자녀가 만 26세가 되는 달부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

마. 피신청인은 2009. 0. 00. 대출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적인 대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실질구매력의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므로 대출기간인 교통사고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달(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이후에는 부채로 인정가능하다는 내용은 관련 지침해석을 개정하여 보장기관에 내용을 시달할 계획임을 알려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자동차에 압류채권이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고,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중형승합차)이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이면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무상거주가 확인되어 보험료가 조정되고 최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5-040647(의결일 : 2009. 5. 19.)

2. 피신청인 국민○○보험공단

3. 결정사항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 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5년 이상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가 압류되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무상거주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차량이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고, 폐차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2003. 2.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였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후 체납 보험료는 약 300만원(2001. 9. ~ 2009. 5. 90개월)이며, 이를 신청인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3. 사실관계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 조정 전 건강보험료: 43,830원
- 조정 후 건강보험료: 36,660원

4. 처리결과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생

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자동차에 압류채권이 있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중형승합차)이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이면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함.

다. 신청인과 전화상담에서 신청인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체납 건강보험료가 소급하여 조정되었음. 또한 최대한 분할납부를 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이해하여 신청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이해하였음.

공제보험의 요양급여비 지급요구자 전화 원상복구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본인 신청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명단 통보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전화요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1-012209(의결일 : 2009. 11. 5.)

2. 피신청인 ○○○○위원회위원장(KT), 국가○○처장

3. 결정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화요금 감면받고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수용 불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항 및 법 제1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데 피신청인(KT)이 임의로 국가유공자 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으로 변경하였으니 이를 원상복구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1994. 7. 13. 거택보호자 할인을 요청한 데 대해 국가유공자로 전산 착오입력하고 요금을 감면해 오던 중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이 1996. 3. 11. 통보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하니 신청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거택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에 대해 국가유공자 전화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심사 결정 주관 기관인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결정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사실관계

1) 신청인의 전화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전화로 전환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1988. 6. 30. 신청인 명의로 피신청인(KT)에게 일반전화를 가입하였고, 1992. 12. 11. 장애자(2급) 요금할인을 청구하여 혜택을 받아 오다가 1994. 2. 2. 신청인의 모 사망

후 연산제7동장은 신청인을 거택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1994. 7. 13. 본인의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연산 7동에서 발급받아 같은 날 피신청인(KT)에게 제출하고 요금감면 신청을 함.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요금감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으로 잘못 코드입력하고 관리해왔고, 1996. 3. 11. 부산보훈지청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당시 KT 담당자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향후 거택보호대상자로 요금감면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신청인은 그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였는데 피신청인이 임의로 거택보호대상자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 감면 신청은 본인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명단 통보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매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KT에 통보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KT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음.

2)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1942. 1. 12. 출생하였고, 신청인의 첫째 오빠(임병기)는 한국전쟁 당시 산청경찰서 순경으로 재직하였고 1950. 7. 25. 공비토벌 중 전사함. 둘째 오빠(임병주)는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공비토벌 중 1950. 8. 24. 전사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양기순)는 1950. 6.25전쟁때 순경인 오빠 둘을 은닉해주었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빨치산에게 참혹하게 고문당하였다고 하고 그 후유증으로 실어증, 기억력장애, 좌측수지마비, 하지운동장애 등의 불구자가 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모와 평생 살아왔고 독신으로 현재 67세임.

나. 신청인의 첫째 오빠인 망 임병기의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는 1961. 8. 28. 원호처에 망 임병기의 처가 등록되었다가 1962. 12. 4. 재혼하여 자인 임정은이 등록되었다가 성년에 도달하여 다음 자인 임재근이 등록되었다가 성년에 도달하여 신청인의 모(양기순)가 1971. 4. 1. 유족으로 등록되어 1994. 2. 2. 양기순 사망 후, 다시 임정은으로 유족 순위가 변경된 상태임.

다. 신청인의 둘째 오빠인 망 임병주의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는 1961년 양기순이 망 임병주의 처의 개가확인서를 제출하고 망 임병주의 유족으로 양기순이 등록되었다가 1994. 2. 2. 사망으로 제적된 상태임.

라. 신청인은 모 사망 후인 1994. 12. 망 임병기, 망 임병주의 연금수급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망 임병기의 장남 임정은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부산지방보훈청에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성년제매 심신장애 인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1995. 4. 6. '전사자의 제매가 미성년일 때부터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성년제매도 심신장애 제매(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부산지방보훈청은 1995. 4. 14.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같은 법에 의한 미성년제매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하여는 1. 신청인의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하고 2.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여야 하는 데, 신청인의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성년남자인 '임병호(당시 59세)'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결과 통지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8. 4. 24.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1999. 8. 25.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00. 1. 14. 원고 항소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01. 11. 13. 원고 상고 기각, 2002. 2. 26. 원고 재심의 각하, 2002. 5. 28. 원고 재심의 각하한 바 있고, 부산고등법원은 2002. 8. 30. 원고 재심의 각하함.

4. 처리결과

1) 신청인의 전화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전화로 전환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KT)을 상대로 자신의 국가유공자 전화를 생활(거택)보호대상자 전화로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단순한 사무착오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요금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를 국가유공자 전화로 관

리했던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이를 거꾸로 부산보훈지청에 제시하여 신청인 자신이 국가유공자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전화 복귀 요청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됨을 안내

2)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그 유족이 되어야 하고, 이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6항은 “제1항 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보상금)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음.

나. 신청인이 1998. 7. 31. 망 임병기, 임병주의 여동생으로서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과 연금지급을 신청한 데 대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인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셋째 오빠 임병옥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임병옥의 당시 나이가 62세(현재 73세)인 점은 '60세 이상이더라도 형제자매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유족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률 조항에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국가유공자 유족이 될 수 있도록 한 점과 형평이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는 하나 그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연금 지급 신청을 다시 해볼 것을 안내

3) 그밖에 조사 규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한국전쟁 중 빨치산에 의한 고문으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거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법령상 신고요건이 충족한 이상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7-060465(의결일 : 2009. 10. 12.)

2. 피신청인 ○○광역시장

3. 결정사항

관련 법령상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공급과잉이라는 판단에 의해 수리거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6. 30. 신청인에게 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의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그 설치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3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제한 요청 공문과 요양보호사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2008. 3. 1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낸 요양보호사의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되어 난립이 우려되니 설립을 제한해 달라는 공문 및 그 당시 지역 내 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8. 3. 26.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설립을 일관되게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의 평등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특정인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제한 요청('08. 3. 11.)' 공문과 그 당시 지역 내 교육기관 설립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내부지침을 통하여 2008. 3. 26.부터 현재까지 신규설립을 제한해오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9. 6. 2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요양보호사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2009. 6. 30. 그 신고서에 대한 수리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09. 7. 22.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문은 사전적·간접적 제한 규정 일뿐 직접적 제한규정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요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 단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시·도지사에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관청에 대한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법령상 신고요건이 충족한 이상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도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류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4. 5. 25. 선고 2003구단 4488판결 참조),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참조).

라. 피신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제한 요청 공문과 그를 근거로 한 자체 지침에 의해 설립신고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의 평등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따라서「노인복지법」규정과 관련 판례 및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2009. 6. 30. 신청인에게 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수리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5장

재정·세무분야

제 목	면수
• 상속세 부과 처분	322
• 부동산 압류해제	329
•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의	340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348
•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356
•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취소 및 환부	364
• 1세대 1주택 비과세	372
• 취득가액 재조사 요구	383
•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과세요청	391
• 지체상금 부과처분 조정	400
• 부동산압류해제 및 공매대금 반환	410
• 특별소비세 환급요청	422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추가요청	427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429
• 파산면책자 특례보증요구	432

상속세 부과 처분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에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국세심판원 2007. 9. 21. 결정 국심2007중1642 외 다수 같은 뜻)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7-019659(의결일 : 2009. 8. 31.)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구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등 특례대상인데, 동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4. 주 문

○○세무서장은 2004. 5.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2002년 귀속 상속세 2,950,398,209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고용안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상당액(1,442,652,3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54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부칙 제9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2. 10. 2.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03. 4. 22. 피신청인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1998. 7. 29. 취득한 고용안정채권(이하 '이 민원 채권'이라 한다.) 액면가액 5,000,000,000원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경과분 표면이자 1,442,652,360원(이하 '쟁점 이자'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나, 이 민원 채권에 대한 원금 및 표면이자는 모두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 이자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채권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상속세는 면제되나 면제대상금액은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노환으로 2002. 10. 23.(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03. 4. 22. 피신청인에게 상속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상속재산 내역		제공제 내역		상속세 계산 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 계	5,357	합계	567	과세표준액	4,790
부 동 산	3,015	일괄공제	500	산출세액	1,935
금융재산	1,342	배우자공제		세액공제	193
처분재산	1,000	장례비,채무	5	신고납부세액	1,742
		금융재산공제	62	현금납부	1,742

나. 이 민원 채권은 액면금액 5,000,000,000원의 무기명 고용안정채권으로 피상속인이 1998. 9. 27. 매입하였으며, 신청인과 차남인 신청외 김○○가 각 2,500,000,000원씩 유증받아 2003. 9. 27. 만기에 신청인과 김○○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04.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액은 상속세 면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상당액인 쟁점 이자(1,442,652,360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4. 5.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2,950,398,209원을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면, 이 민원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다. 신청인이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쟁점 이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쟁점 이자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에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국세심판원 2007. 9. 21. 결정 국심2007중1642 외 다수 같은 뜻)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은 신청인과 유사한 심판청구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지의 선 심판결정례를 다수 배출했으나, 국세청은 최근까지도 예규(국세청 예규 2008. 2. 11. 서면4팀-336 외 다수 동지)를 통해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세무관서 및 납세자에게 회신하는 등 상급 심판결정에 반하는 예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특정채권이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바,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8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유권해석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특정채권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인이 2009. 2. 6.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1,700,000원 전부를 이○○에게 지불한 사실이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대출금상환거래전표 및 이○○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2009. 2. 6.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은 이○○에게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의 체납발생 사실 및 피신청인의 이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이 양도한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뢰하였고, 신청인이 이○○에게 지급한 매대대금 중 ○○은행에서 발행하여 지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조사가 가능한 점, 신청인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을 추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의 체납처분 회피를 돕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국세청도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국세청 2005. 2. 24. 심사기타 2004-0041 결정, 국세청

2005. 7. 25. 심사기타 2005-0065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부동산에 행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9-075313(의결일 : 2009. 12. 7.)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공부상 명의자의 체납을 사유로 압류한 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2009. 2. 9. 행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67 대지 30,091.5㎡중 79,011분의 16.23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지방세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67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으로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기로 협의한 후 서울 ○○구 ○○동 167 대지 30,091.5㎡중 79,011분의 16.23을 소유(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한 신청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지분 6.18㎡를 41,700,000원에 취득하기로 2009. 2. 6. 이○○과 계약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계약일에 지불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9. 2. 9. 이전받았다. 피신청인은 이○○에게 2008. 12. 31. 납기 양도소득세 59,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이 이를 체납하자 2009. 2. 9. 체납처분을 사유로 이 부동산에 압류등기(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신청인은 이○○과 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압류등기 전인 2009. 2. 6.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2009. 2. 6.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09.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9. 2. 6.부터 이 부동산은 신청인 소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 2. 9.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에게 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청산일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소

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 처분 당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이었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 서울 ○○구청장에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구청장은 이 부동산의 현금청산가액을 41,7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결과 등을 근거로 이○○에게 2008. 12. 2. 및 2009. 1. 19. 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신청인과 이○○은 2009. 2. 6. 이 부동산 매매대금 41,700,000원을 2009. 2. 6.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주합의이행각서 및 매매계약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은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41,700,000원을 2009. 2. 6.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이 ○○은행 ○○지점에 상환할 대출금 15,537,240원을 2009. 2. 6. 10:01~02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26,162,760원은 ○○은행에서 2009. 2. 6.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1매 10,000,000원(바가○○○○), 1매 16,162,760원(바가○○○○)}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의 대출금상환거래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100-024-○○○○)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

였으며, 신청인은 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2009. 2. 6.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이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를 2008. 6.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3,262,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2008.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2008. 11. 30. 납기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 반송으로 납부기한을 2008. 12. 31.로 변경하였고 이○○이 이를 체납하자 2009. 2. 9. 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9. 3. 30. 이○○이 사해행위 혐의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 양도대금 228,000,000원의 사용처 추적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계약현황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현금청산 대상자의 계약현황 등

(단위: 원)

구분	계약자	매매대금	계약일	잔금지급일	비고
상가	정윤*	44,321,000	2009. 1. 30.	2009. 1. 30.	
아파트	장진*	356,600,000	2009. 1. 30.	2009. 1. 30.	
상가	이광*	44,173,000	2009. 1. 30.	2009. 1. 30.	
아파트	전평*	356,500,000	2009. 1. 30.	2009. 1. 30.	
상가	이화정	41,700,000	2009. 2. 6.	2009. 2. 6.	신청인관련

* 현금청산대상자는 17명이며 이화정은 10번째로 협의를 완결함.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청산일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시정불가'로 결정하였다.

3. 판 단

가.「국세징수법」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9. 2. 6.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1,700,000원 전부를 이○○에게 지불한 사실이 신청인 명의의 ○○은행 통장,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대출금상환거래전표 및 이○○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2009. 2. 6.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917,400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은 이○○에게 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의 체납발생 사실 및 피신청인의 이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이 양도한 서울 ○○구 ○○동 345 삼호○○ 305호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뢰하였고, 신청인이 이○○에게 지급한 매대대금 중 ○○은행에서 발행하여 지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조사가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을 추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의 체납처분 회피를 돕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국세청도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결정(국세청 2005. 2. 24. 심사기타 2004-0041 결정, 국세청 2005. 7. 25. 심사기타 2005-0065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부동산에 행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지방세법 제105조【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윤○○의 경우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 했던 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보장기관(요양원)을 통하여 수급물품 및 급여 등을 지급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신청인 장모와 같은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시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보철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윤○○의 세대분가는 정부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 입소목적 이외 윤○○의 주소를 이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윤○○가 세대를 분가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6-030556(의결일 : 2009. 8. 4.)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볼수 없어 시설(요양원)입소가 불가피하여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8. 8. 18. 신청인과 신청외 윤○○이 공동 소유한 19루96○○ 2008년식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행한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1,114,82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8. 3. 17. 장애인인 장모(윤○○, 뇌병변장애 1급)와 공동명의로 19루96○○ 2008년식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2008. 7. 25. 장애인인 장모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원으로 전입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세대분가가 이루어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장모의 경우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소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사항으로 세대분가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장모(윤○○)는 2007. 10. 25. 뇌병변 1급 장애자로 등록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8. 3. 19. 이 민원 자동차를 신청인의 장모와 공동명의로 15,926,000원에 취득·등록하고서 「○○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다. 신청인의 장모는 2008. 7. 2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연립 A-201 (이하 ‘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구 신내동 ○○○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요양원에 입소하여 한달여 거주하다 심부전 등 노인성 질환 악화로 2008. 8. 31. 사망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명의자인 신청인의 장모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과세예고서를 받고

2008. 8. 18.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8. 9. 9. ○○시에 이의신청과 200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니고, 입소자의 선택사항으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요양원의 개인기록카드에 따르면, 공동명의자 윤○○(1917년생, 당시 92세)은 슬하에 3녀를 두었는데, 큰딸은 고령으로 연금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딸은 9년전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는 막내딸과 택시운전을 하는 사위인 신청인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발하여 왔으나,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 및 기억력의 상실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장모도 입소일(2008. 7. 25.)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요양원에서 “2009. 7. 현재 입소자 전원(230여명)의 주소지가 당해 요양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계속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요양원에서 입소자의 시설적응을 위해 입소 후 한 달간 최대한 면회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8. 7. 25.~8. 31.까지 입소기간 중에 면회 회수는 4회이고, 이중 3회가 신청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세대분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그간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와 환부를 시정권고 하였고(2BA-0706-004487, 2AA-0811- 051686 등), 과세관청은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과세권자에게 부여된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함으로써 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해 왔다.

3. 판 단

가.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생략)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단서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의 예외로 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법 제12조는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소이전은 주민등록법상 강제규정이 아닌 입소자의 선택사항으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이므로, 세대분가시 감면분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한 것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차량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한 것은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애인 본인 내지 그 가족명의로 등록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후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동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처럼 동거가족이 변경되거나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외에 세제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본인의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의료?재활 및 요양시설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 민원을 보건대, 신청인 장모의 경우 심부전 질환 및 노인성 치매의 진행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돌볼 수가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 했던 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요양원)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보장기관(요양원)을 통하여 수급물품 및 급여 등을 지급 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신청인 장모와 같은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은 선

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요양원에 입소(2008. 7. 25.)하여 사망시(2008. 8. 31.)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으로 치료기구 전달, 병원이송 등 보철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 장모의 세대분가는 정부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 입소목적 이외 신청인 장모의 주소를 이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장모가 세대를 분가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8. 8. 18. 이 민원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취득세 318,520원 및 등록세 796,300원 합계 1,11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1,114,82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이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실제 판넬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의 공장건설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 공장 전경 사진에 나타나 있는 녹색 지붕과 녹색 및 은빛 벽체의 판넬로 지어져 있는 공장 모습과 견적서 상 품목과 유사한 점,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이○○의 명의로 유명○○ 박○○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입금표와 견적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2005. 5. 16. 입금표 하단에 '15,600,000'이 기재되어 있고 2005. 5. 17. 5,000,00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으며 2001. 5. 17.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결제대금 합계액이 23,000,000원으로 2001. 5. 16.자 입금표상 세금이라 기재되어 있는 2,400,000원을 제외하면 20,600,000원이 되며 이는 견적서의 정산금액과 일치하고 비록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앞서지만 견적서 작성 후 정산금액이 그 이후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단순히 가공거래라고 추정만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조세심판원 2009. 4. 20. 결정 조심 2009서308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실거래 없이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이 민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대금 결제 증빙자료의 합계 및 견적서의 금액이 각 차이가 있고 2001. 5. 28. 이○○의 명함 이면 기재 내용이 '영수'한 것인지 '잔금'을 확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

로 신청인이 유명○○로부터 구입한 공급가액은 견적서상의 29,376,15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명○○로부터 공급받은 판넬가액을 견적서상 공급가액인 29,376,150원으로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24250(의결일 : 2009. 8. 10.)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된 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6. 8. 31. 납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구입한 판넬가액 29,376,150원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소득세법」 27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건설을 운영하며 2001년 1기 중 ○○판넬로부터 공급가액 39,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31. 납기로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을 신청인에게 각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로부터 수주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영업담당 이○○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국세청은 견적서 작성일과 대금결제일의 차이 및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2001. 3. 20. 1차 가견적을 받은 후 판넬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2001. 5. 8. 재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결제 관행에 따라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은 것이다. 신청인은 일반 건축업자와 달리 현장 시공인부를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각 거래처별로 해당 원자재 납품에서 시공까지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었으므로 다른 건축업자의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을 신뢰하여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521-2 소재 일반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을 2000. 11. 13. 개업하여 2005. 12. 3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판넬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판넬로부터 수취한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거래가 없었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판넬 영업부장 이○○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은 2001. 3. 경기 ○○군 ○○면 ○○리 산 240에 ○○의 공장을 21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0. 18. 피보험자를 ○○ 박○○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보험기간 : 2001. 9. 4. ~ 2003. 9. 3., 계약금액 : 210,000,000원, 하자보증금율 : 3%)을 가입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확인된다. ○○ 공장 건물은 녹색지붕과 은색 및 녹색의 벽체로 전체가 판넬로 지어져 있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 공장 현황 사진과 건축물 대장에서 나타난다.

(2)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2001. 5. 8. 및 2001. 3. 20. 날짜로 각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견적서에는 공급자가 ○○판넬 박○○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 밑에 '영업담당·부장 이○○'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견적서는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및 비고로 각 구분되어 있고 그 중 품목은 녹색지붕, 은회색벽체, 녹색벽체 등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001. 5. 8.자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29,376,150원, 수금 20,600,000원 및 잔금 8,776,15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01. 3. 20.자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25,787,900원으로 각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라며 아래 <표>와 같이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 및 이○○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2001. 5. 16. 자 입금표 하단에는 '15,600,000'이 기재되어 있다.

<표> 이 민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결제 내역

(단위 : 천원)

결 제 일	금 액	결제증빙	수령인	비고(기재내용)
2001. 3. 20.	2,000	입금표	이○○	
2001. 3. 29.	3,000	입금표	이○○	
2001. 5. 16.	3,000	입금표	이○○	세금 2,400, 판넬대금 600
2001. 5. 17.	5,000	입금표	이○○	운반비 300, 판넬대금 4,700
2001. 5. 8.	10,000	무통장입금증	박○○	이○○ 명의로 송금
2001. 5. 28.	7,000	명함이면	이○○	잔금 7,000 이○○ 서면
2001. 5. 29.	5,000	명함이면	이○○	5,000 영수함
합 계	35,000			

라. 신청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99,090,916원, 필요경비 198,886,358원 및 소득금액 204,558원으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상 확인되나 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견적서가 2001. 5. 8. 작성된 반면에 대금이 지급된 날은 2001. 3. 20. 및 2001. 3. 29.로 되어 있고 2001. 5. 8. 박○○에게 송금된 10,000,000원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견적서를 받은 즉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신고 부가율이 16.2%로 동업종 전국 평균 부가율 66.5%보다 훨씬 낮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3. 판 단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308 판결 등 참조).

나. 신청인은 ○○건설을 운영하며 2001년 1기 중 ○○판넬로부터 공급가액 39,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31. 납기로 20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8,423,670원 및 2007. 5. 31. 납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130원을 신청인에게 각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로부터 수주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영업담당 이○○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고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국세청은 견적서 작성일과 대금결제일의 차이 및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판넬로부터 2001. 3. 20. 1차 가견적을 받은 후 판넬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2001. 5. 8. 재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결제 관행에 따라 이 민원 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받은 것이다. 신청인은 일반 건축업자와 달리 현장 시공인부를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각 거래처별로

해당 원자재 납품에서 시공까지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었으므로 다른 건축업자의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을 신뢰하여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다. 신청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등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신청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과 같이 신청인이 이 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며, 이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시점 이후에도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알렸음에도 체납정리과정에서 단순히 사업장을 무단으로 전출하였다는 사유(이 건 계약서에서 이 거래처의 사업장이 경기 남양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됨)만으로 직권폐업되었는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같은 뜻),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국세청 예규 2002. 7. 8. 심사부가 2002-105호 같은 뜻)임에도 ○○세무서장은 이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무(사업장 정정)를 해태한 사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의무를 무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마땅히 적극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방치한 채, 공사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처분 외에는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2-050868(의결일 : 2009. 3. 2.)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직권폐업한 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2008년 2기 ○○토건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0. 4.경부터 ○○산업(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 6. 9. 용인토건(이하 '이 거래처'라 한다)과 현 사업장소재지인 경기 ○○○시 ○○동 461-3 소재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0,000,000원, 이하 '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라고 하여 매

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경정(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였으며, 대금도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시한 건설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210,000,000원이나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의 언급이 없어 21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면 대금증빙내역의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공사에 따른 대금운용이 연계된 내역에 대한 증빙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고, 신청인은 거래시점에 이 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임을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휴폐업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거래처가 2005년 12월 직권말소자로 직권말소된 이후 4과세기간(2008년 1기 포함)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바 없어 직권말소 취소행위나 새로운 사업자등록 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쇼핑백 제조업체인 민원사업장을 1990. 4.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08. 6. 9. 이 거래처가 시공한 이 건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신청인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거래처가 2005. 12. 29. 폐업하여 이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3,601,180원(당초 환급신고분 20,653,543원 중 20,000,000원 환급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이 거래처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회신한 직권폐업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세무서의 체납담당부서인 징세과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거래처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장소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이전이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여 세원관리과로 2005. 12. 28. 이 거래처에 대한 직권폐업을 의뢰하자 2005. 12. 29.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이 2005년 2기 확정신고, 2006년 2기 예정신고 및 2006년 2기 확정신고를 각 이행하였음이 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된다.

3) 이 거래처의 미결과세자료에 의하면, 민원사업장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2008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200,000,000원)가 2008. 12. 5. 생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2008. 3. 9. 작성된 민원사업장의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공사명 : ○○산업 ○○동 461-3 신축건축공사

2) 착공년월일 : 2008년 3월 10일

3) 준공예정년월일 : 2008년 4월 20일

4) 계약금액 : 일금이억일천만원정

5) 계약보증금 : 일금삼백만원정

6) 수급인 : ○○도 ○○○시 ○○읍 ○○리 631-1 ○○토건 황○○

마.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8. 3. 14. 30,000,000원, 2008. 4. 1. 100,000,000원 및 2008. 4. 22. 10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각 황○○의 ○○은행 계좌(110-208-XXXXXX, 110-238-XXXXXX)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 단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 회수나 관보게재 등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그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매입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공급자(매출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공급받는자(매입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공급자를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직권폐업한 사업자인 이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신청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도 이 거래처 대표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 건 공사계약서 상 공

사대금 2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이 2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의미하여 총 공급대가는 231,000,000원으로서 신청인이 이 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액 230,000,000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건물 완공 이후에 사업장소재지를 동 장소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민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내역과 같이 신청인이 이 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거래처의 대표자와 면담한 결과 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이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직권폐업 이후에도 이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국세청홈페이지의 휴폐업여부조회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에게 이 거래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시점 이후에도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알렸음에도 체납정리과정에서 단순히 사업장을 무단으로 전출하였다는 사유(이 건 계

약서에서 이 거래처의 사업장이 경기 남양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됨)만으로 직권폐업되었는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같은 뜻),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국세청 예규 2002. 7. 8. 심사부가 2002-105호 같은 뜻)임에도 ○○세무서장은 이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무(사업장 정정)를 해태한 사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의무를 무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마땅히 적극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방치한 채, 공사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처분 외에는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가산세 부과 취소 및 환부공제급여 [illegible]

소득세할주민세의 납부서식에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시 조치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및 이 민원 주민세를 함께 신고받은 ○○세무서에서도 이를 거부 없이 수리한 채 전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민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밝혀 안내하지 않은 점, ○○시 ○○구청에서도 신청인의 이 민원 주민세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시 ○○구청에 신고·납부하여 피신청인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국내의 주소지가 있었던 점,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성실하게 이 민원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신청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해태를 탓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5-050199(의결일 : 2009. 8. 4.)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납세지 착오로 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이 2006. 12. 12. 신청인에게 행한 인천 ○○구 ○○동 ○○-○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910,330원 합계 1,10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1,102,3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6. 5. 20. 인천 ○○구 ○○동 ○○-○ 대지 186.8㎡(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5. 23.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이민 전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이 재외국민에 대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라면서 가산세까지 더하여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공매를 추진하여 공매 중지를 위해 부득이 가산세까지 납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이 ○○구청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세를 부과하고 그 사실이나 공매에 대한 통지도 없이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환부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지방세법」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재외국민 즉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비거주자이고 이 민원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관할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납세고지서를 신청인의 최종 국내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되었으므로 공시송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6. 5. 23. 이 민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4,777,450원을 이민 전 최종 주소지(서울 ○○구 ○○동 ○○○-○○)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 민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피신청인은 2006. 8. ○○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료와 주민세 수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 12. 12. 양도소득세할주민세 4,777,530원(이하 '이 민원 주민세'라 한다.), 가산세 191,970원, 합계 4,969,5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6. 12. 13. 납세고지서를 신청인의 이민 전 최종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 1. 5. 공시송달(○○시 ○○구 공고 제2007 -9호)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7. 11. 29. 이 민원 주민세 체납을 원인으로 신청인 소유 서울 서초구 ○○동 ○○-○ 전 1,309㎡(이하 '공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8.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추진하였고, 신청인이 2008. 11. 20. 이 민원 주민세 체납액 6,430,440원(가산세 191,970원과 가산금 1,460,940원 합계 1,652,910원 포함)과 체납처분비 1,163,060원(공매집행비용 등) 합계 7,593,500원을 납부하자, 공매를 중단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8. 12. 2. 이민 전 최종 주소지 관할 ○○시 ○○구청에 납부하였던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328,060원(환부이자 550,610원 포함)을 환부받았다.

바. 신청인은 2008. 6.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민원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세지 착오납부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환부를 거절하였다.

사. 신청인의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1984. 4. 1. 현지(영국)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차(9회) 왕래가 있었으나 2004. 9. 10.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아. 신청인은 2006. 5. 9. 이 민원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 대금의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 일체의 권한을 하○○(누나, 서울 ○○동 ○○-○ ○○○○ ○○○○)에게 ○○주재 재외공관장(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위임장으로 위임하였다. 다만, 지방세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함은 없었다.

자. 피신청인의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양도전 5년)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민 전 최종 주소지와 별도로 하○○의 거소지를 납부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소지로 관리하면서 이곳으로 매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모두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었다.

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납세지 착오납부 민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관청에 가산세 부과취소 및 환부를 시정권고 하였고(2004이의9083, 2BA-0709- 004798, 2CA-0708-048389, 2BA-0801-046233 등), 과세관청은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과세권자에게 부여된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함으로써 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해 왔다.

3. 판 단

가. 구「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3항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27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법적 성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중 하나로서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의 일종이라는 것이며, 세금형식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 또는 과태료의 형식으로 과하여지는 전통적인 행정벌과 구분되는 간접적 강제제도로서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인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95누17274 등 다수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민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는 단순히 과세·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 지정을 의미함에 불과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3조에서 납세지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적법한 납부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3조와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위 국세의 처리례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더욱이 「지방세법」 제17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의 납부서식에 납세지 착오 신고·납부시 조치에 관한 안내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및 이 민원 주민세를 함께 신고받은 ○○세무서에서도 이를 거부 없이 수리한 채 전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민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밝혀 안내하지 않은 점, ○○시 ○○구청에서도 신청인의 이 민원 주민세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시 ○○구청에 신고·납부하여 피신청인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

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국내의 주소지가 있었던 점,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성실하게 이 민원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신청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해태를 탓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06.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민원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1,460,940원 합계 1,652, 910원에서 환부이자 550,610원을 제외한 가산세 191,970원과 이후 발생한 가산금 910,330원 합계 1,102,300원을 부과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1,102,3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함에도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모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한 점,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정○○가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한 점, 이 민원 주택의 취득계약 및 취득세 신고일이 2002. ○. ○○.로 같은 날이고 취득계약서에 중개인을 정○○로 기재한 점, 정○○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와 이 취득계약서,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정○○는 2005.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불가로 2005. ○. ○○.부터 2005. ○. ○○.까지 8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 ○○,○○○,○○○원을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외 방수공사업체 현대○○ 대표 방○○이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인 정○○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2007. ○. ○○. 공사대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신청외 한○○이 2007. ○. ○○.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손○○은 2007. ○. ○○.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원을 지급받았음을 진술한 점, 정○○는 이 민원 주택으로 2007. ○.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도장을 정○○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11.6평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11.4평의 미등기 반지하인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 및 정○○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

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3-020455(의결일 : 2009. 6. 5.)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신청인 명의로 신고된 미등기 주택의 실제보유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 ○. ○○.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원 및 2009. ○. ○○.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9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 ○○동 226-16 삼

성○○ 지하3호 토지 32.95㎡ 건물 38.41㎡(이하 '이 양도 주택'이라 한다.)를 1999. ○. ○○.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 ○. ○○. 양도한 후 이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2008. ○. 신청인 명의로 인천 ○○구 ○○동 231-75 대진○○ 102호 건물 37.64㎡(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자임을 안내하여 2008. ○. ○○. 이 양도 주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 중 ○,○○○,○○○원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 ○○.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민원 처분 ①'이라 한다.)하였다가, 신청인이 이 양도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경락가액 ○○,○○○,○○○원으로 재계산하여 2009. ○. ○○.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민원 처분②'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인 남편 여동생인 정○○(이하 '정○○'라 한다.)이나 2002. ○. ○○. 정○○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천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허락만 하였을 뿐 이 민원 주택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 이 양도주택에 대한 이 민원 처분① 및 ②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실소유자 입증서류의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정○○에 대한 채무상환의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민원 주택이 신청인 소유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피신청인의 신고안내에 따라 2008. ○.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원으로 하여 2007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 ○○. 신청인이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 중 ○,○○○,○○○원만 2008. ○.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 ○○. 납기로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양도주택의 취득원인이 경락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재계산한 후 추가로 양도소득세 ○,○○○,○○○원을 2009. ○. ○○. 납기로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인천 ○○구청장이 보관중인 이 민원 주택에 대한 2002. ○. ○○.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취득납세자를 신청인으로, 전소유자를 정○○로 기재한 후 정○○가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첨부서류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신청인도 정○○로 표기되어 발급되었고, 이 민원 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을 2002. ○. ○○.로, 매매대금을 일시불 ○○,○○○,○○○원으로, 매수인을 신청인으로, 매도인 및 중개인을 정○○로 하여 작성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토지지분이 없는 반지하의 미등기주택이며, 인천 ○○구청장이 이 민원 주택에 부과한 2001년 이후 재산세 및 취득세는 <표 1>과 같다.

<표 1>이 민원 주택에 대한 2001년 이후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 원)

납세자	세목	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액	비고
정○○	재산세	2001.6.30.	2,708,480	15,150	2001.6.20. 납부
	재산세	2002.7.31.	2,637,824	14,760	2002.7.31. 납부
강○○ (신청인)	취득세	2002.12.26.	10,000,000	200,000	2002.12.11. 납부
	재산세	2003.7.31.	2,661,376	14,890	시효소멸
	재산세	2004.8.2.	3,432,768	21,250	2004.9.24. 납부
	재산세	2005.7.31	3,432,768	17,770	체납

※ 2006년부터 소액부징수로 재산세 과세제외됨.

라. 신청인과 신청외 손○○(이하 '손○○'라 한다.)는 2009. ○. ○○. 이 민원 주택을 매매대금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 ○○,○○○,○○○

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는 “2001. 6. 25.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정○○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 28. 이 민원 주택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정○○는 2002. 1. 18. 신청외 손○○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과 같은 빌라 201호에 1999. 8. 9. 전입하였다가 2007. 11. 5.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급 대상자이다.

바. 신청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은 “2001. 6월경 이 민원 주택을 전세보증금 ○○,○○○,○○○원에 임차하기로 정○○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0.까지 거주하다가 전세보증금을 정○○로부터 반환받아 이사하였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고, 전세보증금으로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사. 정○○는 ○○은행 카드대출 1,912,771원, ○○카드 7,677,301원 및 ○○은행 일반자금대출 9,287,909원 등 합계 18,877,98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2005. 7.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120개월 동안 월 155,715원을 위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며, 2007. 10. 1. 신청외 한○○(010-○○○○-○○○○)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한○○에게 교부하였다.

아.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날

인한 도장을 우리 위원회의 현지확인 조사시 정○○가 보관하다가 제출하였고, 정○○가 다니는 인천 ○○교회 권사 김○○은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을 담보로 ○○생명보험으로부터 4,005,050원,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 11. 2. ○○카드 및 ○○카드의 채무 7,260,340원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009. 2. 10.까지 3,466,540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양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차. 정○○는 “이 민원 주택은 본인이 소유자이나 남편과의 이혼 후 무허가 미등기부동산이지만 금융권의 채무 등으로 압류가 될지 몰라 신청인에게 명의를 빌려 신청인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인천 ○○구 ○○동 236-7에서 현대○○(121-○○-96997)를 운영하는 신청외 방○○은 “이 민원 주택의 하수도 공사를 소유자인 ○○엄마(정○○)로부터 의뢰받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07. 3. 30. 공사대금 ○○○,○○○원을 정○○로부터 받았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면서 정○○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타. 신청인은 이 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009. 3. 2.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용불가 통지를 하였다.

○ 정○○가 이 민원 주택의 전 소유자인 신청외 도○○과

2001. 8. 13. 작성한 이 민원 주택의 취득계약서 및 영수증은 신청인의 부탁에 의해 도○○이 재작성한 것임을 신청인이 시인하였고, 정○○와 손○○이 작성한 이 민원 주택의 임대계약서는 손○○의 연락처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010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2001. 8. 13. 정○○가 ○,○○○,○○○원에 취득한 이 민원 주택을 약 1달후인 2001. 9. 10. 전세보증금 ○○,○○○,○○○원에 임대한 점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 이 민원 주택을 2009. 1. 28. 취득한 손○○가 작성한 차용증상 자금 대여일이 2001. 6. 25.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당시는 정○○가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

○ 정○○는 이 민원 주택의 임차인인 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원을 ○○카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경아가 ○○카드로 2005. 1. 3.부터 2005. 5. 9.까지 8차례에 걸쳐 ○○,○○○,○○○원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보증금 반환시기까지 약 2년간 현금으로 ○,○○○,○○○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소득세법」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함에도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모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한 점,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정○○가 작성하여 날인한 후 인천 ○○구청장에게 제출한 점, 이 민원 주택의 취득계약 및 취득세 신고일이 2002. ○. ○○.로 같은 날이고 취득계약서에 중개인을 정○○로 기재한 점, 정○○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와 이 취득계약서, 신청인의 취득세 신고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정○○는 2005.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불가로 2005. ○. ○○.부터 2005. ○. ○○.까지 8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 ○○,○○○,○○○원을 보증금 반환시기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외 방수공사업체 현대○○ 대표 방○○이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인 정○○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2007. ○. ○○. 공사대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신청외 한○○이 2007. ○. ○○. 정○○에게 ○○○,○○○,○○○원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였던 손○○은 2007. ○. ○○.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원을 지급받았음을 진술한 점, 정○○는 이 민원 주택으로 2007. ○.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도장을 정○○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11.6평 반지하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11.4평의 미등기 반지하인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 및 정○○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 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정○○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양도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취득가액 재조사 요구

피신청인은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의 회신공문 및 중개인의 사망을 사유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김○○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형인 김○○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계약서의 날인을 김○○이 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김○○는 위 소명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소명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김○○는 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만 제출한 점, ○○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강○○을 상대로 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부동산 인근의 출입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는 평당 170,000원에 취득한 반면 도로접근성 및 지목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 부동산은 평당 150,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보조원이었던 박○○이 이 계약서가 원본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신청인의 이 부동산 취득당시의 시세 등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세무서장과 공동으로 이 부동산의 2002년 당시 부동산 거래시세, 이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날인한 김○○, 전전소유자 강○○의 이 부동산 매도가격, 중개보조원 박○○ 및 신청인과 김○○ 등을 동시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71263(의결일 : 2009. 12. 7.)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매매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30. 납기로 행한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1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551-10 답 1,343㎡(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 7. 29. 신청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14. 신청외 전○○ 외 1명에게 241,740,000원에 양도하고 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으로부

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2009.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보관중인 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한 김○○(김○○의 형) 도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포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신청인이 이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계약서 작성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던 신청외 박○○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이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김○○가 서로 다른 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가 제시한 증빙(확인서 및 금융자료)을 근거로 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신청인이 반박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금융자료의 보존년한 경과와 중개인의 사망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김○○는 2001. 11. 19. 신청외 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02. 7. 29.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02. 7. 26.)하였으며, 신청인은 2006. 3. 14. 신청외 전○○ 및 전○○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6. 5. 23. 이 계약서,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토목설계비·농지조성비 및 ○○종합중기 장비대 등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표 1】과 같이 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6,984,6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표 1】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 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241,740,000	120,000,000	68,506,800	53,233,200	47,909,880	2,500,000	45,409,880

※ 장기보유특별공제 5,323,320원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가대상(단기양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 12. 김○○에게 신청인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산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금액인 31,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라. 김○○는 2008. 1. ○○세무서장에게 "본인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것처럼 2002. 7. 26. 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부동산을 2002. 7. 10. 계약하여 2002. 7. 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이 계약서에는 2002. 7. 15. 1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2. 7. 15. 계약금 12,000,000원, 2002.

7. 30. 중도금 60,000,000원, 2002. 8. 15. 잔금 48,000,000원을 지불하여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거래형태가 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계약서의 필체나 도장도 전혀 생소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2002. 7. 29. 수표 50,000,000원이 입금된 김○○ 명의의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조회서,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김○○는 "이 부동산의 총 거래금액인 6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02. 7. 10. 김○○(김○○의 형)이 수령하고, 2002. 7. 26.(금요일) 잔금 50,000,000원을 본인이 수령하여 2002. 7. 29.(월요일) 신한은행에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김○○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 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06. 3. 14. 부동산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8. 2. 4.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9.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신청인은 2009. 5. 7. 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9. 7. 15. "김○○가 소명한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와 양도대금 50,000,000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김○○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한 후 신청인이 이 부동산의 양수대가로 2002. 7. 26. 김원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108,000,000원에 대한 금융조사와 이 계약서를 작성한 김○○를 상대로 이 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9. 7. 28.부터 7. 31.까지 이 부동산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수표는 보존년한 경과로 인하여 수표의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계약서 작성자인 김○○도 사망하여 이 계약서의 진위여부도 확인불가하다며 조사를 종결하였다.

차. 신청인은 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경기 ○○시 ○○구 ○○동 341-3번지(현재 주소)에서 중개보조원 김○○, 박○○과 함께 김○○의 형인 김○○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대략 오후 5시경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김○○의 대리인인 김○○에게 지급하고 날인하였으며 잔금은 계약서보다 일찍 지불하였고 ○○부동산에서 매도인 인감, 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본인이 김○○에게 수표로 지급(잔금 108,000,000원)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이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부동산의 보조원인 박○○은 2009. 8. 29. “이 계약서는 2002. 7. 15. 작성한 원본계약서이다.”라는 확인서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판 단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의 회신공문 및 중개인의 사망을 사유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김○○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형인 김○○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계약서의 날인을 김○○이 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김○○는 위 소명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소명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김○○는 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만 제출한 점, ○○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강○○을 상대로 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부동산 인근의 출입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는 평당 170,000원에 취득한 반면 도로접근성

및 지목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 부동산은 평당 150,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보조원이었던 박○○이 이 계약서가 원본계약서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신청인의 이 부동산 취득당시의 시세 등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세무서장과 공동으로 이 부동산의 2002년 당시 부동산 거래시세, 이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날인한 김○○, 전전소유자 강○○의 이 부동산 매도가격, 중개보조원 박○○ 및 신청인과 김○○ 등을 동시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신청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민원사업장 폐업 시점 이후 같은 장소 및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신용불량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사업장의 직원, 민원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및 민원사업장 인근 사업자 등이 김천수가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는 민원사업장 사업초기에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경)찰에서 조사를 받을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천수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민원사업장에 대한 운영이나 기타 게임장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전문적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김○○가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민원사업장 영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의 영업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활동을 요하는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김○가 이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며 민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김○○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812-036644(의결일 : 2009. 6. 8.)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세무서장은 실사업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7. 3. 31. 납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9,505,5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4,35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이 유

1. 신청원인

경북 ○○시 ○구 ○○동 643-7 소재 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는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인의 전 남편인 신청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운영하였던 사업체로서 김○○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자 부득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바, 피신청인은 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신청인에게 2007.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2건 133,8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나,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와 신청인은 부부사이였으나 1998. 10. 22. 협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주변 탐문한바, 김○○의 사업부도로 인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과 김○○간에 사업자금 수수 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신청인이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폐업신고까지 모든 업무를 사망한 전 남편인 김○○에게 위임하여 김○○는 운영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신청인이 계약을 하였고, ○○시 ○○청에서 교부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도 신청인의 명의로 교부된 사실로 보아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민원사업장을 2005. 7. 26. 사업자등록(개업일 : 2005. 7. 7.자)하여 운영하다가 2006. 8. 28. 폐업하였고, 위 민원사업장의 사업기간을 포함한 2001. 10. 16. ~ 2007. 6. 26. 기간 동안 경북 ○○시 ○구 ○○면 ○○리 479-1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과 김○○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청인 및 김천수의 사업자등록 이력

구분	상호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신청인	이정표	간이주점	501-08-13421	1981.3.15 (1985.9.19)	
	뮤직프라자	노래방	501-05-25023	1993.12.24 (1997.6.17)	
	금잔디	노래방	501-05-25023	1998.4.3 (1999.10.11)	
	황제노래방	노래방	501-05-25023	2001.10.16 (2007.6.26)	
	올인게임랜드	게임장	506-13-44826	2005.7.7 (2006.8.26)	민원 사업장
김천수	올인게임랜드	게임장	501-01-79706	2006.9.21 (2006.12.31)	
	뮤직프라자	노래방	501-01-79706	1997.6.20 (1997.10.31)	
	동아식당	한식	501-10-28742	1984.5.23 (1991.3.17)	

나. 피신청인은 2006. 11. 23. ~ 2006. 12. 20. 기간동안 민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매입과세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라고 주장하며 검·경찰피의자 신문조서 및 인우보증서류 등을 제시하자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신청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7. 2.경 신청인에게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음이 과세자료복명서에서 확인된다. 김○○는 피신청인의 조사과정에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라고 2006. 12. 7. 작성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다. 민원사업장에 근무했던 신청외 권○○은 2008.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5. 7.부터 2007. 1. 폐업시까지 김

○○ 사장이 운영하던 민원사업장에 근무를 했으며 본인의 업무는 매장관리, 금일 매매예상 상품권 관리, 당일 결산등을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고 급여는 김○○로부터 받았다.…(중략)…또한 김○○의 게임장 운영 중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신청인에서 김○○로 바뀐 적이 있는데 실질운영자가 김○○인지라 직원들의 변동과 운영상의 변화는 없었다. 위와 같이 민원사업장은 김○○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다른 누구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민원사업장 인근에서 모텔업을 운영했다는 신청외 이○○도 2008.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가 민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는 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2005. 7. 28.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경력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영업을 30년 가량하다가 게임장을 경영한지는 현재 20일 가량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 본인이 경영하는 민원사업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2005. 7. 14. 15:55경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여 경품제공방법위반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의자의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 ○

구 ○○동 643-7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민원사업장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배우자로 위 게임장은 김○○가 경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김○○는 이외에 민원사업장의 운영형태, 종업원 현황, 사업규모 및 게임장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김○○는 위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05. 8. 30. ○○지방검찰청 ○○지청 31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따라 임의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역은 사실관계 라항과 동일하며, 동 사건에 대하여 2005. 8. 31.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지방검찰청○○지청 2005형제12109호)을 받았다.

바. 김○○는 2005. 7. 26. 신청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민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 김○○는 2006. 8. 28. 신청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민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청하였다.

아. ○○북도 ○○시 ○구청장은 신청인이 일반게임장으로 민원사업장을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 7. 7. 유통관련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제2005-000032호)을 교부하였다.

자. ○○북도 ○○시 ○구청장은 김○○가 사실관계 아항의

등록사항 중 민원사업장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2006. 9. 20.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증(등록번호 : 제2005-000032호)을 교부하였다.

차. 신청인과 김○○는 민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란에 함께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김○○인 관계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김○○와 함께 계약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인 이○○은 2009. 5. 30.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임대차계약에 의한 모든 실질적인 내용 등을 김○○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 신청인은 이 처분과 관련한 당초 피신청인의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2007. 2.경 신청인을 실사업자로 확정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처분 이후 게임장 상품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정여부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07. 7.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0. 1. 소취하한 사실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6년 ~ 2007년 기간동안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상품권 전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입장을 정하였고 신청인과 같은 게임장 업체들은 투입된 상품권 중 게임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불복청구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법원에서 다수의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3. 판 단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김○○는 민원사업장 폐업 시점 이후 같은 장소 및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신용불량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사업장의 직원, 민원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및 민원사업장 인근 사업자 등이 김천수가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는 민원사업장 사업초기에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경)찰에서 조사를 받을시 민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천수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민원사업장에 대한 운영이나 기타 게임장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전문적

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김○○가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민원사업장 영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의 영업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활동을 요하는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민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김○가 이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며 민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김○○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고,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기본통칙 2-1-1…14)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 3. 31. 납기로 고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9,505,5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4,35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의 과세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체상금 부과처분 조정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비록 「국가계약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 제133조는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등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요율 차이는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의 개정시 2005. 9. 8.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한 계약일반조건에 이 민원 사업의 추가개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지체 사유가 대부분 신청인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사업 변경 요구로 인해 통상적인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62720(의결일 : 2009. 8. 4.)

2. 피신청인 ○○○ 공단

3. 결정사항

당초 계약시 지체상금 요율을 피신청인의 회계기준에 맞게 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에 비하여 지체상금 요율이 높은 것을 사유로 지체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1. 30. 신청인에게 징수·고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82,830,00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의뢰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6. 9. 6. 피신청인과 소프트웨어 납품계약(2006. 9. 8. ~ 2007. 7. 7.)을 체결하고 당초 계약일보다 450일이 지난 2008. 9.

30. 이 민원 사업 납품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체회계규정에 따라 1,000분의 2.5의 요율로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산정 하였다.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1.5로 개정되었음에도 자체회계규정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민원 사업 납품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변경된 사업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6. 9. 8.부터 2007. 7. 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민원 사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을 450일이 지체된 2008. 9. 30. 납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또한 지체상금 요율의 경우 이미 이 민원 사업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계약의 목적상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당초 계약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없어,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부서별로 시스템 내에 유통되는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받아 업무현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룹웨어 중심의 단순 정보 시스템을 포털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민원사업을 2006. 7. 19. 입찰공고(제200600000-XX호)하였으며, 그 주요 내

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신청인의 입찰공고 내역

입찰건명	OO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2006. 7. 19.
추정가격	454,545,454(*부가세 별도)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나. 신청인은 2006. 9. 6. 피신청인과 2006. 9. 8.부터 2007. 7. 7.까지 과업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표준계약서 내용

용역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계약금액	477,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06. 9. 8. ~ 2007. 7. 7.
지체상금율	계약금액 × 2.5 / 1,000 × 지체일수

다. 표준계약서에는 시스템구축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며 본 민원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내용>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본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

라. 신청인은 총 450일을 지연하여 2008. 9. 30.에 이 민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2008. 12. 3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검수결과 통보”(연구조정실 2008-589호)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09. 1. 14.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업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인정하여 줄 것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5의 요율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이의신청”(FCS-0XXXX-1호)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이 민원 사업 계약은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변경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1,000분의 2.5의 요율로 지체상금률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율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적 자문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2009. 1. 30. 회신(문서번호 2009-0125호)하였다.

바. 신청인은 <표3> 목록의 변경된 사업에 소요된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노임단가 계산 기준에 따라 추가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가 약 3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3> 추가개발 인력투입 현황

구 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고급	2.0	1.0	2.0	2.0	2.0	2.0	1.3	1.0	1.0
중급	1.0	1.0		1.0	1.0	1.3	1.3	1.0	1.0
초급	3.0	3.0	3.0	3.0	2.3	1.3	1.0	1.0	1.0
총 투입 합계	6.0	5.0	5.0	6.0	5.3	4.6	3.6	3.0	3.0
업무 내용	버그 및 간단한 요청 사항 처리			추가 업무의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및 적용, 테스트		

사. 피신청인은 <표4>의 내역에 따라 2009. 2. 11. 지체상금 188,064,000원을 제외한 잔금 50,436,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표4> 지체상금 내역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477,000,000원	
	선급금	143,100,000원	- 계약금액의 30%
	중도금	95,400,000원	- 계약금액의 20%
	잔금	238,500,000원	- 계약금액의 50%
지체상금	개발용역비	167,168,308원	- 계약금에서 기성부분(H/W, S/W 등 납품완료 부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체상금률	2.5/1,000	
	지체일수	450일	- 2007. 7. 8. ~ 2008. 9. 30.
	지체상금	188,064,000원	- 개발용역비×지체상금률×지체일수(천원미만 절사)
잔금 지급액		50,436,000원	- 법원에 공탁

아.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변경된 지체상금률과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 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구분		금액	비고
당초 지체상금(A)		188,064,000원	
지체상금(B)		82,830,000원	= (C)×(D)×(E)-(F)
	개발용역비(C)	167,168,308원	- 계약금에서 기성부분(H/W, S/W 등 납품완료 부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체상금률(D)	1.5/1,000	- 2.5/1,000에서 조정
	지체일수(E)	450일	- 2007. 7. 8. ~ 2008. 9. 30.
	추가인건비(F)	30,000,000원	-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인건비
지체상금 감액분		105,234,000원	= (A) - (B)

4. 판 단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생략)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5호 생략)"라고 하고 있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이 비록 「국가계약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 제133조는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는 등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요율 차이는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의 개정시 2005. 9. 8.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후 피신청인의 회계규정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한 계약일반조건에 이 민

원 사업의 추가개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지체 사유가 대부분 신청인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사업 변경 요구로 인해 통상적인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사업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신청인이 중소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 추가개발 동안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30,000,000원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188,064,000원 중 105,234,000원을 감액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지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동산 압류해제 및 공매대금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류○○ 등 명의로 등기되어 종중재산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501-2, 498, 175 및 402번지에 대한 등기비 및 취득세를 신청인이 납부하였음이 종중기록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종중원인 류○○에게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을 위탁하여 경작을 하던 중 이 부동산①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88. 12. 15. 국군 제○○○부대에 전부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으로 이 부동산③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음과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종중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헌법」제121조 및「농지법」제6조 등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명

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점(국세심판원 1999. 8. 4. 결정 1999중0942),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 모두가 신청인의 종중원으로서 지분등기한 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 15151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속하는 것과 이 부동산① 및 ③에 대한 공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더 이상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③을 공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은 충당한 세액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1-055652(의결일 : 2009. 2. 2.)

2. 피신청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시장

3. 결정사항

실제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종원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원의 체납처분을 사유로 압류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경기 ○○시 ○○동 979 답 1,935㎡ 중 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피신청인 1이 같은 시 ○○리 답 4,259㎡의 공매로 배분받은 22,335,520원과 피신청인 3이 같은 동 482 전 1,362㎡의 공매로 배분받은 12,399,300원을 신청인에게 각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이 유

1. 신청원인

종중인 신청인은 경기 ○○시 ○○동 482 전 1,362㎡(이하 '이 부동산①'이라 한다), 같은 동 979 답 1,935㎡(이하 '이 부동산②'라 한다) 및 같은 시 ○○면 ○○리 51 답 4,259㎡(이하 '이 부동산③'이라 한다)의 임의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를 1965. 4. 6. 신청인 대표자 류○○(이하 '류○○'이라 한다) 및 류○○과 류○○ 명의로, 이 부동산③을 1989. 12. 29. 류○○, 신청외 류○○, 류○○, 류○○ 및 류○○ 등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을 각 등기하

였는데,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2005. 3. 8., 2006. 12. 28. 및 2008. 4. 15. 이 부동산② 중 류○○ 지분인 1/3 및 이 부동산③ 중 류○○ 지분인 1/5을, 피신청인 3은 2004. 3. 16. 이 부동산① 중 류○○ 지분인 1/3을 각 압류하였다가, 피신청인 1은 2007. 10. 18. 이 부동산③을, 피신청인 3은 2008. 4. 9. 이 부동산 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공매 의뢰하여 이 부동산③은 2007. 12. 27. 신청외 송○○에게, 이 부동산①은 2008. 9. 8. 신청외 한○○에게 각 공매되어 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 부동산①, ② 및 ③(이하 '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취득시부터 신청인의 재산이었으며 1994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1996. 1. 1.부터「농지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 명의로의 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한 것일 뿐 현재까지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고, 종중기록장부, 농지위탁경작약정서 및 족보 등에 의하여 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인임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 중 류○○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고, 기 공매된 이 부동산① 및 ③의 공매대금 중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이 수령하여 류○○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도 신청인에게 돌려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가 신청인 명의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국세징수법」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은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상 1965년 및 1989년부터 현재까지 류○○ 명의로 등기되어 류○○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2005. 6. 9. 이 부동산들 중 류○○ 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개인 류○○이 매매예약 가등기한 것으로 보아 위 사실을 입증한다 할 수 있고, 신청인이「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명의로 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환원하여 등기할 수 없었더라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청인 명의로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이 류○○을 비롯한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신청인이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압류해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부동산들이 체납자인 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1은 류○○에게 2005. 1.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1,226,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류○○이 체납하자 2005. 3. 8.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을 각 압류하였고 2005. 7. 13.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하였으며,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류○○에게 2006. 10.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314,611,4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체납하자, 2007. 10.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 부동산③이 2007. 12. 27. 신청외 송○○에게 23,000,000원에 공매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2,335,520원을

배분받아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고, 이 부동산②에 대하여 2008. 4. 15. 재차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압류조서, 공매통지서 및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의 압류 및 공매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의 압류현황

ㅇ 이 부동산② (경기 ○○시 ○○동 979 답 1,935㎡)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보존	1965. 4. 6		류○○, 류○○ 류○○ 각 1/3
2	류○○ 지분압류	2005. 3. 8	2005. 3. 4 압류(징세과 1980)	○○세무서
3	류○○ 지분가등기	2005. 6. 9	2005. 5.31 매매예약	류○○
4	류○○ 지분압류	2006.12.28	2006.12.20	○○세무서
5	류○○ 지분압류	2008. 4.15	2005. 3. 4 압류(조사과-951)	○○세무서
6	류○○ 지분압류	2008. 7.17	2008. 7.15 (세무과 13792)	○○시
7	6번 압류등기 말소	2008.10. 8	2008.10. 6 해제	

ㅇ 이 부동산③ (경기 ○○시 ○○면 ○○리 51 답 4,259㎡)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89.12.29	1989.1.11 매매	류○○, 류○○ 류○○, 류○○ 류○○ 각 1/5
2	류○○ 지분압류	2005. 3.8	2005. 3. 4 압류(징세과 1980)	○○세무서
3	류○○지분 가등기	2005. 6. 9	2005. 5.31 매매예약	류○○
4	류○○ 지분압류	2006.5.16	2006. 5.12 (세무과 7416)	○○시
5	류○○ 지분압류	2006.12.28	2006.12.20	○○세무서
6	류○○ 지분이전	2008. 2.29	2007.12.27 공매	송○○
7	3번 가등기 말소	2008. 2.29	2007.12.27 공매	류○○
8	2번·4번·5번 압류말소	2008. 2.29	2007.12.27 공매	

나. 피신청인 2는 류○○에게 2006. 11. 20. 납기로 부가가치세 497,815,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류○○이 이를 체납하자 2006. 12. 28.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을 압류하였는데, 이 부동산③은 2007. 12. 27. 공매되어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이

부동산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 3은 류○○이 2003. 8. 31. 납기 주민세 외 7건 14,431,260원을 체납하자 2004. 3. 15. 이 부동산①을 압류하였다가, 2008. 4. 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8. 9. 8. 신청외 한○○에게 공매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2,399,300원을 배분받아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압류조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부동산①의 압류현황 등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부동산①의 압류현황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보존	1965. 4. 6		류○○, 류○○ 류○○ 각 1/3
2	류○○ 지분압류	2004. 3.16	2004. 3.15 압류	○○시
3	류○○ 지분가등기	2005. 6. 9	2005. 5.31 매매예약	류○○
4	류○○ 지분이전	2008.10.27	2008. 9. 8 공매	한○○
5	2번 압류등기말소	2008.10.27	2008. 9. 8 공매	○○시
6	3번 가등기말소	2008.10.27	2008. 9. 8 공매	류○○

라.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부동산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등록번호 187112-3144***)로서 합계 888,760원을 납부한 사실이 경기 ○○시장이 2008. 9. 18. 발급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등록된 류○○, 류○○, 류○○, 류○○ 및 류○○ 등은 ○○류씨○○공파 후손임이 ○○류씨○

○공파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류씨○○공파중 경기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신청외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및 류○○ 경기 ○○에 거주하는 류○○, 경기 ○○에 거주하는 류○○, 류○○, 류○○, 류○○ 및 류○○, ○○에 거주하는 류○○, 류○○, 류○○, 류○○ 및 류○○ 등을 종중원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1988. 12. 15. 경기 ○○군 ○○면 ○○리 132 답 1,94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를 매매가액 26,399,500원에 국군 제○○부대에 매도한 후, 동 매도대금으로 1989. 1. 11. 신청외 송○○로부터 이 부동산③을 매매가액 20,480,000원에 매수한 사실 등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종중기록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신청인이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를 신청외 종중원인 류○○에게 위탁경작을 의뢰한 사실이 1980년 작성한 '농지위탁경작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종 등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헌법」및「농지법」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종중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문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사안과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는데, 동 민원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사실이 국민신문고 등에 의하여 <표 3>과 같이 확인된다.

<표 3>이 건 민원과 유사한 민원처리현황

신청인	접수일	피신청인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통보일	처리결과
남**	2004. 6. 23.	○○세무서장	시정권고	2004. 8. 24.	수용
정**	2007. 5. 17.	○○세무서장	의견표명	2007. 7. 2.	수용
신**외2	2008. 1. 14.	○○구청장	의견표명	2008. 2. 18.	수용
노**	2008. 3. 17.	○○세무서장	의견표명	2008. 6. 9.	수용

3. 판 단

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고, 「헌법」제121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농지법」제6조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국세징수법」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에는 제1항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는바,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류○○ 등 명의로 등기되어 종중재산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501-2, 498, 175 및 402번지에 대한 등기비 및 취득세를 신청인이 납부하였음이 종중기록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종중원인 류○○에게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을 위탁하여 경작을 하던 중 이 부동산①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88. 12. 15. 국군 제○○○부대에 전부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으로 이 부동산③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음과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종중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헌법」 제121조 및 「농지법」 제6조 등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결정한 점(국세심판원 1999. 8. 4. 결정 1999중0942),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 모두가 신청인의 종중원으로서 지분등기한 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 15151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속하는 것과 이 부동산① 및 ③에 대한 공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더 이상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③을 공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은 충당한 세액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해제 및 이 부동산①과 이 부동산③에 대한 공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특별소비세 환급 요청

이 민원 발생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 법령은 2003. 12. 30.자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다만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 2. 28.자로 사망이라는 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측면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하여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하였는바, 위 법령의 개정취지와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조모 외에도 장애인인 모친과 부친을 현재까지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4-040995(의결일 : 2009. 11. 23.)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당초 감면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2004. 7. 30. 납기로 행한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 1,382,000원 및 교육세 4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특별소비세법」제1조, 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1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2. 2. 4. 신청인과 신청인의 조모인 신청외 옥○○의 명의로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장애인인 옥○○이 2003. 1. 5. 사망한 이후 3월 이내에 면세용도 재반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31. 납기 특별소비세 1,382,000원 및 교육세 414,6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조모뿐 아니라 부친, 모친 및 장인어른 모두 장애인으로서 충분히 면세용도 재반출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모친의 경우 뇌수술 등으로 병원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장애인 차량의 명의 변경을 잘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의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3개월 이내 면세용도 재반출(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02. 11. 29.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과 옥○○은 2002. 2. 4. 중형 승용차(산타페, XX30X9451, 배기량 1991cc, 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의 모친인 이○○은 지체장애 6급, 신청인의 부친인 김○○은 청각장애 6급, 신청인의 장인인 이○○은 지체장애 4급임이 각각의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 2. 19.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르면, 이○○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유효기간 : 2009. 2. 20. ~ 2010. 2. 28.)으로 확인된다.

라. ○○광역시 ○○구 ○○동 374-75 ○○병원에서 2009. 2. 2.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은 2001. 4. 뇌수술을 받은 후 부분적인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장애가 있고 향후 상태의 변동성에 대하여 노령인 점과 뇌질환, 반신마비 소견이 있어 활동이 저하되어 폐렴 등 합병증 발병가능성이 있는 등 악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이 2008년 말경 뇌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았음에도 병원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병원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이 거동불편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 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민원 특별소비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공동사업자 지분별 명세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옥○○이 2003. 1. 5. 사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 조건부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옥○○에게 이 처분을 행하면서 공동 소유자인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판 단

가.「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발생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 법령

은 2003. 12. 30.자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다만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 2. 28.자로 사망이라는 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측면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하여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하였는바, 위 법령의 개정취지와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조모 외에도 장애인인 모친과 부친을 현재까지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처분은 가혹하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특별소비세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2-069426(의결일 : 2009. 1. 2.)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음.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 유

1. 처리결과

신청인은 군입대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가산세의 경감을 요청하였으나,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신

청인의 부친 및 별거 중인 모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부친의 병원 발행 장애인증명서 등을 보완받아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아 종합소득세를 경감받았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그 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의 가수금 반제자금과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52638(의결일 : 2009. 3. 9.)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결정사항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 12. 2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2억원, 2002. 1. 3. ○○주식회사 신주청약대금 납입액 9천만원, 2002. 12. 12. ○○주식회사 증자대금 135백만원을

타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2백만원을 부과하였는바, 증자대금 및 신주청약대금은 오○○, 정○○, 박○○으로부터 각 차입한 자금이며,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부 소○○에 대한 재산은익혐의자 추적조사시 신청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의 가수금 반제자금 및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2000. 12. 29. (주)파워테크 20,000주 증자자금 2억원 : 주식회사○○의 ○○은행 인동지점에서 200,030,000원을 출금하여 김○○가 오○○(신청인의 이모부)의 계좌입금 후 김○○(신청인의 이모)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 1. 10. 위 주식양도 후 양도대금 2억원은 오○○, 이○○(김○○이 송금)를 거쳐 김○○에게 80백만원, ○○주식회사에 37백만원, 주식회사○○에 86백만원, 기타 8백만원이 최종 송금됨.

나. 2002. 1. 3. (주)파워스틸 신주청약대금 135백만원 : 주식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110백만원중 80백만원이 정○○(김○○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신청인에게 80백만원 입금한 자금으로 취득(10백만원은 김○○가 정○○의 계좌에 별도 입금한 자금으로 취득)

다. 2002. 12. 20. (주)파워스틸 주식 13,500주 취득자금 135백만원 : 주식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256백만원과 다른 자금 98백만원 중 135백만원을 박○○(김○○의 지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

라.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식취득자금 조사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이나 협조하지 않고 있음.

4. 처리결과

신청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그 자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의 가수금 반제자금과 신청인의 모 김○○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을 안내

파산면책자 특례보증 요구

신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1. 13.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점, 2007. 12. 21.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이러한 사실이 등재된 점,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재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보증지원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04373(의결일 : 2009. 3. 20.)

2. 피신청인 ○○신용보증재단

3. 결정사항

파산면책자 보증지원은 불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재보증계약서」 제7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기준」 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북 ○○시 ○○구 ○○동에서 학습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신청인에게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의 특수기록정보(파산면책)를 이유로 보증이 거절된바, 이는 부당하므로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지방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2007. 11. 13. 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고, 현행 재보증계약서 제7조에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보증대상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거부는 정당하다.

3. 처리결과

가.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원보증은 재보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호 생략) 6-1.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기업”이라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기준」제4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한다. 1.저신용 자영업자 : 재보증제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2.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재보증제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채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1. 13.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점, 2007. 12. 21.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이러한 사실이 등재된 점,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재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보증지원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안내함

제6장

산업·농림·환경분야

제 목	면수
• 도로방음시설 보완	436
•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445
• 산지전용허가	454
• 토지매수요구	460
• 농업손실보상	467
• 보험금지급	474
•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	485
• 국유림 대부	490
• 항만용역업 기준 완화	496
• 밀양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요구	503
• 송전선로 변경	506
•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요구	509
• 배수관로 정비요구	514

도로방음시설 보완

가. ○○○○공사는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진주○○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이 민원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선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51,750대에 이르고,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사는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

나.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국도에 인접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입주민이 입게 될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1-015301(의결일 : 2009. 6. 1.)

2. 피신청인 ○○○○공사, △△△△공사

3. 결정사항

고속도로 조성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이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겪을 경우 도로관리자의 책임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각자 연대하여 경남 ○○시 ○○동 ○○○-○○○아파트에 인접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기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한 보완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민법」 제758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시 ○○동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이 민원 아파트와 ○○고속도로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사 ○○○○건설사업단장(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에서는 진주○○택지개발사업지구가 ○○고속도로에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공사에 수차례에 걸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의 전층에 대한 도로변 소음기준에 만족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 주택건설규정(5층 이하 만족)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고, 현재 6층 이상이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방음벽 설치주체인 △△△△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바, ○○○○공사에서는 동 확장사업에 따라 추가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기존 4차로 고속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공사) 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 △△△△공사 ○○·○○지역본부장(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에서는 이 민원지역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초 높이 3~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고속도로의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소음관련 민원예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속도로 소음영향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주택건설규정상의 기준(주간·야간 : 65dB(A), 1층~5층)보다 강화된 방음벽(주간 65dB(A), 야간 55dB(A), 1층~5층)을 설치하였다. 현재 ○○○○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바 ○○고속도로 주변 가옥들에 대한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공사와 협의 및 민원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동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고속도로는 폭 41.7m 왕복 4차선의 고속국도로서, 1971. 12.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 1973. 11. 개통되었고, 1989. 11.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2012년 말을 목표로 8차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민원지역의 일일 교통량은 약 51,750대(2007년도 기준)에 이른다.

(단위 : 대/일)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통량 (대/일)	40,115	41,316	48,569	53,925	51,665	52,643	51,854	51,750

나.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은 1999. 7. 27. 지구지정되어 2000. 5. 31. 개발계획승인되었고, 2000. 12. 29. 실시계획승인되었으며, 2001. 1. 31.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5. 4. 28. 소음영향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2006. 4. 5.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6. 8. 30.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다.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건설(주)는 이 민원 아파트 부지를 △△△△공사로부터 2005. 9. 30. 분양받았고, 2005. 11. 14. 사업승인되어 2007. 11. 28. 사용검사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건설(주)이며, 지하1층 지상 15층 4개동 218세대가 입주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아파트는 ○○고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약 54.6m 이격되어 있고, ○○고속도로와 직각배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와 완충녹지 경계상에 △△△△공사에서 설치한 높이 10.4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마.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작성하고 ○○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민원지역에 높이 3m, 연장 1,45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환경기준(주간·야간 65dB(A), 5층 이하)을 충족(주간 : 51.8dB(A), 야간 46.8dB(A), 5층 이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공사와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자구 사업에 따른 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2006. 6.까지 협의를 진행하였고, ○○○○공사는 이 민원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의 전 층이 도로변 소음기준에 만족하도록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공사비 과다, 입주민의 조망권, 아파트 단지의 미관 저해 및 풍하중에 의한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자체 소음영향검토 실시 후 2006. 4.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다.

사. 이 민원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건설(주)가 사용검사 신청시 ○○시장에 제출한 소음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아파트의 1층과 5층 주간과 야간 평균소음이 주택건설규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dB(A)]

구분	측정소음		기준
	주간	야간	
101동	63	47	65
102동	57	49	
103동	59	48	
104동	56	48	

아. ○○○○공사 및 ○○시가 각각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6층 이상에서 주간·야간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dB(A)]

○○○○공사			○○시			
구 분		측정소음	구 분		측정소음	기준
2층	주간	56.5	3층	주간	57.9	주간 : 65 야간 : 55
	야간	53.4		야간	56.2	
5층	주간	57.2	6층	주간	59.9	
	야간	53.7		야간	57.5	
10층	주간	63.0	10층	주간	67.9	
	야간	60.7		야간	64.5	
15층	주간	70.1	15층	주간	72.8	
	야간	65.7		야간	68.1	

4.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는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사는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진주○○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이 민원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선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51,750대에 이르고,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사는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따라 도로변 소음을 환경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사는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국도에 인접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입주민이 입게 될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 할 것인바, △△△△공사가 진주○○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민원 아파트와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아파트 전반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민원 아파트 고층의 입주민에게「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택지개발지구내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지역에서 발생되는 평균 최대 소음이 주간 72.8dB(A), 야간 68.1dB(A)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고, 관련 참고문헌(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 의하면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아파트의 입주민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와 △△△△공사는 각자 연대하여 이 민원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도로소음 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음벽의 보완 등 방음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환경에 저해되고,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 위험과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의 오염을 이유로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고 있으나, 굿 등 무속행위가 주되게 행해지는 곳은 이 민원사찰 인근의 ○○○계곡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민원사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민원사찰내에 오폐수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발생된 오수를 신청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유입, 자연정화된 상태로 ○○○계곡에 유입되고 있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따라 ○○○계곡이 오염되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원사찰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현재 오폐수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동 시설을 설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통해 충분히 건축물의 내·외관에 대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서만 공원내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자연공원법」 제12조 제2항에서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에 이를 준용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2-072375 외 5건(의결일 : 2009. 5. 11.)

2. 피신청인 ○○부장관

3. 결정사항

공원환경 저해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공원관리청의 재량남용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위해 2008. 6. 25. 행한 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 소재 한국불교○○종 ○○산선도암(이하 '이 민원사찰'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민원사찰은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사찰로 운영되어 왔고, 신청인은 1993. 6. 15. 이 민원사찰을 인수하였으며, 1998. 5. 29.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전 통보와 협의 없이 이 민원사찰이 공원환경저해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민원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민원사찰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사찰의 철거를 위한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산국립공원내 공원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은 공원내 환경저해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보다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민원사찰은 ○○○지구 ○○~○○○구간 탐방로 인근에 위치하여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시설물로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위험과 탐방객 혐오감 유발 및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시설에 해당되어 철거조치가 필요하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을 위한 이 민원 변경결정 이전에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이 민원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사찰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서울 ○○구 ○○동 ○○○-○○)로 우편송달을 한바 있으며(우편물 반송으로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함), 이 민원 변경결정 이후 재차 우편송달 및 직접 인계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향후 이 민원사찰의 철거·정비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민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산국립공원은 19○○. ○○. ○○.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민원토지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속해있으며, 이 민원사찰은 ○○○지구 ○○~○○○구간 탐방로 및 ○○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계곡은 평상시 굿 등 무속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나.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건축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1930년경에 신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고, 이 민원사찰 건축물은 지상 1층, 연면적 133㎡, 주건물 1동,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주택으로서 주거용도와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사찰 내에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신청 외 ○○○로부터 매입하여 19○○. ○. ○○.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고, 19○○. ○. ○○. 서울 ○○구 ○

○동 ○○○-○○번지에서 현 주소지인 충남 ○○시 ○○면 ○○리 ○○○번지로 전입하였으며, 이 민원사찰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약 8명이 상주하고 있고, 이 민원토지의 면적은 139㎡, 지목은 전이나 이용상황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민원토지는 신청 외 ○○○, ○○○, ○○○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 8.부터 2006. 10.까지 국립공원내 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2008. 4. 1. 피신청인에게 ○○산국립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민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6. 25.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이 민원 변경결정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2007. 7. 16. 이 민원사찰의 건축물대장상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번지로 이 민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토지와 철거대상 시설물 협의매수를 위한 사전협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같은 해 7. 19. 반송되었고, 이후 주소보정 등을 통한 재발송 없이 이 민원 변경결정 이후인 2008. 11. 3.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변경결정이 되었음을 같은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재반송되었으며, 같은 해 11. 4.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민원사찰을 방문하여 이 민원 변경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4. 판 단

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는 “7. “공원계획”

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6조의 규정에는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1.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안에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또는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 4. 자연마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6.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을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제2조 제5호에 따른 탐방로의 경우에는 폭 3미터, 길이 1킬로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환경에 저해되고,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 위험과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의 오염을 이유로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고 있으나, 굿 등 무속행위가 주되게 행해지는 곳은 이 민원사

찰 인근의 ○○○계곡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민원사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민원사찰내에 오폐수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발생된 오수를 신청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유입, 자연정화된 상태로 ○○○계곡에 유입되고 있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따라 ○○○계곡이 오염되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원사찰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현재 오폐수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동 시설을 설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통해 충분히 건축물의 내·외관에 대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서만 공원내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자연공원법」제12조 제2항에서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에 이를 준용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량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지전용 허가

피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적합하며 피신청인 또한 이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은 이 임야로부터 약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300m 이내의 인근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임야의 광산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분진 등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 등「산지관리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적합한 점, 허가여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원사항의 해소를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12733(의결일 : 2009. 10. 21.)

2. 피신청인 충청북도 ○○군수

3. 결정사항

임야를 광업용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57 임야 879㎡에 대해 광업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6조 제2항·제3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57 임야 879㎡(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광업용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임야에 백운석채광(굴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하나 지역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000000(대표 000)은 1980년부터 채광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백운석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간 계속된 노천채광으로 허가지 내 광물이 소진되어 굴진으로 채광을 하고자 2009. 3. 피신청인 소유 임야(5,110㎡)에 대해 대부 및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고충민원(2CA-0903-045070)을 신청하였으나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군유림 대부가 아닌 신청인 소유 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여 고충민원(2CA-0903-045070)을 취하하고 2009. 8. 17. 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산지관리법」상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하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 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임야는 주민들이 거주(약 30여 가구)하고 있는 마을과는 산등성이를 넘어 약 1.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소음・분진・하천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 등은 극히 미약하였다.

4. 판 단

가.「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라고, 제3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 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적합하며 피신청인 또한 이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은 이 임야로부터 약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300m 이내의 인근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임야의 광산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분진 등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 등「산지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적합한 점, 허가여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원사항의 해소를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임야를 광업용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하여 달

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매수요구

피신청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토지에 대한 매수일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토지를 이 수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청한 것은 매수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토지를 즉시 매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토지 면적이 185㎡이고 대부분의 면적을 이 수로가 차지하고 있어 잔여지의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수로가 이 토지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토지의 잔여지의 경우 농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의 잔여지도 매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812-036376(의결일 : 2009. 2. 16.)

2.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3. 결정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에 동의 없이 영조물을 설치 사용하면서 보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비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지급 및 매수 보상 등 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416 답 185㎡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같은 법 제74조에 의한 매수절차를 이행하고, 2003. 12. 16.부터 매수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민법」제741조,「농어촌정비법」제96조 제6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제74조,「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상속일 1967. 7. 8., 등기접수일 2007. 8. 20.) 경기도 ○○시 ○○면 ○○리 416 답 185㎡(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피신청인이 1992년 농수로(이하 '이 수로'라 한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토지의 90% 이상이 이 수로부지에 포함되어 신청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하는바, 이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토지는 1992년 공사시행 당시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 농지 유실 방지 및 용수로 공급 등을 하고자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며, 약 16년 전에 시행된 공사로 관련서류 미 존재 및 이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여 줄 수 있는 관련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토지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사항이다. 한편, 약 16년 전에 공사가 시행된 사항으로 도면 등이 미 존재하여 이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경계는 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토지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토지는 당초 자연형 토사구거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 ○○시에 수해가 발생하여 인근 토사의 법면유실 및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해복구차원에서 이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긴급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로공사는 자연형 토사구거를 콘크리트 구거로 전환시킨 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현재 이 토지의 중간부분에 이 수로가 위치하고 있다.

나. 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이고,「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내로서, 이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토지는 신청인의 부친이 192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1967. 7. 8. 상속을 원인으로「부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 8.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4. 판 단

가.「민법」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 5. 법률 제47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는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96조 제6항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1979. 10. 10. 선고 77다508 판결, 1977. 2. 8. 선고 76다2692 판결, 1975. 5. 13. 선고 73다1772 판결 등 참고)하고 있다.

다. 당초 이 토지는 자연형 토사구거이었으나 1990년 초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 토지에 이 수로를 긴급공사로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토지에 이 수로를 설치하면서 당시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사용동의 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사용동의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토지에 이 수로를 설치하면서 당시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사용동의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54조 등에 의한 보상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 토지를 이 수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원인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토지를 1992년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나,「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공법 또는 사법관계를 불문하

고 채권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5년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2008. 12. 15.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여 2003. 12. 16.부터 이 토지에 대한 매수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토지를 이 수로로 점유하여 사용해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토지를 이 수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청한 것은 매수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등 다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련 법률 및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72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이 토지를 즉시 매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또한, 이 토지 중 이 수로로 사용된 토지 이외의 잔여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토지 면적 중 90%가 이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점, 이 토지 면적이 185㎡이고, 대부분의 면적을 이 수로가 차지하고 있어 잔여지의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수로가 이 토지의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토지의 잔여지의 경우 농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여 이 토지의 잔여지도 매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업손실 보상

신청인이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 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5-012066(의결일 : 2009. 7. 7.)

2. 피신청인 ○○○○개발공사

3. 결정사항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대지에 편입 당시 경작을 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신청인 등 2인 공유의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의 농업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지법」 제2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등 2인이 공유하는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 1,31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

다)가 편입되었는바, 이 민원 토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도지사는 2005. 11. 10. ○○시장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민원 사업 계획을 고시(○○○도 고시 제2005-322호)하였다.

나. ○○○도지사는 2007. 10. 4. 피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변경고시(○○○도 고시 제2007-37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인 등 공유자 2인은 2008. 7. 14.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토지와 지장물(가죽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시 ○○면 ○○리 103 외 3필지의 답 4,916㎡(이하 '4필지의 답'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 보상금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현황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지분)
○○면 ○○리	1510-3	대	1,140	1,140	한○○(760/1091)
	1510-12		178	178	한○○(331/1091)
소 계	2필지		1,318	1,318	-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하였음이 기록됨)와, 이 민원 토지를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경작사실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

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

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하기 위해 이 민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휴게소에서 잠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뒤로 젖혀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잠을 자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휴게소는 숙소와 회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경로상에 있으므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민원 차량의 감식 결과에는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 차량은 93년식으로서 차량의 매우 노후된 상태만으로도 발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차량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2007. 6. 20.)가 아닌 ○○경찰서의 2006.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를 인정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화재사 아님)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 …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

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화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사안에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으로서는 눈이 내려 결빙된 고갯길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운전하여 내려가기가 힘들고, 또한 거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한 관계로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 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다89 판결 참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재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4-071399(의결일 : 2009. 9. 21.)

2. 피신청인 ○○○○본부장

3. 결정사항

화재가 발생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 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亡 최○○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보험의 교통재해특약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 제8조 및 「○○○○보험 약관」 제1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들(망 최○○,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이 차량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과 ○○○○보험의 약관 별표에 있는 교통재해 분류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교통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는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사체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청인과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정되었고, 비록 항소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되어 ○○화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통재해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보험자는 2002. 3. 4. 피신청인에게 ○○○○보험과 ○○○○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보험자는 2007. 6. 1. 저녁 친구들과 ○○읍내에서 술을 마셨고, 2007. 6. 2. 0:20 렌트카를 타고 숙소 앞에 도착하였으며, 렌트카 기사 김○○은 렌트카 내에서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다. ○○군 소재 ○○휴게소 내에서 ○○호프를 운영하는 김○○은 2007. 6. 2. 02:10 ~ 02:20 ○○휴게소 앞 노상에 전조등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 차량(충남1므○○○○ 93년식 ○○.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목격하였다 하며, 이 ○○휴게소는 피보험자의 숙소와 회사 사이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

라. ○○휴게소 앞 도로를 운행하던 최○○은 2007. 6. 2. 03:06 이 민원 차량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마. ○○경찰서의 2007.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에는 "2007. 6. 4. 10:1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부검실에서 부검의 김○○ 집도하에 신원미상 변사자에 대하여 부검 실시한 결과, 변사자는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화재사로 볼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부위에 골절 등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사체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 후 변사자의 사인에 대하여 추후 통보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7. 6. 20. ○○경찰서에 보낸 부검감정서에는 "사인 :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설명 및 참고사항 참조)"이라고, "설명 :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2.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라는 기질적 병변을 보는 점, 3. 이밖에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특기할 약물이나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로 검출되는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혈중 상태는 언어불명확, 보행곤란, 신체반사작용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이라고, "참고사항 : 1.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

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피해일시 : 2007. 6. 2., 발생개요 : 변사자는 배차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인바, 2007. 6. 2. 03:06경 ○○군 소재 국도 옆에 위치한 ○○휴게소 앞 노상에서 배차업무 관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노후된 부친의 승용차를 운행 중 불상의 원인 등으로 일시 정지하였다가 발화된 차량 화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죄 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 종결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7. 6. 22. ○○경찰서로 보낸 차량의 감정서에는 "4. 검토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 (4) 배기관에서 보이는 다수의 파손형상은 엔진이 구동상태이고 주변의 대기조건이 만족될 경우 엔진구동의 주차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형태임, (5) 사고차량과 주차장 바닥의 화재흔적에 나타난 연소형상은 일반적으로 엔진 구동 상태로 주차중인 차량의 실내에서 운전자가 수면 등의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가속패들을 연속으로 가속할 경우 엔진과 배기관이 과열되어 발화될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연소형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라고, "감정결과 :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찰서의 2007. 7. 7. 수사결과보고 문서에는 “변사자의 상체는 반듯하게 서있는 조수석 의자로부터 운전석 방향으로 쓰러져 있던 점, 이 민원 차량은 93년식 승용차인 점,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으로 보아, 결국 변사자는 배차 업무관련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 노후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불상의 원인 등으로 도로로부터 인접한 곳에 이 민원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발화된 차량 화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죄 혐의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은 ○○화재의 ‘○○○ 자동차보험’(보험기간 : 2007. 1. 22. ~ 2008. 1. 22.)을 가입하였고, 피보험자가 사망함에 따라 ○○화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화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신청인들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2008. 3. 20. “원고(○○화재)의 피고(신청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판단내용에는 “… 앞서 본 망인의 사망추정시간, 화재 전 사고차량의 최종 목격시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체에서 화재사로 볼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고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형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차량의 화재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동을 켠 채 사고차량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2007. 6. 2. 새벽 02:00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후, 2007. 6. 2. 새벽 02:20경부터 03:06경 사이에 역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차량화재로 인

하여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망인의 사체가 전부 소훼된 것으로 봄이 옳다. 결국 망인이 사고 차량의 안에 있었던 것은 사고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등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술에 취하여 미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을 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사망이 사고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신청인이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09. 2. 26. 원고(○○화재)는 피고(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보험금의 50%)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고,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판 단

가. 피신청인의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 제8조 제1항은 "○○관서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2](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사망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은 "○○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 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중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 교통재해특약 약관의 [별표 2]와 교통안전보험 약관의 [별표 3]의 교통재해분류표에는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사체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보험자는 새벽 일찍 배차문제로 출근하기 위해 이 민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휴게소에서 잠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뒤로 젖혀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잠을 자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휴게소는 숙소와 회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경로상에 있으므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민원 차량의 감식결과에는 “차체의 심한 전소로 직접적인 단정이 곤란하나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 등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주차상태에서 가혹운전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 차량은 93년식으로서 차량의 매우 노후된 상태만으로도 발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차량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2007. 6. 20.)가 아닌 ○○경찰서의 2006. 6. 4. 부검상황 수사보고서를 인정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화재사 아님)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1. 후두, 기관 및 기관지에 검댕입자가 확인되고 기관지상피세포에서 술잔세포증식 및 혈액의 열응고를 보는바, 이는 화재사(death due to fire)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화재사(death due to fire)로 판단됨. …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은데, 급속한 화염에 동반된 화재 특히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관여된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변사자가 화재 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해석함에는 위험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화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사안에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으로서는 눈이 내려 결빙된 고갯길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운전하여 내려가기가 힘들고, 또한 거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한 관계로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 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다89 판결 참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재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

매수요구 토지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원 탐방객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해당 토지에 공원안내 입간판과 데크 및 계단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사실상 공원시설인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원관리청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4-000847(의결일 : 2009. 7. 13.)

2. 피신청인 ○○○○관리공단

3. 결정사항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토지가 사실상 공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사유지매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241-1 전 418㎡ 및 같은 리 241-3 전 398㎡를 협의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제9호·제10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국립공원내인 전북 ○○군 ○○면 ○○리 241-1 전 418㎡, 같은 리 241-3 전 3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가 국립공원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에 위치하여 건물신축 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 민원 토지가 ○○강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에 파쇄된 석재를 부어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주변에 공원안내표지판, 데크, 계단 및 옹벽 등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 민원 토지가 사실상 국립공원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하여 달라.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7. 12.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국립공원은 1988. 6. 11.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이 연접하여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중 ○○리 241-3에는 파쇄된 석재가 포설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의 경계지점에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공원안내 표지판과 데크, 계단 및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중 ○○리 241-1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동 비닐하우스는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 신청인은 2006. 4. 1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28. 이 민원 토지가 「자연공원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매수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에는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 계획을 말한다."라고, 제9호에는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제10호에는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는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

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라고, 제2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는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자연공원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대상토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 민원 토지의 이용현황 및 ○○○○국립공원사무소에서의 이 민원 토지 일대에 대한 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인근 주변으로는 ○○강 탐방을 위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경우 탐방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이 민원 토지에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파쇄된 석재를 포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였다는 점, 위 사무소가 이 민원 토지의 경계 지점에 공원안내표지판, 데크, 계단 및 옹벽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토지를 지목(전)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비용으로 개간공사를 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시에 거주하면서 협소한 면적(816㎡)의 이 민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국립공원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탐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공원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림 대부

토지의 면적이 1,391㎡인 이 국유림은 매각기준을 초과하므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도 매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대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는 대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7-032559(의결일 : 2009. 9. 21.)

2.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

3. 결정사항

산림청 소관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이하 '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매각 또는 대부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를 신청인에게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산림청 소관 경기 00시 00구 00동 산 186-28 임야 1,391㎡(이하 '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96㎡(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매각 또는 대부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같은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국유림은 산 정상부로 진입하는 도로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임야는 이 국유림의 일부로서 신청인 주택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1971. 7.)이전부터 무단점유 하여 사용(신청인은 1950년대부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측사진 판독결과 1975년부터 점유사실이 확인 됨)하면서 2000. 2. 21. 이 국유림(신청 당시 임야대장 면적 1,061㎡→2001. 5. 8. 1,391㎡로 정정)에 대하여 매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0. 2. 28. 이 국유림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로서 보

존하여야 하는 재산으로 매각 제한에 해당되므로 매각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임야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1996.부터 2001. 10. 31.까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46,780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거용으로 23,760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주택(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이 20가구 이상은 1999년도에 양성화되었으나 이 국유림은 7가구로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개축하려고 ○○시에 문의하였으나 이 임야가 신청인 주택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맹지인 상태이므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신청인은 2008. 8. 4. 이 임야에 대하여 매각 또는 대부하여 달라고 재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8. 13. 이 임야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매각 및 대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09. 8. 11.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국유림은 당초 도로로 확정되었으나 하단부에서 위쪽으로 볼 때 왼쪽의 1/3정도는 1980년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의 비포장 부분인 나머지 2/3 면적은 신청인 주택 등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입목지 상태이다.

4. 판 단

가. 먼저 요존국유림의 매각 또는 사용허가,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국유림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또한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매각이나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허가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법 제16조 제4항 제7호는 '국유림이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 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국유림은 다른 국유림과 완전히 단절된 개별 필지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1,391㎡)으로서, 현재 1/3정도는 아

스팔트 포장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3 정도는 신청인 등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약 30년간 주택 등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미입목지 상태인바,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점, 국유림의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대부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은「국유재산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2009. 1. 30.「국유재산법」개정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됨)으로 간주되므로 국유림법 제20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 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제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1,391㎡인 이 국유림은 매각기준을 초과하므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도 매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대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재구분되는 경우에는 대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임야를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항만용역업 기준 완화

현재 ○○항의 통선업 수송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이고 급수업의 급수실적은 공급 가능 급수량의 35%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또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신규 사업자가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아도 항만의 용역 제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현재 ○○항에 등록된 통선은 8척, 급수선은 9척이나 통선은 4척만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급수선은 5척만 급수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유만 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추가로 통선과 급수선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 용역시설의 과잉공급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이미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 및 ○○항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덤핑 및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점, 기존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자율경쟁을 통해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고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4-012223(의결일 : 2009. 8. 24.)

2. 피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장

3. 결정사항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박화물고정업(이하 '고

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항만용역업(선박화물고정행위)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11호)」 제11조 제3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항에서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박화물고정업(이하 '고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경우에도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도록 요구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등록이 가능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등록을 원하는 고정업은 항만용역업의 세부사업 내용의 하나인바, 이처럼 항만용역업의 일부 행위만을 등록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또한 ○○항의 지역적 여건 및 종합적인 항만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때 통선과 급수선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울러 ○○항의 여건 상 신청인의 주장처럼 세부사업별로 등록을 허용하면 기존 항만용역사업자들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세부사업만을 선택해 재등록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항만용역이 일부에 편중되어 항만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1997. 4. 10. 자율경쟁을 통하여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법률 제5335호)하여 허가제로 되어 있던 항만용역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 비고 제5호 마목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항은 1997. 12. 26., ○○항은 2007. 12. 5.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고도 업종별 항만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항은 2006. 10. 23. 통선 또는 급수선을 1척만 구비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2009. 4. 20. 통선 톤수(20 → 10톤) 및 급수선 톤수(50 → 25톤)를 완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을 공고(○○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63호)하였다.

나. ○○○○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시 개별사업 내용별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5호 마목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소관 항만의 특성과 업종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개별사업 내용별로 사업을 등록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2009. 7. 16. ○○○○과-708).

다. ○○항의 등록업체 현황

업체명		(주) ○○	○○ ○○	○○ ○○	○○	○○ ○○	○○○ ○○	○○ ○○
업무영역		종합 용역업 (급수업 제외)	종합 용역업 (급수업 제외)	급수업 (한정)	급수업 (한정)	종합 용역업 (통선 제외)	종합 용역업	종합 용역업
보유장비	통선	통선 2척	통선 2척	-	-	-	통선 2척	통선 2척
	급수선	-	-	급수선 2척	급수선 3척	급수선 1척	급수선 1척	급수선 2척
등록일자		1975. 12.	1975. 12.	1975. 12.	1975. 12.	1993. 12.	1998. 4.	1998. 6.

※ 위 도표 중 굵은 표시된 ○○산업의 급수선 1척, ○○중공업의 통선 2척과 급수선 1척 및 ○○마린의 통선 2척과 급수선 2척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비만 한 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항에서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주)○○, ○○○○ 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통선 4척이 연간 400~750회 운항으로 1,700~2,000명을 수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 2개 업체는 2008년 기준 1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급수업의 경우 현재 2개 업체(○○○○, ○○)의 급수선 5척이 연간 1,000~1,500회, 80,000~13,000톤의 청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급수실적은 공급가능 급수량의 35% 수준에 불과하나 ○○○○○가 생산한 저가 청수를 이용

함으로써 적자는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피신청인의 ○○항 항만용역업 향후 전망(「○○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통선업의 경우 “신항 접안시설 확충, ○○만항 개장 등으로 외항 정박선박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통선이용률이 현재대비 약 4배가 증가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통선만으로도 통선업 수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수업의 경우 “외국항만에서의 저가급수 선호로 향후 신항내에서 급수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항의 경우 개장이 되더라도 대형선의 조수기 시설로 자체급수 조달, 페트형 생수 이용 선호 등으로 급격한 급수 수요 증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현재 등록된 급수선 및 급수실적을 고려할 때 급수수요가 현재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더라도 급수서비스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판 단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 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관련)은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제5항은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바. 2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분		1급지(○○항·○○항·○○항·○○항·○○항)
등록기준	1. 항만용역업	가. 자본금 나. 선박	1억원 이상 통선 : 20톤 이상 급수선 : 50톤 이상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화물고정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개별사업별 등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

○항의 통선업 수송실적은 수송가능 인원의 25% 수준이고 급수업의 급수실적은 공급 가능 급수량의 35%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또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신규 사업자가 통선 및 급수선을 구비하지 않아도 항만의 용역 제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현재 ○○항에 등록된 통선은 8척, 급수선은 9척이나 통선은 4척만 통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급수선은 5척만 급수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유만 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추가로 통선과 급수선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 용역시설의 과잉공급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이미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 및 ○○항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덤핑 및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 점, 기존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자율경쟁을 통해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고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항만용역업(선박화물고정행위)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위원회

피신청인과 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경과지 변경 및 보상현실화 등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11-026776, 2BA-0911-028563(의결일 : 2009. 12. 11.)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및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하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

자파 피해,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대한 낮은 보상과 주변지역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바, 사업 타당성, 경과지 변경 및 보상 현실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 원자력 발전소 ~ 765kV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로 사업 자체의 백지화는 불가하나, ○○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전자계에 대한 사실조사, 합의에 따른 경과지 변경, 보상 등의 논의는 가능하다. 다만, 이때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사실 관계

<주요추진경과>

○ 2009. 10. 21. : 고충민원 접수 (○○지역 이동신문고 현장민원상담)

○ 2009. 11. 5. ~ 11. 6. : 제1차 실지조사 실시

○ 2009. 11. 9. ~ 11. 24.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09. 11. 26. : 제2차 실지조사 실시

○ 2009. 11. 27.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09. 12. 11. : 현장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 ○○건설본부장, 지식경제부 ○○○○○정책관, 경상남도 ○○○경제실장, 경남 ○○시장이 참석하여 2009. 12. 11.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이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참여 등의 조정안에 합의하여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송전선로 변경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산리 산2-1 외 1필지 일부를 경과하도록 계획된 NO.12~NO.14 송전선로를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취득한 같은 리 산2-1외 1필지 일부로 변경하기로 조정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812-008827(의결일 : 2009. 4. 20.)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원주민의 송전선로 변경 민원을 이유로 제도적으로 변경 의무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한 변경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전기사업법」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이 유

1. 신청원인

강원 ○○군 ○○○면 ○○리 일원을 경유하는 154KV ○○~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구간(NO.12~NO.14)은 신청인 등의 주거지 인근을 경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로 인한 신청인 등의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를 신청인 등의 거주지 북측으로 변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NO.12 ~ NO.14 송전탑의 경우는 동 송전탑 건설 예정 토지(강원 ○○군 ○○○면 ○○리 산2-1외 1필지)의 관리청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할 경우, 신청인 등이 요구하는 위치로 송전선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8. 12. 3 : 고충민원 접수

○ 2008. 12. 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8. 12.12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9. 2. 3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9. 4. 8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 2009. 4. 15 : 이동신문고 사전 건의사항 접수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

정안(NO.12 ~ NO.14 송전선로 변경)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신청인 등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강원 ○○군 ○○○면 ○○1리 일원을 경유하는 154KV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구간 (NO.12~NO.14)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에 침해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하 '민원사업'이라 한다)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리 산2-1외 1필지 일부를 경과하도록 계획된 NO.12~NO.14 송전선로를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 변경허가를 취득한 같은 리 산2-1외 1필지 일부로 변경한다.

나.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이 민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위 합의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에 의하여「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요구

정압시설은 인근 16,000세대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 점, 대체부지가 확보된 이후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배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함), 신청인이 2009. 11. 10.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2009타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2009. 12. 7. ○○도시가스(주)와 신청인간 현장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보상금 ○○원과 연 임대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주)는 년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도시가스(주)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일자를 조정하여 달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전 연기 요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도시가스(주)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구청 전용 정압시설을 확장하여 동 정압시설을 설치하면 조기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검토 요청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검토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0-054008(의결일 : 2009. 12. 29.)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자신의 토지상에 위치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요구에

대하여 정압시설의 이전에는 시일이 필요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니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안내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76-11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의 분양 시 적정한 분양가격을 받기 어려우며, 분양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이를 조속히 이전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 상 정압기 시설은 기존 토지소유주와 ○○도시가스(주)의 임대차 계약(정압실 사용대차 및 관리 협약서, 2006. 2. 24.)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설치(2005. 11. 11.)·사용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경매로 낙찰(2009. 9. 7. 소유권 이전됨)받은 이후 정압시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것으

로서, 이 정압시설은 ○○동과 ○○동 16,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설비로서 이전부지의 확보 없이 철거는 어려우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달라.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5. 8. 10. 정압시설 설치 공사계획을 승인하였고, ○○도시가스(주)는 2005. 11. 11. 이 민원 토지에 정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와 2006. 2. 24. 임대차 계약(정압실 사용대차 및 관리 협약서)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연간사용료는 '점유토지의 최근년도 공시지가(원/㎡)×점유면적(㎡)×2/100(백분의 이)×점용일수/365'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에게 연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였다. 정압시설의 크기는 4m × 5m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 3m×4m, 높이 2m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2008. 7.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2009. 7. 22. 이 민원 토지에 있는 정압시설의 철거 가능여부를 ○○도시가스(주)에 문의하였으며, ○○도시가스(주)는 이로써 이 민원 토지의 경매 진행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주)는 이 민원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낙찰(2009. 8. 18.)되었고, 신청인은 2009. 9. 7.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9. 10. 9. 이 민원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455㎡, 15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9. 10. 14. 착공

하였으며, 분양은 2010. 2.경이다.

4. 처리결과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2. 공급소 가. 공급소의 신규설치 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 3) 정압기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상의 정압시설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압시설은 인근 16,000세대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 점, 대체부지가 확보된 이후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배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함), 신청인이 2009. 11. 10.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2009타기○○)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2009. 12. 7. ○○도시가스(주)와 신청인간 현장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보상금 ○○원과

연 임대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가스(주)는 년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도시가스(주)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일자를 조정하여 달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전 연기 요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아울러 ○○도시가스(주)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구청 전용 정압시설을 확장하여 동 정압시설을 설치하면 조기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검토 요청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검토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함.

배수관로 정비 요구

사유지상에 설치된 배수관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배수관로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상 긴급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구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2-053734(의결일 : 2010. 4. 27.)

2.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3. 결정사항

사유지에 설치된 배수관로가 호우시 상습적으로 역류하여 인접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 재난관리 기관에서 재난구조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각자 충남 ○○시 ○○면 ○○리 ○○○-○ 도로 20㎡의 소유자 신청외 ○○○ 외 1인과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하수도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 대지 2,228.67㎡(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상가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민원 건축물에서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년 우기시 마다 침수피해를 받고 있어 이 민원 토지1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이하 '이 민원 배수관로'라 한다)를 정비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배수관로의 일부가 같은 리 ○○○-○ 도로 20㎡(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 구간을 지나가고,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이 민원 배수관로 정비를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이 민원 배수관로를 교체하는 등 적정한 침수피해 방지대책사업을 시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건축물이 침수피해를 입는 이유는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산 ○○-○○번지내에 형성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우수배수관을 거쳐 집수정내에 집수된 후 이 민원 배수관로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나, 당초 이 민원 건축물 신축시 직경이 작은 배수관(직경 300mm)을 설치하여 우기 시 용량 초과로 인해 집수정 밖으로 넘쳐 지하층으로 표면배수가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과 전기감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나. 이에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2008. 5. 14.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민원 토지1에 매설되어 있는 이 민원 배수관로를 대형흄관(직경 1000mm)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이 민원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배수관로정비를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사용승인을 할 경우 이 민원 배수관로를 대형흄관으로 교체하는 등 이 민원 건축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은 식당, 상가, 위락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에서 노래방, 음식점,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은 1987. 7. 7.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1989. 2. 11. 사용승인되었고, 연면적 2,228.67㎡ 지상 2층, 지

하 2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로서, ○○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건축물 후면에는 충남 ○○시 ○○면 ○○리 산 ○○-○○번지내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동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우수배관과 이 민원 토지1에 설치된 집수정을 거쳐 이 민원 배수관로를 통하여 인근 ○○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민원 배수관로의 길이는 약 65m, 직경이 300mm 플라스틱 흄관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직경이 호우시 계곡수와 빗물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2008. 5. 14.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민원 배수관로를 직경 1,000mm의 대형흄관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은 이 민원 토지1내 집수정부터 이 민원 건축물 전면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대하여, 피신청인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전면도로로부터 ○○천까지 약 15m 구간에 대하여 각자 배수관로 정비 및 포장복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토지사용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들이 토지주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승인을 하면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를 위하여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의 토지사용승인이 없이는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 단

가. 「하수도법」 제29조 제1항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는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

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3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1에 의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배수관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건축물의 배후에 폭 10m, 깊이 5m 내외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우기시 동 계곡의 물 흐름이 우수배수관을 거쳐 이 민원 토지1에 설치된 집수정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동 집수정에 모인 물이 이 민원 토지1 지하에 매설된 이 민원 배수관로를 통해서만 인근 ○○천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 민원 배수관로에는 직경 300mm의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 집중 호수시 계곡에서 유입되는 물을 인근 ○○천으로 배출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 또한 동일한 의견으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에 따른 전기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됨을 인정하고 있는바, 침수피해의 예방과 안전사고의 방지 등을 위해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배수관로가 경유하는 이 민원 토

지2 소유자 ○○○의 반대로 인하여 이 민원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신청인들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배수관로가 경유하는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이 토지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건축물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에 따른 감전사고의 우려를 인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에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지우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건축물의 상습적인 침수와 건물의 안정성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 ○○○과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쳐 「하수도법」제3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배수관로에 대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이 민원 토지2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7장

주택·건축분야

제 목	면수
•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524
• 건축 사용승인 반려 처분취소	531
•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	539
• 공공임대APT 입주	545
• 개발행위 준공반려 처분 취소	551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558
• 임대주택계약 갱신	564
• 도로부지 매입 부당	57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574
• 아파트 브랜드 공유	577
•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주거이전비	580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582
• 복도전용 원상복구	584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587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경우로서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이 진입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맹지해소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것으로서 해당 지침 제19조 제1항에「건축법」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은 이 건축법상 도로인 보차혼용통로를 기준으로 후퇴하여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신축허가를 신청한 점,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 항측 사진 및 현지 조사 결과 1974년 당시 이미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4M이상의 넓은 마을회관 앞길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당시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폭4M이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현재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하므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점(1999. 8. 24. 대법원 선고 99두 592 판결 참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진입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는 자신의 미승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동의받기가 불가하지만, 이 일부 필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입로 부분 일부 필

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로부터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의 신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9-056924(의결일 : 2009. 9. 22.)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결정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 있는 경우이고, 이 보차혼용통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용되던 마을회관 앞길에 구획된 경우,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을 받아야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 ○○구 ○○동 97-1외 1필지 상 신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9. 9. 1. 행한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구「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

침' 제19조 제1항 및 제6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97-1, 97-2 지상(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4필지로 가분할하여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 차량과 보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예전부터 있었음에도 이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지 아니하며,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미달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나, ○○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경우로서 보차혼용통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상 진입로 부분은 현재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조에 따른 보차혼용통로 선으로 구획된

상태이고, 1974년도 항측 사진이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미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마을회관(99-10 지상) 앞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이 진입로에 형성된 보차혼용통로 선을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신축허가(2009. 3. 31.)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2009. 4. 3.) 하여, 신청인은 진입로 부분 중 같은 동 99-3, 99-4, 99-9 필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진입로 부분 중 같은 동 99-10 필지 소유자인 신청 외 신○○는 신청인의 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을 반대하고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보완 기간 내 이 해당 필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축허가를 반려 처분(2009. 9. 1.) 하였다.

다. 한편 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에 미동의한 신청 외 신○○ 소유 필지인 ○○동 99-10 지상 건축물은 현지 조사한 결과 2006. 6.경 건축허가 당시 보차혼용통로 부분을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불법 증축하여 장기미사용승인 상태에 있고, 당초의 토지사용승낙 입장과 달리 자신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처리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신청인의 진입로 부분 중 해당 필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였으며, 해당 필지는 차량 통행과 보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다.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처리 현황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주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처리결과
1	이○○, 이○○	○○동 97-2 외 1	다가구주택 (2가구)	109.75	203.09	허가 반려
2	이○○	○○동 97-2	단독주택 (1가구)	86.40	86.40	신고 반려
3	이○○	○○동 97-2	단독주택 (1가구)	86.40	86.40	〃
4	이○○	○○동 97-2외 1	단독주택 (1가구)	94.71	94.71	〃

3. 판 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

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진입로의 보차혼용통로와 관련하여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은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조 제2호는 "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9조 제6항은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현재의 이 진입로는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맹지해소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것으로서「건축법」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보차혼용통로를 기준으로 후퇴하여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신축허가를 신청한 점, 국토지리정보원 항측사진 및 현지 조사 결과 1974년 당시 이미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4M이상의 넓은 마을회관 앞길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당시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폭4M이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현재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하므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점(1999. 8. 24. 대법원 선고 99두 592 판결 참조), 아울러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진입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는 자신의 미승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동의 받기가 불가하지만, 이 일부 필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입로 부분 일부 필지 소유자인 신청외 신○○로부터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의 신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진입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건축 사용승인 반려 처분 취소공제급여 지급

이 진입도로는 2003. 6. 23.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접도 의무를 충족하고 있고, 1972. 2.경 당시부터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이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축한 이 민원 건축물은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건축물로서 이 민원 진입 도로의 경우 인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진입도로 시설 설치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거나 기반시설(진입도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부관(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건을 부여한 점, 신청인은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신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용승인 시점에 이르러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민원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 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한 점, 피신청인은 해당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시 국토계획법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신청인에게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 등'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7-039479(의결일 : 2009. 7. 14.)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진입로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인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조건으로 진입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하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7. 22.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행한 ○○시 ○○구 ○○동 110-34 지상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2009. 04. 0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조,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5. 26. 법률 제2079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86조, 제96조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읍 ○○리 110-34 지상(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1972. 2.경부터 존재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2008. 5. 2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2009. 5. 13.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근거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상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5. 26. 제20791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축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나, 이를 보완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반려 처분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지상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1972. 2.경

세멘 블럭 구조의 단독주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부터 ○○리 110-23(이하 '이 진입도로'라 한다)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 진입도로 부분은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수립으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취락지구 개발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03. 6. 23. ○○시 고시 제2003-15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로 3-32호선)로 결정·고시된 도로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다세대주택(연면적 650.34㎡, 1동 5층)을 신축하고자 1972. 2.경부터 존재한 기존주택을 2008. 2. 4. 멸실하고 2008. 3. 15.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4. 14. 생활폐기물 제거 및 구체적인 부지조성계획서 제출 등 개발행위허가 보완 사항을 요구한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8. 5. 20. 건축 허가하였다. 한편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건축허가 조건 중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은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이 완료(포장 및 지목변경 이후)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조건 중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불가하며, …"라고 하고 있다.

다.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 시까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9. 3. 2. : 이미 이 민원 건축물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이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민원 신청(피신청인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등을 거친 후 신청인에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요구)

○ 2009. 3. 9. : 피신청인 협조 공문 발송(신청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

○ 2009. 3. 12. : 신청인 질의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해야 함)

○ 2009. 5. 13.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2009. 5. 24. : 보완 요구(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불가하며, 진입도로 미확보 시 대체도로 마련 등 개발행위 협의조건 이행)

○ 2009. 6. 22. : 보완 촉구

○ 2009. 7. 20.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통보(이 민원 토지는 1972. 2.부터 건축물이 존재한 토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아님)

○ 2009. 7. 22. :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통지('개발행위 협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승인신청 반려)

3. 판 단

가.「건축법」제12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라고 하고 있다.

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시장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는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법원은 '건축 허가권자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축 허가된 대로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 122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관의 내용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진입도로는 2003. 6. 23.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접도 의무를 충족하고 있고, 1972. 2.경 당시부터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이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축한 이 민원 건축물은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건축물로서 이 민원 진입 도로의 경우 인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진입도로 시설 설치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거나 기반시설(진입도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부관(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도시

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건을 부여한 점, 신청인은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신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용승인 시점에 이르러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민원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 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한 점, 피신청인은 해당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계획법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신청인에게 진입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 등'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행한 사용승인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공제급여 지급

이 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실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전기세 납부 고지서 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동 '○해 12길 81'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적도상 이 사업 구역 내 건물 주소지인 ○○동 81-121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 81-12는 지적도상 ○○아파트 지번에 해당하나 세대 구분 표시가 없어 아파트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1984. 8. 25.부터 이 무허가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을 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전입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오랫동안 정정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일(1997. 10. 2.) 3개월 이전부터 보상협의 보상 시행일(2009. 4. 7.) 이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 등본에는 신청외 이○○의 경우 1999. 11. 8. 부친 고(古) 박○○과 협의 이혼하여 현재까지 제적된 상태로서 법적인 지장물 보상비 지급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산출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7-067773(의결일 : 2009. 7. 24.)

2. 피신청인 부산○○공사

3. 결정사항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 거주사실 입증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시 ○구 ○○동 ○○ 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37조,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8. 4. 18. 법률 제905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인 ○○시 ○구○○동 81-121 지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건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상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

부하고 있으니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업과 관련한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구 ○○동 81-12)가 이 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이 사업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 ○구 ○○동 일대(대지면적 28,635㎡)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1997. 10. 2.),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2005. 9. 21.),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2009. 1. 7.), 보상계획공고(2009. 1. 15.), 협의보상 시행(2009. 4. 7.) 등 이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거주자 실태조사표를 살펴보면, 건물소재지는 ○○시 ○구 ○○동 81-121로 되어 있어 지장물 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시 ○구 ○○동 81-12로 되어 있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이다.

다. 이 민원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번의 주소는 토지대장상 본래 ○○동 산15-2에서 ○○동 81-121로 2002. 5. 23. 등록 전환되었고, 다시 새 주소지 전환 시책에 따라 2008. 10. 2. '○해 ○○길 81' 이란 새 주소로 변경·고시된 상태이다. 한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81-12는 1974. 6. 8. 산14-1에서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는 새주소지 전환 시책에 따라 2008. 10. 2. '천해 2길 27'이란 주소로 변경·고시되었으며, 이 지번에는 이 민원 건물이 아닌 자유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라. 신청인의 친모인 신청외 이○○는 신청인의 부친(박○○)과 1999. 11. 8. 협의 이혼한 후 이 사업 구역 밖의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신청인의 부친이 이 민원 건물에서 2001. 8. 25. 사망한 이후인 2006. 5. 3. 신청인 세대로 전입하였는바,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9. 5. 7.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 당시 이 민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신청외 이○○(당시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 81-12)를 지장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판 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주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실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공사가 발급한 전기세 납부 고지서 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동 '○해 ○길 81'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적

도상 이 사업 구역 내 건물 주소지인 ○○동 81-121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 81-12는 지적도상 자유아파트 지번에 해당하나 세대 구분 표시가 없어 아파트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1984. 8. 25.부터 이 무허가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을 뿐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전입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오랫동안 정정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일(1997. 10. 2.) 3개월 이전부터 보상협의 보상 시행일(2009. 4. 7.) 이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 등본에는 신청외 이○○의 경우 1999. 11. 8. 부친 고(古) 박○○과 협의 이혼하여 현재까지 제적된 상태로서 법적인 지장물 보상비 지급 대상자는 법적 상속권자인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산출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공임대APT 입주

피신청인은 이 아파트 공가 세대에 대하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명단에 적힌 연락처를 바탕으로 예비순위에 따라 1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 결과, 신청인이 입주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신청인이 아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임에도 예비입주자 대장 상 신청인의 연락처는 당시 신청인 주소지인 아파트 호수를 혼동한 △△로 잘못 기재하여 이 번호로는 신청인과 통화가 불가하고 집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 등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임대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포기 의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부 문서조차 작성된 사실이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현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또한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순위자인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후순위인 3순위자를 입주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8-027339(의결일 : 2009. 8. 12.)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순위 변경에 대한 담당자의 과실 및 신청인의 입주의사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시 ○○구 ○○동 574 소재 ○○ 3단지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피신청인의 과실로 상실한 신청인에게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2009. 06. 26.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1조 제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9. 9. 28. 국토해양부령 제16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6조 제4항, 제21조의 2, 제22조 제9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 574 소재 ○○ 3단지 ○○주공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예비입주 2순위자로서, 이 민원 아파트 세대 내 공가가 발생하고 1순위자인 신청외 지순영이 입주를 포기하였다면 마땅히 신청인이 입주자가 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3순위자인 한○○를 입주케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아파트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세대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에게 예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로 통화를 한바, 1순위자인 신청외 지○○과 2순위자인 신청인은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반면에, 신청외 3순위자가 입주 의사를 밝히어 해당 세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공사 ○○관리단 관할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서 최상 7층 높이에 총 세대수는 138세대이고, 2004. 12. 10.부터 12. 29.까지 입주를 개시하여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 2010. 1.경 분양할 예정에 있다.

나. 이후 2005. 4. 27. 이 민원 아파트 305동 503호에 입주해 있던 세대주의 사망으로 공가(空家)세대가 발생하여 직권해약 절차를 거쳐 2007. 12. 중순경부터 해당 공가세대에 대하여 예비자명단 순서별로 임대차 계약을 안내하였으며, 2008. 1. 2. 입주 의사를 밝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다. 신청인은 입주 순위에 대하여 2008. 7. 25.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2008. 8. 8. 민원 제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2008. 8. 14. 회신문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공가세대에 대한 계약안내 시 우편물 반송 예방차원에서 대상자와 전화로 확인한 후 계약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신청인의 배우자

와 통화하여 계약포기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차순위 예비입주자인 신청외 한○○와 계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05. 4. 20. 이 아파트에 임대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입주자 2순위로서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임대분양신청서상 신청인의 주소지는 ○○도 ○○시 ○○읍 ○○리 주공아파트 1205-1408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예비입주자 대장 상에는 신청인의 연락처가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의사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처리 관련 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3. 판 단

가. 예비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제4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세대 공급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아파트 공가 세대에 대하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명단에 적힌 연락처를 바탕으로 예비순위에 따라 1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 결과, 신청인이 입주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신청인이 아닌 후순위인 3순위자 신청외 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는 현재 사용 중인 ○○임에도 예비입주자 대장 상 신청인의 연락처는 당시 신청인 주소지인 아파트 호수를 혼동한 △△로 잘못 기재하여 이 번호로는 신청인과 통화가 불가하고 집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 등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임대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포기 의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부 문서조차 작성된 사실이 없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현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또한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

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순위자인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후순위인 3순위자를 입주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아파트나 다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회 상실에 따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행위 준공반려 처분 취소

이 진입도로는 1998. 11. 25.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로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도로에 해당하고, 2006. 9. 25. 경부터 이미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진입 도로가 개설되어 존재하였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존재하는 점, 이 진입도로 부분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주)○○으로서 신청인은 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개설 및 준공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 진입도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이 진입도로의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 부관(부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해당 사업의 준공을 이 민원 토지상의 개발행위 준공 조건으로 결부하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물사용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가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7-027474(의결일 : 2009. 7. 10)

2. 피신청인 ○○도 ○○시장

3. 결정사항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진입도로의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행위 부관(부담)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7. 6. 신청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행한 ○○도 ○○시 ○○읍 ○○리 452-16외 1필지 상 도시계획도로 준공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2009. 04. 0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65조, 제86조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5. 11. ○○도 ○○시 ○○읍 ○○리 450-13(전), 452-15(구) 지상(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당초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사무소) 용도에서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부지 조성

용도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2009. 6. 23. 이 민원 토지 외 452-16(대) 지상에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한 후 개발행위 준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입도로로 이용할 도시계획시설예정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상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는 인접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할 조건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어야만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토지에 인접한 ○○도 ○○시 ○○읍 ○○리 450-9 지상 도로(이하 '이 진입도로'라 한다)는 1998. 11. 25. ○○시 고시 제98-102호 도시계획시설(소로2-7호선)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외 건축주(이○○) 개발행위 허가서에 따르면 2006. 9. 25. 이 진입도로와 인접한 ○○도 ○○시 ○○읍 ○○리 450-1, 453-15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물건 적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신고 절차를 거쳐 2006. 12. 19. 개발행위 준공 및 2007. 9.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진입도로 부분은 이미 도로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질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다.

나. 이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소로2-7호선) 사업은 2006. 11.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인 (주)○○의 부도로 사업진행이 중지되어 준공검사는 지연되고 있으나,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포장공사 등이 완료되어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9. 5. 11.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2009. 6. 23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는바, 개발행위허가 조건 중 '사업계획 및 인근 기 허가지 진입도로 확보(준공) 후 개발행위준공 신청이 가능하며, 확보(준공)되지 못할 시에는 대체도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주)○○) 및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로 공사 완료 후 같은 법 제98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역개발과)'라고 하고 있고, 신청인은 건축허가서 대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피신청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2009. 6. 19. 개발행위 준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근 진입도로인 도시계획시설(소로2-7호선)이 미준공 되었음을 이유로 2009. 7. 6. 개발행위 준공을 반려 처리하였다.

3. 판 단

가.「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라고 하고 있다.

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관의 내용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하고 있고,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

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을 당사자가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도 그러한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참조)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진입도로는 1998. 11. 25.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로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도로에 해당하고, 2006. 9. 25. 경부터 이미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진입 도로가 개설되어 존재하였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존재하는 점, 이 진입도로 부분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주)○○으로서 신청인은 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개설 및 준공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 진입도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이 진입도로의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 부관(부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해당 사업의 준공을 이 민원 토지상의 개발행위 준공 조건으로 결부하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물사용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가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 지연을 이유로 신청인의 개발행위 준공 신청을 반려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정행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표○○이 사망한 이후부터 표형덕의 가족과 친생자인지 청구 및 편취금반환 소송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표형덕의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실거주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질적으로 송달받지 못하였고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7-059586(의결일 : 2009. 9. 29.)

2.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3. 결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실거주하여,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4. 17.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 ○○-○○ ○○프라자 3층 301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축물상의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계고문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정상적으로 받아본 사실이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택은 2001. 4. 19. 사용승인 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단속권자(당시 ○○구청장)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79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여 2007. 4. 17.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2007. 10. 31. 원상복구(자진철거)되어 종결처리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001. 4. 19. 사용승인과 동시에 매매를 통하여 신청인외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후 2005. 1. 19. 불법건축물 단속권자(당시 ○○구청장)로부터 이 민원 주택 상의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 2005. 3. 21. 신청인외 허○○에게 이전되었고 2006. 6. 30.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민원 주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속권자는 2005. 1. 29. 적발 당시의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인 박○○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5. 3. 21. 소유권을 이전 받은 허○○에게 2005. 11. 3. ~ 2006. 2. 14. 원상복구 계고 및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며, 2006. 6. 30.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신청인에게 2007. 1. 4. ~ 2007. 4. 17. 원상복구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7. 1. 4.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계고 (피신청인 → 신청인 : 반송)

※ 발송주소 : 서울 ○○구 ○○동 670 ○○아파트 914-1506
반송사유 :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감

○ 2007. 1. 23.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 2007. 2. 26.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피신청인 → 신청인 : 반송)

※ 반송사유 :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감

○ 2007. 3. 19.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2007. 4. 17.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피신청인 → 신청인 : 송달)
※송달주소 : 경기 ○○시 ○○동 880-1 502호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주민등록은 신청인외 고 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03. 11. 6.부터 '○○ ○○구 ○○동 ○○ ○○아파트 000-000'에 되어 있었고 2007. 4. 17.부터는 이 민원 주택 근처에 소재한 '경기 ○○시 ○○구 ○○동 000-0 502호'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표○○이 사망한 이후 표○○의 가족에 대하여 표○○의 아들 표○○에 대한 친생자인지 판결(서울가정법원 2005. 11. 11. 선고 2005드단31760 판결 참조), 편취금반환에 대한 조정 및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18205 판결 참조)을 받는 과정 때문에 표○○이 사망한 2005. 4월 말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기 ○○시 ○○동 000 ○○연립 000-000'에 소재한 친언니 집에 실거주하였고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한 2006. 6. 30. 이후부터는 이 민원 주택에서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이 2007. 4. 17. 전입한 주민등록지는 지인 김○○의 자택이고 같은 날 김○○의 자택으로 송달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문을 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고, 철거공사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및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그 후 2007. 10. 10. 인테리어업체(대진

인테리어)와 불법건축물 철거계약을 하여 철거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10. 31. 이 민원 주택 상의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하였다.

마. 2007. 11. 2. 신청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 정○○)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할 때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민원 주택 상의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신청인이 부담했던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의 절반정도 금액인 150만 원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주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였고 같은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표○○이 사망한 이후부터 표○○의 가족과 친생자인지 청구 및 편취금반환 소송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표○○의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실거주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질적으로 송달받지 못하였고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근처에 소재한 지인 김○○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처음 알았고 이에 대하여 바로 불법건축물을 철거였다는 점,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의 절반정도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모르고 매수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과 관련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대주택계약 갱신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해온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며 더욱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하여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봉업의 이동가능성을 근거로 농지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같은 자산기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부가 최소한 10년 이상 민원 토지에서 양봉업을 했음이 울산 ○○군 ○○읍 ○○리 이장의 확인서와 온산읍장의 현지 확인 등으로 알 수 있어 이동성의 측면에서 신청인의 양봉사육은 농업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민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신청인에게 농업인의 경우처럼 자산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원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토지가액의 변동이 문제된 사안으로 신청인의 부를 분가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장애를 가진 고령의 아버지와 계속 동거하고자 분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점, ○○군 ○○읍장이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양봉사육확인과 관련하여 관련서식인 ‘가축사육확인증명원’ 발급절차가 2007년 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2008년 가축통계조사 및 꿀벌소독약품 배부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부가 양봉사육을 하는 것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가축사육이 행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민원주택의 명도(퇴거) 요구를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5-034604(의결일 : 2009. 6. 22.)

2. 피신청인 ○○ 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의 부(父)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처분한 피신청인의 명도요구에 대한 부당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2009. 5. 11. 신청인에게 행한 울산 ○○구 ○○동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명도(퇴거)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4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909, 2005. 11. 17.) 제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3. 5. 3.부터 울산 ○○구 ○○동 국민임대주택(이하 '민원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신청인의 부 송○○(이하 '신청인의 부'라

한다) 명의의 토지(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가 개별공시지가로 기준금액(5,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명도(퇴거)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인 1993. 9. 11. 신청인의 부가 취득한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명도요구를 철회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민원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갱신계약체결 전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인 세대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민원 토지의 토지가액이 기준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909, 2005. 11. 17)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소유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만일 민원 토지가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일 경우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농지법」 제51조에 의해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입주자격 판단을 위한 토지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민원 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제5조에서 정한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입주부적격자에 해당되어 가옥명도를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민원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00시 00구 00동 일원에 건설되었다(총 534세대).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2003. 5. 3. 최초 입주하였으며, 2005. 5. 30.과 2007. 5. 30.두 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 4. 23. 신청인에게 주택 및 자산검색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2009. 5. 4. 신청인의 부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주택 관리인인 주택관리공단 울산00 관리소장은 2009. 5.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주택을 2009. 6. 11.까지 명도(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민원 토지는 울산 ○○군 ○○읍 ○○리 산100(임야, 859㎡)에 위치해 있고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지역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부가 1993. 9. 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년 4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62,449,300원(72,700원/㎡)이다. 한편, 울산 ○○군 ○○읍장은 현지 출장하여 신청인의 부의 양봉사육(고정양봉 40개, 이동양봉 40개)을 확인하고 양봉사육확인 통보를 하였다. 아울러, 울산 ○○군 ○○읍 ○○리 이장은 신청인의 부가 민원 토지에서 10년 이상 양봉업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 ○○관리소장에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자산기준이 있으며 토지의 경우 5,000만원 이하 보유자여야하나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양봉업의 경우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농지의 농업인과 같이 예외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주거복지기획과, 2009. 5. 19).

4. 판 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고 민원 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토지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어 신청인에게 민원주택에 대한 명도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민원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해온 토지이고 자산보유기준초과가 신청인의 임의적인 부동산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상승이 원인이며 더욱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하여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봉업의 이동가능성을 근거로 농지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같은 자산기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부가 최소한 10년 이상 민원 토지에서 양봉업을 했음이 ○○시 ○○군 ○○읍 ○○리 이장의 확인서와 ○○읍장의 현지 확인 등으로 알 수 있어 이동성의 측면에서 신청인의 양봉사육은 농업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민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신청인에게 농업인의 경우처럼 자산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원인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토지가액의 변동이 문제된 사안으로 신청인의 부를 분가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장애를 가진 고령의 아버지와 계속 동거하고자 분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점, ○○군 ○○읍장이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양봉사육확인과 관련하여 관련서식인 ‘가축사육확인증명원’ 발급절차가 2007년 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가 구비되지 않아 2008년 가축통계조사 및 꿀벌소독약품 배부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부가 양봉사육을 하는 것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가축사육이 행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신청인의 부가 소유한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한 자로 보아 민원주택의 명도(퇴거) 요구를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원주택의 계약을 갱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부지 매입 부당

피신청인은 시 소유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도로사업준공전까지 ○○광역시 ○○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양여된 도로부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확포장)하여 ○○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1-035447(의결일 : 2009. 3. 11.)

2. 피신청인 ○○광역시

3. 결정사항

현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를 사업주체가 매입하여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주택법」 제16조

이 유

1. 신청원인

○○광역시 ○○구 ○○동 461외 28번지 상에 시행하는 공

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현재 도로인 ○○광역시 소유의 도로부지 492제곱미터와 수도부지 97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도로개설(확·포장) 한 후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상귀속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도로 및 상수도부지 매입요구를 철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지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과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무상양도 대상이 되므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7 : 고충민원 접수

○ 2009. 1. 8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3. 4 :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3. 11 : 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사실관계 검토의견>

가. 현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대구시 소유 도로부지를 사업주체가 매입하여 도로공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1) 내무부 지침(지정22400-6064, 1987. 5. 13., 시유재산 조

정지침 시달)에는 “「도시계획법」상 소로와 20미터 미만의 도로(계획도로 포함)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도로”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시 소유 도로부지는 1977. 8. 17. 최초 결정고시된 소로 1-성36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이며, 이 도로부지 중 감삼동 467-3 등은 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며, 개인 사유지였는데, 1979. 9. 26.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79. 11. 9. ○○시로 소유권을 변경 된 점으로 보아 이 도로부지는 위 내무부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도로에 해당함.

3) 따라서 1987년 당시 ○○시장이 ○○구청으로 이 도로부지를 무상양여 했어야 할 행정재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가 ○○구에 무상양여하고 신청인은 이 도로부지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만 ○○구청에 기부채납 함이 타당함.

나. 현황이 도로이며, 그 지표하에는 도수관(D=1,000㎜)과 배수관(D=100~200㎜)이 매설되었 있고, 1977. 8. 17.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수도용지는 내무부 공문(지정22400-6064, 1987. 5. 13.,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달)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므로 동 지침에 의거 ○○시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청으로 소유권이전 불가함. 따라서 이 수도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신청인이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시설물만 ○○구청에 기부채납 함이 타당함.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

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도로부지는 무상양여하고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는 신청인이 시행 완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시장은 시 소유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도로사업준공전까지 ○○시 ○○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양여된 도로부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확포장)하여 ○○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하기로 한다.

1. 현재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부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로부지 매입없이 동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여 달서구청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2. 현재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부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로부지 매입없이 동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여 달서구청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함에 있어 신청인 등에게 당초 임대전환 이전에 특별 분양한 조건과 같이 분양전환시점의 일반분양가격 대비 14.6% 차감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38702(의결일 : 2009. 4. 7.)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분양주택을 사업자 임의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부산 ○○구 ○○아파트 402세대를 당초 임대 86

세대와 분양 316세대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고, 분양주택 316세대 중 58세대를 원주민인 신청인들에게 분양공급하고 나머지 254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전환·공급하여 기 분양을 받은 신청인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 미분양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입주 후에도 대규모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기존 분양계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로 유형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신청인등이 계속적으로 임대로의 유형변경을 반대할 경우 분양주택 유지를 검토할 예정임.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2. 16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18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3. 27 : 출장복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4. 7 :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중재)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피신청인 부산 ○○구청은 ○○공사가 부산 ○○구 ○○1동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일반분양 잔여분과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전환 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을 포함한 원주민들에게 특별분양 한 주택을 임대전환하고 향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당초 임대전환 이전에 특별분양 한 조건과 같이 분양전환시점의 일반분양가격 대비 14.6% 차감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다. ○○공사는 이 분양아파트를 임대전환 이전에 신청인 이학만외 53세대 이외의 분양자들에게 임대전환 예정임을 통보하고, 특별분양 유지 혹은 임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 이○○외 53명은 ○○공사가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전환에 동의하며 임대전환에 따른 계약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아파트 브랜드 공유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간 조정중재를 통해 임대주택에도 유명 시공사 브랜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1-035566(의결일 : 2009. 2. 17.)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유명 브랜드(○○○)를 고유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주택법」 제16조

이 유

1. 신청원인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에도 시공사

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시공사 본사의 내부 방침(○○건설 아파트 브랜드 ○○○는 분양아파트에만 사용)과 상충되고, 브랜드는 기업 고유의 무형 자산 가치로 이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해당기업의 동의 필요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1. 16 : 고충민원 접수
○ 2009. 2. 6 : 실지방문조사 실시
○ 2009. 2. 10 : 출장복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합의서(조정) 초안 작성
○ 2009. 2. 17 : 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임대주택에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을 사용하기로 하며, 신청인 등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측벽에 아파트 브랜드 홍보물을 설치에 동의한다)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 ○도 ○○시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라 한다) 574세대 입주예정자 대표(신청인), 00도시

공사(피신청인), 00건설(주)(이해관계인)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명칭(브랜드) 공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조정한다.

가. 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입주예정자 3/4이상의 동의 자료) 사용검사일 전까지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서 확인 절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민원아파트 사용검사일 전까지 이 민원아파트 브랜드(민원아파트 측벽 그래픽, 각종 사인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정고시일 3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구역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나 조합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취지와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구역에 거주자 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조합을 이해 설득하여 조합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 완료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07148(의결일 : 2009. 3. 3.)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중재 합의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이 유

1. 신청원인

서울 ○○구 ○○제○○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한 사실(주택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에도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및 사실관계

신청인의 민원해소를 위해 피신청인 및 조합측에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및 판례 등의 근거를 들어(주거이전비는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설득 등 노력한 결과, 2009. 4. 6.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도움으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보내오셨으므로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었기 이 민원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은 실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익을 얻는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중재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실제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정정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24750(의결일 : 2009. 3. 10.)

2.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

3. 결정사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실제 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정정 부과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제80조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구 ○○동 474-1번지(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상 불법건축물(창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가 임의로 이 민원토지에 불법건축물(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토지주인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처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불법행위 당사자 또는 불법시설물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점유자,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신청인에게 이해 설득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신청인은 2009. 4. 1.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함.

복도전용 원상복구

이 민원상가 임차인과 신청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비롯한 피신청인 담당자의 직무소홀 등은 신청인이 직접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10-046673(의결일 : 2009. 12. 8.)

2. **피신청인** ○○○○○○○공단

3. **결정사항**

   공용부분(복도) 불법용도변경 조치요구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구 ○○동 ○○공단종합상가 312호(이하 '이

민원상가'라 한다)의 공용부분(복도)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었으니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및 사실관계

가. 이 민원상가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주의 의결권 3/4이상의 결의로 결정함. 이 민원상가는 용도변경 승인 당시 입점초기로 영업 중인 점포가 적어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가활성화 및 공단 내 근로자를 위해 운동시설(볼링장)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 제309호, 1996. 11. 4.) 하여 병원을 유치하였음.

나. 건축사무소의 실측조사결과에 따르면 복도의 유효폭만 맞춘다면 전용면적 대비공용면적의 변동이 없어 차후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위법소지는 없다는 의견임. 2009. 1. 29. 위 실측결과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쪽 벽체를 이동조치완료 하였음.

다. 이 민원상가의 임차인 장00이 2009. 6. 12. 신청인을 고발하여 2009. 9. 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은 공갈미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3. 처리결과

이 민원상가는 인·허가관청인 ○○시장에 의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사의 실측결과 이 민원상가의 복도는 건축법상 허용오차범위에 해당되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된 점, 신청인과 이 민원

상가의 임차인(장○○) 사이에 진행된 형사재판결과(1심) 신청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이 민원상가 임차인과 신청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비롯한 피신청인 담당자의 직무소홀 등은 신청인이 직접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오류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8-041157(의결일 : 2009. 9. 29.)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12-16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2층부터 5층까지 1호 및 2호 세대의 호수 표기가 상호 변경되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4.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12-16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2층부터 5층까지 1호 및 2호 세대의 호수 표기가 상호 변경되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이 유

1. 신청원인

서울 ○○구 ○○동 12-16외 1필지 ○○빌(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은 2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으로서 연면적 및 구조는 동일하나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12]상에 1호와 2호가 각각 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1호와 2호를 상호 변경하여 분양한 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현황도상의 세대 호수를 분양내용 대로 임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

12)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

의 것.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내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정정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현황도를 변경해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대하여 2008. 8. 28. 서울 ○○구 ○○동 12-16외 1필지에 지상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물사용승인 하였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할 때에 이 민원주택 설계자가 제출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을 제출받았다.

나. 이 민원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지상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우측에 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 그 수직선상 2층은 다세대주택 202호가 그 맞은편에 201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3층부터 5층까지는 2층과 동일한 형태로 다세대주택 호수가 표시되어 있다.(101호 수직선상 202호, 302호, 402호, 502호로 표시)

다. 한편, 이 민원주택의 실제현황은 세대별 출입문에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01호) 수직선상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표시하고 그 맞은편 세대를 202호, 302호, 402호, 502호로 표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의 실제 현장에 표시된 다세대주택 호수대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였고, 민원제출일 현재 이 민원주

택 총 8세대 중 2세대(302호, 402호)는 분양이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나머지 6세대와 1층 근린생활시설은 신청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4. 판 단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사용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된 건축물대장이므로 건축물현황도의 정정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대한 신청권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각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작성 시 착오로 다세대주택 호수의 좌우가 바뀌어 등재되었음을 이유로 이 민원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오류 정정 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내내용의 오류를 정하여야 하는 점, 건축물 실제 현황과 달리 기재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를 현 상태로 관리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와 달라 발생할 수도 있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 건축주인 신청인이 건축물현황도의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정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건축물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미 분양이 완료된 2세대 소유주 또한 신청인과 매매계약 시 이 민원 주택의 호수를 이 민원주택의 출입문에 표시된 실제 현황과 같이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하여 현재 호수대로 건축물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잘못 기재된 건축물현황도 정정 신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의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건축물 현황이 다를 뿐 이 민원 주택 호수 변경을 위한 어떠한 매매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건축물현황도를 정정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소유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점, 이 규칙 제21조 제2항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잘못이라 함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관계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오류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민원 주택 건축물현황도상 다세대주택 각 층 1호와 2호를 상호 변경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8장

도시·수자원분야

제 목	면수
• 휴직보상	594
• 영업손실 보상	600
• 무허가건축물보상	605
• 가산보상	612
• 실농보상	617
• 이주정착금 지급	624
• 토지보상 이의	630
• 이주대책	635
• 영업손실보상	640
• 이주자 택지공급	646
•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652
•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657
• 공장이전 지연 위약금 부과	663
• 공유재산 수의매각	666
• 건축물 사용승인	669
• 운동시설내 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	672

휴직 보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최○○, 이○○, 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 노동 행태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사실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휴직보상함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9-024203(의결일 : 2009. 11. 30.)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상 휴직보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89-1 소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최○○, 이○○, 신○○에게 휴직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이 유

1. 신청원인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신청인이 영위한 ○○시 ○○구 ○○동 ○○ 소재 ○○엔지니어링(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설비의 이동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최○○, 이○○, 신○○이 휴직하게 되었으니, 이들에게 휴직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영업장의 근로자 최○○, 이○○, 신○○(이하 '이 민원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휴직보상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 ○○. 예정지구 공람공고, 2008. ○○. ○○. 택지개발계획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지장물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액은 총○○,○○○,○○○원으로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다.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상호는 이 민원 영업

인 ○○○엔지니어링, 징수의무자는 신청인, 소득자는 이 민원 근로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고 그 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기간	최○○○		이○○○		신○○○	
	지급액	원천 징수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08. 4.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5.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6.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7.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9.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1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11.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12.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원에 따르면, 신청인을 보험가입자(대표자)로 하여, 1997. ○○. ○○. 산재보험에, 1998. ○○. ○○. 고용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2009. ○○월 현재 체납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61종류이며 2008년 기준 총 ○○개 거래처로부터 ○○○,○○○,○○○원의 매출이 이루어졌다.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납기일을 정하여 '갑'의 특정설비를 이동하고 설치하는 것을 '을(신청인)'의 용역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원천징수의 종류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직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

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민원 영업은 신청인을 대표로하여 특정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생산설비, 연구 장비 등을 이동하여 재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용역업으로서 납기를 정한 계약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이 민원 근로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점, 이 민원 영업의 영위를 위한 도구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 민원 근로자를 상당한 지휘 감독하고, 이 민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민원 근로자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승인고시일 당시 이 민원 영업장에서 3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민원 근로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에게 휴직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근로자에게 휴직보상을 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손실 보상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과 지장물건 조사서, 지장물 보상합의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5. ○○.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나 보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이 민원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4-034490(의결일 : 2009. 11. 24.)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공적 증명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사실을 조사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4. 주 문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 ○○○ ○○○ ○○○ 소재 건축물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 ○○○ ○○○ ○○○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바, 이 민원 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부 등본(건물 및 토지)에는 신청인은 2003. 2. ○○.

이 민원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가 발송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계고서 및 수납내역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을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나무문제작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한 데 대하여 경기도 ○○○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위반으로 2003. 5. ○○.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2006. 2. ○○. 이행강제금 3,241,8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 납품업체 납품확인서에는 2003. 10. 10. ~ 2007. 12. 11. 기간 동안 ○인테리어 대표 최○○, 인테리어 업체인 ○○디자인 대표이사 이○○ 등이 5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는 1991. 3. 6.부터 2003. 12. 31.까지 ○○목공소라는 상호로 서울 ○○○ ○○○ 소재지에서 가구수선 서비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지장물건 조사서 및 지장물 보상합의서에는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축물(공장) 248.52㎡, 목재선반 1.35㎡, 대형루지접착기 1식, 대형문짝조립기 1식, 대형합판재단기 1식, 콤푸레샤 5식 등이 있으며, 신청인은 2006. 8. ○○.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건에 대하여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75,026,333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장이 발송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과 피신청인이 2006년도에 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 지장물 보상합의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5. ○○.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을 개시하여 2006년 지장물건 조사 및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민원 영업을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나 보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비록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민원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민원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해당되며 또한 자유영업이 무허가 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민원 영업은 '영업보상 기준일인 2005. 9. 30.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무허가 건축물 보상

이 민원 건물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1. 10.)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보상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0-008465, 2BA-0910-053045(의결일 : 2009. 11. 30.)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결정사항

1989. 1. 24. 이후 발생된 무허가건물이나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건축물 보상 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28-○○ 소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산 28-○○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8. 1. 10. ○○시고시 제2008-○○호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2008. 3. 12.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이 민원 건물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12. 5. 매도자 김○○으로부터 이 민원 건물을 2,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12. 17.에, 신청인의 남편 한○○은 1996. 3. 29.에 이 민원 건물에 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거주사실조사서'에는 신청

인은 신청인의 남편과 함께 1996. 3. 29.부터 이 민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케이티가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는 신청인 김○○이 1992. 4. 10. 이 민원 건물 주소지에 일반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점이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는 신청인의 남편 한○○이 2002. 7. 22. 이 민원 주택에 주택용 전기를 신설하였고, 2002. 9. 4. 요금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2009. 10.까지 매월 전기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08. 3.경 및 6.경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이 민원 건물이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도시공원 내 불법점유 무허가건물로 확인됨에 따라 2009. 1. 9. 자진철거 지시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2009. 6. 22. 제2차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전에는 도시공원 내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바. 신청인의 남편 한○○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보상도 없이 행정대집행이 계고된 것에 대하여 2009. 1. 1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6. 8. 이 민원 건물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보상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상없이 행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

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임이 명백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케이티가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한국전력 강북지점이 발급한 '고객종합내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12. 5.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7. 이 민원 건물에 거주하면서 1992. 4. 10. 이 민원 건물에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그 후 2002. 7. 22. 이 민원 건물에 주택용 전기를 신설하여 전기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1. 10.)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이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될 당시의 것) 제5조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부지에 대한 평가나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서 이를 적법 건축물의 부지(즉, 대지)로 평가하거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도시공원 내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건물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산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가산보상금제도를 둔 취지는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가족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일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가산 보상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합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04518(의결일 : 2009. 10. 26.)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도 그 사람들의 관계가 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일 경우 가산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동 ○○ 대 914㎡ 및 지상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가산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8조 제2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남편 ○○○의 소유였던 경기 ○○시 ○○동 ○○ 소재 지상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1'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1'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어 2003. 5. 7. 지장물(영업)보상에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2002. 8. 6. 신청인이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기 ○○시 ○○동 ○○ 대 91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지상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2'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2'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1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의 남편 ○○○이고, 이 민원 사업 2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2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으로 보상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토관 58342-1856(2001.12.5))에서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대상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산보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4. 8.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었고, 2006. 9. 13. 보상계획 공고되었으며, 2006. 12. 13.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되었다.

나.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및 지출결의서에는 신청인의 남편 ○○○는 이 민원 주택 1 및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원을 지급받았으며, 신청인은 2006. 6.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원을, 2006. 8. 17. 및 2007. 1. 30.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보상금 ○○1원 및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남편 ○○○는 이 민원 사업 1지구에 이 민원 주택 1이 편입됨에 따라 이 민원 사업 1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 2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 ○○○가 1998. 6. 1.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한 후, 이 민원 사업 1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3. 6. 3. 이 민원 주택 2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2에 대하여 2002.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1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의 남편 ○○○이고, 이 민원 사업 2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 2의 보상대상자는 신청인으로서 보상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2001. 12. 5. 토관 58342-1856)에서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대상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산보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가산보상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와 보상받아 매입 또는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산보상금제

도를 둔 취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 또는 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주거의 형태는 가족 또는 세대의 구성원 개인단위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또는 세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신청인의 남편 ○○○와 이 민원 주택 1이 이 민원 사업 1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여 온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 1과 이 민원 주택 2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평가액은 ○○원 및 ○○원으로서, 가산될 30%를 계산해보면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 2에 대한 가산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과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실농보상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생산자명을 단체명, 지역에서 불리는 상표, 혹은 운송 기사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산물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출하자를 달리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실제 농산물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등의 일반적 상황과 신청인의 신체적 조건, 신청인외의 가족이 이 민원 토지 이외에는 이 민원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족명의의 출하 자료도 동일한 소득자료로 보아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7-046493, 2BA-0908-009034(의결일 : 2009. 10. 12.)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하천 점용 허가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출하한 영농소득 자료에 실제소득 자료로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충남 ○○군 ○○면 ○○리 11-1 외 6필지 상 비닐하우스 6동 3487.2㎡에서 오이를 재배한 신청인에게 실제 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이 유

1. 신청원인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에 편입된 충남 ○○군 ○○면 ○○리 11-1 외 6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 비닐하우스 6동 3487.2㎡에서 하천점용(이하 '이 민원 하천 점용'이라 한다)을 받아 시설 오이(이하 '이 민원 농산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출하하였다는 이유로 실제소득으로 보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거한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하천점용권자가 아닌 자가 경작하여 출하한 실제소득자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한 평균금액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5. 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호로 ○○○○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 9. 1.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었으며, 2006. 11. 29. ○○○○건설청고시 제2006-○○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다.

나. 하천점용허가증에는 신청인은 충남 ○○군 ○○면 ○○리 427-3 지번선, 같은 리 161-2 지번선에 대하여 2001. 1. 1. ~ 2005.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하천점용지의 하천점용허가증 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다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하천점용지가 이 민원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니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거주하였던 충남 ○○군 ○○면 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은 이 민원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는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장물조사서에는 이 민원 토지에 3중 비닐하우스 6동 3487.2㎡ 및 1중 비닐하우스 관리동 151.06㎡, 샌드위치판넬 관리사 24.15㎡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하자 거래실적현황 및 출하자별 출하내역에는 2003. 1. ~ 2005. 12.까지 신청인의 아들 및 며느리,

손자 명의로 ○○청과(주) 및 (주)○○중앙청과, ○○청과(주)에 오이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청과(주) 및 ○○청과(주)에서 출하한 오이에 대한 출하대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주민동록표(등본 및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충남 ○○군 ○○면 ○○리 439-1번지에서 거주하다 2007. 6. 14. 같은 군 ○○면 ○○리 622번지로, 신청인의 아들)은 같은 군 ○○면 ○○리 460-8번지에서 거주하다 2007. 8. 17. 같은 면 ○○리 553번지로 전입하였다.

자. 실제 유통을 담당하는 법인인 ○○청과(주)에서는 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아들은 지체(상지절단)4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는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본조사 및 실사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과 함께 이 민원 토지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민원 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하천점용권자인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출하하였기 때문에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농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생산자명을 단체명, 지역에서 불리는 상표, 혹은 운송기사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산물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출하자를 달리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실제 농산물 생산자와 출하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이 민원 농산물을 신청인의 아들 및 며느리, 손자의 명의로 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대금의 상당 부분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신청인의 아들은 지체(상지절단) 4급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민원 농산물은 신청인이 주로 경작하고 신청인의 아들 내외가 75세로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출하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이 보상계획공고 당시 거주하였던 충남 연기군 남면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이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은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이 민원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였고, 이 민원 토지 이외에는 이 민원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실제소득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과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정착금 지급

토지보상법은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해당하며,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사업자 지구의 여건에 따라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인 바,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8-031038(의결일 : 2009. 10. 12.)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179-3 ○○아파트 7-106에서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4항, 제41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79-3 ○○아파트 7-106(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8. 1.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2008. 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3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었고,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9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으며, 같은 날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용도로서 면적은 59.5㎡이고, 신청인은 1995.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08. 7. 2. 조사한 거주실태조사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이고, 신청인은 1996. 1. 9.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6명의 가족과 거주하여 오다가 2009. 4. 2.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고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이하 생략>”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하 생략>” 라고 하고 있다.

나. 서울시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은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1. ~ 2. …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제3항은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즉 이 민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 (2008. 4. 3.) 이전인 1995. 3. 3.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고 1996. 1. 9.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서울시 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보상 이의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가 공부상 확정되지 아니하나 토지보상법 상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축물이 건축된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5-011172(의결일 : 2009. 7. 6.)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중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중 대지로 평가하는 범위

4. 주 문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 전 568㎡ 중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5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 전 56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은 공부상 축사로 되어 있으나, 1989. 1. 24. 이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므로, 이 민원 토지를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축사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1989. 1. 24. 이전에 이 민원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전기, 수도 관련 근거 자료 등은 1989. 1. 24. 이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토지를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 1. 27. ○○공고 제99호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06. 7. 21. ○○고시 제2006-27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8. 8. 5. ○○고시 제2008-373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을 위해 2008. 8. 19.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568㎡로서 신청인은 1987. 9. 23.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이 민원 건축물은 연면적은 62.64㎡, 용도는 돈사, 시멘트브럭스레이트 구조의 1층 건축물로 건축주는 ○○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 용도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전'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격을 ㎡당 1,986,000원을 적용하여 573,301,330 원으로 책정하였다.

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물 현황은 주용도가 축사, 건축물 면적은 65.8㎡, 소유자는 ○○로 되어 있고, 신청인이 1987. 8. 18.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 자 ○○○ 등은 1986. 9. 13. 이 민원 건축물의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와 약식명령사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건축법 위반으로 1990. 9. 23. 벌금 20만 원이 확정되어 1992. 5. 18. 납부하였고, 위반 내용은 1987. 6. 1.부터 도시계획구역인 성남시 ○○ 소재 축사면적 합계 약 60㎡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9. 3. 2. ○○가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 소재지를 설치장소로 하여 1987. 3. 31. 전화를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9. 1. 14. ○○가 발급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부터 2008년까지 이 민원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정)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

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이 민원 토지를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1990. 7. 31.자 약식명령서(○○법원 ○○지원, 90 고약 ○○, 건축법 위반)의 공소사실란에는 “1987. 6. 1.경부터 도시계획구역인 성남시 ○○ 소재 축사면적 합계 약 60평방미터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87. 3. 31. 이 민원 토지를 설치장소로 하여 주거 생활에 필요한 전화를 가입한 사실이 있는 점과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자 등이 상기 건축법 위반 이전인 1986. 9. 13. 이 민원 토지의 주소지로 함께 전입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신청인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부령 제○○호, 2002. 12. 31. 제정) 제5조에 따른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대책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여부가 부정되었으나 정밀판독에 의해 존재여부가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주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0-029587(의결일 : 2009. 11. 9.)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시 ○○구 ○○동 ○○-○○ 소재 무허가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1989. 1. 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항측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소유하고 거주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1. 10.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주대책기준일)를 하였고,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를 한 후 2003. 9. 29. 보상계획이 공고 되었다.

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소재지에 1985. ○○. ○○.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5. ○○. ○○. ○○시 ○○구 ○○동 ○○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장물조사서에는 이 민원 주택의 면적은 ○○㎡, 구조는 브럭조 스레트즙의 가옥 1동(방 3, 거실 1, 욕실 1), 소유자는 신청인, 거주자는 신청인 가족 ○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1989. 1. 24. 이전부터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 김○○이 1989. 2. ○○.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졸업증명서, 이 민원 주택 소재지에 일반전화가 신청인의 처 이순희 명의로 1987. 9. ○○. 개통되었다는 KT○○지점의 내역조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한 사업지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2004. ○○. ○○. 회신 받았으며, 그 내용에는 1988년 항측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2001년 항측도 상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바. 피신청인은 위 판독 내용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 ○○. ○○.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 ○○. ○○. 위 판독 내용을 근거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처리결과통보에 불복하여 다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1990. 3. ○○도 보관 항공사진 및 1993. 12. ○○시 보관 항공사진에 2001년 촬영된 항공사진과 동일 형태의 이 민원 주택이 존재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198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민원 주택의 위치를 지정하여 ○○항업주식회사에 정밀판독을 다시 의뢰한 결과,

2009. ○○. ○○. “1.5m 높이의 담이 추정면적 13.26㎡(길이 7.8m, 폭 1.7m)의 가건물(이하 ‘이 민원 가건물’이라 한다) 주위를 둘러싸고 건물의 양쪽 지붕은 투명슬레이트로 판독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2. … <이하 생략>”라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될 당시의 것) 부칙 제6조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 ○○.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르

면 신청인이 소유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토지보상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 ○○. ○○항업주식회사가 1988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가건물은 일정한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에 1985. 12. ○○.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987. 9. ○○.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에 신청인 처 이○○ 명의로 일반전화가 개통된 점, 1989. 2. ○○. 신청인의 자 김○○이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이 민원 가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1989. 1.부터 1990. 3. 사이에 면적 38.87㎡의 이 민원 주택을 증축한 후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내에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손실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유형으로 법령상 사업의 목적이 구분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의 경우 영업허가 등 다른 법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6-026770(의결일 : 2009. 7. 27.)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영업한 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 대 360㎡에서 ○○업 등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4조

이 유

1. 신청원인

○○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대 3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적법하게 설치된 가설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온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남서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 12. 28.(사업인정고시일) ○○시고시 제2007-491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을 위해 2008. 8. 29. ○○공사 공고 제37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허가증에 따르면, ○○은 이 민원 토지를 영업장소로 하고, 상호를 '○○'로 하여, 1988. 7. 20. ○○ 영업을 허가하였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과 ○○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구역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최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고일자는 2000. 11. 13.이고, 2008. 12. 31.까지 존치기간이 연장되었다.

라. 2001. 9. 28. ○○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으로, 업종은 '○○ 등'으로 하여, 1993. 9. 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08. 4. 29. 조사하여 작성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물건기본조사서에는 사무실・담장・관정・계근대・보안시설・파워프레스・간판・고철 및 비철・용접기・절단기・지게차 등이 주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장이 2008. 11. 5.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신청인이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이 민원 영업으

로 발생한 매출과세분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총액 33,615,087 원)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대', 면적은 360㎡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2009. 1. 12.)되기 전의 소유자는 ○○로 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2008. 6. 30. 신청인이 위 ○○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2008. 6. 30.부터 12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는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한 사무실, 이동식화장실, 용접기 등 지장물건의 손실보상액이 총 19,960,000 원으로 되어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면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토지형질변경,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

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민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64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허가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철거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유형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또한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해당 시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므로,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제64조를 들어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장과 ○○장이 발급한 '고물상 영업허가증'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피신청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물건기본조사서', 기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에 나타난 이 민원 영업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민원 사업 구역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민원 영업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자 택지공급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 등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70887(의결일 : 2009. 12. 14.)

2. 피신청인 ○○○○개발공사

3. 결정사항

○○○○혁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동 245 소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 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혁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동 245 소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피신청인「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제43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시 ○○동 245번지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1'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이주대책기준일(2006. 7. 18.)이후에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외에 ○○시 ○○동 1432-4 소재 다른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2'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6. 7. 18. ○○시공고 제200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되었으며, 2007. 10.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호로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고시되었고, 2007. 5. 18.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1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 연면적은 95.32㎡로서 2001. 9. 24. 준공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을 2002. 2. 16.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 2의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그 중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은 주택, 연면적은 501.84㎡로서 신청인은 1989. 4. 27.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 민원 주택 1은 이 민원 주택 2로부터 약 3km 거리에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08. 1. 4. 이 민원 주택 1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07. 11.에 작성한 '이주대상자거주조사표'에는 실제거주자가 5명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들은 신청인의 처 ○○○와 신청인의 모 ○○○, 신청인의 아들 ○○○, 신청인의 딸 ○○○으로 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처 ○○○는 이주대책기준일(2006. 7. 18.)이전인 2006. 2. 28.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고, 신청인은 1990. 3. 31. 이 민원 주택 2로 전입한 후, 2007. 3. 27.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으며, 신청인의 모 ○○○는 2007. 5. 15.에, 신청인의 아들 ○○○과 딸 ○○○은 2007. 5. 23.에 각각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KT전화 가입자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이 민원 주택 1에 전화를 설치하여 2005.부터 2008.까지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인터넷도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이 민원 주택 1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2005.부터 2009.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이 민원 주택 1의 위성TV(스카이라이프)설치 개통확인서와 요금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 명의로 2002년에 개통을 하여 2005.부터 2008.까지 요금을 납부하였고, 이 민원 주택 1의 2005년 ~ 2007년의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290kWh이며, 2008. 12. 발표한 한국전력통계의 같은 기간 1가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732kWh이다.

바. 이 민원 주택 2는 원룸형 구조로 2층에 6실, 3층에 3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2에 2004년에는 2명, 2005년에는 5명, 2006년에는 4명의 대학생이 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 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정한「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제43조는 "사업지구 안에 단독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당해 지구에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2006. 7. 18. ~ 2008. 1. 4. 기간 동안 이 민원 주택 1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고(국토해양부질의회신 2003. 11. 10, 토관 58342-1493), 피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 1에서 신청인의 처 ○○○가 혼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주택 1의 2005년 ~ 2007년의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290kWh로서, 2008. 12. 발표한 한국전력통계의 같은 기간 1가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 4,732kWh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위 ○○○ 혼자 이 민원 주택 1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위성TV요금, 인터넷 사용료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인 명의로 부과되어 신청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이 민원 주택 2는 원룸형 구조로 주변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 민원 주택 1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구태여 이 민원 주택 1이 아닌 이 민원 주택 2에서 거주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주택 1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공람공고일(2006. 7. 18.) 이전부터 보상협의계약체결일(2008. 1. 4.)까지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개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설계, 공사계약 내용 및 지출영수증, 개발이익의 분배 과정 등에 의하여 공동개발로 볼 만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각 행위자가 별도의 건축허가 및 실질적으로 별도의 개발행위를 진행한 경우 단지 건축 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들의 지분 소유 관계 등을 기반으로 공동개발로 보아 개발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43183(의결일 : 2009. 2. 17.)

2.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수인이 지분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규모에 있어 동일 사업자로 보아 개발부담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개발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09. 6. 17. ○○○○○-11720호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이 유

1. 신청원인

인천 ○○ ○○○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을 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교환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신고를 한 대상 토지(이하 '이 민원 개발토지'라 한다)의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660㎡에 미달되는 377㎡인데도 개발부담금(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 민원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의 면적은 377㎡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인 660㎡미만이나,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는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개발면적까지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부담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2008. 3. 4.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인 인천 ○○ ○○

○ ○○○-○ 전○○에 체결한 교환계약서에는 신청인 소유인 인천 ○○ ○○○ ○○○-○ 답 18㎡와 같은 동 ○○○-○ 답 16㎡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전○○에게, 인접 토지소유자 전○○은 같은 동 ○○○-○ 답 42㎡와 같은 동 ○○○-○ 답 94㎡를 신청인에게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신고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교환 받은 토지 377㎡에 소매점 건축을 위해 2007. 12. ○. 건축신고를 한 후 2008. 11. ○○. 사용승인이 되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교환 토지를 포함하여 총 944㎡에 소매점 목적으로 2007. 12. ○. 건축신고를 한 후 2008. 12. ○.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 및 인접 토지소유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신청인은 ○○측량설계공사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는 건축설계비, 건축공사비, 사용승인의뢰비로 각각 ○○○원,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9. 6. ○○. ○○○○○-11720호로 신청인에게 총 ○○○원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2009. 12. ○○.까지 납부하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 및 관련 인접 토지의 현황은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377㎡이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과 합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인 660㎡ 이상이므로 이 민원 부담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하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사람이 별개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 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기 위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인접한 토지가 같은 시기에 일부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지목변경이 되었더라도 건물의 건축을 공동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설계, 공사계약 내용 및 지출영수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설계자나 공사업자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달리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 비용 또한 따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교환은 각 건물간의 상호간의 기능 보완이나 증대 목적이라기보다는 건축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개발 사업 공동 시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에 사용된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거소 신고를 한 후 거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내에서 생활해온 경우 실거주 여부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812-069451(의결일 : 2009. 3. 30.)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3. 결정사항

재외국민의 경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서울 ○○구 ○○○동 346-4 소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46-4 소재 무허가건물(이하'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바, 신청인이 재외국민 등이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명단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 및 국외이주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 목 적 : 재해예방 및 소방도로 확보

○ 사업명 : ○○○동 341-108 ~ 388-22간 도로개설공사

○ 규　모 : B=6~8m, L=282m
○ 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청장

나. 이 민원 사업 추진경위
○ 2006. 9. 21.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고시 제2006-62호)
○ 2007. 5. 31.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구고시 제2007-31호)
○ 2008. 12. 8. : 사업준공

다. 피신청인(매수자)은 2007. 11. 9. 신청인과(매도자)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6,744,000원에 '물건등의 이전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민원 건물은 기존무허가건물로서 항공사진판독결과 1981. 11. 6. 사진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배우자 ○○○, 자녀 ○○○, 자녀 ○○○ 등 ○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민출국(미국)으로 신청인 및 ○○○은 2003. 2. 3.자로, ○○○은 2006. 5. 15.자로, ○○○은 2007. 3. 16.자로 각각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8. 12. 2. 발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신청인은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2003. 4. 14. 국내거소를 서울특별시 ○○구 ○○2동 429-87로 신고하였고, 2008. 1. 4. 서울특별시 ○○구 ○○동 1029번지 13호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 외 ○○○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충족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0.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사. ○○○○보험주식회사 사장이 2008. 12. 2. 발행한 위촉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1. 15.부터 ○○○○보험주식회사의 설계사로 위촉되어 발행일까지 위촉중임이 확인된다.

4. 판 단

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서울시 공급규칙'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공급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 나. <생략>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공

급규칙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세대주 및 제2조 제9호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공급 규칙제2조 제8호에는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9호에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 명단관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 요건 확인이 곤란한 신청인과 같은 국외이주자 등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비록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상태이기는 하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2003. 4. 14.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거소신고후 현재까지 동 관할구역안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법 제9조에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의 주장은 단지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서울시 공급규칙 등에서 재외국민 등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0. 신청 외 ○○○의 질의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 신청인은 1994. 1. 15.부터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이민출국(미국)으로 2003. 2. 3.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2003. 4. 14. 서울특별시에 거소 신고시까지 일시적인 공백이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국내에서 생활해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이전 지연 위약금 부과

위약금 발생사유가 신청인과 허가기관의 법정다툼으로 발생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위약금 처리를 ○○공장 시설 철거 일정에 맞추어 조정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6-020421(의결일 : 2009. 9. 24.)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피신청인와 신청인간 작성된 협약에 따른 위약금에 있어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귀책없이 발생된 위약금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개발사업 지구내 ○○공장의 이전이 대체부지 공장설립 허가에 대하여 ○○시청과의 다툼으로 지연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민원 공장 지연이 아님이 분명하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장 이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경되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전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상호 협약서 작성으로 적법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해 준다면 이에 응하겠다.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6. 8. : 민원 접수

○ 2009. 6. 30. : 실지방문 조사(담당 조사관, 피신청인, 신청인, ○○시)

○ 2009. 7. 28. : 관계인출석조사(전문위원, 피신청인, 신청인, ○○시)

○ 2009. 8. 19. : 다수인민원접수(공장직원 연명부 제출)
⇒ 다수인민원접수 보고시 조정건으로 진행 검토

○ 2009. 8. 19. ~ 9. 18. : 조정중재안 제안 및 의견수렴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합의)안>

1) 이 민원 공장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 A-Batcher 플랜트 및 관련시설은 2009.11.○○까지 이전 완료한다.

○ 이 민원 공장의 잔여 모든 시설은 2010. 1.○○까지 이

전완료 한다.

2) 이전 지연에 따른 2009년 5월부터의 토지사용료와 위약금과 관련하여

○ 토지사용료 및 위약금은 2008. 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기 협약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민원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기 전 기 경과된 기간(2009. 5월부터 2009. 6월까지 2개월)에 대하여는 금○,○○○,○○○원/일로 산정한 금액을 이 조정서가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2009. 7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토지사용료는 기 작성된 협약서 내용대로 금○○○,○○○원/일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A-Batcher 플랜트 및 관련시설의 이전에 따른 토지 면적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만약, 2010. 1. 31.까지 모든 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 작성된 협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소급(2009. 7월부터 2010. 1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 2월부터 신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존 위약금의 ○○%로 한다.

3) 기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은 소 취하하되 기 발생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대망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29140(의결일 : 2009. 4. 30.)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피신청인이 하천부지를 수의매각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매각함이 타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이 유

1. 신청원인

○○○도 ○○군수가 1988년경 ○○면 ○○리 일원에서 시행

한 ○○○○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2. 피신청인 의견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나.「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특히, ○○○도 ○○군수가 1988년경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나.「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특히, ○○○도 ○○군수가 1988년경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행계획(이행담보제공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2-063888(의결일 : 2009. 3. 18.)

2.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3. 결정사항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채납 계약이 불이행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고충민원 해소 방안 중재

4. 초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채납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요구함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기반시설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붙임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9. 2. 25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5 : 고충민원 조사자료 제출(○○시)

○ 2008. 3. 10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방안 조정, 초안 작성

○ 2009. 3. 18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4. 처리결과 : 합의해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행계획(이행담보제공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체납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민원을 종결한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붙임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기로 한다.

운동시설내 음식점 등 편의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당과 은행, 약국, 학원, 병원 등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용도로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그 허용용도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의 부대편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구한 전체 식당의 규모(3,627㎡)도 전체 연면적 규모(16,972㎡)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한 약국, 은행, 학원, 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변 현황,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 아파트 주민도 이 민원 건축물에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은행, 학원, 의료시설 등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기타 도심지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02년 최초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이 민원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수요, 주변 현황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9-008938(의결일 : 2009. 10. 26.)

2.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3.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은행, 약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4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이 유

1. 신청원인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이하 '이 민원 운동시설'이라 한다)로 결정되어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내에서 일반음식점 등 식당과 일정 면적의 은행, 약국, 슈퍼마켓, 학원, 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운동시설내 허용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 등 식당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 은행·약국·수퍼마켓·학원·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경기 수원시 ○○ 일대, 사업시행 면적은 634,305.6㎡, 사업시행자는 ○○공사로 1994. 6. 15. 사업을 착공하여 2002. 7. 25. ○○공고 제2002-186호로 준

공 공고되었다.

나. 2002. 7. 5. ○○고시 제2002-168호로 고시한 이 민원 사업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운동시설 용지로서 면적은 4,234.9㎡, 허용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용도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 안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허용 요구업종	허용 요구면적	입점 위치	전체연면적(16,824㎡) 대비 점유비율	
식당(일반·휴게음식점)	3,627㎡	1~3층, 지하1~3층	21.34%	
약국	109.62㎡	1층	3.01%	15.18%
은행	512.94㎡	1층~2층	5.79%	
슈퍼마켓	983.68㎡	2층	5.79%	
병원 등 의료시설	567.04㎡	1층	3.34%	
학원(어학, 미술, 음악 등)	408.36㎡	2층	2.40%	
합 계	6,208.64㎡		36.52%	

라. 수원시 ○○장은 신청인의 식당 설치 요구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등 식당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환경위생과-12171호, 2009. 7. 29.)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내에 약국, 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은행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 용도로 결정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내에 허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나, 부대편의시설은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신청인에게 통보(도시계획과-8230호, 2009. 7. 24.)하였다. 또한, 수원시 ○○장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 은행, 슈퍼, 병원, 학원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신청인에게 통보(○○건축과-8926호, 2009. 8. 6.)하였다.

바. 이 민원 건축물과 인접한 ○○단지 입주자 대표는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 민원 건축물 안에 식당, 은행, 학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2009. 8. 12., 2009. 9.3.)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 ○○과-9158호)하였다.

사. ○○에서는 수원시 ○○장의 운동시설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2008. 7. 24. ○○과-1132호로 운동시설내 일반음식점인 식당은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운동시설내 편의시설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없다고 수원시 ○○장에게 회신하였다.

아. ○○부는 2008. 4. 30. ○○과-512호로 수원시 ○○장에게 일반음식점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인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일반음식점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부에서는 2008. 5. 2. ○○과-935호로 수원시 ○○장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항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복합용도로서 각각의 주용도 및 부속시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차. 이○○, 김○○ 변호사는 일반음식점 허용에 대한 수원시 ○○장의 법률 자문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허가는 불가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구내식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카. ○○지방법원에서는 2008. 5. 21. 수원시 장안구 ○○동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구합○○)에서 체육시설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커피숍, 안경점, 핸드폰판매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에 공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고등법원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누○○)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타. ○○원은 위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된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 6. 1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하. 2009. 7. 10. 최초 민원신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 8층 지하 4층 건축물로 4층부터 8층까지는

실내·스크린 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 운동시설이 입주해 있고, 3층 이하는 건축물 대장상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층(1층, 지하1층)은 관련 시설이 입주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시 ○○구청에서 2009. 6. 1.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현재 ○○지방법원(○○지방법원 ○○구단○○호)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에 있다.

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 면적은 4,234.9㎡, 건축물 연면적은 29,757.93㎡(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6,824㎡), 건축물 주용도는 운동시설, 건축물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되어 있고, 세부 건축물 현황은 4층에서 8층까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운동시설 및 부대편의시설로 되어 있으며, 기타 층은 주차장, 전기실,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8. 4. 30.이다.

4. 처리결과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에는 이 민원 토지는 운동시

설 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허용용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며, 이외의 용도는 불허용도로 적시되어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수퍼마켓·휴게음식점·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음식점·금융업소·학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나. 신청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당과 은행, 약국, 학원, 병원 등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용도로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운동시설로 결정되어 그 허용용도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의 부대편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구한 전체 식당의 규모(3,627㎡)도 전체 연면적 규모(16,972㎡)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편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

한 약국, 은행, 학원, 병원 등은 체육시설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대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다만,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변 현황,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 아파트 주민도 이 민원 건축물에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은행, 학원, 의료시설 등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기타 도심지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02년 최초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이 민원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수요, 주변 현황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함

제9장

교통·도로분야

제 목	면수
• 입체교차로 안 농지매수 등	682
• 농어촌도로 확장	700
• 영농손실 보상	706
• 이주정착금 지급	712
• 대중교통전용지구 피해 구제	717
• 토지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	727
• 토지 재평가 보상 등	732
• 주유소 이용차량 대체도로 설치	740
• 잔여지 매수	746
• 무허가 건축물 이전보상	751
• 사업지구 밖의 건물 등 보상	758
•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764
• 공유재산 수의매각	770
• 철도벽 방음벽 설치	777
• 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780
•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재산정	786

입체교차로 안 농지매수 등

1. 우리나라의 기존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및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토지는 모두가 도로구역 안으로서 국가가 매수보상한 후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고,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농작물도 수면을 취하여야 하나 ○○영업소를 포함한 경사진입로는 물론 ○○배후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이 농지는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의 수면부족 등으로 생육 저하와 결실불량, 4면이 도로(○○배후도로의 높이 4.5m~5m 정도, 경사진입로 높이 6m~9m 정도)로 둘러 싸여 통풍이 전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 따른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 및 병충해 방제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견되므로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과 이 민원 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및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의 관계는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와 같고, 이에 추가하여 보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사정과 마찬가지로 4면이 높게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일조불량과 통풍불량 등 생활환경제약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것이 쉽게 예견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을 각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5-064656, 0908-046070, 009012(의결일 : 2009. 12. 14.)

2. 피신청인 ○○○○○ 공사

3. 결정사항

도로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농지 및 건축물 등에서 종전과 같은 영농 및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 104호선(○○도로 지선) ○○간확장공사 구간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와 제2지구의 각 농지 및 제1지구의 건축물,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정화조시설물이 직접 편입되는 건축물을 각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공사의 ○○강교 교대1 부근에 위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농로용 통로암거(2.0×2.0 정도)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 1 및 2와 같은 신청,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같은 ○○마을, 같은 최○○ 각 소유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각 매수하고, 철거예정인 기존 ○○

104호선을 횡단하는 농로용 교량 재설치 및 신청인 ○○I.C시 공보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고○○·임○○ 공유의 같은 동 940-9 대 891㎡ 등 잔여지를 각 매수하라는 신청.

6.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4조 제1항, 제79조 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마어튼스법칙의 상향각에 따른 인상의 특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등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 104호선(○○도로 지선) ○○간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입체교체로(가락Interchange)가 설치됨에 따라 농지와 마을이 도로에 둘러싸이게 되어 정상적인 영농과 주거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을구간은 연약지반 구간으로서 ○○배후 도로건설공사 당시에도 ○○중학교 건축물 모서리부분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므로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①○○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Ramp)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

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소유의 ○○시 ○○구 ○○동 940-7 답 604㎡ 등 농지와 주택(3가구) 및 그 대지를 각 매수하고 ②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같은 신○○, 같은 최○○ 각 소유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각 매수하며 ③○○강변 이 민원 공사의 ○○강교 부근에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④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마을 공동소유인 마을회관 및 창고를 각 매수하며 ⑤철거예정인 기존 ○○ 104호선을 횡단하는 농로용 교량을 재설치하고 ⑥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고○○·임○○ 공유의 같은 동 940-9 대 891㎡ 등 잔여지를 각 매수하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농지는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양곡 도정공장 소유자는 매수를 원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들의 지반침하 주장은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가 불가하며, 경사진입로 밖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중 이○○ 등의 주택 등 건축물은 경사진입로 본선을 바라보았을 때 마어튼스법칙에 따른 상향각이 5°~9.1°로서 조망이 불리하지 않으므로 매수가 불가하고, ○○강변 통행로는 이 민원 공사로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로암거 설치는 불가하며, ○○시장이 운영 중인 ○○배후도로를 건설할 당시 ○○입체교차로를 접속시키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제5농로육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이 민원 공사의 설계 때 철거 후 ○○ 입체교차로를 ○○배후도로와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고, ○○배후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함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은 ○○시에서 처리할 사안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가 되었고, 2008. 7. 25. ○○사공고 제2008-34호로 손실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09. 4.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고시가 되어 2013. 11.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남북(○○신항↔○○)방향으로 지름 500m 정도, 동서(철도 ○○입체교차로역↔이 민원 공사의 ○○영업소)방향으로 지름 100m~140m 정도인 타원형의 경사진입로가 설치되고, 이 경사진입로는 현재의 농지 지반고를 기준하여 6m~ 9m 정도 높이의 자연사면(법면)으로 건설(성토)되며,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으로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됨에 따라 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들은 움푹 꺼진 웅덩이에 갇힌 꼴이 되게 되었으며, 이 경사진입로 밑으로 3개의 통로암거와 수로암거(횡단배수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소유의 농지 및 건축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물건 현황과 같고,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H, G 밖에 위치한 잔여지 및 건축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물건 현황과 같다.

라.「소음진동규제법」과「환경정책기본법」및 이 민원 공사 시행에 따른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I 구간으로 경사진입로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인 서○○ 소유의 주택 등 3가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환경영향평가서(2007. 12.)에 따르면 공사 중의 공사장 예측소음은 69.5dB(A)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설방음판넬(높이 4m)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표연도인 2032년'을 기준으로 한 ○○도로 운영 때의 예측도로소음은 주간 65.8dB(A)·야간 58.9dB(A)로서 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사진입로 A 측점 0+600～경사진입로 I 측점 0+340 사이 520m에 높이 2.5m인 반사형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저감대책 시행 후 공사 중의 공사장 예측소음은 64.7dB(A)로서 생활소음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의 주거지역·녹지지역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65dB(A)이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운영 때의 도로변 예측도로소음은 주간 60.6dB(A)· 야간 54.5dB(A)로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도시관리계획상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의 도로변지역 환경기준은 주간 65dB(A), 야간 55dB(A)이다)을 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G, H, I 밖에 위치한 주택 등의 건축물의 사정은 아래와 같다.

□ 경사진입로 밖

(소재지 : ○○시 ○○구, 거리 단위 : m)

소재지	용도	소유자	길어깨 거리 (램프본선 법면 끝)	용지경계 거리	상향각 (d/h)	비고
○○동 939-8	주택, 창고	이○○	50(37)	18	9.1° (6.25)	- 램프H+측도+주택 - 램프높이 : 9m
〃 940-3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58(45)	26	7.8° (7.25)	- 램프H+측도+회관 - 램프높이 : 9m
〃 738-2714	주택	최○○	34(30)	8	5.0° (11.3)	- 램프G+측도+주택 - 램프높이 : 4m
〃 738-46	근린생활시설 (○○ 약국 등)	신○○	24(18)	5	8.3° (8)	- 정화조 편입 - 램프G+측도+사무실 - 램프높이 : 4.5m

(참고)

마어튼스법칙의 상향각에 따른 인상의 특징

각도	d/h	인상의 특징	비고
상향각 12~10°	4.5~4.7	대상이 포근하게 느껴지며 건물 정면이 원경의 하나에 포함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 상향각 14° 에서는 밀폐감이 없어짐 ○ 상향각 18° 에서는 밀폐감이 최소로 됨 ○ 상향각 45° 에서는 완전한 밀폐감이 생김. 이보다 큰 상향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밀실공포증이 생김
상향각 18°	3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을 인식하게 됨	
상향각 27°	2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면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에 봄	
상향각 45°	1	대상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 d : 사람의 눈높이에서 물체까지의 수평거리
h : 사람의 눈높이에서 물체의 수직거리

$\Theta = \tan^{-1}(\frac{h}{d})$

〈자료 : 환경부, 2000., 「경관영향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p.86〉

바.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 구성원 이○○ 소유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투명·반사형 방음벽, 높이 2.5m)을 경사진입로 A, I 안쪽으로 520m 정도 설치하고(공사비 : 2억 5천 6백만 원), 위 주택과 농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규격 : 3.5×3.5, 길이 28m) 1개소를 설치(공사비 : 8천 1백만 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입체교차로 A, D, I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위 소음저감시설과 통로암거는 필요없게 되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사. 1980년대 초반 ○○ 104호선을 신설할 당시 이 민원 공사의 ○○강교 교대1 부근에서 끊어진 농로를 장래 지역개발이 될 것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통로암거〔2.0×2.0, 길이 28m, 측도 61m (너비 2.0m) 포장〕를 ○○강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설치할 경우의 공사비는 5천 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통로암거 이외에 주민들과 하천관리청이 협의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장래 하천정비공사가 시행될 때에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은 제외)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간전철화사업의 ○○입체교차로역 설치와 관련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위 공단에서 피신청인 및 국토해양부에 제5농로육교의 재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도로계정에서 부담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국토해양부의 철도관련부서와 도로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이다), 제5농로육교(2차로)를 재설치할 경우의 공사비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으로서 2002. 9. 5. 양○○ 등의 ○○간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매수를 구하는 2002고충10982호, 같은 해 10. 6. 엄○○ 등의 ○○도로건설(○○-○○)공사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매수를 구하는 2002고충12676호 및 2003. 5. 2. 김○○ 등의 ○○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매수를 구하는 2003고충5984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각 시정을 권고한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2. 12. 27. ○○용 03713-32271호, 2003. 2. 13. ○○용 03713-30366호 및 같은 해 8. 11. ○○용 03713-31760호로 위 시정권고를 각 수용한 바 있다.

4. 판 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법 제61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하고(법 제7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법 제79조 제1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법 제79조 제4항)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와 공작물, 소수잔존자 및 영업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각 규정(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의 농지 매수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농지는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약지반처리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

1지구 및 제2지구의 각 농지들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와 주택 등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 등 진출입로 및 용·배수시설이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등으로 4면이 4.5m ~ 9m 정도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어 내수배제가 양호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수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실제 2009년 여름 우기 때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배후도로 쪽에서 침수현상이 발생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존 ○○도로 입체교차로 및 분기점 경사진입로 안의 토지는 모두가 도로구역 안으로서 국가가 매수보상한 후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위 농지들의 각 소유자별 개별 토지의 위치, 형상, 지형적 여건 등으로 보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어 소유자들도 각 매수를 구하고 있고,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농작물도 수면을 취하여야 하나 ○○영업소를 포함한 경사진입로는 물론 ○○배후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이 농지는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의 수면부족 등으로 생육 저하와 결실불량, 4면이 도로(신항만배후도로의 높이 4.5m ~ 5m 정도, 경사진입로 높이 6m ~ 9m 정도)로 둘러 싸여 통풍이 전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 따른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 및 병충해 방제가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은 물론 농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견되며, 위 농지들에 대한 추가 농지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재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에 위치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각 농지에서는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 농지매수, ○○도로건설(김천-현풍)공사○○분기점 경사진입로 안 농지매수 및 ○○도로건설공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 농지와 주택 매수를 각 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각 매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2. 12. 27. ○○용 03713-32271호, 2003. 2. 13. ○○용 03713-30366호 및 같은 해 8. 11. ○○용 03713-31760호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존중하여 각 수용한 사례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와 공작물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를 각 매수하여 녹지대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안의 주택 등 건축물 매수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과 이 민원 공사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A, D, I 및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와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 본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농지와 같고, 이에 추가하여 보면 경사진입로 안의 농지 사정과 마찬가지로 4면이 높게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일조불량과 통풍불량 등 생활환경제약으로 주거환경

이 매우 열악해 질 것이 쉽게 예견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 건축물(주택 3가구)을 각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G 밖의 신○○ 소유의 건축물 매수에 관하여

신청인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신○○ 소유의 별지2 기재 ○○입체 교체로 경사진입로(G) 밖 건축물은 신○○ 소유의 봉림동 738-46 대 481㎡ 중 90㎡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직접 편입되고 391㎡가 남게 된 잔여지상의 건축물인데(근린생활시설 용도), 위 직접 편입되는 부분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시설물 및 상수도시설물의 대체시설을 위 잔여지에 설치하여야 하나 적정한 대제시설부지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신○○소유의 위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강교 교대1 부근 이 민원 공사의 도로 횡단용 통로암거 설치에 관하여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 ○○ 104호선(○○도로 지선)을 신설할 당시 ○○도로의 계획고 부족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던 농로용 통로암거를 설치하지 못함에 따라 농로인 제방도로가 이 민원 공사의 ○○강교 교대1 부근에서 끊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없이 영농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이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

○지방국토관리청의 ○○강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 104호선의 신설 당시 끊어진 농로의 대체용으로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도로운영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와 ○○시 ○○구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 ○○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공사가 시행되면 축조될 제방도로와의 연결을 전제로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를 ○○강교 교대 1 부근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통로암거만 설치해 주면 통로암거에서 장래 축조될 것으로 보이는 제방도로와의 연결부분은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와 그 구성원들 책임으로 하천관리청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G, H 밖의 이○○ 등 소유 건축물의 매수에 관하여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자 신청인 ○○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 그 구성원인 ○○마을, 최○○ 각 소유의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 직접 편입되지 않는 건축물은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G, H)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조망이나 소음 등과 관련한 생활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공사로 주거기능

또는 마을주민들 집회장 및 마을공동작업장 기능 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의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구간 연약지반처리공사로 건축물의 균열 등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공사가 착공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연약지반처리공사의 피해영향범위와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각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 직접 편입되지 않는 건축물을 매수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추후 공사가 착공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용역을 실시 한 결과에 따라 위 건축물 소유자가 피신청인과 협의하고, 그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제5농로육교의 설치에 관하여

신청인 3공구보상대책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배후도로를 건설할 당시 제5농로육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이 민원 공사 때에 철거하기로 협의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배후도로의 ○○입체교차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아닌 일반도로 구간임을 위원회가 확인한 바 있고, ○○배후도로의 일부로서 이 민원 공사의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횡단육교에는 차도와 보행자 통로 및 가로등이 각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에서 시행하는 ○○간전철화사업의 ○○입체교차로역 설치와 관련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위 공단이 피신청인 및 국토해양부에 제5농로육교가 포함된 진출입로 설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최종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도로계정에서 부담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므로 추후 ○○공단의 ○○간전철화사업 ○○입체교차로역 설치공사가 시행되는 시기에 ○○공단이 주체가 되어 피신청인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자.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H 밖의 고○○·임○○의 공유토지 매수에 관하여

신청인 ○○I.C시공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고○○·임○○ 공유의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 대지 등은 이 민원 공사의 잔여지이기는 하나, 위 고○○·임○○이 2009. 6. 25. 우리 위원회에 민원(2BA-0906-068973)을 제출하여 같은 해 8. 20. 교통도로민원과-4301호로 기각된바 있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별지2 기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안의 제1지구와 제2지구의 각 농지 및 제1지구의 건축물(주택 3가구), ○○입체교차로 경사진입로 밖의 정화조시설물이 직접 편입되는 건축물의 각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강교 교대1 부근에 이 민원 공사의 도로 횡단용 통로암거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2 생략)

농어촌도로 확장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마을을 이주시킴과 아울러 면도 103호선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함을 고려하여 ○○마을의 주 통행로인 이설한 면도 103호선 중 적어도 ○○마을 앞 구간에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였어야 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이고, 현재의 면도 103호선은 그동안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변의 교통 환경변화로 면도수준을 넘어 ○○도 또는 ○○○도 수준으로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증가되었고, 사정이 이런데다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5년 이상을 통행하여야 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마을 구간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이 더욱 어렵게 되는 등 통행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쉽게 예상되며(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의 통행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중장비들이 통행하므로써 도로의 파손을 심화시킬 것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도로법」제77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부대공사로서 면도 103호선 중 이 민원 공사로 이설하는 ○○육교 부근 마을 앞에서 ○○방향 이 민원 공사의 측점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7-087877(의결일 : 2009. 10. 26.)

2. 피신청인 ○○○○○ 공사

3. 결정사항

○○도로구역 안의 농어촌도로(면도)를 ○○도로 관리청이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도 551호선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면도 103호선 중 위 공사의 측점 4+550 지점(마을 앞)부터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도로 설치)하고 정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은 기존의 ○○도 551호선(○○도로 지선, 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건설로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마을인데, 기존 ○○도로 건설 당시 면도 103호선을 현재와 같이 ○○마을 앞으로 이설하였는바, 당시 마을 앞으로 이설하면서도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지 않아 면도를 운행하는 자동차로부터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던 터에 피신청인이 ○○도 551호선 (○○도로 지선)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들이 면도 103호선 도로를 과속으로 통행하므로써 주민들이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실제 교통사고도 발생)을 주고 있음은 물론 도로를 파손하고 있으므로 현 ○○도로부지 범위 안에서 면도 103호선 도로를 확장(보행자 도로 설치) 및 정비하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마을 앞 면도 103호선은 이 민원 공사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인 ○○시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이다.

나. 관계행정기관(○○시 ○○구청장)

피신청인이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대체시설로서 면도 103호선을 현재와 같이 이설한 것으로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확장(보행자 도로 설치)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 되었고, 2009. 4.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이 고시되어 2013. 12. 31.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을 앞의 현 면도 103호선은 1981년 기존 ○○도로를 건설할 때 피신청인이

대체시설로 이설한 노폭 7.5m(보행자 도로 없음) 정도인 2차로 도로로서 ○○도로 도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주통행로임에도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들로부터 안전상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일반 자동차들과 함께 통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면도 103호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상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경계석 등이 파손되었고 통행하는 자동차들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임이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확인되었다.

다. 면도 103호선 중 ○○마을 앞 ○○육교(이 민원 공사의 측점 4+400)에서 ○○방향의 ○○육교(측점 0+100) 부근까지 이 민원 공사로 면도 103호선 일부가 끊어져 대체시설로서 ○○도로 본선 너머 ○○강 쪽으로 확장(차도 너비 9m, 보행자 도로 너비 1.5m)하여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4. 판 단

가.「도로법」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도로의 점용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도록(법 제7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마을 앞 면도 103호선은 이 민원 공사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인 ○○시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 행정기관(○○시 ○○구청장)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존 ○○도로를 건설할 당시 ○○마을을 이주시킴과 아울러 면도 103호선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함을 고려하여 ○○마을의 주 통행로인 이설한 면도 103호선 중 적어도 ○○마을 앞 구간에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였어야 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이고, 현재의 면도 103호선은 그동안 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변의 교통 환경변화로 면도수준을 넘어 ○○도(道)또는 ○○○도(道) 수준으로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증가되었고, 사정이 이런데다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5년 이상을 통행하여야 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가동마을 구간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이 더욱 어렵게 되는 등 통행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쉽게 예상되며(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마을 주민들의 통행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이 민원 공사의 공사용 대형 중장비들이 통행하므로써 도로의 파손을 심화시킬 것이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도로법」제77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부대공사로서 면도 103호선 중 이 민원 공사로 이설하는 ○○육교 부근 마을 앞에서 ○○방향 이 민원 공사의 측점 5+200 지점 부근까지(○○마을 구간) 현 도로구역 범위 안에서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면도 103호선 중 ○○마을 앞 구간 도로의 확장(적정한 보행자 도로 설치) 과 정비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농손실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경작허용에 따라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보상을 하지 않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위 규정에서 허용의 의미를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 넓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국한하여야만 영농손실 보상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경작행위를 허용한다고 신청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가 없는 경작지라면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실제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2년간 영농을 하면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든지, 영농행위를 2년간 허용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9-070900(의결일 : 2009. 11. 17.)

2. 피신청인 ○○도 ○○시장

3. 결정사항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157-1 답 4,714㎡와 157-4 답 3,556㎡에 대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157-1 답 4,714㎡와 157-4 답 3,55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06년 수령하였다. 그러나 토지손실보상금과 동시에 받아야 할 영농손실보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서는 2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영농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토지보상협의 당시 토지손실보

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고, 신청인은 2006년 토지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되었음에도 2009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영농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11. 14. ○○시 고시 제2008-20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고시되고, 2009. 7. 8. ○○시 고시 제2009-11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나. 신청인은 '2005. 5. 2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영농을 하여 왔고, 2006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당시 피신청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이 민원 공사 착공 전에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2009년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영농을 계속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신청인과 협의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고자 2006. 5. 3.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6. 5. 24.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80,328,000원(㎡당 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민원 토지 인근의 토지보상금 수령현황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같은 리 157-3, 156-7 토지의 보상단가는 ㎡당 88,000원로 이 민원 토지의 보상단가와 같고, 영농보상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라. 피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 신청인에게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신청인에

게 이 민원 토지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허용하거나 영농을 할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한 근거자료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녠손실녠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협의 당시 토지에 대한손실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 되었음에도 신청인이 2009년까지 영농하였으므로 영농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제77조의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토지소유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 받은 손실보상단가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단가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영농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경작허용에 따라서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보상을 하지 않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위 규정에서 허용의 의미를

묵시적 허용이나 단순한 경작행위의 방치까지 포함하여 넓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국한하여야만 영농손실 보상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경작행위를 허용한다고 신청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가 없는 경작지라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실제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2년간 영농을 하면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든지, 영농행위를 2년간 허용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영농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정착금 지급

토지보상법에는 공특법 시행 당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경우라도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이 공특법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공특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실제로 이주하여 왔으며, 토지보상법의 이주정착금 규정은 이전의 공특법보다 현실적인 요인이 감안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액이 더 강화되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2-006930(의결일 : 2009. 3. 30.)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7조에서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바, 이 민원의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면 신법에서의 보상금 1/2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6 지상의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이　　유

1. 신청원인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6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 아닌 구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 5,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10,000,000원으로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사는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이미 공고·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신법인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1998. 2. 12. ○○부 고시 제1998-37호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1998. 1월 착공하여 2007. 12.월에 준공하였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은 2001. 8. 29.과 2002. 6. 12. 이 민원 주택 등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받았고, 2001. 8. 29.과 2004. 4. 9.에는 같은 리 436-1, 437-1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1991년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2008년도에 이주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당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지급액에 대한 불만으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7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다"(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특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협의한바 있으므로, 공특법상의 5,000,000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토지보상법에는 공특법 시행 당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경우라도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이 공특법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공특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실제로 이주한 점, 토지보상법의 이주정착금 규정은 이전의 공특법보다 현실적

인 요인이 감안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액이 더 강화되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피해 구제

○○광역시장은 대중교통지구지정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따라 대중교통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했음에도 위 절차 없이 대중 교통지구를 지정한다고 공고하여 선행절차 없이 시행하였고, ○○광역시장의 선행절차 없이 시행한 대중교통지구는 ○○주차장의 영업권을 소멸시켰으며, 백○○ 등 4인은 상실된 영업권 때문에 세금을 아끼려고 부득이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는 점, ○○광역시장이 대중교통지구 지정 시 백○○ 등 4인이 ○○주차장의 영업권이 소멸되어 폐업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주차장의 피해가 예견되었음에도 ○○광역시장은 대중교통지구 지정에 맞추어 업종을 전환하라는 안내만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외면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2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백○○ 등 4인이 ○○주차장에서 종전과 같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광역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적용하여 ○○주차장의 영업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6-038551(의결일 : 2009. 8. 31.)

2. 피신청인 ○○○광역시장

3. 결정사항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차량통행금지로 주차장 영업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1. ○○광역시장은 ○○광역공고 제2009-2호로 지정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사업기반이 없어진 신청인들 소유의 ○○시 ○○구 ○○동 4-1 소재 ○○유료주차장의 영업권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이 유

1. 신청원인

○○광역시장이 지정한 대중교통전용지구(○○역 네거리 - ○

○ 네거리, L=1.07km)(이하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들 소유의 ○○시 ○○구 ○○동 4-1 대 662.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유료주차장」(이하 '이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이 상실되어 2009. 6. 30. ○○주차장을 폐업하였으니 ○○주차장의 영업권을 보상하고,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거나 종부세를 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광역시장)

1)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은 단기간에 결정하여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2003. 2. 구상단계에서부터 2009. 1. 12. 지정공고까지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구하고자 2005. 5. 6. 주민공청회, 2005. 11. 9. 상인설명회, 2008. 3. 24. 전용지구지정 추진안내 공문발송, 2008. 3. 27~4. 4. 전용지구 조성 당선작품 전시, 주민설명회 2회(2008. 4. 21, 11. 21)를 거쳐 2009. 1. 12. 지구지정 공고(○○광역시 공고 제2009-5호)하고, 2009. 1. 23.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지정 안내공문을 발송(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사업취지 및 추진일정)하였다.

2) ○○광역시장은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4년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려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에 맞춰 영업장 확장, 이전 또는 업종변경 등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그 기간 동안 영업장 개선의 노력 없이 전용지구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사설주차장영업에 대한 대책만을 요구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사전 안내기간 등을 거쳐 지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주차장 매수나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감면은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정기한 유예는 가능하나 감면은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008. 12. 2. 및 2009. 6. 16. 행정 절차를 안내하였다.

나. 관계기관(○○경찰청장)

○○광역시장은 2008. 10. 6. 및 2009. 6. 17.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8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여 협의요청하였고,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공사 중 통행제한을 2009. 6. 12. 2009. 7. 5. 24:00 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일반차량 통행제한(시내버스, 영업용택시, 이륜자동차, 자전거 제외)을 협의하여 통보하였으며,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운영에 따른 전면통행제한 시행 시기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협의하도록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광역시장은 2003. 8. 5. ○○○○부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이 민원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보받았고, 2003. 9. 30. 이 민원 기본계획을 공고(○○광역시 공고 제2003-375호)하였다.

나. 이 민원 기본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에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대중교통몰)지정 계획과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하도록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행은 2008. 5.부터 2008. 12.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9. 2. 18. 공사를 착공하여 2009. 11. 30.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09. 12. 1.부터 이 민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 ○○광역시장은 중앙로(○○ ○○구 ○○동 107번지에서 ○○로 2가 2-2까지)를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5. 5. 6.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8. 10. 23. 중앙로 통행제한 사항에 대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위원회의 의결, 2008. 11. 21.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위한 ○○광역시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9. 1. 12.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을 공고(○○광역시 공고 제2009-2호)하였다.

라. 백○○ 등 4인은 2003. 3. 1.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광역시장이 2009. 1. 12.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를 지정하고, 2009. 2. 18.부터 2009. 11. 15.까지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광역시장이 2009. 7. 5. 대중교통 차량을 제외하고 전면 출입금지하기로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광역시장이 이 민원 주차장 고객인 자가용 및 일반 차량을 통제할 경우 백○○ 등 4인은 주차장 영업은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해야할 처지이므로 2009. 6. 30. 주차장 영업권 상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백○○ 등 4인은 2004. 3. 19. 시장면담 시, 2004. 5. 17. 동성로상가번영회 진정, 2005. 5. 6. 대구시민회관 공청회 참석, 2006. 2. 10. ○○시 ○○로「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반대 탄원 등 ○○광역시장에게 수차례의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광역시장은 도심상권 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 보행환경개선등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바.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2009. 7. 5.부터 이 민원 대중 교통지구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차장은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차량출입이 불가능하여 영업권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민원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사. ○○광역시장은 이 민원 주차장의 영업권이 상실되었지만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인 대지로 사용은 가능하고 주차장에는 별도 시설없이 포장된 상태이다. 또한,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기간 징수유예는 가능하나 감면은 근거조항이 없다.

4. 판 단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7.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이라 하고 있으며,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 승용차 함께타기 (……)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이라고 하고 있다.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의 종료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 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공특법 제3조 제1항 및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2004. 9.23. 선고 2004다25581 등 참조)하고 있다.

라. ○○광역시장은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지정은 단기간에 걸쳐 입안하여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여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지정에 맞춰 영업장 확장, 이전 또는 업종변경 등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광역시장은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지정 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에 따라 이 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연차

별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했음에도 위 절차 없이 이 민원 대중 교통지구를 지정한다고 공고하여 선행절차 없이 시행하였고, ○○광역시장의 선행절차 없이 시행한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는 이 민원 주차장의 영업권을 소멸시켰고, 백○○ 등 4인은 상실된 영업권 때문에 세금을 아끼려고 부득이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는 점, ○○광역시장이 이 민원 대중교통지구 지정시에 백○○ 등 4인이 이 민원 주차장의 영업권이 소멸되어 폐업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이 민원 주차장의 피해가 예견되었음에도 ○○광역시장은 이 민원 대중교통 지구지정에 맞추어 백○○ 등 4인이 업종을 전환 하라는 안내만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외면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2조에 따른 토지보상법의 보상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백○○ 등 4인이 이 민원 주차장에서 종전과 같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적용하여 이 민원 주차장의 영업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백○○ 등 4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나, 살피건대 이 민원 주차창의 영업권이 상실되었지만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징수유예는 가능하나 감면은 근거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의 매입 또는 종부세 감면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차장의 영업보상을 구하는 백○○ 등 4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피신청인이 당초의 협의취득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착오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러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러한 착오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잘못된 평가 보고에 기인한 것인데,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업무의 전문가들로서 편입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목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수임인으로서 이들의 착오는 피신청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착오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는 지목을 잘못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2-052846(의결일 : 2009. 3. 30.)

2. 피신청인 ○○광역시장

3. 결정사항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 자체감사에서 토지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과다지급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들에게 행한 토지보상금 과다 지급액 환수통지의 법률적 유효성을 재검토한 후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제1항 등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지방도 00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000소유의 00 및 신청인 000 소유의 0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자체 종합감사에서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신청인들에게 토지 보상금 과다 지급액을 환수조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잘못 판단하여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에게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청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분할납부를 약속하였으므로 환수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지방도 00호선은 0000. 00. 00광역시 고시 제0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00. 00. 00. 00광역시 고시 제0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00평가법인, 00평가법인, 00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0000. 00. 00. 신청인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 0000. 00. 00. 협의성립 후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협의취득을 완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자체 종합감사에서 이 민원 토지가 00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인 '00' 및 '도로를 접하고 있는 00'으로 감정평가되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자, 이 민원 토지를 재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신청인 000에 대하여 000원, 신청인 000에 대하여 000원의 손실보상금 환수통지를 하였다.

라. 신청인들이 0000. 00. 0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손실보상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고, 신청인들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과다지급액을 0000. 00. 00. ~ 0000. 00. 00. 00회 분할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판 단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방법 중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에 있어 토지의 지목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 평가된 부분만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민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민법 제109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당초의 협의취득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착오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러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러한 착오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잘못된 평가 보고에 기인한 것인데,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업무의 전문가들로서 편입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목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중대

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수임인으로서 이들의 착오는 피신청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착오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는 지목을 잘못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토지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 재평가 보상 등

신청인이 과수원으로 이용하여 온 토지 중 ○○철도 ○○도심 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로 편입된 ○○구 ○○동 산4 임야 628㎡, 같은 동 산4-1 임야 871㎡, 같은 동 산4-2 임야 618㎡, 같은 동 산4-5 임야 3,201㎡, 같은 동 산4-6 임야 169㎡(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는 신청인이 1965. 10. 27. 매입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어 있고, 1968. 10. 20. 당시 신청인의 주소지가 과수원 부지였던 ○○군 ○○면 ○○동 141(現 ○○구 ○○동)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증언 및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사진 등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군 ○○면 ○○동 141 및 산4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0년대부터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토지를 과수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4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환토(換土) 및 객토(客土)하는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보다 앞서 시행된 ○○선 철도 이설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과수원에 대해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현실이용상황대로 보상하였고,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과수원 부지 전체를 등고선을 따라 개간하고 스프링클러 및 급수용 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각종 유실수를 재배한 행위는 경작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어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을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05597(의결일 : 2009. 7. 27.)

2. 피신청인 ○○공단

3. 결정사항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과수원인 경우 토지에 대한 평가와 영농손실보상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철도 ○○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구 ○○동 산4 임야 628㎡, 같은 동 산4-1 임야 871㎡, 같은 동 산4-2 임야 618㎡, 같은 동 산4-5 임야 3,201㎡, 같은 동 산4-6 임야 169㎡를 실제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재산정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40여 년이 넘게 포도, 대추, 감 등 각종 유실수를 재배하였던 과수원 부지가 ○○철도 ○○도심구간 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편입토지 일부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고 그에 따라 영농손실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십년간 과수원으로 이용하여 온 토지인 ○○구 ○○동 산4 임야 628㎡, 같은 동 산4-1 임야 871㎡, 같은 동 산4-2 임야 618㎡, 같은 동 산4-5 임야 3,201㎡, 같은 동 산4-6 임야 169㎡의 현실이용상황을 인정하여 보상가격을 재산정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들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로 전용하여 경작하였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및 유실수 등과 같은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4호에 의해 승인되었고, 2007. 9. 2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7. 12. 5.부터 신청인과 보상협의에 착수하였다.

나. 신청인은 본래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하여 총면적 17,127㎡의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1997년과 1999년 시행된 ○○선 철도 이설사업과 이 민원 사업으로 과수원 전체가 사업용지로 편입되었으며, 각 사업과 관련한 토지편입 및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보상단가 (원/㎡)
			공부	실제		
◇◇ 수○구 △천동	◇◇선 철도 이설 사업	138-3	전	과수원	308	87,500
		〃	전	잡종지	195	131,000
		138-4	전	과수원	227	88,500
		141	전	과수원	81	87,500
		〃	전	잡종지	858	145,000
		141-2	전	과수원	275	85,500
		〃	전	대	120	315,000
		141-5	과수원	과수원	1,431	85,500
		〃	과수원	잡종지	1,156	145,000
		141-6	과수원	과수원	840	87,000
		143-1	전	과수원	516	85,500
		산4-3	임야	과수원	468	87,500
		〃	임야	잡종지	547	145,000
		산4-4	임야	과수원	365	88,500
		합 계			7,387㎡	
	이 민원 사업	138	전	과수원	274	125,300
		138-1	전	과수원	268	125,300
		138-2	전	과수원	52	125,300
		138-5	전	과수원	71	125,300
		141-1	과수원	과수원	1,555	125,300
		141-3	과수원	과수원	288	125,300
		141-4	과수원	과수원	427	125,300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보상단가 (원/㎡)
			공부	실제		
		141-7	과수원	과수원	221	125,300
		141-8	과수원	과수원	824	125,300
		산4	임야	과수원	628	83,200
		산4-1	임야	과수원	871	83,200
		산4-2	임야	과수원	618	83,200
		산4-5	임야	과수원	3,201	83,200
		〃	임야	대	273	405,950
		산4-6	임야	과수원	169	83,200
		합 계			9,740㎡	
	총 계				17,127㎡	

※ ▭ : 이 민원 토지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1963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과수원에서 포도를 재배하였고, 1967년 결혼한 이후 과수원 내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며, 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0년대 초반 이후 20여년 동안 대추나무를 재배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감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인근 주민 3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작 사실 확인서와 1969년 이후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1972. 8. 25. ○○부고시 제386호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전체를 포함하여 ○○군 ○○면 ○○동 141 및 산4(現 ○○구 관할구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마. 주민등록 초본에는 신청인이 1968. 10. 20. ○○군 ○○면

○○동 141로 주소지를 정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을 1965. 10. 27. 구입하여 1971. 11. 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과수원 전체가 등고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개간되었고, 스프링클러 및 급수용 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이 소유농지현황에 포함된 농지원부(1995. 6. 22. 작성)를 제출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부에 문의한 결과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제도가 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확인(2009. 7. 14.)하였다.

4. 판 단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없이 무단으로 농지로 전용되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과수원으로 인정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보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을 1965. 10. 27. 매입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어 있고, 1968. 10. 20. 당시 신청인의 주소지가 과수원 부지였던 ○○군 ○○면 ○○동 141(現 ○○구 ○○동 141)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증언 및 신청인이 제출

한 농지원부와 사진 등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군 ○○면 ○○동 141 및 산4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0년대부터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토지를 과수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또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4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환토(換土) 및 객토(客土)하는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을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과수원으로 이용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민원 사업보다 앞서 시행된 ○○선 철도 이설사업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토지보상 내역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현실이용상황이 과수원인 2개 필지(○○구 ○○동 산4-3 임야 468㎡, 같은 동 산4-4 임야 365㎡)의 보상단가[88,500(원/㎡),근거7,500(원/㎡)]가 공부상 지목이전 및 과수원이고 현실이용상황이 과수원인 다른 필지의 보상단가[85,500(원/㎡) ~ 88,500(원/㎡)]보다 높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시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으로 보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는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는 가격시점의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0조 또핎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상대상인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고 주장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0(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i특별조볼 때 이 민원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

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것만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0조 또는항에 한구역의 지정토지들을 현실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과수원 부지 전체를 등고선을 따라 개간하고 스프링클러 및 급수용 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각종 유실수를 재배한 행위는 경작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들은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아닌 「농지법」상 농지로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토지들이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 하더라도 2005. 2.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들을 과수원으로 인정하여 보상가격을 재산정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유소 이용차량 대체도로

이 민원 주유소의 입지환경,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가주택에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한 영업시설을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가 대체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07-007930(의결일 : 2009. 8. 31.)

2. 피신청인 ○○군수

3. 결정사항

이 민원 주유소를 이용하는 탱크로리, 화물차량 등이 마을길을 주통로로 이용으로 마을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짐에 따라 주유소 이용차량을 위한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군 ○○읍 ○○리 129-10 소재 주유소 이용차량이 가능한 신청인들 거주의 ○○리 마을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로법」제64조 제2항, 제58조,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 거주의 ○○군 ○○읍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안쪽에 건축된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가 2009. 6.부터 너비 약 2~3m 정도 되는 마을 안 도로(이하 '이 민원 마을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화물차 등이 통행할 경우, 오래되고 낡은 농촌주택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유소 출입구 부근에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를 설치하거나 지방도에서 직접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토지 매입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민원 주유소는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항에 따라 지방도 ○○○호선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11. 27.과 2008. 12. 23.에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나. 이 민원 주유소는 대지면적 612㎡, 건축면적 133.18㎡, 연면적 190㎡,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었고, 이 민원 마을길과 지방도 ○○○호선(○리~○○간) 교차지점에 설치된 변속차로(이하 '기존 변속차로'라 한다)에 근접하여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이 민원 마을길을 사용하는 것

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 ○○군수로부터 '건축신고의 수리'의 사무를 위임받은 ○○군 ○○읍장은 2008. 2. 26. 이 민원 주유소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09. 5. 26.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에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2009. 6. 4. 피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다.

라.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석유판매업 등록 이후 영업을 개시하려고 했지만,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 및 노약자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영업을 막고 있어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주유소는 지방도 540호선과 이 민원 마을길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민원 마을길 주변에는 10여 채의 농가주택이 있고, 이 민원 주유소 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전방에는 노인정이 있다. 주유소 이용차량이 주유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정을 지나쳐야만 한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약자 수는 약 40여명이다.

바.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시 참석하여 '은행대출과 약간의 사채로 어렵게 주유소를 건축하였는데, 영업을 못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은행이자는 불어나고, 생활비마저 부족하여 살고 있던 집마저 급매로 처분하고 현재는 셋방살이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지방도 ○○○호선에 도로연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로연결 금지구간임을 인지하고 2008. 9.경 자진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이 민원 마을 이장(오○○)이 제안한 사항(대체도로를 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술했다.

4. 판 단

가. 「도로법」 제64조는 제2항은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 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차로 주변(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은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대체도로 개설도 어렵고, 이 민원 주유소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연결 허가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주유소의 입지환경,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가주택에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한 영업시설을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가 대체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대체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 매수

이 민원 잔여지는 종전토지가 이 민원 도로가 양분하여 남게 된 것으로,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진입로가 단절된 점,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향후 활용 및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0-038675(의결일 : 2009. 11. 17.)

2. 피신청인 ○○○○ 공사

3. 결정사항

면적이 작고 지형경사가 심하여 이용가치가 없어 매도가 불가한 잔여지(임야) 매수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산00번지 임야 1,358㎡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산 00번지 임야 1,358㎡(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이 작고 지형경사가 심하여 이용가치가 없어 매도가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법면부 하단 및 도로 옆에 위치하여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써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4. 9.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2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되었고, 사업시행기간은 2004. 12.~2010. 12. 이며 2009. 11. 현재 공정은 약 78%이다.

나. 이 민원 잔여지의 종전토지인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1,405㎡ 가운데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2004. 12. 21. 분할되어 산 58-1 임야 9,033㎡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전주방향 법면 상단부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589㎡와 광양방향 하단부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783㎡가 잔여지로 남았으나, 잔여지 중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783㎡는 2007. 1. 9. 다시 분할되어 425㎡(같은 리 산 58-3 임야)가 도로용지로 추가 편입되어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358㎡(이 민원 잔여지, 종전토지의 11.9%)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매수요청에 의거 잔여지 중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589㎡는 법면상단에 위치하고 진출입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5. 19. 매수결정 통보하였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불가 통보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는 광양방향 하행선 사면부에 위치하고, 길이 112m, 최대 높이 23m로 2004. 10. 4 이 민원 사업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부분 포함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가 실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잔여지는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기울기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 후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고 넓이 약 2.5m의 농로와는 약 15m폭의 사유지 및 구거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고, 잡목 자연림 임야이다.

4. 판 단

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

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법면부 하단 및 도로 옆에 위치하여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써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종전토지가 이 민원 도로가 양분하여 남게 된 것으로,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진입로가 단절된 점,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향후 활용 및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무허가 건축물 이전보상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야적장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청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6. 경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임이 명백하나, ○○시 ○○장이 2001. 7. 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된 공문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불법행위일시가 2001. 6.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7. 16.) 이전부터 사용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종래의 목적인 재활용품의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야적장은 중형화물 차량의 길이가 8.5m이고 너클 크레인의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하여 이 민원 공사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인 폭 7.2m정도로는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부지에 대한 평가나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서 이를 적법 건축물의 부지(즉, 대지)로 평가하거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아닌 점, 나아가 ○○시 ○○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축법」및 「농지법」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을 이전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11-016096(의결일 : 2009. 12. 28.)

2. 피신청인 ○○○○ 공사

3. 결정사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공공사업지구 밖의 불법건축물이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매수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부산 강서구 강동동 199-3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을 이전보상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수년 간 재활용품 및 수집업(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택과 영업장의 일부가 편입되어, 신청외 이분선 소유의 ○○부산 ○○구 ○○동 199-3 토지 일부와 그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창고(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바,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자재야적장(이하 '야적장'이라 한다.)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이 고시되었고, 2009. 4. 13. ○○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이 고시되어 2008. 12. 착공하여 2013. 12.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 6. 1.부터 지금까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된 주택으로 자녀 3명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09. 11. 2. 피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과 이 민원 건축물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9. 11. 11. 신청인이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임을 회신하였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부체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야적

장의 일부만 편입되어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라. ○○시 ○○장은 2001. 6. 29. 현장조사보고(불법행위)에 이 민원 건축물이 파이프천막 자갈타설 구조로 보고하였고, 2001. 12. 31.부터 2009. 2. 19.까지 11차례에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2009. 12. 7.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장은 2009. 12. 8. 파이프천막(84㎡) 및 자갈타설 행위는 2001. 9. 26. 기 고발되었고 불법증축(36㎡) 행위는 2003년에 이루어져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되어 미고발하였으며, 대집행은 강서구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수천건에 달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의 통행 방해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철파이프 구조로 천으로 싸여져있으며, 그 위에 그늘막이 씌워져 있고 가로길이 20.5m정도 세로길이 7m정도이며, 내부에는 연사기 1대, 박스 재단기 3대, 박스 핀 기계 1대 및 재활용 박스가 쌓여 있다. 이 민원 건축물 앞쪽에 있는 기존의 야적장은 재활용품을 수집, 이적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폭 26.9m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편입되고 남은 야적장은 폭 7.2m정도이며, 재활용품을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중형화물(라이노 4.5톤) 차량의 차량등록증에는 너비 2.2m정도 길이 8.5m정도 높이 3.5m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너클 크레인의 길이는 8m

가량으로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한 중장비이다.

4. 판 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지장물인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

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야적장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청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6. 경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임이 명백하나, ○○장이 2001. 7. 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된 공문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불법행위일시가 2001. 6.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7. 16.) 이전부터 사용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종래의 목적인 재활용품의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야적장은 중형화물차량의 길이가 8.5m이고 너클 크레인의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하여 이 민원 공사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인 폭 7.2m 정도로는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부지에 대한 평가나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서 이를 적법 건축물의 부지(즉, 대지)로 평가하거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아닌 점, 나아가 ○○시 ○○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축법」및 「농지법」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을 이전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업지구 밖의 건물 등 보상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여 조망 및 통풍이 제한받고 유역면적이 좁아져 침수우려가 있는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도 65.5dB(A) 및 진동도 64.9dB(V)는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0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로 이 민원 건물과 8.0m~13.0m 이격된 용지경계에서 측정할 경우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 할 경우 방음벽 및 통로암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4-053239(의결일 : 2009. 6. 22.)

2. 피신청인 ○○○ 건설청장

3. 결정사항

도로와 국가하천 00천의 높이 4.5m의 제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제한되고, 침수 우려가 있으며, 교통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옥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00건설공사 구역에 연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 교통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역에 연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은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는 높이 8-9m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와 국가하천 00천의 높이 4.5m의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제한되고, 침수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공사 구역 밖에 위치하고, 이 민원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의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 민원 건물의 침수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음벽, 배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보상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00. 00. 00북도 고시 제0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사업규모는 폭 30.4m의 6차로 도로 9.0㎞ 신설이며, 사업기간은 00000 이다.

나.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제방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는 동남향 건물로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폭 32.0m~38.0m)에 위치하고, 이 민원 도로의 용지경계에서 8.3m~13.3m, 이 민원 제방의 법면 끝에서 3.8m~5.5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한 건물은 이 민원 건물밖에 없다.

다. 또한 이 민원 도로의 성토고는 7.6m~9.2m, 이 민원 제방의 제방고는 4.5m이고, 이 민원 건물과 2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 00군수가 관리하는 000배수장이 있으며, 신청인들은 이 민원 제방도로를 이 민원 건물의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도로경계선에서 5m 접도구역이 적용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공사 중에는 높이 5m에 연장 80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는 높이 2m에 연장 120m의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 경우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m 이격된 지점의 공사 중 예측소음도는 65.5dB(A),

운영 중 예측소음도는 주간 53.8dB(A), 야간 50.4dB(A)이며, 진동도는 64.9dB(V)이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 방향의 이 민원 도로에 V1측구(폭 1.07m, 높이 0.45m)를 설치하고, 이 민원 건물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연결되는 통로암거(3.5m×3.5m, 연장 4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위 방음벽과 통로암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2억 2천만 원이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여 조망 및 통풍이 제한받고 유역면적이 좁아져 침수우려가 있는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도 65.5dB(A) 및 진동도 64.9dB(V)는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0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로 이 민원 건물과 8.0m~13.0m 이격된 용지경계에서 측정할 경우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 할 경우 방음벽 및 통로암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 명의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고, ○○공사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상대상 건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며, 소유자의 자녀 1인이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일 2년 이상 앞선 시점부터 보상 대상 건축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가족에게 이주정착금과 신청인의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24259(의결일 : 2009. 8. 24.)

2. 피신청인 ○○공단

3.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손실보상 협의통보일 당시에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이전하였으나 보상 대상 건축물에 수 년 간 거주하였을 경우 이주정착금과 가족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심구간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된 ○○ 동구 ○동 98-16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신청인의 차녀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 동구 ○동 98-16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도심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상실시 당시 신청인의 차녀(次女)가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차녀는 이 민원 건축물에서 수 년간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장애를 지니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이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및 공무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의 차녀는 보상개시일(손실보상협의 통보일)인 2008. 7. 8.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0. 8. ~ 2007. 11. 7. 중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고, 2007. 10. 1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11.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16호로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2008. 1. ~ 2008. 3. 중 보상대상 물건 및 대상자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2008. 3. 31.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이 위치한 신청인의 ○○동구 ○동 98-16대 113.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64.8㎡가 이 민원 사업의 용지로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은 잔여지 48.6㎡를 포함한 이 민원 토지 전체를 2008. 7. 14. 협의취득하였다.

다. 등기부 등본에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1995. 2. 24. 구입하여 1995. 4. 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5층 81.32㎡(방 2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1995. 4. 7.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라. 신청인의 처와 장남과 차녀는 이 민원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 5층에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건축물에 수시로 찾아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신청인의 처가 진술하였다.

마.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과 신청인 부친의 주소지가 2003. 6. 4.부터 2008. 9. 15.까지 ○○구 상서동 236-18로 되어 있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차녀의 주소지는 2005. 7. 26.부터 2008. 4. 15.까지 이 민원 건축물 소재지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08. 4. 15. 차녀가 이사할 집이 마련되었는데 이사하여도 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전화로 문의하자 담당직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확인(2009. 7. 21. 10:02, 042-220-5334)한 결과 담당직원이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 2009. 1. 21. ○○시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는 신청인의 부친이 1급 시각장애인(1988. 11. 24. 장애인으로 등록)이고 친자인 신청인이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고, 보상개시일(손실보상협의 통보일)에 신청인의 자녀 1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서 퇴거한 상태이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 이주정착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 민원 건축물은 1995. 2. 24. 신청인이 구입한 이래로 신청인의 소유이면서, 신청인의 가족들이 이 민원 사업의 고시일 이전부터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 민원 건축물 5층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다수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나 ○○공사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가옥 및 주택에 거주하였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인 신청인의 부친에게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 예상되는 점,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하나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주거이전비 지급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차녀는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상 앞선 시점인 2005. 7. 26.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업구역 내 보상대상 물건 및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2008. 1. ~ 2008. 3.과 보상계획 공고일이 지난 2008. 4. 15.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거주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차녀가

이 민원 건물에서 이사하기 전에 신청인이 보상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에 신청인의 차녀가 이 민원 건축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녀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0903-029140(의결일 : 2009. 4. 30.)

2.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3. 결정사항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농지)의 축산업 부지로 점·사용 중인 경우 수의매각 가능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38조, 「농지법」 제2조, 제28조, 제32조, 신뢰보호의 원칙

이 유

1. 신청원인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경 고아면 오로리 일원에서 시행

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2. 피신청인 의견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위배되어 수의매각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3. 사실관계

가. 진행과정 개요

○ 공유재산 전환 경위

- 1992. ~ 1993.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준용하천)개수공사(추정)
- 1994. 10. 24. : 폐천부지 양여받음(국가 → 경상북도 ○○군수)
- 1995. 01. 01. : ○○시와 ○○군을 합쳐 도농통합형 ○○시(○○출장소 포함)설치

○ 고충민원 처리 경위

- 2008. 09. 16. : 고충민원 접수(1차)
- 2008. 10. 06.~10. 15. : 피신청인의 설명자료 검토 등

- 2008. 10. 20. : 실지방문 조사(1차, 위원회의 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
- 2008. 11. 05. : 처리결과 회신(피신청인의 어떤 처분이 없었음)

※ 피신청인이 재산매각방침 결정 후 매각신청하고, 피신청인이 수 의매각 대상자 결정 통지 후 대상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위원회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 2008. 11. 06. : ○○시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2008. 11. 20. : 공유재산(폐천부지) 매각계획 수립
- 2008. 11. 25. : 매각계획 통보(○○시 → 수허가자 등)
- 2008. 12. 20. : 매수신청서 접수(수허가자 → ○○시)
- 2008. 12. 20.~2009. 02. 26. : 매수신청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 2009. 03. 02. : 실지방문조사(2차, 업무협의)
- 2009. 03. 06. : 고충민원 접수(2차)
- 2009. 03. 19. : 실지방문 조사(3차, 조정방안 구체적 협의 등)
- 2009. 04. 07. : 조정회의 개최 계획 보고(1차)
- 2009. 04. 07.~04. 24. : 조정회의 개최 준비
- 2009. 04. 27. : 조정회의 개최 계획 보고(2차, 최종)
- 2009. 04. 28. : 조정회의 개최 통보(피신청인 및 신청인)
- 2009. 04. 30. : 조정회의 개최(○○시청 회의실)

나. 제1차 현지조사 : 공유재산 대부허가 과정 등 현황파악과 처리방안 협의

○ 대부허가 현황 등

점유자	지번	지목(현황)	공부면적(㎡)	대부(점유)면적(㎡)	비고
김○○	22-2	전(잡)	3,865	3,865	· 5년 이상 · 양계장, 주택 · 1988년 농공단지이주대책자
	2-97	전(잡)	1,292	1,292	
	2필지		5,157	5,157	

○ 처리방안 협의

매각계획 수립과 매수신청 및 대상자 결정 등 절차, 위원회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 3차 현지조사 : 처리방안 확정(조정회의 개최)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실지방문조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농지법」에는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 즈음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

고 볼 수 있음에도 수의매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가 조정하는 방안을 피신청인에게 제안하게 됨

나.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3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조정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조서의 내용에 당사자 모두 동의하므로 조정이 성립됨

<조 정 조 서>

1. 민원표시 2BA-0903-029140 공유재산수의매각
2. 신 청 인 김○○
3.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4. 일시 및 장소 2009. 4. 30.(목) 경상북도 ○○시 회의실
5. 신청취지 및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6. 조정내용 등

가. 조정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의 없이 동의함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나. 조정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

신청인(동의자) 경북 ○○시 ○○읍 ○○리 822-2 김○○ (서명필)
피신청인(동의자) 경상북도 ○○시장 업무수행자 부시장 ○○ (서명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 ○ (서명필)

(별지)

신청취지 및 이유

○ 경상북도○○군수가 1988년경 고아면 오로리 일원에서 시행한 고아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점유자	지번	지목 (현황)	공부면적 (㎡)	대부(점유) 면적(㎡)	비고
김○○	822-2	전(잡)	3,865	3,865	· 5년 이상 · 양계장, 주택 · 1988년 농공단지 이주대책자
	22-97	전(잡)	1,292	1,292	
	2필지		5,157	5,157	

조정 이유

○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경 고아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

피신청인은 전차대 설치로 인한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역 구내의 심야시간대 철도보수 작업에 따른 소음피해 등 ○○마을의 특수한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마을 철도변 방음벽 설치를 '2012년에 착공예정인 ○○선 2단계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0911-027117(의결일 : 2009. 11. 11.)

2. 피신청인 ○○○○○○○공단

3. 결정사항

신청인들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 유

1. 신청원인

○○선 ○○역에 인접한 충남 보령시 주산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입어 왔고, 특히 '09. 11.에 설치된 전차대로 인해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등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2009. 12. 17. 소음측정 결과 주간 68dB, 야간 57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철도 소음한도 이내이므로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1 : 고충민원 접수

○ 2009. 12. 17. : 소음 측정결과, 주 68dB, 야 57dB(피신청인)

○ 2010. 3. 2. : 피신청인과 위원회 공동으로 소음도 재측정

- 결과 : 주간 69.3dB〔소음한도 기준(70dB)에 근접〕

○ 2010. 4. 23. : 당사자간 이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 제시

4. 처리결과 : 합의해결

현장조사 및 피신청인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음도 재측정,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정확한 사실자료 수집 및 당사자 간 수차례 이견 조율을 통해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 당사자 및 관계기관은 위 분쟁 사항을 아래 합의 내용과 같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전차대 설치로 인한 기관차의 정차시간 증가, ○○역 구내의 심야시간대 철도보수 작업에 따른 소음 피해 등 ○○마을의 특수한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마을 철도변 방음벽 설치를 '2012년에 착공예정인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방음벽 설치 구간은 ○○마을 입구부터 측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250m 구간으로 하고, 선형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되는 선형에 맞게 방음벽을 설치하되 설치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나. 신청인들은 ○○역 및 전차대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다. 본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있다.

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이 민원 사업으로 이 점포출입공간은 기존 약 5~10m 폭 중 약 0.5m 폭이 축소되어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바, 차량과 고객의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향후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하여도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 민원 영업장의 주차장도 현재와 같이 이 점포출입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영업장의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민원 사업은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고, 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감소가 있으니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단순히 정거장 설치에 따른 영업상 손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56137(의결일 : 2009. 6. 22.)

2. 피신청인 ○○도 ○○시장

3. 결정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영업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4. 처리결과 안내

5.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 판 례

- 대법원 2001다44352. 선고 2002. 11. 26.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중 신청인의 ○○도 ○○시 ○○구 ○○동 208-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행하고 있는 ○○정거장 계단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영업장은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영업장의 진출입로는 차단되지 않으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 우려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1. 16. ○○시 고시 제2005-378호

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이 민원 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과 ○○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관광객의 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준공예정일은 2010. 6. 30.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5. 1. 18. ○○시 공고 제2005-27호에 의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12. 14. 교통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이 민원 사업 중 ○○정거장 본체는 연장 37.5m와 폭 20m의 규모로 2006. 11. 9. 착수하여 2007. 9. 21. 완료되었고 본체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시설물인 이 민원 공사는 보행도로 좌측과 우측에서 올라오는 계단(#1, #2이며, 직선길이 약 44m, 높이 약 7m, 폭은 약 2~3m이나 폭이 큰 쪽은 에스컬레이터 1개소 포함됨)과 엘리베이터 1개소가 설치되는 공사로 약 3개월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거장 본체 하부는 국도 ○○호선 도로(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는 당초 1,624㎡였으나, 이 중 178㎡가 2006. 4. 13. 같은 리 208-22로 분할되어 피신청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청 외 원○○ 소유인 같은 리 208-15 전 649㎡도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나, 이중 483㎡가 2003. 11.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같은 리 208-23으로 분할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현재 이 민원 국도의 버스정류장과 보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 외 원인혜의 소유로 2004. 5. 11. 사용승인 된 지상 2층, 높이 10.5m 규모의 일반철골구조물로서 건축면적은 674.55㎡(연면적 1,300.05㎡), 옥외주차장은 22대 253㎡,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민원 영업장에는 신청인의 점포를 포함하여 약 7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바. 이 민원 영업장은 약 70m 길이이며, 이 민원 영업장과 이 민원 국도에 설치된 보도 등의 경계인 옹벽(이하 '이 도로옹벽'이라 한다)에는 주차장과 점포 출입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5 ~ 10m 폭의 공간(이하 '이 점포출입공간'이라 한다)이 있다.

사. 차량은 이 민원 국도를 통해 이 민원 영업장으로부터 약 20m 전방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거나 전방의 출입구 대신 이 민원 영업장 끝부분의 출입구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다.

아. 피신청인은 이 계단 공사를 위하여 가설방음벽(높이 3.5m, 방진망 1.5m 포함, 연장 L=65m)을 이 민원 영업장 전방 약 10m 부근부터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 점포출입공간 약 20m 구간은 기존 폭이 약 5~ 6m이나 이 중 약 0.5m가 축소된다.

자.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에 대하여 관련기준에 따라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이 민원 영업장의 시야차단으로 인한 매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처리결과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6. 3. 1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라고, 제64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

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1999.10.8.선고 99다27231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되니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하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점포출입공간은 기존 약 5~10m 폭 중 약 0.5m 폭이 축소되어 방음벽 등이 설치되는바, 차량과 고객의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은 향후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하여도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기존 간판의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민원 영업장의 주차장도 현재와 같이 이 점포출입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영업장의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민원 사업은 신교통 수단의 도입으로 교통난의 근본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며, ○○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감소가 있으니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단순히 ○○정거장 설치에 따른 영업상 손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안내함.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연간평균총수입을 산정할 경우 영농손실 보상대상자가 1개월의 소득만 제출해도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에서 농작물의 총수입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가격 등락의 폭이 심한 농작물의 경우 단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농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인해 실제소득 입증기간이 반드시 소득발생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우 약 20일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월 수확할 수 있어 실제소득 입증기간과 소득발생기간의 차이가 없고, 2006년 1년간의 월평균 소득과 2005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의 경작기간(1년 6개월)을 2년으로 나눈다면 이는 연간평균총수입이 아닌 0.75년간 평균총수입으로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점, 신청인이 2005년도에는 7월경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1년 6개월의 실제 입증소득을 2년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0906-045432(의결일 : 2009. 12. 8.)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함에 있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은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소득률을 곱하여 산정(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실제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일 경우 '농작물 총수입'을 2년으로 나눠야 하는지, 실제 경작기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시 ○○읍 ○○리 674-1과 같은 리 674-2 소재 버섯재배사의 연간평균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신청인이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눠 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읍 ○○리 674-1과 같은 리 674-2 소재 버섯재배사(이하 '이 민원 버섯재배사'이라 한다)가 편입되었다. 신청인은 영농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1년 6개월간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2년간의 소득으로 보아 입증소득 금액을 2년으로 나누어 연간평균 농작물총수입을 구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실제소득 입증기간인 1.5년으로 계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고시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르면 실제소득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1개월간 1천만 원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인 1억 2천만 원으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6. 12. 4. ○○부고시 제2006-○○○

호로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기존의 왕복 4차선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간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버섯재배사에서 2005. 7.부터 2006. 12.까지 ○○농협, ○○원예농협, ○○중앙청과(주)에 출하한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 실제소득 입증금액(205,874,090원)

- 2005. 7. ~ 2005. 12. : 68,073,908원

- 2006. 1. ~ 2006. 12. : 137,800,182원

※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예

- 신청인 주장 : 205,874,090원 ÷ 1.5년 = 137,249,393원

- 피신청인 주장 : 205,874,090원 ÷ 2년 = 102,937,045원

다. 신청인은 2003. 1.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다가 종균분양업을 하기 위해 2004년 말경부터 2005. 6.까지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친조카(○○○)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를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기간의 출하실적 증명서에는 친조카의 이름과 집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2005. 1.부터 2005. 6.까지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버섯재배사는 ○○시 ○○읍 ○○리 674-1과 674-2에 건축되어 있으며, 2003. 1. 18. 사용이 승인되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버섯재배사에서 새송이버섯을 재배하여 왔다. 신청인은 재배사의 온도유지관리에 따라 재배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배사에서 약 20일 정도 재배를 하면 수확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면, 새송이버섯은 발아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재배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된다.

바. ○○부에 2009. 6. 17. 이 고충민원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결과, 경작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은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소득률을 곱하여 산정(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하며, 이때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

로서 보상계획이 공고 또는 사업인정이 고시가 있는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하며, 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연간평균총수입을 산정할 경우 영농손실 보상대상자가 1개월의 소득만 제출해도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에서 농작물의 총수입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가격 등락의 폭이 심한 농작물의 경우 단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농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인해 실제소득 입증기간이 반드시 소득발생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우 약 20일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월 수확할 수 있어 실제소득 입증기간과 소득발생기간의 차이가 없고, 2006년 1년간의 월평균 소득과 2005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의 경작기간(1년 6개월)을 2년으로 나눈다면 이는 연간평균총수입이 아닌 0.75년간평균총수입으로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점, 신청인이 2005년도에는 7월경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1년 6개월의 실제 입증소득을 2년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의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연간평균 총수입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양 건**	2008. 3. 14. ~ 2009. 8. 27.
제2대 위원장	**이 재 오**	2009. 9. 30. ~ 2010. 6. 30.

□ 현 부위원장 및 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부 위 원 장	**박 인 제**	2008. 3. 14.	사무처장
부 위 원 장	**이 영 근**	2008. 3. 14.	
부 위 원 장	**김 필 규**	2008. 3. 14.	
상 임 위 원	**홍 현 선**	2008. 4. 15.	
상 임 위 원	**김 홍 갑**	2010. 10. 1.	
위 원	**박 정 훈**	2008. 5. 26.	
위 원	**황 현 주**	2008. 5. 26.	
위 원	**송 방 용**	2009. 4. 10.	

위 원	조 준 형	2009. 10. 26.	
위 원	김 용 미	2010. 4. 16.	
위 원	이 순 창	2010. 3. 22.	
위 원	문 한 식	2010. 10. 11.	
위 원	이 재 화	2009. 12. 21.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이 권 상	2007. 10. 1. ~ 2010. 9. 30.	
상임위원	이 재 충	2007. 10. 1. ~ 2010. 9. 30.	
위 원	박 종 렬	2006. 4. 10. ~ 2009. 4. 9.	
위 원	신 광 영	2006. 5. 9. ~ 2009. 5. 8.	
위 원	최 상 림	2006. 9. 22. ~ 2009. 9. 21.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 2010. 4. 11.	
위 원	이 유 정	2007. 3. 4. ~ 2010. 3. 3.	
위 원	강 정 혜	2007. 8. 2. ~ 2010. 8. 1.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2005. 4. 3.
제7대 위원장	송 철 호	2005. 4. 8. ~ 2007.11. 21.
제8대 위원장	신 철 영	2007.11. 30. ~ 2008. 2. 29.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석 순 용	1996. 3. 4. ~ 1998. 3. 14.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4.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 2004. 9. 30.	
상임위원	김 주 섭	2003. 4. 1. ~ 2005. 3. 17.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 2003. 8. 11.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 2006. 6. 30.	
상임위원	심 재 민	2004. 10. 1. ~ 2007. 10. 1.	
상임위원	신 철 영	2005. 3. 25. ~ 2007. 11. 30.	2007. 11. 30. 위원장 위촉
상임위원	안 준 태	2006. 6. 30. ~ 2007. 10. 1.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 2004. 7. 11.	
위 원	김 숙	2001. 12. 28. ~ 2004. 12. 27.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 2006. 4. 7.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 2006. 9. 1.	
위 원	최 일 숙	2004. 3. 3. ~ 2007. 4. 1.	
위 원	최 은 순	2004. 8. 2. ~ 2007. 8. 1.	
위 원	정 노 찬	2005. 1. 17. ~ 2008. 1. 16.	

고 충 민 원 결 정 례 집(통권16호)

2010년 12월 일 발행
2010년 12월 일 인쇄

발행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 02-360-27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 120-705

인쇄 정우문화사 ☎ 02-2266-3434

<비매품>